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891-14

문화재수리 업무편람

2022. 1



문화재청



문화유산 헌장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2020년 12월 8일



목 차

제1장 | 문화재수리 분야

1

제 1 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3
제 2 절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23
제 3 절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43
제 4 절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51
제 5 절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69
제 6 절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83
제 7 절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99
제 8 절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127
제 9 절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135
제10절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지침	157
제11절 문화재수리 현장관리지침	161
제12절 초가이영잇기사업 지침	177
제13절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181
제14절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187
제15절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195
제16절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203

제2장 |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221

제 1 절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	223
제 2 절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229



제 3 절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59
제 4 절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265
제 5 절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95
제 6 절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309
제 7 절 천연동굴 보존 관리 지침	343
제 8 절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 관리 지침	365
제 9 절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379
제10절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397
제11절 석조문화재 생물침해와 처리방안	481

제3장 | 문화재 안전·방재 분야

493

제 1 절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495
제 2 절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507
제 3 절 문화재 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515

제4장 | 문화재수리관련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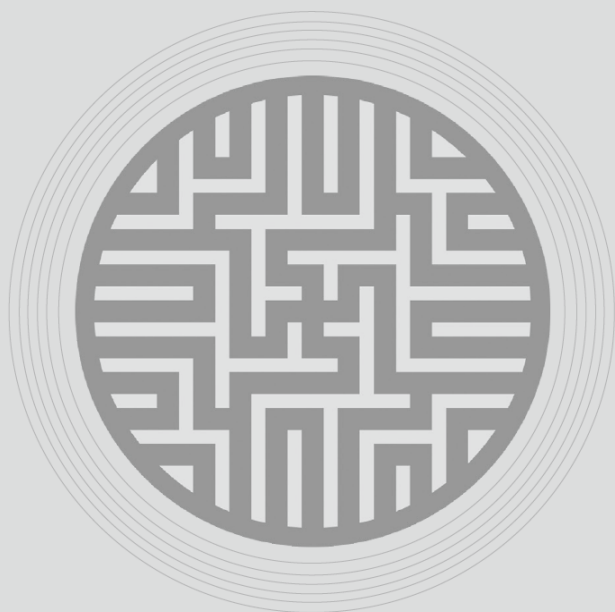
525

제 1 절 문화재수리업	527
제 2 절 문화재수리 범위	549
제 3 절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자격	571
제 4 절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등록 및 배치	583
제 5 절 문화재수리 감리	597
제 6 절 법령해석	609
제 7 절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619
제 8 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627



제 1 장

문화재수리 분야





제1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 문화재청 예규 제241호, 2022.1.1. 폐지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4865, 3177)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 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문화재의 수리에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문화재 수리의 기본방향) 문화재 수리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
2. 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외에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문화재는 있는 그곳에 그대로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
4. 문화재 수리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5. 문화재 수리는 최소한으로 하되 가역적이어야 한다.
6. 문화재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문화재를 구성하는 부재가 훼손된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 보강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신재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문화재에 간직된 증거나 흔적은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문화재 시대 적용 원칙) 문화재 수리는 현재의 문화재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수리 중 부가된 상태보다 그 이전의 상태가 역사적·고고학적·미학적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 5 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실측설계, 시공 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재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수리 필요성 검토

제 6 조(문화재 수리 필요성 검토) ① 문화재수리를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 물량
2. 추진 사유 및 판단 근거
3.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4.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의견
5. 기타 현황자료, 조사·진단결과서, 자문의견서, 점검결과서 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예산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2.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점검보고서
3. 간이 또는 정밀 안전진단보고서
4. 관련분야 전문가 조사 의견서 등

제 3 장 실측설계

제 7 조(실측전조사) ①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수리 필요성 검토에 따른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전에 고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증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증조사 : 문화재의 연혁·가치·특성 등에 관한 사료와 대상 문화재의 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수리 및 관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 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문화재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관계 등을 조사한다.

제 8 조(구조적 결함의 조사) ① 문화재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변위가 확인되면 문화재실측 설계업자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인 진단에는 현장 및 자료 조사와 계측기기에 의한 조사, 물리적 상태의 측정, 물리적인 정밀 검사 및 분석, 비파괴 시험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 9 조(부재의 조사 및 진단) ① 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문화재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부재의 상태를 조사·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안 조사와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부재의 훼손 현황 및 위험 요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는 현장에서 부재에 최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방법 및 절차는 [별표1]을 참조한다.

③ 시험장비를 통한 부재 열화진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제10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① 문화재 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근거로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지정문화재를 해체 보수하는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 또는 재현된 건축물, 현대적 시설물 등은 발주자 판단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방서의 작성) ① 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문화재 수리를 위한 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시방서는 당해 문화재의 시대별 특성, 지역별 특성, 수리기법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는 실측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료의 표기)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실측설계도서에는 수량산출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실측설계도서의 해석) 실측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이면 감독관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재청장(또는 시·도지사)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승인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의 사용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 고려

③ 문화재청장은 설계도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조사, 설계 검토, 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통지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장 문화재수리(시공)

제17조(현장조사)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 전에 다음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
2.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설계의 오류나 누락사항
3. 문화재의 보호 및 안전, 관람 등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를 원형대로 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문화재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부재의 해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문화재를 해체하려면 원형훼손 및 부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순서는 조립의 역순으로 한다.
2. 부재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 부재별로 번호표를 부착한다.
3.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선행하고 감독관 지시를 받아 해체토록 한다.
4. 해체과정에서 부재와 해체장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시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6. 문화재수리업자는 부재 실측 조사표를 바탕으로 해체 중 새롭게 조사된 부재 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제20조(해체부재의 보관) 문화재수리 중 해체된 부재를 보관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부재는 유형별, 위치별, 규격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상량문, 현판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부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잘 수습하여 별도 보관한다.
3. 해체부재는 보관과정에서 적재하중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4. 해체부재는 우수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한다.
5. 해체부재는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목재 등 습기에 약한 해체부재는 지면에서 일정정도 이격하여 보관한다.

제21조(해체부재의 분류 결정) ① 해체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여부는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실측설계 단계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재 실측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은 해체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건축, 구조공학, 재료과학, 보존과학 등 문화재 수리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련 전공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직원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기술지도 위원
- ④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① 해체부재 중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결과에 따라 재사용이 결정된 부재는 원상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손상된 부재는 보수·보강하여 사용한다.

② 보수·보강은 수지 접합 및 처리, 철물 및 탄소섬유 보강 등 이전 수리과정에서 검증된 재료와 방식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사례 등을 참고한다.

③ 해체부재 중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부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존 조치하여야 한다.

1.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
 2. 당해 문화재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
- ④ 해체부재 중 자체 활용 결정된 부재는 부재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문화재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거나,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폐기 결정된 부재는 근거를 갖추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과정에서 분리보존 결정된 부재를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 단체는 부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문화재 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부재의 교체 및 보강)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보강하지 않으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2. 소실된 부분의 재료의 교체는 전체와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보충되는 재료는 본래의 재료, 기법,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4. 보충되는 부재는 재료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존부재와 같거나 유사한 특성(함수율, 연륜연대, 수종, 산지, 강도 등)을 가진 부재를 선정토록 한다.
5. 보충되는 부재의 함수율 등 물리적인 특성은 문화재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새롭게 설치되는 주요 부재에는 나중에 식별하기 위하여 새겨 넣거나 볼도장, 묵서 등으로 표시한다.
7. 보충되는 석재는 절리,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제24조(신재 및 보강부재의 가공) 부재의 가공은 다음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질감에 맞게 부재를 가공하도록 한다.
2. 부재의 가공으로 인한 균열, 갈라짐이 없도록 보양하도록 한다.
3. 곡선부재, 조각물 등은 원척도를 만들어 정확히 가공하도록 한다.

제25조(부재의 설치) ① 지정문화재의 수리 중 부재의 설치는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부재의 결구방식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부재의 고색처리) ① 구재와 신재의 색조를 맞추는 고색처리를 하려면 신재를 대상으로 한다.

- ② 고색처리는 적절한 전통적인 방법이나 현대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 ③ 고색처리로 인하여 부재의 표면을 상하게 하거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제27조(과학기술의 활용) 문화재수리에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도 되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 5 장 기록화

제28조(보고서 작성) 지정문화재의 수리 시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수리 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서 작성범위) 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 연혁, 주변환경, 문화재수리의 이력, 문화재수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목서명, 수리전·후의 사진, 설계도면,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결과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제30조(보고서 작성지침)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사진과 도면 등의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보고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문화재 수리의 단계별로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 전·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존 작업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 문화재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5. 재사용 및 교체된 부재에 대한 각 부재별 최종 처리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한다.

제31조(보고서의 제출)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전자문서화한 파일과 수리 정보 등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자(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② 작성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제1항과 함께 문화재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32조(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존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 고시 제2016-8호)은 폐지한다.

[별표 1]

부재 진단 시행방법 및 절차

<p>조사 계획 수립 고려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주변 환경의 위험요소 및 구조적 결함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 부재 열화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정기점검 등 및 훼손현황 관련 자료의 검토 시험 장비를 활용한 비파괴 및 준파괴 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천공저항분석: 부재별 시험 위치 및 횡수, 사전 안전조치 등) 진단 평가를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p>조사 절차</p>	
<p>참고 사항</p>	<p>※ 조사 절차와 시험 결과 분석은 관련 조사·연구 자료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2019, 『국보, 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안전진단 추진 지침』, 12~40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석조문화재 수리기술 연구 석탑』, 244~319쪽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2022(상반기 발간 예정), 『목부재 비파괴 열화진단 안내서』

[별표 2]

해체부재 분류 기준(제21조 관련)

보존가치	해체부재 상태	해체부재 분류 기준(가치등급)			분류 세부 내용
		재사용 부재 (A)	원부재 (A1)	원상태 재사용	
(기본원칙)	재사용 가능	재사용 부재 (A)	원부재 (A1)	원상태 재사용	해체된 부재를 원상태 그대로 사용
			보수보강 부재(A2)	보수 보강 후 재사용	손상된 부재를 보수·보강 등을 통해 다시 사용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부재	교체 필요	분리 보존 부재 (B)	이관보존부재(B1)	보존 시설로 이관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
			자체보존부재(B2)	자체 시설에 보존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당해 문화재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
자체 활용 부재 (C)		타부재 활용부재 (C1)	다른 부재로 사용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문화재의 다른 부재로 사용	
		기타 활용부재 (C2)	적심·뒷채움 등에 사용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	
그 외 부재		폐기부재(D)	폐기 처분	부식 및 총해, 훼손, 노후가 심하여 최종 폐기	

※ 재사용, 자체 보존 또는 활용하는 목부재는 반드시 방충 및 방부 처리를 선행토록 함
 ※ 폐기처분 결정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장제 기와 및 파쇄된 석조각·석분에 한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처리 방식을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재 열화진단 결과보고서

1. 진단개요

문화재명 (지정)		수리 단계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설계 <input type="checkbox"/> 수리
담당자	소속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성명
점검(진단)기간		소요금액	
진단개요			

2. 진단내용

진단대상	
진단방법	
시험장비	

[별지 제3호 서식]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

공사명		지정별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 (개월)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실측 제○○호 ○○○	공사감독관 (연락처)		
시공사	○○ 건설(주) 보수 제○○호 ○○○	현장대리인 (연락처)		
종합 의견	재사용			
	교체			
	기타			
위원				
성명	현직	전문분야	서명	비고

※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수리 범위에 따른 부재별 상태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추진토록 함.

해체부재 보존관리 및 활용현황[보존 시설별]

보존시설명: (시설 면적: m², 부재 보유량:) , 소유자/관리단체:)

소재지:
설비현황:

(증빙 사진)	(증빙 사진)
(시설명)	(시설명)



제2절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절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 문화재청 고시 제2016-61호, 2011. 2. 1. 제정, 2016. 8. 16. 일부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487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 2 조(처리기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 3 조(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업종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개를 폐업 또는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별표 7의 각호의 같은 업종을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본다.

제 4 조(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

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②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5 조(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 6 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자본금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기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수리협회” 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발급기관은 제1항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발급요령”이라 한다)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④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처리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인·양도인의 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1. 상속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의 이전
 2. 합병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의 이전
 3.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11조 6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식 및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용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용자를 하는 경우, 문

화재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에서 용자금을 뺀 금액이 자본금 기준 금액의 2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무실의 범위

1.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3. 위의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등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요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 다. 그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의 사무실은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사무실은 다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②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기업진단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기업진단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11조(정의) 기업진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6.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등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희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제12조(진단자) 기업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제13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5.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제14조(기업진단 서류의 제출) ①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

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진단자는 별지 제3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6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17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
9.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登記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제18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자산의 평가 등) ①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② 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 ④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점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 ⑤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 ⑥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3. 문화재수리협회(공제조합)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 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문화재수리업등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 5.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점업자산으로 본다.
- ⑦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1. 재고자산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점업자산으로 본다.
- ⑧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 ⑨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 ⑩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평가한다.

①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0조(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하고 관련 시켜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가. 문화재수리업등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 나. 문화재수리업등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 다.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 자본금의 비율

제22조(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제23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22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제24조(처리기관) 법 제14조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는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제25조(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류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서류의 처리기관은 변경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구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전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위 2호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소 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4. 위 2호의 경우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2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6조(기존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처리) ① 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②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2항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는 규칙 제8조 및 본 지침 제25조의 의거 처리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수첩을 재발급한다.

제 5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

제27조(처리기관) 법 제14조제4항, 제17조,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제출한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서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제28조(처리방법) ①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시·도지사는 양수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업등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신고수리를 한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을 변경 기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양도, 합병 또는 상속 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이송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시 법 제17조 및 제20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2조에 의한 합병신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법 제17조 및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로서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금액실적을 합산할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양도 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가.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한다.

나.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가목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하다.

2. 문화재수리업등의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다.

제29조(폐업신고의 처리방법) ① 시·도지사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화재수리업체가 문화재수리업등록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업수리 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한다.

2.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1호”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3.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1호”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등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불가

-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폐업 가능

제 6 장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제3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 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 23호 서식)를 2부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현장배치확인표의 사본을 착공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현장배치확인표의 확인란에 담당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현장배치확인표 1부를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교부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착수와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항상 현장배치확인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2.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2)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자본금 (□담보, □예치, □출자) 확 인 서

①상 호		②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⑤주 소			
⑥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금 원 (또는 좌)		
⑦용 도	문화재수리업등록관청 제출용 (※ 용도외 사용불가)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담보, □예치, □출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상 호) (대 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기 업 진 단 신 청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도	3. 합 병	4.기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진단기준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검 업 내 용				
종 류	면허 또는 허가번호		면허 또는 등록(허가)기준 자본금	
신청자의 실질자본금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또는 회계법인(세무법인) 귀하				
첨부서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진단보고서

진단구분	1. 등 록	2. 양 수	3. 합 병	4. 기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 류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자 제 시					
자 본 금 액(a-b)		자산총액(a)		부채총액(b)	
진단결과 내역(진단기준일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단의견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산총계(I)		부채총계(II)			
부실자산(IV)		자 본 금			
실질자산(V) (I-IV)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VI)		이익잉여금·결손금			
실질자본(VII) (V-VI-II)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총계(III)			
겸업자본(VIII) (c-d)		겸업자산(c)			
		겸업부채(d)			
문화재수리업등의 실질자본금(VII-VIII)					
「문화재수리업등 관리지침」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단자) 공인회계사(세무사,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법인(세무법인, 지정진단기관): 인 담당공인회계사(담당세무사, 담당재무관리경영지도사)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한국세무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장) : 인 소재지(전화번호) :					
첨부 : 기업진단 내역서 1부					
시·도지사 귀하					

기업진단내역서					
업체명					(단위: 원)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겸업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겸 업 자 산)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겸업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겸 업 부 채)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겸 업 자 분)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내역					

※ 세부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유동성 배열순서에 의해 기재함



제3절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3절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 문화재청 예규 219호, 2011. 4. 1. 제정, 2020. 3. 16., 폐지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3176)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수리 기술지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의 정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황 사진첩, 그 밖에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3. “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 “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지도”란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 등 당해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문화재수리과정에서 당해 문화재의 고증·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지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어 문화재청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6. “기술지도단”이란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부합되는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문화재수리의 설계용역 또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 3 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부 수리
2. 사적지 내의 유적 정비
3. 기타 주요 관심사업

②제1항의 기술지도사업은 당해 사업의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발주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분류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 외에 특별히 기술지도가 필요하거나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새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 주관기관을 명시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 외에 발주청이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기술지도단의 구성) ① 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기술지도단은 설계승인단계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명단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술지도 요청을 하거나 문화재청장이 그 중요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기술지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지도단은 당해 기술지도위원 외에 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지도단은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분야와 관련된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기타 건축·성곽·고고학·보존과학 등의 분야에서 문화재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문화재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① 문화재청장이 주관하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발주청은 문화재수리 착수단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③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지도 실시 전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단의 의견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발주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① 발주청은 당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착수단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발주청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문화재청장은 당해 기술지도에 관여할 수 있다.
-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단의 의견과 조치계획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지도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 7 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① 발주청은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기술지도 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수리 완료단계에서 관련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행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기술지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 8 조(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① 기술지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위원은 당해 문화재의 특성·연혁·수리경력 등 관련 문헌, 설계도서,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기술지도위원은 임의로 관계법령이나 문화재수리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증감시키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문화재수리 또는 관련 용역사업(“설계용역”을 제외한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2. 당해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 조(해촉)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19호, 2020. 3. 16.>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훈령의 폐지)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2호)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

[기술지도 주관 : 문화재청(○○시·군)]

작성일 : 20○○. ○. ○ ()

공 사 명		지 정 별	
도 급 액	천원	공 사 기 간	~ (개월)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실측 제○○호 ○○○	공사감독관 (연 락 처)	
시 공 자 (현장대리인)	○○ 건설(주) 보수 제○○호 ○○○	기술지도 담 당 자	
사 업 지 침		공 사 내 용	
기 술 지 도 계 획	<자문회의 일정> ※ 기술지도 주요 착안사항		
기 술 지 도 위 원			
성 명	현 직	전문분야	연 락 처



제4절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4절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 문화재청 고시 제2018-24호, 2011. 8. 22. 제정, 2018. 3. 2. 일부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4868)

제 4 절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1. 문화재수리명 :
2. 문화재수리장소 :
3.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4. 완료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W) } (노무비: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W)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W)
6. 대금지급방법
 - 선 급 금 : 계약체결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W))
 - 기성부분금 : ()월 1회
 - 잔 금 : 문화재수리 완료 후 (일) 이내 지급
7.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W))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9.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W))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완료일로부터 (년)
11.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12.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13.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4.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서류 : 1.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년 월 일

(발주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를 도급받는 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문화재수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서, 문화재수리 도급계약 일반조건, 문화재수리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제3항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방법
 - ②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 ④ 수급인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조(연대보증인의 자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4. 원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문화재수리 감독원) ① 발주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문화재수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문화재수리의 재료와 문화재수리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문화재수리의 기성부분 검사, 완료검사 또는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문화재수리 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문화재수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문화재수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 기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착수신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지정서
 2.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
 3. 문화재수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리기간) ① 문화재수리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완료일은 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완성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완료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선금)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부분의 대가}}{\text{계약금액}}$$

⑤ 발주자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등) ① 문화재수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문화재수리나 완료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화재수리는 발주자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 ⑥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에 따른 문화재수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문화재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문화재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은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

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문화재수리의 시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수리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문화재수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수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문화재수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부적합한 문화재수리)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문화재수리가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문화재수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문화재수리의 단가는 제9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③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2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남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남은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문화재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 ③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발주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인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5조(완료검사) ① 수급인은 문화재수리를 완성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개조하여 다시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인이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문화재수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6조(대금지급) ① 수급인은 발주자의 완료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문화재수리 현장을 정리하고 문화재수리 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의 처리 등)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완료기한 내에 문화재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완료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문화재수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문화재수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문화재수리가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문화재수리가 지체된 경우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4조에 따라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6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문화재수리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하자담보) ① 수급인은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 2이상 100분의 1이하를 완료검사 후 그 문화재수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발주자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완료검사를 끝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해당 문화재수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급인이 발주자로 부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④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문화재수리에 있어서는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제30조(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등) ①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30조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발주자의 계약해제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문화재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 하여도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문화재수리용 시설·장비 등을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따른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문화재수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수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계약해제시의 처리) 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문화재수리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②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문화재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재수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수리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양도) ① 수급인은 이 문화재수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문화재수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①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 문화재수리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1-125호, 2011. 8. 22.>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4-24호, 2014. 3. 2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5-31호, 2015. 3. 1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8-24호, 2018. 3. 2.>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절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5절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 문화재청 고시 제2018-25호, 2012. 12. 24. 제정, 2018. 3. 2. 일부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4868)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1. 문화재 명칭 :
2. 문화재 위치 :
3. 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 설 계 내 용 :
 - 설 계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5. 대금의 지급
 - 가. 선금금 :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금 : (1) ()월 1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 혹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6.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7. 지체상금융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9.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특약 시) 끝.

발주자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 전화 / Fax :	수급인 상호/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Fax :
--	---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가「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재수리 설계”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서류를 말한다.
4.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 3 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문화재수리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서,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 5 조(문화재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① 설 계 내 용 :

② 설 계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 6 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범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납품도서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설계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수급인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제 9 조(선금금)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선금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② 제1항에 따른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부분의 대가}}{\text{계약금액}}$$

⑤ 발주자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기성금) ① 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② 기성부분 문화재수리 설계용역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 ③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착수신고서
- 2. 문화재수리 설계 예정공정표
- 3.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참여기술자 명부, 보안각서
- 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용역기간) ① 문화재수리 설계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설계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조사 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완료일은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자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수급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2.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3.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4.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5.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6.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7.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8.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
9. 발주자의 요구사항(단,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에 한한다)
10.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발주자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수급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발주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재료의 선정 등)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화재수리 설계 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 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① 발주자가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인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문화재수리 설계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2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 ② 수급인이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한다.
-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발주자의 설계도서 검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0조(발주자의 계약해제·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수급인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문화재수리 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문화재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문화재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수급인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수급인의 계약해제·해지)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수급인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문화재수리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수급인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발주자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발주자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수급인의 면책사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문화재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문화재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재수리 설계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설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환불은 제22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26조(비밀보장) 발주자와 수급인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 및 자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제외한 문화재수리 설계 시에는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제29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수급인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2-141호, 2012. 12. 2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4-23호, 2014. 3. 2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5-32호, 2015. 3. 1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8-25호, 2018. 3. 2.〉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 설계업무의 범위

업무의 구분(표준: ○, 발주자의 추가시: △)

주요 업무		세부 업무		계약의 범위
문화재수리 설계업무(표준업무)	고증 및 현황조사업무	고증조사		○
		현황조사		○
	실측업무	실측	기본실측	○
			상세실측	○
	설계도서 작성업무	현황도면	기본도면	○
			상세도면	○
		계획도면	기본도면	○
			상세도면	○
			기타도면	○
		설계설명서		○
		공사시방서		○
		내역서		○
		수량산출서		○
	현황사진첩		○	
그 밖의 업무		업무 협의 및 공정보고 등		○
추가 업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업무)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	
	손도면 작성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8조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그밖에 발주처의 별도 요구		△	

※ 본 표는 문화재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 업무를 수록하여 특정 문화재수리 설계 시 업무범위 결정의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로서,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다.

1. 문화재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의 대가는 별도계약으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수급인의 책임구분은 표준업무 범위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추가 범위도 업무적인 책임을 진다.
3.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를 참조한다.
4. 실측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3]을 참조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업무의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1]을 참조한다.



제6절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6절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 문화재청 예규 제232호, 2021. 7. 1. 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4865)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위원회(법 제4조의2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운영하는 위원장(영 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영 제3조의8에 따른 합동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 3 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영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는 수리기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리기술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 4 조(회의자료의 배부)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각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5 조(부의안건 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를 1회에 한한다.

제 6 조(안건 구분) 간사는 회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한다.

1. 심의사항 : 법 제4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보고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결정 사항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 7 조(의결방식) ① 영 제3조의6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 8 조(제척신청 등의 처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영 제3조의4제1항의 제척 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 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장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이를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 9 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안가결 : 심의 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2. 조건부가결 : 심의 내용 가운데 일부 결함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3. 부결 : 심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어 시행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이 경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으나,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전을 보완한 후 재심의
 -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가결 시 수정·보완하는 세부조건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 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서기는 원안가결이 아닌 조건부가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⑥ 제6조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 내용대로 접수하였음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 내용란에 기재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영 제3조의13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신청인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운영) ① 영 제3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안건은 조건부 가결로써 처리한다.

- ② 영 제3조의9제1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위임 범위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조건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특정안건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항은 제6조제2호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사후 보고한다.

제12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재수리기술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3조(직무윤리) 위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간사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7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2호, 2021. 7. 1.〉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예규의 폐지)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자료 작성양식

0000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차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 장 소 : ○○○○○○○○○○○○○○○○○
- ▣ 심의내용 : 이하 자료와 같음

210mm×297mm[백상지(1종) 70g/m²]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6		
7		
8		
9		
10		
【보고사항】		
11		
12		
13		
14		
15		

210mm×297mm[백상지(1종) 70g/m²]

안전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전 제목)

가. 제안사항

○

나. 제안사유

- (안전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 소재지 :
 - 지정일 :
 -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 (3) 신청내용
 -
 -
- (4) 신청인 의견
 -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마. 기타사항

○

210mm×297mm[백상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mm×297mm[백상지(1종) 70g/m²]

[별지 제3호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분과 제○차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위원 ○○○ (서명)
안 건 명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심의사항》							
1.	(○)	(○)	(○)	(○)	(○)		
2.							
《보고사항》							
3.						(○)	

※ 분과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1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분과 제○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년 ○월 ○일	

(안전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명) / 원안가결(명), 조건부가결(명), 부결(명), 보류(명), 기권(명), 접수(명) / 제척(명)
공개 여부	공 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제1호 <input type="checkbox"/> 제2호 <input type="checkbox"/> 제3호 (사유 :)
	※ 근거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mm×297mm[백상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0000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차 ○○○○○분과위원회 회의록

제 6 절

-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 장 소 : ○○○○○○○○○○○○○○○○
- ▣ 출석위원 : ○○○(위원장 대행), ○○○,
.....
.....
..... (이상 ○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6		
7		
8		
9		
10		
【보고사항】		
11		
12		
13		
14		
15		

210mm×297mm[백상지(1종) 70g/m²]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

나. 제안사유

-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 소재지 :
 - 지정일 :
 -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 (3) 신청내용
 -
 -
- (4) 신청인 의견
 -

마. 의결사항

-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 소수의견 등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0000.00.00.~0000.00.00.) 동안 스스로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210mm×297mm[백상지(1종) 70g/m²]



제7절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7절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6호, 2012. 12. 24. 제정, 2016. 12. 01. 일부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3172)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 신고를 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문화재수리 즉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 범위) ① 이 기준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발주처의 위탁을 받아 문화재수리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단, 동산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문화재수리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 변경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은 각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작성과 수급인이 수행하는 성과품 작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발주처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설계의 구분) 문화재수리 설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설계
2. 정비설계
3. 복원설계

제 4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재수리 설계”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실측설계사보 등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

-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도서를 말한다.
4. “문화재수리 설계업무”는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 ‘설계도서 작성’, ‘그 밖의 업무’의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이는 현대건축에서 구분하는 계획·중간·실시설계 세 단계의 ‘건축설계업무’를 통합한 업무량을 말한다.).
 5. “보수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6. “정비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 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7. “복원설계”란 해당 문화재를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8. “고증조사”란 문화재의 시대·가치·특성 등을 사료와 대상 건물의 건축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9. “현황조사”란 문화재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기본실측”이란 문화재수리의 기본도면 작성을 위하여 해당 문화재 구역을 비롯하여 대상 문화재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11. “상세실측”이란 해당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작성을 위하여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의 치수, 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실측업무를 말한다.

제 5 조(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① 설계도서는 「문화재 수리규범」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한다.

문화재 수리규범

1.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4.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1 문화재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4.2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다.
7. 문화재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를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8.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한다.
9.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 ② 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 사진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작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 ③ 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각 작성항목은 [별표2]와 [별표3]에 따른다.
- ④ 문화재수리의 실측은 기본실측을 토대로 하며, 수리 범위 및 주요 부재 가운데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상세실측을 한다.
- ⑤ 설계도서 작성 시 문화재유형별 유의사항과 관련지침은 [별표4]에 따른다.
- ⑥ 설계도서는 공사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간결하게 구성하되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한다.
- ⑦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⑧ 설계도서는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설계도서에 관람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 ⑩ 수리공사 시 발생한 ‘재사용 불가능 부재’ 가운데 문화재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주요 부재의 선정과 이전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부재선정, 운반 등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⑪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 및 발간,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기술한다.
- ⑫ 목조건물의 해체·지붕보수(경미한 기와 고르기 제외), 기타 특수한 경우의 문화재 보수 시 가설 비계 또는 수리용 덧집을 설치하고, 그 규모는 공사규모, 내용, 중량물 취급정도에 따라 담당원과 상의 하에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가. 풍압 및 설 하중 등의 안전성, 작업의 편리성, 문화재 손상방지
 - 나. 해체 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분진망, 보호망 설치(도심에서는 집진설비 설치 고려)
- ⑬ 가설건물은 각 공종에 맞추어 설치토록 하고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가. 가설사무소 : 식별용이, 출입 시 항상 거쳐갈 수 있는 위치 설치
 - 나. 자재적치장 : 반출입 용이, 우수 및 습기로부터 보호, 통풍 원활
 - 다. 작업장 : 필요시 지붕 설치,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 설치
- ⑭ 공사용 가설건물의 위치, 작업진입 동선, 관람객 유도 동선 등은 필요 시 별도의 도면을 작성한다.
- ⑮ 전기,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⑯ 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시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침」의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 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 ⑰ 화장실 설치 시 변기의 수량은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준에 준하여 설계한다.
- ⑱ 문화재안내판 설치 시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의 기준에 맞춰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⑲ 문화재보수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라 공사안내판에는 참여자(기능자 포함)를 기재한다.

제 6 조(설계설명서 작성) ①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연혁, 현황, 고증, 설계변경 조건 등의 내용을 명기하도록 한다.

- ② 공사 개요에는 공سام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등의 공사 기본사항과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공사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③ 연혁에는 해당 문화재 창건 및 중건년도, 관련 인물, 전설 등의 관련 사항과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을 기술한다.
- ④ 환경, 지형, 면적, 배수관계, 건물배치 현황 등의 주변 현황과 보수대상 문화재의 구조, 보존상태, 수리 부위 및 원인 등의 보수대상 현황을 기술한다.
- ⑤ 보수 및 복원설계 시 원형고증과 관련한 고증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 ⑥ 설계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제 7 조(공사시방서 작성) ① 공사시방서는 문화재청 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칙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상황,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특기시방서는 「현판 제작 특기시방서 작성 지침」과 같이 해당 문화재수리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사안에 작성토록 한다.

- ②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 ③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와 해당 문화재에 적용된 기법·기술 등의 수리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 ④ 문화재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 항목은 [별표 5]와 같다.
- ⑤ 공사시방서의 총칙에는 공사일반, 계획 및 관리(공사협의, 제출물, 공무행정서류), 재료관리, 품질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시설물(가설공급시설물, 임시가설시설물), 준공 등의 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 ⑥ 공사시방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가. 해당 문화재수리 공정에 필요한 기법과 기술 등 시공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공종에 연계된 공종과의 관계,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다.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정도, 과정, 규모 배치 등의 보완 사항
- 라. 해당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필요 시 견본이나 견본시공에 관한 사항 포함)
- 마. 육안으로 파악하지 못한 가려진 부분에 대한 시공 시 유의사항(구조,이음,맞춤 등)
- 바. 부재 현황표(부재명, 재료, 규격, 가공기법, 총 수량, 교체수량 등)
- 사. 각종 소요자재 등의 운반, 채집 장소

제 8 조(예정공정표 작성) ① 예정공정표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공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기와 사업진도율을 제시한다.

제 9 조(내역서 작성) ① 원가계산서, 총괄 설계내역, 공종별 설계내역, 내역서(예산서), 일위대가, 부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 ② 품명과 규격 등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간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③ 품이 할증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 ④ 원가계산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 ⑤ 공종집계표에는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금액을 명기하며, 집계표와 내역서 상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동일하도록 작성한다.
- ⑥ 내역서(예산서)는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⑦ 일위대가에는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2개소 이상 명시(예:가격정보 ○○쪽, 견적서 등)하며, 복합단가로 구성된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1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 ⑧ 부표에는 자재구입 지역을 현실적으로 조사하여 적용하며,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한다.
- ⑨ 견적서에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나 시중조사에서 알 수 없는 품목의 가격은 2개 이상의 전문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수량산출서 작성) ① 수량산출서는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한다.

- ② 수량의 계산, 재료의 할증, 단위수량 등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③ 『문화재수리표준품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등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 ④ 공사내용에 따른 산출은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산출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
- ⑤ 교체부재의 위치, 규격, 개소, 수량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11조(설계도면 구성) ① 설계도면은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으로 작성한다.

- ② 기본도면은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가설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천장 평면도(양시도), 가구구조평면도, 지붕평면도(와복도)로 구성된다. 단, 문화재 유형에 따라 도면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상세도면은 부분도와 상세도로 구분한다. 부분도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세부 내용을 표현토록 하고, 상세도면은 [별표1]에 따른다.
- ④ 설계도면은 현황도면과 계획도면(보수·정비·복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면 배열 시 현황도면과 계획도면을 앞뒤로 배열하여 설계도면의 가독성을 높인다.
- ⑤ 설계도면의 분류체계에 의한 목록은 사업명, 도면명, 도면번호, 도면파일명에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 ⑥ 필요 시 주변현황, 보수범위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배치도, 부분평면도, 부분입면도, 부분단면도를 작성한다.
- ⑦ 여러 공정이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지 말고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도하도록 한다.
- ⑧ 교체부재 표시, 수리 범위 표시는 해칭, 점선, 박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도면 파악이 용이하도록 공종별, 부위별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범례를 활용한다.
- ⑨ 주요 부재(기둥, 대들보 등) 가운데 자연재를 사용한 경우 자연곡을 조사하여 상세도를 작성한다(서까래 제외).

제12조(설계도면 내용) 설계도면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을 용이하게 한다.

1. 도면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 시 영조척(營造尺)의 용척 및 척수를 병기
2. 각종 부재의 명칭 기입
3. 각종 부재의 품명, 규격, 형태, 표시
4.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수량과 범위 표시
5. 해당 공사에 적용될 특기사항 등 설계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Note) 병기

6. 부호, 방향, 축척(Scale), 찾음표(Key Plan) 등
7. 지면고(G.L), 현황고, 계획고, 기울기 등 표시
8.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 별도 표시
9. 기타 요구사항 명기

제13조(설계도면 표기방법) 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가려진 부분 또는 추정 부분은 파선(또는 점선)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글꼴(Font)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기본글꼴(굴림, 돋움, 바탕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보수 및 교체 부위는 계획도면에 색상 또는 해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표기하되 하나의 설계도서 안에서는 유형별로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작도한다.

④ 단면도 작성 시 단절된 부분의 구조만 그리지 말고 배경이 되는 입면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⑤ 도면층(Layer) 및 도면 표제란 구성기준은 각각 [별표6], [별표7]과 같다.

⑥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표준지침, (사)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을 따르며 자체제작기준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KSA 0005 제도 통칙, KSF 1501 건축제도 통칙,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KSE 0001 기계제도 통칙,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

제14조(설계도면의 제출) ① 설계도면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 시 출력본과 저장물, 저장방식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현황사진첩 작성) ① 사진은 대상 문화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② 외부사진은 일조상태를 고려하여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촬영하고, 내부사진은 가능한 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사판 및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③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원경, 전경, 근경 사진과 함께 수리 부위별로 상세 사진을 촬영한다.

④ 원경 및 전경 사진의 경우 필요 시 연결사진(Panorama)을 촬영하며, 상세 사진은 보수 범위를 비롯하여 공포, 가구구조 등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촬영한다.

⑤ 사진의 각도와 시각은 설계도면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하여 촬영한다.

⑥ 사진 크기는 “4×6”를 기본으로 하되,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 ⑦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시 1,000만 화소 이상, DSLR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 ⑧ 사진첩의 개별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을 별도로 작성한다.
- ⑨ 이동식 저장장치에 데이터 수록 시 디렉토리생성규칙, 파일명명규칙 등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제16조(설계도서의 제출) 설계도서 제출 시 [별표1]에서 정하는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17조(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을 통해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시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6. 감리자의 지시사항

제18조(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 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고증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2-140, 2012. 12. 24.>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6, 2016.12. 1.>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계도서 작성항목

구분	작성 도서	작성 내용	축척
일반 사항	표지	· 공사명칭,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 명칭, 발주처 명칭	
	목차	· 일반사항,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설 계 설명서	개요	·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연혁	· 창건, 중건년도,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 보수정비 이력(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현황	· 주변현황 : 문화재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 내 건물배치 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 공사와 관계있는 지형, 등고, 토질, 수목생태 등 · 보수대상현황 : 보수대상물의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훼손부위, 퇴락원인, 변형부분 등	
	고증	· 보수, 복원 시 원형고증 관련 내용	
	설계변경 조건	· 설계변경 사유	
공사시방서		·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 공사대상의 특징 및 특이사항(※ [별표4]에 별도 기준 제시)	
특기시방서		·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기 사항	
예정공정표		· 공사 일정, 작업량 등의 시공 계획	
내역서	원가계산서		
	총괄 및 공종별 설계내역		
	내역서 (예산서)		
	일위대가		
	자재표		
	견적서	· 공급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합계, 견적일자	
수량산출서		· 각 공종별 품명, 규격, 단위수량, 합계	

구분	작성 도서	작성 내용	축척	
설 계 도 면	현 황	설계도면 표지	·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발주처	-
		도면목록표	·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 축척	-
		설계개요	· 설계 및 공사개요, 대상 문화재 위치·면적·구조, 공사내용 및 수량 등, 공사시 유의 및 참고사항, 반영사항	-
		배치도	· 문화재구역 전체 배치도 작성(필요시 보수대상 문화재 부분배치도 작성) ·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1/200 ~ 1/500
		대지단면도 (종·횡단면)	· 건물 및 시설물 위치, 고저	1/200 ~ 1/500
		평면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1/20 ~ 1/100
		입면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울기와 변위 표시 · ㄱ·L·ㄴ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1/20 ~ 1/100
		단면도 (종·횡단)	· 주단면도(종·횡단 2면 이상), 구조가 다른 부분 전부 작성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둥·벽체의 기울기와 처마 처짐 표시	1/20 ~ 1/100
		천장평면도 (양시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1/20 ~ 1/100
		가구구조평면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상부구조에 반자가 있는 경우 천장을 다른 천장평면도와 가구구조를 보여주는 가구구조평면도로 구분하여 작성)	1/20 ~ 1/100
	지붕평면도 (와복도)	· 훼손 및 변형 상태,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등	1/20 ~ 1/100	
	상 세 도 면	부분도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1/10 ~ 1/30
		상세도	· 현황 부재 상세도 · 상세도 목록 : 지정 및 기초, 기단 입면·퇴물림·소맷돌 문양, 구들·고래·아궁이, 기둥 모접기·쌍사·배흘림, 머름, 난간, 보 단면, 초각 상세도(공포, 보머리, 화반, 대공, 추녀머리, 계눈각 등), 창호, 안허리곡·양곡, 마루곡, 합각벽, 장식기와 문양, 철물, 결구 등	1/5 ~ 1/20

구분		작성 도서	작성 내용	축척
계	기본도면	배치도	·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 가설울타리·사무소·작업장·창고 등 가설위치, 자재 적치장소, 소화시설 비치장소 표기 · 작업진입로(차량, 인부), 관람객 유도 동선	1/200 ~ 1/500
			· 건물 및 시설물 위치, 현황 고저 · 지반 정비 시 변경 대지의 고저	1/200 ~ 1/500
설계도면	기본도면	대지단면도 (종·횡단)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 1/100
		평면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 7·L·□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1/20 ~ 1/100
		입면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 1/100
		단면도 (종·횡단)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구들·굴뚝 단면,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 1/100
		천장평면도 (양시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 1/100
		가구구조평면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 1/100
		지붕평면도 (와복도)	·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교체수량 등 (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 1/100
	상세도면	가설도	· 가설덧집, 가설비계,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 가설 창고, 가설작업장, 공사안내판, 안전수칙판	1/100 ~ 1/200
		부분도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1/10 ~ 1/30
		상세도	· 계획 부재 및 시공 상세도	1/5 ~ 1/20
기타도면	기계설비도면	· 급배수, 도시가스, 소화설비 등 관련 도면	-	
	전기 및 통신도면	· 인입배치도, 계통도, 조명·방법·통신 등 설비도, 피뢰침 상세도 등 관련 도면	-	
	토목도면	· 포장, 보도블럭 및 측구, 우·오수 등 관련 도면	-	
현황사진첩		· 대상 문화재 및 주변의 원경, 전경, 근경, 상세사진		

※ 본 표 중 설계도면은 문화재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인 항목(목조건축물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재 및 수리공사의 유형에 따라 도면의 종류 및 축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고증조사 및 현황조사 업무 항목

항목		조사 내용
고 증 조 사	연혁조사	창건연혁 검토 및 분석
		보수연혁 검토 및 분석
	면담조사	거주자 및 관련자 면담, 건물 이력 확인
	재료 및 시공기법 조사	재료의 생산과 시공기법 조사
재료생산 현황조사	현 재료의 생산여부, 유사 재료 생산여부, 단종 재료 생산 가능 여부 검토	
현 황 조 사	현지답사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토지이용 현황 등 조사, 사진촬영, 현지답사 보고서 작성
	공사여건 조사	도로 및 차량진입 관계 조사, 특수재료의 공급처 및 단가 조사, 폐기물 처리방법 및 비용조사
	보수범위 조사	보수 대상 문화재의 현황조사(보수 정도 및 범위 재료 등), 문화재 훼손 원인 진단(육안조사, 촉진조사 등)
	구조물 조사	대상 지역 부근(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조사
	법규 검토	제반법규(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지장물 조사	지상 시설물의 저촉여부 조사,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 상 저촉구간 위치 확인,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 조사, 지장 수목 조사
	상수도 및 하수도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배수시설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전기, 통신설비, 토목, 조경 등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별표 3] 실측 업무 항목

		항목	조사 내용
실 측	기본 실 측	배치실측	방위, 주변 건축물조사,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지장물), 배수
		평면실측	주칸(기둥위치), 방(옹도 및 마감), 마루(귀틀 평균 폭 및 두께, 청판 개수 및 두께), 주변현황(인접 구조물 관계)
		기단부실측	기단(내밀기, 마감), 계단(위치, 폭, 높이)
		축부실측	벽 구성(인방, 주선, 문선의 위치), 창호(크기, 울거미, 창살, 창살문양, 철물), 난간, 초석, 기둥(초석 위, 기둥 중간 또는 1/3 지점, 기둥 상부), 수장
		지붕부실측	가구구조, 양곡, 안허리곡, 추녀 규격 및 치수, 내밀기, 연목수, 기와 골수, 기와크기,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머거불, 잡상 등
	목 조 건 축 물 상 세 실 측	기단실측	퇴물림, 모접기, 소맷돌 문양, 가공정도
		초석실측	기울기(가공초석), 모접기, 조각, 가공정도, 덩벙초석은 개별 실측 (가공은 평균치)
		기둥실측	기둥 기울기, 안쓸림, 귀솟음, 흘림, 모접기·쌍사, 결구
		창방실측	규격, 변위(양단, 중앙부), 결구, 창방뿔목
		평방실측	규격, 변위(양단, 중앙부), 결구
		공포실측	출목 간격, 공포의 변위, 결구, 포벽 기울기
		주두, 소로실측	규격(운두와 굽)
		제공실측	규격, 초각, 결구
		첨차실측	규격, 초각, 결구
		도리, 장여실측	규격, 결구, 도리뿔목
		보실측	규격, 보 단면, 보머리 초각, 결구
		대공실측	규격, 결구, 초각
		추녀, 사례실측	규격, 추녀곡, 뒷뿌리 결구, 초각, 추녀정, 띠철
		연목, 부연실측	규격, 말구 후림, 연정
		박공실측	박공 육음, 박공 하단의 초새김 및 초각문양, 결구
		마루실측	귀틀 및 청판 규격, 결구
		적심실측	적심 유형 분포, 구부재 크기·모양, 누리개
		창호실측	창호 울거미, 살, 문인방·문선 결구
		지붕실측	합각벽, 막새, 망와, 귀면, 용두 등 장식기와 문양, 지붕곡, 처마곡
		기타실측	현판, 난간, 철물(방환, 지내철, 장식철물), 기와, 도배 등
		기타	탁본

항목		조사 내용	
석조물 (탑)	기본 실측	배치실측	방위, 석조물조사,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지장물), 배수
		평면실측	탑구, 지대석, 기단, 적심부 등
		단면실측	주요구조재(지대석, 상하층기단, 옥개석 등)의 높이값
		입면실측	입면구성(면석, 우주석, 탕주석의 위치), 앙곡 등
		천장평면실측	옥개석, 옥개받침석
		지붕평면실측	옥개석
석물 등 ()	상세 실측	상륜부실측	노반, 복발, 찰주, 양화, 보륜, 보개, 수연, 보주의 규격 및 치수
		문양실측	문비, 부조, 안상, 연화 등 문양이 있는 부재
		기법실측	옥개석 지붕면곡, 앙곡, 안허리곡 등, 기둥 흘림, 모접기, 석재 가공
		기타	철물, 적심부 단면조사, 도구 흔적조사, 기초부 조사, 탁본
실	기본 실측	배치실측	방위,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지장물), 배수
		평면실측	지형, 고저차, 배수, 관람로 등
		단면실측	주요구조재(지대석, 상하층 기단, 옥개석 등)의 높이값, 기울기값
		입면실측	지대석, 면석, 여장 등
	상세 실측	주요부분 상세	기초부, 성돌, 여장 등
		기법상세	성벽 기울기, 단면유형, 성석쌓기, 가공, 여장의 입면구성, 재료, 종안 기울기
기타	탁본, 면석 및 뒤채움 결구, 뒤채움 유형, 기초 및 지대석		
축	유구 정비	배치실측	방위, 유구조사,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 배수
		평면실측	지형, 고저차, 배수, 관람로 등
		단면실측	주요유구(기단, 계단, 초석, 축대 등)의 높이값
		입면실측	기단, 계단, 초석, 축대 등 규격 및 치수
	상세 실측	주요부분 상세	기단, 계단, 초석, 축대, 문양 등
		기법상세	축대쌓기
기타	탁본		
근대 건축물	기본 실측	배치실측	방위, 주변 건축물조사,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지장물), 배수
		평면실측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방(용도 및 마감), 복도, 계단, 주변현황(인접 구조물 관계)
		단면실측	중심선 치수, 안목 치수, 창호 및 개구부 위치, 층고 및 천장고
		입면실측	창호 및 개구부의 위치, 외부마감재료, 외부시설물(사다리, 난간, 흠통 등), 굴뚝 및 옥상 돌출부 등
		지붕실측	지붕틀(트러스), 마루틀, 용마루, 처마끝, 박공널, 지붕골, 고정철물, 지붕물매, 처마길이 등

항목		조사 내용
상 세 실 측	벽체실측	조적조쌓기, 벽체 마감(흙손, 물씻어내기, 뽕질 등), 고정철물, 몰딩 형상 및 규격
	지붕실측	평잇기, 기와가락잇기 표준규격, 고정철물, 마감부 규격
	계단실측	계단 폭·높이, 난간
	창호실측	규격, 결구, 벽체고정 방식, 창호 추함
	구조실측	트러스(결구, 고정철물, 가공)
	기타실측	실내의장(도배, 도장, 바닥재, 바닥 문양 등), 전기(전등, 스위치 등), 난방(벽난로, 굴뚝 등)

[별표 4] 문화재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공통 사항	문화재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해당 문화재수리 범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목조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조건축물은 지역·시대·유형에 따라 양식과 기법이 각각 다르므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2. 배치도는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보수 대상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수목 등을 도시한다. 3. 단면도는 종·횡단면도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ㄱ·ㄴ·ㄷ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종·횡 2부분 이상(구조가 다를 경우 전부) 작성한다. 4. 지붕공사 시 지붕마루곡, 마감(각 마루접합부, 마구리, 용마루, 양성, 망와, 막새) 등 상세도를 작성한다. 5. 단청공사 시 부재별로 단청 유형과 채색범위, 물량을 파악하여 반영한다. 6. 문화재 보수·정비용 목재는 재질시험 및 훈증소독 처리된 목재를 사용토록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7. 기와는 규격, 종류, 막새·망와 문양 등을 조사하여 보충기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통한식기와·전돌 제작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탑·석조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조물의 비파괴진단, 물성조사 및 표면 열화상태 조사, 풍화·손상조사, 지반환경조사, 변위조사 등을 통해 수리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2. 대상 석조물의 구조형식, 각 부재의 결합방식, 특이점, 균열·파손 등 결함사항을 조사하여 도면에 표현한다. 3. 배치도는 보수 대상 및 주변 일곽의 시설물, 수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4. 상륜부, 문양(문비, 팔부신중 등), 기법(옥개석 지붕면곡, 양곡, 기둥 흘림 등),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5. 석조물의 보존처리(세척)는 기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기존 부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설계도서에 표현한다. 6. 공사 시행 시 보존처리 범위와 재료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석조물 (고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치도에는 지정구역, 보호구역, 등고선, 기 정비된 고분, 보수정비 예정고분 등을 표시하고, 평면도에는 등고선, 잔디식재 범위를 표시한다. 2. 단면도에는 지형변화에 대한 토적을 표시하고, 봉분의 토적은 등고선(20~50cm)으로 표현한다. 3. 봉분의 높이는 토층단면 및 기저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획하고 유구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과도하게 높여서 설계하지 않는다. 4. 봉분 위에 있는 나무는 밑둥치에서 자르고 뿌리는 약제로 고사시키는 등 뿌리 제거 처리 방안을 명시한다. 5. 봉분 주변수목 제거 시 수종, 수형이 좋고 고분에 지장이 없는 나무는 경관수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급경사지, 성토가 있는 지역의 수목제거 시 큰 나무는 성토높이 부근에서 자르고 뿌리는 약제로 고사시키는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성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리 대상 성곽의 축조형태 등을 조사하고, 원래의 성벽 형태와 같이 표본도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배치도에는 전체 성곽의 범위와 등고선, 방위표시를 하고, 현황 및 계획 평면도는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3. 입면도는 현황 및 해체·축성범위 등 보수대상 전 구간에 걸쳐 작성한다. 4. 단면도는 현황 및 해체·축성범위 등 보수구간의 주요 축점에 걸쳐 작성하며, 입면도와 다르지 않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5. 성곽의 지대석 및 면석의 들어쌓기, 여장과 성벽상부 마감 등은 상세설계도를 작성한다. 6. 여장 1타의 길이는 지형에 따라 다양하므로 조사를 통하여 지형에 맞도록 조정하고 도면에 명기한다. 7. 성곽의 수문, 문지, 봉수대 등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작성 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성곽보수 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8. 최대한 잔존 성돌을 활용하되 부족한 성돌은 동일 재질의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집허가, 구입 등 자재수급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9. 자재의 운반방법, 운반동선, 작업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도면에 명기한다. 10. 면석 및 적심석, 심석 등 성돌의 해체물량, 재사용 물량, 반입물량을 도표화하여 도면에 명기한다. 11. 성곽공사는 기 시달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기준을 반영한다.
유구 정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하여 발굴조사 시의 기준점 또는 지적 측량점을 확인하고 설계도면에 명기한다. 2. 유구조사 시 구지표의 고저차를 확인하고 유구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설계도서에 명기한다. 3. 유구정비 방안[드잡이, 성토(복토), 경화처리, 유구전사, 유구복제, 유구복원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준을 정한다. 4. 유구지역 전체에 대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유적,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며, 유적내부는 수목식재,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않고 기존 상태로 보존하는 방안은 검토한다. 6. 유구정비 공사재료의 선택은 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역성 있는 재료를 택하며, 관람통로 등 관람편의시설 설계 시에는 유적, 유구와 조화되는 재료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근대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수 대상에 대한 고증 및 현황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보수원인을 검토한 후 수리방안을 마련한다. 2. 건축기법 및 양식현황을 상세하게 조사·기록하여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3. 변형 또는 변이된 현황을 파악하여 원형 및 원인을 밝히고, 관련 조사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4. 벽돌 등 건축재료, 도료, 미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된 재료를 파악·기록한다. 5. 건축물의 손상 및 성능(물리적·기능적) 저하현상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배치도는 보수대상 뿐만 아니라 주변 일곽의 관련 건축물, 수목 등을 측량하여 전체배치도를 작성 도시한다.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p>7. 건물 내·외부의 부위·부재별로 조사하여 정면, 좌·우측면, 배면(조사 가능한 면)과 내부의 평면·양시·입면에 대한 도면 작성, 실측자료를 통해 종·횡단면도, 주요상세도를 작성한다.</p> <p>8. 벽체의 내쌓기, 경사면, 연결부 등 현황 및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p>

[별표 5] 문화재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개요	1. 문화재수리공사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작성 당시 조사가 어려운 가려진 부분 등은 수리공사 때 시공자가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다. 3.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항목은 대상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4. 공사대상 문화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문화재의 특징, 일반 및 특이사항이 시공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특기시방서 작성은 해당 문화재수리에 있어 특별한 사안에 한정토록 한다.
목조 건축물	1) 재료 - 보충재의 구입과 관리, 재질, 문양, 수종, 함수율, 산지 검토 2) 조사 - 사전조사 : 현황 조사,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 변형 상태 및 원인조사 등 - 해체조사 : 흔적조사(묵서, 낙서, 문양, 먹선, 연장흔 등), 연대조사, 목재수종조사, 탁본조사, 채색문양 및 안료조사, 구조해석조사 등 3) 해체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4) 시공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주의사항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운돌공사, 수장공사, 철물공사, 단청공사, 기타공사 - 치목 : 기법, 결구, 부재별 치목 - 조립 : 조립순서, 부재별 조립 - 보수보강 및 장식철물 지정 - 모형 및 시공상세도(현척도) 작성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5) 공사 완료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탑 · 석조물	1) 재료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 2) 조사 - 지형조사 :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탄성파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GPR탐사 등), 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등 - 사전조사 : 기법(굴림정도, 모접기 등) 및 재질 조사, 석재면 조각 조사(습탁, 건탁, 실촉), 풍화·손상조사(표면 열화상태 조사, 암석조사, 암석의 절리 및 균열상태조사) 등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조사 : 석재 쌓기방식, 맞댄면 가공상태, 기초 및 지대석 확인, 석재의 파손·붕괴·변형 원인파악 및 규명, 속채움 돌의 종류·형상·공법 등 3)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4)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기타공사 - 석재가공 : 흑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갈기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조립 및 쌓기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5) 공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성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 2)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조사 :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탄성파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GPR탐사 등), 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벽 : 성벽의 기울기조사, 성벽의 단면유형조사, 성벽의 자생 수목조사, 면석의 크기, 모양, 가공정도 등 상세조사, 기타 성벽의 특이사항 (각자, 상징물, 묵서 등) · 여장 : 여장의 입면구성방법·사용재료·기울기, 여장단면조사, 지대석 유무, 재료의 규격조사, 축조법 조사, 총안의 기울기·크기·유형 조사, 기타 여장의 특이사항, 여장에 자생하는 수목조사 - 해체조사 : 면석 및 뒤채움의 결구방식조사, 뒤채움의 유형 및 상세, 기초 및 지대석 확인, 성벽 파괴원인조사, 뒤채움 돌의 종류·형상·공법 3)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4)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공사, 석공사, 성곽공사, 기타공사 - 석재가공 : 흑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조립 및 쌓기 - 기타 특수공법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기록 및 관리 5) 공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유구 정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 유구정비 재료 선정 2)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조사 : 지형 및 지질 특성 조사, 지하수위, 동결심도 조사, 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 사전조사 : 현황조사, 발굴보고서 등 자료조사, 기준점 확인 3)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공사, 석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 - 유구처리방안 : 드잡이, 성토(복토), 경화처리, 유구전사, 유구복제, 유구복원 - 유구나 유물 출토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대책 - 유구 운반 및 드잡이 작업 시 손상방지 대책 - 석재가공 : 흑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갈기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4) 공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근대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재의 구입과 관리, 문양, 산지 검토 2)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 현황 조사,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 변형 상태 및 원인조사 등 - 해체조사 : 건축구법조사(조적조-벽체쌓기법, 개구부 및 아치 쌓기법 등, 목조-평보, 사자보, 왕대공, 빗대공 등, 석조-벽체쌓기법, 고정철물 등), 기록조사 (벽돌의 인각 등) 등 3)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4)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벽돌공사, 석공사, 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마감공사, 창호공사, 기타공사 - 수리범위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 평잇기, 기와가락잇기 표준규격, 고정철물 규격, 도장 종류, 마감부 규격 등 · 트러스 : 맞춤과 이음, 고정철물 고정법, 목재 가공법 등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체 : 마감기법(흙손, 물씻어내기, 솔질, 붓질 등), 모서리, 몰딩 형상 및 규격 · 창호 : 맞춤과 이음, 설치방법(벽체 고정), 창호 추함 등 · 설비 : 전기(전등, 스위치 등), 난방(벽난로, 굴뚝 등) · 실내의장 : 도배, 도장, 바닥재 등 - 보수보강 및 장식철물 지정 - 모형 및 시공상세도 작성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p>5) 공사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별표 6] 도면층(Layer) 기준(A3)

명칭	기준 색(Color No.)	굵기	설명	용도	선형태
CEN	빨강 (1)	0.05	중심선		1점쇄선
DIM	흰색 (7)	0.12	치수		실선
ELE1	초록 (3)	0.25	진한 입면선	기둥 / 창방 / 평방 / 대량 / 석축 / 옹마루 / 내림마루	실선
ELE2	진홍 (6)	0.20	진한 입면선		
ELE3	하늘 (4)	0.15	보통 입면선	창호 / 창호면 / 인방재 / 기외입면	실선
ELE4	열은주황(11)	0.10	보통 입면선		
ELE5	열은주황(13)	0.05	연한 입면선		
SEC1	노랑 (2)	0.35	주 단면선	목재 단면, 기둥	실선
SEC2	초록 (3)	0.25	보조 단면선		
SEC3	진홍 (6)	0.20	보통 입면선		
SEC4	하늘 (4)	0.15	연한 입면선		
SEC5	열은주황(11)	0.10	연한 입면선		
FIN	파랑 (5)	0.05	마감선		실선
HID	열은회색 (9)	0.10	숨김		파선
HAT	회색 (8)	0.05	해치		실선
SOLD	연회색 (253)		솔리드해치		실선

[별표 7] 도면 표제란 구성기준

표제란 구성요소		내 용	예 시
공 사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칭 기재	○○공 ○○루 보수정비공사
업 체 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명칭 기재 컨소시엄인 경우 대표회사 또는 참여사 기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 면 명		도면의 명칭 기재	○○루 1층 평면도
도면 정보	축척 Scale	다수의 축척이 포함된 경우 대표적인 축척 또는 복수의 축척 기재	1:200
	일자 Date	최종 승인된 날짜 기재	2012.08.27
	수정·변경 Revision	도면의 개정 날짜 및 내용 기재 개정 건별 기재	2012.06.19. 건물 해체 시 드러난 결구부 수정
	도면번호 Drawing no.	도면 번호 기재	A01-001
	일련번호 Sheet no.	도면 출력 후 편철 관리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편철 번호(기제도면 번호는 별도)	
도면 책임 자	조사 Reserched by	도면 작성을 위한 실측 조사자 성명 기재	
	설계 Designed by	도면 설계자 성명 기재	
	제도 Drawn by	도면 작성자 기재	
	검토 Checked by	도면 검토자 기재	
	승인 Approved by	책임기술자 기재	
주 기 NOTE		특기사항 기재	



제8절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8절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7호, 2012. 12. 24. 제정, 2016. 12. 1. 일부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3173)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실측 설계업자가 수주하는 문화재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문화재수리 설계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수리 설계는 문화재 보수·정비·복원 및 손상방지 등을 위한 설계로서 보수설계·정비설계·복원설계로 구분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문화재수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보수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보수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5. “정비설계”란 해당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정비, 유구정비, 마을정비, 관리 및 활용 관련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6. “복원설계”란 해당 문화재를 복원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7. “공사비요율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공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10.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 4 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제 5 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 2 장 공사비요율방식

제 6 조(요율) 공사비요율방식의 지급요율은 [별표1]을 따른다.

제 7 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문화재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
2. 실측 업무
3. 설계도서 작성 업무
4. 그 밖의 업무

제 8 조(설계업무) ①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1호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에서 고증조사 업무는 문화재의 시대, 가치, 내용

등을 고문헌과 대상 건물, 기타 자료 등을 기초로 실증하여 밝혀내는 조사 업무이며, 현황조사 업무는 문화재 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의 조사항목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를 참조한다.

③ 제7조제2호 “실측 업무”란 문화재 수리를 위하여 문화재 주변 배치를 비롯한 대상 문화재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를 조사·실측하고(기본실측),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 중 시공에 필요한 부분의 치수·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실측(상세실측)하는 업무를 말하며, 실측 업무의 조사항목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 3]을 참조한다.

④ 제7조제3호 “설계도서 작성 업무”란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하며, 설계도서의 작성 항목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1]을 참조한다.

⑤ 제7조제4호 “그 밖의 업무”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협의 및 공정보고, 심의 자료 작성의 업무를 말한다.

제 9 조(추가업무비용) ① 제7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시험 및 검사
3.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등
4. 손도면 작성
5.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6. 제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등
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8.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

제10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frac{(X - x2)(y1 - y2)}{x1 - 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y=0.9674x-0.169$$

y : 해당공사비요율 x : 해당 금액 (단위:천원)

제 3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2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노임단가는 해당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의 급료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기술자(건설 및 기타)의 노임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개월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3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및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비, 각종 조사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14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관계전문가의 자문비·위탁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5조(기술료) 기술료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2-145, 2012. 12. 24.>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문화재수리 설계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을 따른다.

부 칙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7, 2016.12. 1.>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공사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3천만원 이하	16.94	
5천만원	15.54	
1억원	13.82	
2억원	12.30	
3억원	11.48	
5억원	10.53	
10억원	9.37	
20억원	8.33	
30억원	7.78	
50억원	7.14	
100억원	6.35	
200억원	5.65	
200억원 초과	$y=0.9674x-0.169$ y : 해당공사비요율 x : 해당 금액 (단위:천원)	

※ 공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한다.

※ 2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절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9절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 [시행 2021. 1. 1.] [문화재청 훈령 제549호, 2020. 11. 20. 제정]
- 소관부서 : 천연기념물과(042-481-4990)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문화재(이하 “천연기념물(식물)”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으로서 천연기념물(식물) 중 개체단위로 지정된 식물을 말한다.
2. “군락지”는 식물이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천연기념물(식물) 중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 등으로 지정된 식물군을 말한다.
3. “상시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피해 또는 손상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관리행위를 말한다.
4. “수목치료”는 수목의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병충해방제, 상처치료, 가지치기, 토양개량, 영양조절, 수분조절 등 치료작업과 지주설치, 당김줄 설치, 지장목 제거, 밀도조절, 지형 복원 등의 보호관리작업을 말한다.
5. “상처치료”는 목질부의 부후확산을 막기 위한 상처부위 보호, 건조, 방수, 방충, 충전 등의 처리를 말한다.
6. “특별병충해”는 전염성이 강하고 방제가 어려운 병충해를 말한다.
7. “일반병충해”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방제가 즉시 가능한 병충해를 말한다.
8. “관리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 4 조(기본원칙) ① 천연기념물(식물)의 생물적 특성을 고려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② 천연기념물(식물)의 수목치료는 무리한 간섭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하여 수목의 자연치유력이 향상되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개선할 때는 수목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③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기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제 5 조(노거수 관리) ① 노거수는 최소한 수관폭 이상을 생육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호책을 설치, 답압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노거수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산림지역 : 수목의 생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돌발성 피해방제 이외의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2. 해안, 호수, 하천변 등 외딴 지역 :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로 생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원, 학교, 마을 등 도심·농촌 지역 : 지속적인 관리로 사전 피해발생 예방 및 사후 복구형태로 유지한다.

제 6 조(군락지 관리) ① 군락지는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위적 관리는 지양하고 지장식물 억제 등을 통해 후계목의 자연증식을 유도한다.

② 군락지는 입지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섬, 절벽 등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 군락 지역 : 자체적으로 식생이 유지되도록 간섭을 최대한 줄인다. 단, 경계지(침단지)에서는 주변식생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주변식생을 관리해 준다.
3. 관목 또는 개체수·개체군 크기가 작거나 광범위하게 산재한 지역 : 인위적 간섭은 줄이고 지정수종을 피압하는 상층 교목은 솎아줄 수 있으며, 덩굴식물 등 지속적인 피해, 번식이 예상되는 종에 한해 번성하지 않도록 제거를 실시한다.
4.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 숲 조성 당시의 수종구성 등 원형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한다.

5. 늪 등 특수환경 자생지 : 특수한 환경에 의해 늪이 조성된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재의 지형 및 수리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상시관리) 상시관리는 모니터링 및 처방, 치료 및 유지관리로 구분되며 업무범위 및 관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 8 조(상처치료) ①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관찰(조사)하고 파손, 분리 등 표면 마감이 손상된 부분은 즉시 치료한다.

② 외관상 이상(버섯발생, 수액유출 등)이 확인되면 모니터링 수행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상을 신속히 제거한 후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 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9 조(지지시설) ① 수목의 지지력 보강은 가지숙기 등 지속적인 수관 안전관리 조치 이후에도 불가피한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며, 수관정리, 보강시설 설치 또는 정비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지지력 보강을 위한 시설로는 지지대, 줄당김, 쇠조임, 줄고정 중 결합의 유형과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잉 대응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지력을 제공하여 수목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지대, 줄당김, 줄고정 등 지지력 보강시설은 기능적 효과는 물론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철거 및 재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지시설 별 설치기준 및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존 안전시설물(지지시설, 보호책 등)의 노후화 및 훼손 등으로 제기능이 상실하였을 경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 사업으로 개보수를 실시한다.

제10조(지면 관리) ① 노거수의 지면은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으로 덮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낙엽이 병원균 월동처로 우려될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하며, 열해·건조 피해를 유발하는 자갈 깔기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② 균락지는 낙엽층이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일부 제거한다.

③ 답압(흙 눌림)은 노거수의 뿌리 생육을 저해하므로 수관 외곽으로 생육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호책을 설치한다.

④ 답압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답압 해소를 위해 투수포장 또는 토양개량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소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11조(복토 제거) 복토(흙덮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고 제거한다.

1. 복토가 의심될 경우 토양 단면을 조사하여 복토된 흙의 종류와 잔뿌리 뽑음 및 생육 정도를 확인한다.
2. 복토가 확인 된 곳은 잔뿌리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제거하고, 복토량이 많아 잔뿌리가 올라온 경우는 뿌리 발육과 수세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전문가 입회하여 제거한다.
3. 복토 제거는 생명활동 휴지기에 실시하고, 영양공급 등 수세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난 대비) ① 낙뢰·화재·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적절하게 복구되도록 한다.

- ② 노거수의 피뢰침 설치는 피뢰효과가 우선이지만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③ 근락지의 산불예방은 중요지역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림부서,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 시 우선 조치되도록 한다.
- ④ 설해·풍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지대 및 줄당김 등 지지시설을 보수, 설치할 수 있다.
- ⑤ 재난 발생 시 문화재청의「문화재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사후평가) ① 문화재청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모범사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상시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사전예방 강화 및 생육환경 개선으로 추가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2. 천연기념물(식물) 치료·보수를 위한 신기술, 신공법을 현장에 도입, 우수사례로서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자연재해로부터 천연기념물(식물)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관리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이 있는 경우
 4. 기타 천연기념물(식물)의 이력관리 및 관련정보 제공 등 보존·관리를 위한 공헌도가 높은 경우

제14조(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천연기념물(식물)이 지정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지정해제가 된 경우 원목,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사항) ①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및 수목치료 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과정 및 결과물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천연기념물-상시관리)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우선 조치 후 보고한다.

1. 태풍 등으로 나무가 넘어져 주변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산불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원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549호, 2020. 11. 20.>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529호)는 폐지한다.

[별지 1호]

정기조사 대장(군락지)

NO.	조사일	년 월 일(요일)		날씨	조사자 :								
문화재명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주요 수종	평균규격				생육상태								
교목, 야교목	수종	규격별 수량(흉고직경cm)											
		3~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이상	계	
	계												
주요 수종 치수	수종	구역				피도	층위	우점종	피도				
		A	B	C	D				상	중	하		
관목류	개체수			초본	상태			지장 식물	상태				
	다수 (>30개)	보통 (29~10)	희귀 (<9)		다수 (>100개)	보통 (99~30)	희귀 (<29)		다수 (>10개)	보통 (9~5)	희귀 (<5)		
주요수목 생육상태	수종	신초 길이	잎 수량	잎 길이	병해충	병해충명	상태						
							심	중	경				
토양 건습도	건조	약건	적윤	약습	습	비교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2호]

정기조사 대장(노거수)

NO.	조사일	년 월 일(요일) 날씨					조사자 :			
문화재명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수종	규격					수령				
전체 생육상태	수세	수형	신초	잎크기	잎색깔	가지 고사	가지 밀도	줄기 상태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하중상	상중하	상중하		
표준조사	조사구 번호	표준가지 번호	조사 대상							
			신초길이				잎 길이		잎 숫자	
			전년(cm)	당년(cm)	전년(cm)	당년(cm)	전년(cm)	당년(cm)		
	1지역(동쪽)	1번								
		2번								
		3번								
	2지역(남쪽)	1번								
		2번								
		3번								
	3지역(서쪽)	1번								
		2번								
		3번								
	4지역(북쪽)	1번								
2번										
3번										
토양 건습도	구역별	간이조사 결과					병해충	병해충병		
		건조	약건	적윤	약습	습		상태		
						심 중 경				
	1번									
	2번									
3번										
시설물 관리상태	보호책	안내판	석축	지주	도로	재해/재난	편의시설			
	사업명		사업년도	내용			현 상태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3호]

간이조사 대장(군락지)

NO.	조사일	년 월 일(요일) 날씨			조사자 :
문화재명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1. 식물	잎의 색깔 (전체 조망에서)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흐릿함 <input type="checkbox"/> 색깔이 약간 변함			
	줄기.가지 부러짐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부러짐 -줄기()그루, -가지 ()개			
	병 해 총	병해총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장식물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취 등 덩굴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지반	배수문제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물고임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반변형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침하 <input type="checkbox"/> 처리방안()			
3. 부대시설	보호책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화재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시설물				
4. 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공사			
	기타				
5. 특기사항					
6.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4호]

간이조사 대장(노거수)

NO.	조사일	년 월 일(요일) 날씨		조사자 :
문화재명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1. 노거수	앞의 색깔 (약 100m 전방)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흐릿함 <input type="checkbox"/> 색깔이 약간 변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지 부러짐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큰가지 ()개 <input type="checkbox"/> 작은가지 ()개		
	병 해 총	병해총명	발생정도	대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주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가지 이탈 <input type="checkbox"/> 쓰러짐		
	쇠조임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분해 및 이탈		
상처치료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이탈(틈) <input type="checkbox"/> 진액 <input type="checkbox"/> 버섯			
2. 수관주변 지표면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복토(흙넣기) <input type="checkbox"/> 물고임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부대시설	보호책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화재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시설물			
4. 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공사		
	기타			
5. 특기사항				
6.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5호]

수목 육안 조사표

지정 번호:	수종:	위치:	<input type="checkbox"/> 정기조사 <input type="checkbox"/> 수시조사
수령:	①흉고직경(DBH):	②근원경:	이전 조사일: 조사 일자:
③수고(H):	④수관고(HC):	⑤수관폭:	조사자:
활력: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수관 밀도: <input type="checkbox"/> 고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저	엽색: <input type="checkbox"/> 양호 (진한녹색)	<input type="checkbox"/> 보통 (녹색) <input type="checkbox"/> 불량 (연한녹색)
수목의 병해충 피해여부:			

- 부지 환경 변화(직전 조사 이후) -

항목	판단 기준	결과
성도, 절도, 포장, 옹벽 공사	성도, 절도, 포장, 옹벽 공사가 발생하였는가?	Y()/N()
주변 건축물 신축/멸실, 수목제거	수관폭 너비 2배 안에 건축물, 수목제거가 발생하였는가?	Y()/N()

조사자 의견(발생 위치, 정도 포함)

- 수관, 수간 -

항목	판단 기준	결과	
수간 기울	나무의 기울기가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추가로 기울었는가?	Y()/N()	
수관 높이 감소	살아있는 수관비율이 전체 수관의 40% 이하인가?	Y()/N()	
노출 공동 깊이 심화	나무의 공동 깊이가 직전 조사 대비 인으로 5cm 이상 더 깊어졌는가?	Y()/N()	
수간 내부 ⑥부후 징후(버섯 발생)	버섯이 1곳 이상 발생하였는가?	Y()/N()	
아물지 않은 상처의 부후 진행	상처 조직이 부후되기 시작하였는가?	Y()/N()	
⑦동일세력 줄기	⑧균열	두 줄기 사이가 찢어졌는가?	Y()/N()
	⑨수피매물	⑩분기로부터 아랫방향으로 10cm 이상 매물선이 나타났는가?	Y()/N()

조사자 의견(발생 위치, 정도 포함)

- 가지 -

항목	판단 기준	결과
⑪가지처짐 심화(수양성수목 제외)	수간 기준 100° 이상 처졌는가?	Y()/N()
지관 비율 감소	살아있는 지관 길이가 전체 가지 길이의 40% 이하인가?	Y()/N()
⑫노출 공동 깊이 심화	가지의 공동 깊이가 직전 조사 대비 인으로 3cm 이상 더 깊어졌는가?	Y()/N()
가지 외부 부후 징후(버섯 발생)	가지에 버섯이 1곳 이상 발생하였는가?	Y()/N()
아물지 않은 상처의 부후 진행	상처 조직이 부후되기 시작하였는가?	Y()/N()

조사자 의견(발생 위치, 정도 포함)

- 뿌리/근원 -

항목	판단 기준	결과
뿌리판 솟음/꺼짐	나무가 기울는 반대방향으로 뿌리의 노출 혹은 지판면이 갈라졌는가?	Y()/N()
뿌리 부후 징후(버섯 발생)	뿌리에 버섯이 1곳 이상 발생하였는가?	Y()/N()
뿌리 절단	수관폭 너비 또는 흉고직경의 12배 이내에서 뿌리의 1/3 이상이 절단되었는가?	Y()/N()
노출 공동 깊이 심화	뿌리의 공동이 직전 조사 대비 3cm 이상 더 깊어졌는가?	Y()/N()

조사자 의견(발생 위치, 정도 포함)

종합의견 :

[별지 제5호(계속)]

주)	
<p>① 흉고직경 :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지름 / 도구 : 직경테이프</p>	
<p>② 근원직경 : 지표면에 닿는 줄기의 지름 / 도구 : 직경테이프</p>	
<p>③ 수 고 : 지면부터 수목의 맨 윗부분의 길이</p>	
<p>④ 수 관 고 : 수목의 맨 아래가지부터 맨 윗부분까지의 길이</p>	
<p>⑤ 수 관 폭 : 가지의 끝과 반대쪽 가지의 끝의 너비</p>	
<p>⑥ 부후 : 부후균류의 침입에 의해 목질이 분해되어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p>	
<p>⑦ 동일세력줄기 : 주간이 있어야 할 위치에 굵기가 비슷한 줄기가 있는 것</p>	
<p>⑧ 동일세력줄기 균열 예시</p>	<p>⑨ 동일세력줄기 수피매물 예시</p>
<p>⑩ 분기 : 가지/줄기/수간이 다른 가지/줄기/수간과 연결되어 있는 곳</p>	
<p>⑪ 잔가지가 밑으로 늘어지는 수목(예: 처진 소나무, 수양벚나무, 수양버들 등) / 측정방법 : 수간을 기준으로 각도계로 측정한다.</p>	
<p>⑫ 수목의 공동 예시</p>	

[별표 1]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업무범위 및 관리내용(제7조 관련)

업무범위		관리내용
모 니 터 링 및 처 방	기본 원칙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를 기본으로 하고, 병충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 문화재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
	유형	1. 정기조사 : 노거수 단목은 표준가지를 선정하고 군락지는 방형구를 선정하여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와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을 조사 ① 노거수 : 표준가지는 4방향에 1개소씩 총 4개소로 선정하여 지정된 가지는 표시(링, 표찰 등)하고 도면, 사진 등으로 명시 ② 군락지 : 방형구는 해당 군락지의 현황과 특성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정하고 크기는 일반적으로 관목류의 경우 10m×10m, 아교목 및 교목류의 경우 20m×20m로 하며, 1ha 미만 1개소, 1ha~3ha 2개소, 3ha 이상은 3개소 또는 그 이상으로 하되 면적이 적은 곳은 전체를 하거나 적정 크기로 나누고, 방형구 각 꼭지점과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파이프, 말뚝, 페인트, 비닐 끈 등으로 경계 표시 2. 간이조사 :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 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 유지
	내용	1.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환경변화,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2. 군락지 : 주요수종의 치수·매목·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수목활력도·병충해 피해현황·초본류 및 지장식물·토양조사 및 환경변화, 주변 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3. 모니터링 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방전을 제시, 처치 및 유지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
	기록	1. 별지 1호부터 5호 양식에 따라 조사표에 작성하고 대장(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등)에 기록(등록)하며 사진 등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2. 다만, 간이조사의 경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식물)은 공·능 조경관리규정(공능유적본부 훈령) 제6조(지도 및 점검) 적용

업무범위		관리내용
치료 및 유지 관리	기본 원칙	1. 모니터링 후 제시된 처방전을 토대로 치료 및 유지관리를 수행
	관리 범위	1. 식물보호업체(기술자) : 병해충 방제, 노거수 수관정소·수관숙기, 수림지 위해 덩굴류·지표식물 제거 등 매년 반복되는 경미한 사업 2.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 : 주변 시설물 관리, 외부청소 등 단순관리
	병해충 방제	1. 섬지역 등 입지 조건상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미한 일반 병해충방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소유자나 관리단체에서 수행 가능 2. 일반 병해충 방제는 가급적 화학적 방제 지양 3. 특별 병충해는 모니터링 수행자의 의견을 들어 별도사업으로 신속히 대처
	상처치료	1.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관찰하고 충전물이 탈락되거나 찢어진 곳 등은 손질하며 외관상 이상(버섯발생, 수액유출 등)이 확인되면 모니터링 수행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신속히 제거 2. 식물에 부담이 적고 검증된 새로운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천연기념물 특성에 부합되는 치료방법 선택
	수관 숙기	1.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되, 완전 부식된 조직만 제거하고 고사된 지 오래된 큰 가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 2. 가지밀도가 높아 설해·풍해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기본 수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아내기 시행.
	영양 공급	1. 평상시에 부숙퇴비 등 유기질을 공급하여 영양균형을 유지하고 수목이 쇠퇴한 경우 장해원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부족한 성분 공급 2. 비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의 종류, 시기, 방법 등을 올바르게 선택
	지표면 관리	1. 덩굴제거, 풀깎기, 완충지역의 돌발식생 및 경쟁목 등을 제거하며, 후계목 치수 관리를 위해 보호틀을 설치하고 위치를 표시, 중점 관리
	시설물 관리	1. 보호책, 지주, 데크, 정자, 의자 등 주변 편의시설의 청소관리
행정 사항	소요 예산	1. 소요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타-1.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모니터링 및 상시관리사업)로 지원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검토는 시·도에 위임, 자체 처리. 다만, 수목 상처치료(1개소 치료면적 1㎡ 이상 또는 지제부) 및 노거수 뿌리치료, 줄당김(cabling) 설치는 문화재청 설계검토 2. 소요예산 신청은 국고보조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http://www.e-heritage.go.kr)을 통해 신청하되 필요시 타 식물 천연기념물 예산과 함께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문화재가 아닌 시·군·구별로 묶어 일괄 신청 가능

[별표 2] 지지시설별 설치기준(제9조제3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지지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지대는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면과 줄기/가지 또는 수간 사이에 설치하는 지지시설로 무겁거나 길고, 처지는 가지로 줄당김이 어려운 경우,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목의 수간 등에 설치 2. 지지대는 과다할 경우 수목의 자체 지지력 유지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며, 한번 설치하면 자체 지지능력이 약화되거나 가지가 불균형적으로 자랄 수 있어 가지의 부후 등 결함요소를 충분히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강한 정적 지지력을 제공하는 A형 지지대가 효과적 ② 지지대와 수목 사이의 받침은 U자형과 평면형으로 구분되며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누르는 힘에 강한 U자형을 고려하고, 그 외 좌우로 움직이는 바람 등에는 평면형을 우선 고려 ③ 목질부와 받침이 닿는 부위는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완충공간이 생기도록 하여 상처로 인한 부패를 예방하고, 흔들림에 의해 완충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 ④ 세력이 왕성한 가지에 지지대를 하면 가지가 웃자라고 엽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 ⑤ 지지대는 수직적 부하에 대해서는 지지력을 제공하지만, 지지 대상이 좌우로 움직이면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목의 지지를 위해서는 줄당김을 우선 고려 ⑥ 지지대는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보수하거나 위치 조정
줄당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줄당김은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목의 가지나 주지 사이에 철강 케이블 또는 합성섬유 로프를 설치하는 지지시설로 무겁거나 길고, 처지는 가지로 충분한 굵기의 주간이 있는 경우, 찢어지기 쉬운 둘 이상의 동일세력 줄기로 상호 결속을 위해 설치 2. 줄당김은 수목의 약한 구조에 대한 동적인 부하를 줄이기 위해, 강철 케이블이나 합성섬유 로프처럼 탄력성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하고 설치시기는 휴면기를 이용하며 다음 각 호를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전한 목재가 수간이나 가지 직경의 40%미만인 부후된 부위에서는 관통하는 고정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동적 줄당김의 설치 지양 ② 케이블은 지지될 가지나 주지의 길이(높이)의 2/3지점에 설치하되, 수목의 구조와 형태, 설치 지점의 강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절 가능 ③ 케이블 설치 각도는 케이블이 설치될 두 수목 조직이 이루는 각도를 양분하는 가상선에 대해 수직이 되게 설치 ④ 두 개 이상의 줄당김을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충분한 거리를 확보 ⑤ 강철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굵기가 가는 고인장강도케이블을 사용

구분	주요내용
쇠조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쇠조임은 찢어졌거나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지, 주지, 수간의 분기에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임 강봉을 설치하는 지지시설로 찢어지기 쉬운 동일세력 줄기의 분기에 설치 2. 쇠조임은 지지시설과 서로 보완하여 설치하되, 수목의 크기, 구조, 결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다음 각 호를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결하는 양쪽의 무게중심, 엽량, 연결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상의 설치 장소를 선정 ② 쇠조임 주위에 약한 조직이나 균열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 ③ 내부가 부후된 가지나 줄기는 부후가 조임 강봉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지지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호시설을 고려 ④ 큰 가지나 내부에 결함이 있는 가지에는 줄기를 관통하는 철심이나 볼트를 사용 ⑤ 목재에 와셔를 넣을 때는 둥근형으로 나무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형성층 아래로 되도록 한 후 살균 처리 ⑥ 쇠조임만으로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줄당김 설치 고려
줄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줄고정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목을 지지하기 위해 수목과 외부의 고정 장치 사이에 강철 케이블을 설치하는 지지시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목의 주간에 설치 2. 줄고정은 넘어지거나 뿌리 고착이 불안정한 수목에 대해 충분한 강도의 케이블을 설치하여 지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를 참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줄고정 고정 장치(anchor) 방향은 지상의 고정 장치 방향으로 설치 ② 고정 장치 설치를 위한 천공, 고정 장치 및 케이블의 규격, 고정 장치와 줄고정의 연결 방법은 줄당김의 방법을 따름 ③ 고정 장치의 높이는 수고의 1/2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주변 여건과 설치 대상 수간의 강도를 고려하여 조정 ④ 지지대상 수목과 지상 고정 장치와의 거리는 수목 고정 장치 높이의 2/3보다 멀고, 지지대상 수목의 기울기가 증가함에 따라 거리를 늘림 ⑤ 고정 케이블은 수목 고정 장치를 기준으로 90° 이내에 둘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음 ⑥ 설치 대상이 대교목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이들에게 설계를 의뢰 ⑦ 보행자와 차량 통행, 부지이용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공중 안전을 위해 테이프나 PVC 파이프, 기타 자재로 감아서 줄고정의 존재를 명확하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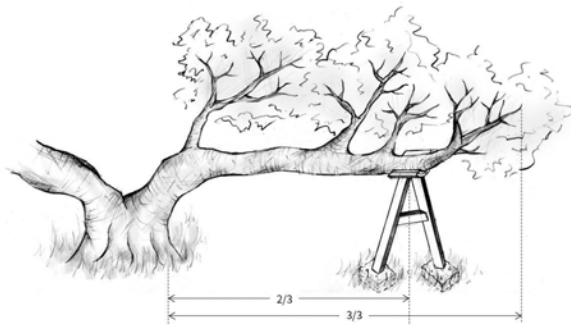
[별표 2(계속)] 지지시설별 설치유형

1. 지지대

A형 지지대 - 기울어진 수목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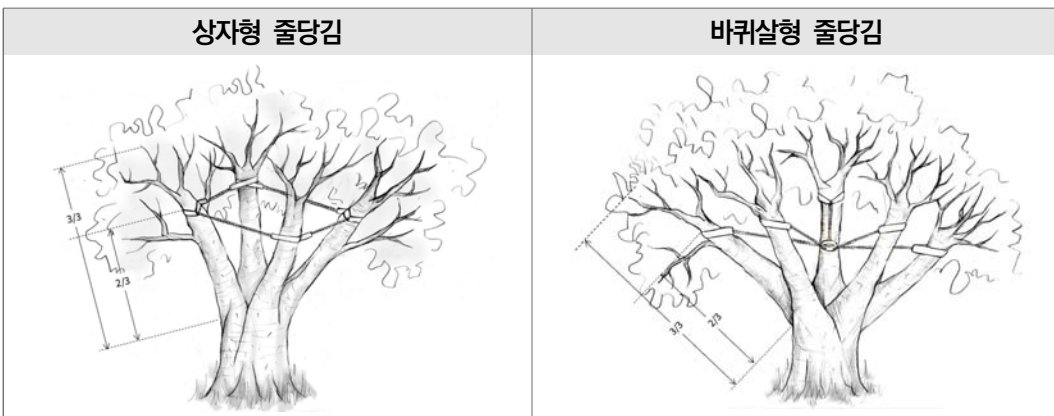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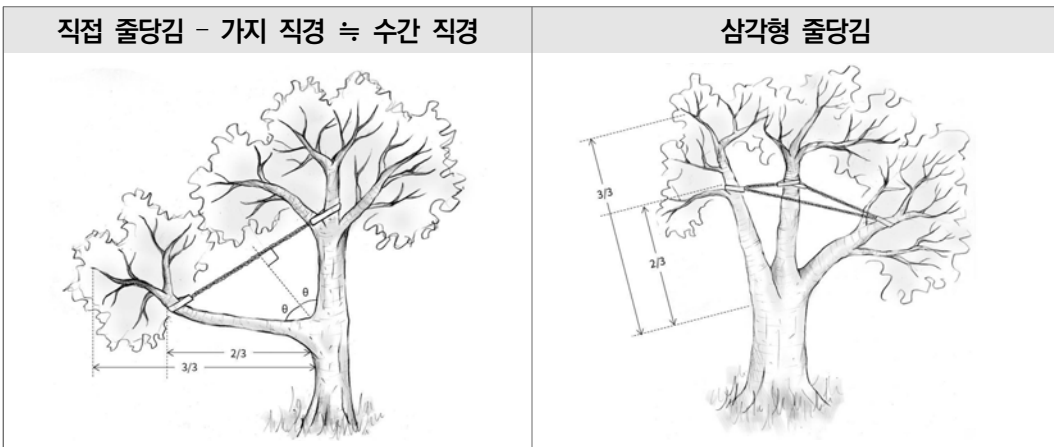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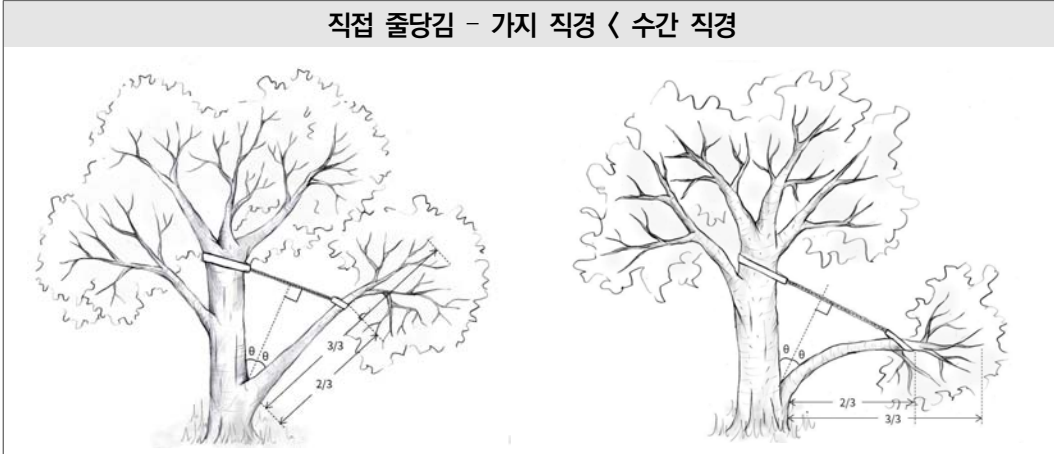
A형 지지대 - 수평으로 과도하게 멀리 뻗은 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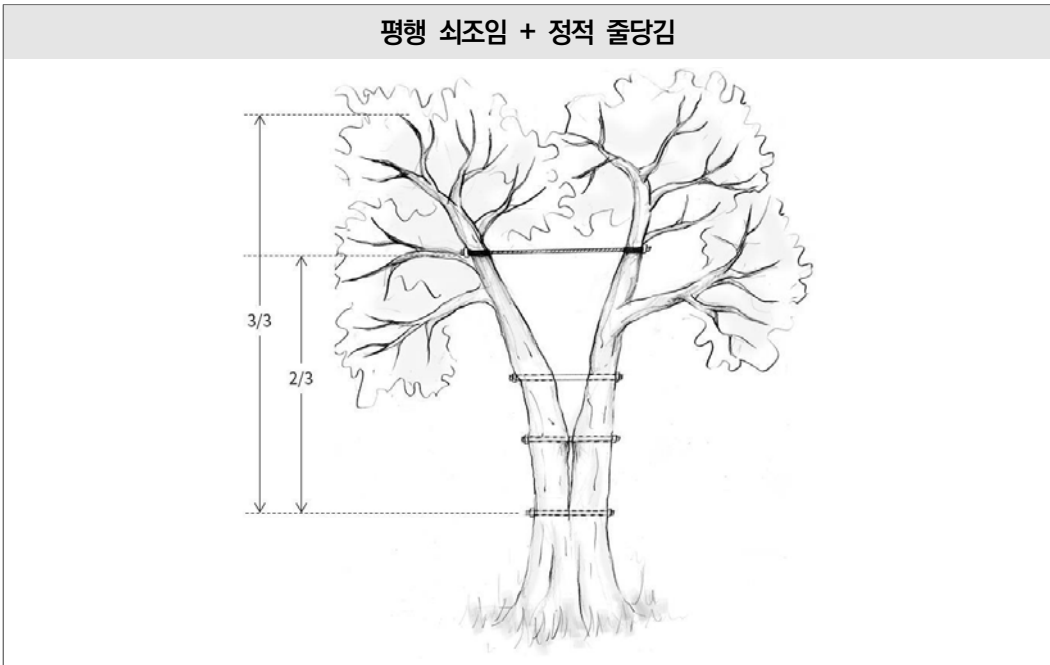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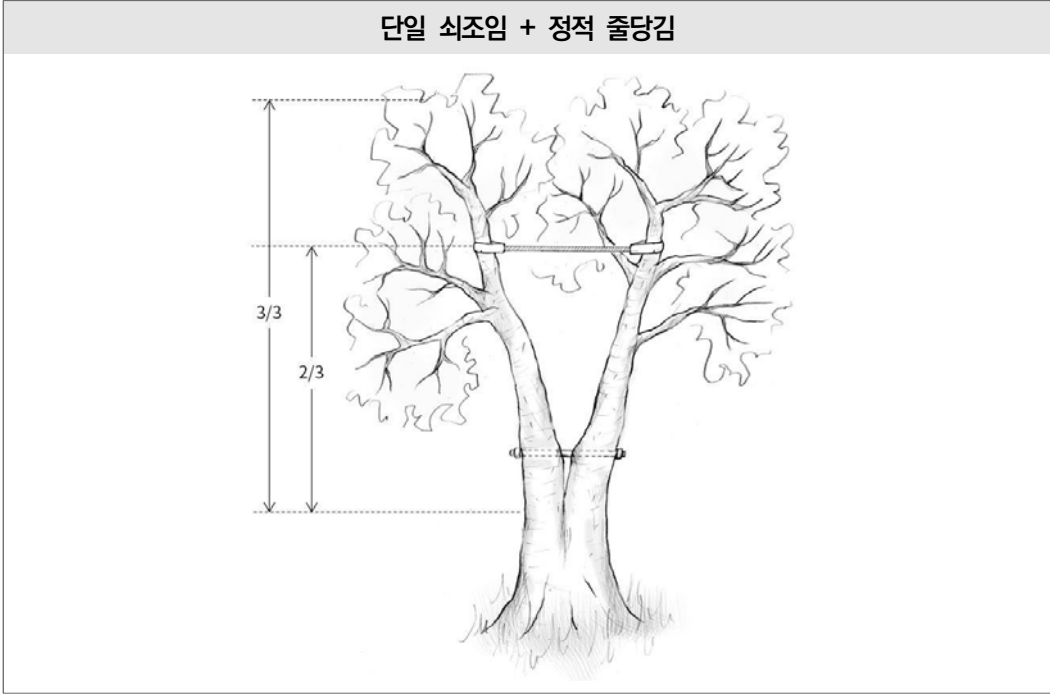
H형 지지대 - 어느 정도 지지능력이 있고 수평에 가까운 가지 지지 (가지의 움직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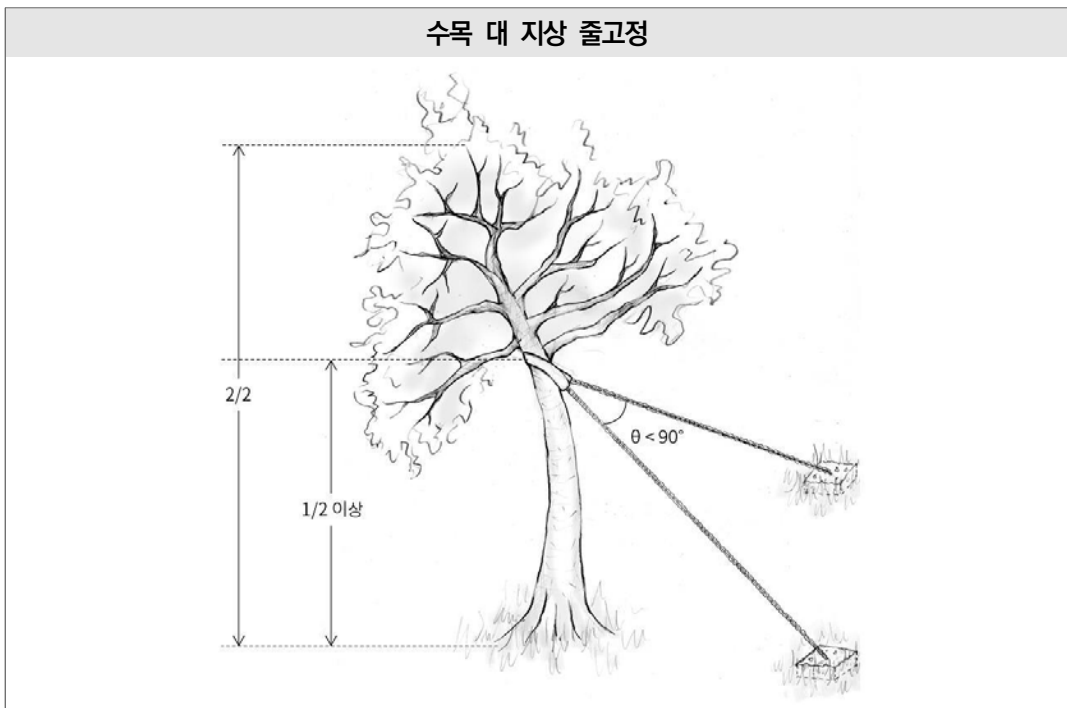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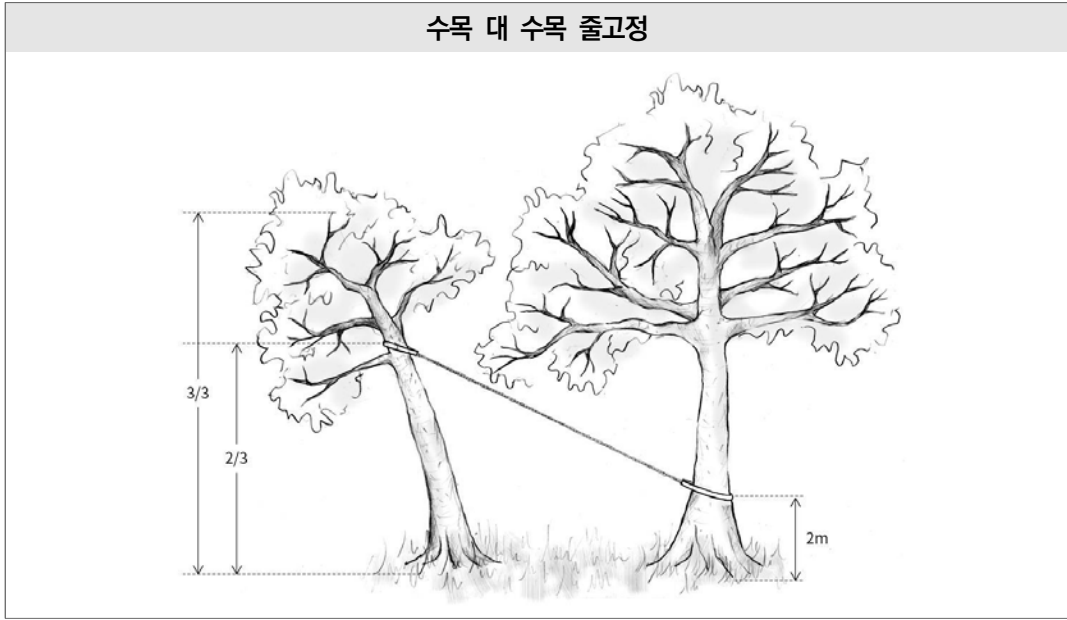
2. 줄당김



3. 쇠조임



4. 줄고정



※ 「천연기념물 노거수 위험 관리 매뉴얼」(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별표 3] 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제14조 관련)

천연기념물(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자연현상 및 기후변화 등에 민감하며, 지정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가 된 문화재에 대하여 기념·활용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방안을 선택

1. 일정 수형 유지, 원목상태·주변환경에 따라 현장·외부 보존조치

가. (현장보존조치) 일정 수형을 유지한 경우 보존처리 후 현장조치·홍보

- 1) 뿌리 및 주간부 수형이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2) 훼손목 주변으로 목재건축물 등 2차 생물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 3) 관람동선과 연계되어 현장접근이 용이한 경우
- 4) 고사되어 노거수로서의 가치는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맹아지가 성장하는 경우

나. (이전 전시·보존조치) 일정 수형을 유지하였으나 현장조치가 어려운 경우 외부 공간 활용, 보존조치 및 전시·홍보

- 1) 현장접근이 어렵거나 주변에 증형목 이상의 수목 등의 생육, 전시공간이 협소한 경우
- 2) 훼손목 주변으로 목재건축물이 있어 2차 생물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 3) 박물관 등 관련기관에서 전시활용을 희망할 경우

2. 원형 훼손이 심한 경우 기념 조형물 제작 및 기념상품 활용

가. 주간부 공동이 50% 내외로 훼손이 심각하나 활용가능 목재부가 존재하는 경우

나. 지역의 대표문화재로서 지역주민, 소유자, 관리단체에서 기념물 제작 등을 적극 희망하는 경우

3. 후계목을 활용한 후계숲 및 기념공원 등 조성

가. 천연기념물에 대한 유전자원 확보, 후계목 육성 중인 경우

나. 조성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후계숲 및 기념공원 관리주체가 확실한 경우

4. 지정부터 해제까지의 변천사를 사진 등으로 기록한 종합안내판 설치·홍보



제10절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지침



제10절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지침

■ 소관부처 : 천연기념물과(042-481-4990)

1.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49호, '20.11.20. 제정)에 따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 편성한다.
 - 가. 모니터링 및 처방
 -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 기본 실시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 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관련전문가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 문화재수리(식물) 기술자 등
 - 나. 처치 및 유지관리
 - 모니터링 후 제시된 처방전을 토대로 처치 및 유지관리 수행
 - 병해충 방제, 상처치료, 수관숙기, 영양공급, 지표면 관리, 외부청소 등
2. 환경변화에 민감한 천연기념물 식물의 예방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처방을 토대로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3.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 사업(모니터링, 처치 및 유지관리 등)의 적기 시행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시·군·구 위임)하되, 시·도는 다음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시·도 지도 감독사항 : 모니터링 조사자 적격여부, 모니터링의 성실한 이행여부, 처방에 따른 처치 및 유지관리 시행여부, 계약조건 이행여부 등
4. 상시관리 사업 중 수목상처치료(1개소의 치료면적이 1㎡ 이상 또는 지제부), 노거수 뿌리치료, 줄당김(cabling) 설치는 문화재청의 설계검토(국가검토)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5. 일반 병충해는 점차 자체 생태계에 적응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명시된 희석농도를 지켜 과다살포를 자제한다.
6. 상처치료는 현상태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으로 무리한 시행은 지양하며, 식물에 부담이 적고 검증된 새로운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천연기념물 특성에 부합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한다.
7. 수관숙기는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되 완전 부식된 조직만 제거하고 고사된 지 오래된 큰가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한다.
8. 또한, 설해·풍해예방,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가지 제거 및 잔가지 숙아내기를 시행하되, 기본 수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가지 끝을 자를 경우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여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9. 영양공급은 비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료의 종류, 시기, 방법 등을 올바르게 선택한다.
10. 지표면 관리는 덩굴제거, 풀베기, 완충지역의 돌발식생 및 경쟁목 제거 등이 해당되며 경쟁목은 제한적으로 관리한다.
11. 기타사항은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49호),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문화재청 고시 제2020-134호)를 참고한다.
12.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은 계약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 까지 전 과정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천연기념물 - 상시관리)’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계약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므로 단계별로 즉시 등록
 - 모니터링(정기, 간이)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진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



— 제11절 —

문화재수리 현장관리지침



제11절

문화재수리 현장관리지침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4828)

I 일반사항

1.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한다.
2. 문화재수리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3. 문화재수리 관계자는 “별첨1”의 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문화재수리를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명단을 사업착수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6. 문화재수리 중 인접 문화재와 주변 수목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사전에 보호 조치한다.
7. 현장 내는 수시로 청소·정리하여 청결을 유지하여 쾌적한 현장을 조성한다.
8. 문화재수리의 실명제, 사업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각종 안내판, 표지판 등은 관람객에게 잘 보이고 불편이 최소화되는 곳에 설치한다.
9. 관람객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 문화재수리 현장 내에 화기 및 가연성 물질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별도의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한다.
11. 문화재수리 관계자는 “별첨2”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문화재수리 관계자는 등록증 및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대여시 처벌 및 처분 규정 “별첨3” 참조)

13. 문화재수리 관계자는 “별첨4”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II 가설물 설치

《공통사항》

1. 가설물이란 문화재수리를 위하여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문화재수리용 덧집, 가설울타리, 가설건물, 적치장 등을 말한다.
2. 가설사무소등 가설건물은 가설울타리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현장 내에 설치하는 가설물은 문화재수리 작업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한다.
4. 가설물의 규모·형태·색상 등은 문화재청에서 정한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5. 가설물 설치에 대한 계획은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시 반드시 반영하여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 설계도서에 가설물 위치, 규모, 재료, 색상, 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작성

《공사 가림막》

1. 도심이나 관람객이 많은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규모 및 위치는 관람객의 관람이나 현장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형태는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주변경관에 어울려야 한다.
4.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림막에는 관람객의 문화재 이해와 문화재 경관보호를 문화재 실사사진 이나 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용 가설비계》

1. 비계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 발판은 문화재수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90c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5.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6.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이어야 한다.
7.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8.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9. 작업발판의 틈새는 3cm 이하로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확보한다.
10. 경사진 발판위에는 작업자가 이동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대를 설치한다.
11.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수평으로 돌출된 강관의 끝부분에는 안전캡을 설치한다.

《문화재수리용 덧집》

1. 문화재수리용 덧집은 목·석조 문화재수리 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기간이 짧거나 범위가 경미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덧집은 작업공간 및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안전하게 설치한다.
3. 관람객의 안전 및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도 관람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4. 저채도 색상, 무광택 재질의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설치하며, 덧집 외부에는 공사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는 도심지, 관람객이 많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이 협소하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설울타리는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관람객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위치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3. 가설울타리는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규모·형태와 저채도 무광택의 재질로 설치한다.
4. 가설울타리는 관람객의 문화재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이 명시된 공사 안내판 및 실사사진 등을 외부에 부착할 수 있다.
5. 관람객의 안전보호 및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도 관람이 가능한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

《가설사무소》

1. 가설사무소는 가설올타리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내에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가설사무소는 사업규모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설치한다.
3. 저채도, 무광택의 재질로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설치한다.
4. 가설사무소 내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련법령,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기상표, 비상연락망, 현장종사자 명단,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가설사무소 내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현장출입자가 항상 착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등을 충분히 비치한다.

《자재보관창고》

1. 자재보관창고는 우수에 침수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목재 등 자재의 훼손이 없도록 한다.
2.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 해체 위치에 따라 구분·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습도 조절, 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도난 및 멸실 우려가 있는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는 별도로 도난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흙 등 비산 재료는 저채도 색상의 천막 등으로 덮거나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별도로 설치한다.

《공사안내판》

1. 공사안내판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사업의 규모·기간,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규격·형태·문안 등은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사안내판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해 문화재의 사진을 부착할 수 있다.
4. 공사안내판의 문안에는 관람객을 위한 안내문과 사업개요, 사업내용, 발주자, 도급자, 참여자의 실명(기능자 포함)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5. 외국어는 관람객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III 재료관리

1. 현장에서 발생되거나 반입된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2. 재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3. 반입된 재료 중 훼손되거나 부적합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4. 해체 재료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5. 외기에 영향을 받는 재료는 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거나 먼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장막 등으로 덮어 보관한다.
6.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도난 방지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한다.
7. 해체 및 반입 자재는 외부에 노출되어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림막 등을 설치한다.
8. 교체부재 중 중요부재는 전통건축수리기술훈흥재단과 협의 후 별도 보관하고 기타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한다.

IV 시공관리

1. 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에 모든 관련법령, 조례, 규칙, 기준, 계약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조사·검토한 후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을 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4.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부득이하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선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사 진행을 위한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부분상세도 등 필요한 설계도면을 추가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8.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기법으로 할 수 있다.
9. 기준점은 공사기간 동안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10. 시공자는 공사 전반에 대한 사진촬영 등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 준공 시 문화재 수리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V 화재예방관리

1. 공사 전에 화재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며,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에는 원칙적으로 화기사용을 금하되 화기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화재예방조치를 취한 후 사용한다.
3. 현장 내에는 적정위치에 소화시설(소화용수, 소화기,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별도 보관하고 위험경고 등을 표시한다.
4. 현장 내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VI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보양 시설, 경비 또는 근로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3. 현장 내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 조명 등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하고 전선 등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5. 해빙기 및 장마기간에는 붕괴 우려가 있는 석축 또는 배수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 또는 자재 등의 도난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순찰 강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다.

[별첨 1]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

1. 문화재수리업자등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와 문화재수리기준(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현황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1명 이상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5. 제4호 단서에 따라 최대 배치할 수 있는 규모는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중지된 현장이나 병충해 방제 현장은 개수 계산에 제외)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지정·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중지된 현장이나 병충해 방제 현장은 개수 계산에 제외)에 배치할 수 있다.
6. 문화재수리업자는 제5호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중복 배치하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중인 모든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며, 승낙을 받은 이후에 추가 중복 배치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된 모든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7.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나 이와 관련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 등으로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명과 문화재수리기간, 문화재수리내용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0.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문화재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하여야 한다.
11. 문화재수리업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시공상태에 대한 단계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문화재수리업자는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3.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해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및 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14. 문화재수리업자는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할 수 있다.

-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 종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

1.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른 경력기술자가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지정·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상기 이외의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문화재수리 현장을 조사·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중지된 현장이나 병충해 방제 현장은 개수 계산에 제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지정·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중지된 현장이나 병충해 방제 현장은 개수 계산에 제외)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자격종목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장 배치확인표(법정서식)」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현장 부재중에 안전관리 등 현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9. 발주자의 요청이나 사정 변경 등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교체되면 후임 문화재수리 기술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된 이후에는 그 현장의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와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1.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관련 법규, 설계도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의 문화재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련 법규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등 문화재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문화재수리 중 부득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거나 유구(遺構)·유물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이 발견되는 등 중요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시공상태에 대한 단계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단계별 사진 촬영, 작업일지 작성 등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전 과정을 종합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6.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되면 「문화재수리 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

1.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자기 분야의 기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관련 법규, 설계도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의 문화재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제시된 기법 및 기구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불가하면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중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통해 발주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문화재수리기능자는 해체 및 조립할 때에, 해체된 부재를 운반·보관하는 때에 파손·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중에 매장문화재·묵서명(墨書銘)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중 문화재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와 그 주변의 시설물을 찾아 오는 관람객 및 참배객 등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문화재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청렴의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하여 일선에서 문화재수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청렴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집약된 결정체로서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5.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원형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산이 가진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문화재수리 중에 관련 법규, 설계도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의 문화재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별첨 3]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 및 처분 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됨.
-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됨.
-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됨.

□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

- (문화재수리업자 등) 등록증 대여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이상의 실형 시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취소 및 문화재수리술자(기능자) 자격취소

□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문화재수리업자등) 등록증 대여
 - (1차 위반) 영업정지 1년, (2차 위반) 등록 취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
 - 자격 취소



제12절

초가이영잇기사업 지침



제12절

초가이영잇기사업 지침

■ 소관부서 : 근대문화재과(042-481-4883)

1. 지붕 보토를 해체하지 않고 매년 시행하는 정상적인 초가이영잇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기존과 같은 재료(벚짚, 억새, 띠 등) 및 양식으로 이영잇기 한다.
3. 초가이영잇기는 경미한 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가 아닌 자 중 경험이 있는 자도 시공 할 수 있다.
4. 원래의 재료 및 양식을 변경하지 않는 초가이영잇기는 별도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5. 초가이영잇기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6.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준수한다.



— 제13절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제13절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 문화재청 예규 제194호, 2009. 12. 29. 제정. 2018. 8. 23. 일부개정
- 소관부서 : 유형문화재과(042-481-4921)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재(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산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의 문화재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명”이란 문화재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재명칭을 말한다.
3. “소장처”란 당해 문화재가 문화재청에 신고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수리내용”이란 세척, 보존처리, 칠, 배접, 도금(개금)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리자”란 당해 동산문화재의 수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말한다.
6. “소유자”란 수리 당시 해당 유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7. “감독자 및 감독기관”이란 수리 당시의 해당 사업의 감독자 및 감독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복제 · 영인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4 조(수리기 내용) ① 수리기에는 문화재명,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기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② 문화재명은 문화재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별(국보 또는 보물) 및 지정번호,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 ③ 수리내용은 보존처리, 배접, 개금, 기타 등에 사용한 재질 및 처리방법 등을 후대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④ 소장처는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동(리) 지번, 소유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 및 관리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를 명확히 기재한다.
- ⑤ 수리기간은 보존처리 등이 시작하고 끝나는 연월일을 정확히 표기한다.
(수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 ⑥ 수리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 수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실명(實名)을 기재한다.
- ⑦ 소유자는 수리 당시의 소유자의 실명을 기재한다.
- ⑧ 감독자 및 감독기관은 수리 당시의 해당사업의 감독자와 감독기관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 ⑨ 기타 해당 문화재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 5 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동산문화재의 수리기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수리기의 재질, 작성내용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해 자문한다.

제 6 조(표기방법) ① 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並記)할 수 있다.

- ②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재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
- ③ 불상, 동종 및 무구류 등 금속류의 경우, 수리기의 재질과 형태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 7 조(수리자의 의무) 동산문화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자는 제4조의 수리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적당한 위치에 부착 또는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수리기의 부착방법) 수리기의 부착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해 문화재의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 9 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80호, 2009. 12. 29.>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8호, 2013. 11. 30.>

(국가지정 문화재 (동산) 수리기 지침 등 일부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호, 2018. 8. 2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4절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제14절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 문화재청 예규 제184호, 2005. 1. 14. 제정, 2017. 9. 13. 일부개정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4828)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건조물 부재의 수집·보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전통건조물부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로서 건조물문화재를 구성하는 철재·목재·석재 등을 말한다.

②문화재수리의 정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③보관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보관소를 말한다.

제 3 조(보관소의 운영 등)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보관소를 운영·관리한다.

②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보관소 관리자를 임명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관소 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부재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관 부재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보관소 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부재에 대한 개별부재관리표(별지 제1호서식) 및 부재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조(부재의 수집) ①문화재청에서 직영하거나, 국고보조 또는 소유자직영으로 추진하는 문화재수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문화재청 문화재수리관계자는 발주처에 수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집대상 부재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부재의 소유권) 보관소에 인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보관부재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장에게 있다.

제 6 조(부재의 선정 및 선정된 부재의 보호) ①보관소에 이관된 부재의 보관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통건조물부재보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보관부재 보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 중 전통 건조물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중요 부재가 있을 때에는 임의로 훼손 또는 폐기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보관부재로 선정된 부재에 대해 보관소에 이관할 때까지 눈·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보관소의 원활한 운영·관리·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전통건조물부재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수리기술포럼, 수리기술포럼 담당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관계 교수 및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관소의 운영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보관부재의 수집, 폐기 및 보존처리대상 자재 선정
3. 보관부재의 전시,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관소 건물·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제 8 조(부재의 이관절차) ①문화재수리 담당자는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관일시 등 이관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수리 발주자와 보관소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관소에 이관하기로 한 부재는 문화재청장의 통지내용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 발주자가 보관소까지 운반하여 보관소관리자에게 인계한다.

제 9 조(부재의 보존처리) ①보관소에 반입되는 보관부재는 보관소관리자가 필요시 훈증소독과 경화 및 보존처리를 한다.

② 부재의 보존처리는 보관소관리자가 필요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협조·지도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의 폐기) 보관하고 있는 부재의 폐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다만, 보존가치가 없거나 긴급히 폐기할 필요가 있는 부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보관소 운영예산) ①보관소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부담한다.

②문화재청은 보관소 운영, 관리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기보고) 보관소관리자는 보관소 내에 보관되고 있는 부재의 수량, 상태 등 현황과 증감사항을 매년 12월 2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청행정지침의 폐지)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30.>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13.>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별부재관리표(제 호)				
부재고유번호		※ 부재고유번호 분류표 참고		
문화재	명 칭		지 정	
부재	명 칭		제작연대	
	규 격		반입일시	
특기사항				

※ 참고사항

부재고유번호 분류표

- **분류번호** : a**b**c**d**e**f**-g**h**i**j**
 - a**b** : 지정별분류, c**d** : 소재지별 분류, e : 재료별분류, f**g** : 종류별분류
 - h**i**j**k** : 부재관리대장별 분류
- **실예** : 01-01-1-01-0000
 - 01(지정별 : 국보)-01(소재지별 : 서울)-1(재료별 : 목조)-01(재료별 : 관아)
 - 0000(부재관리대장번호)
 - ※ 부위별 분류번호는 관리자가 선정하여 부여함.

1. 문화재 지정별	2. 문화재 소재지별	3. 문화재재료별	4. 문화재 종류별
국보 01 보물 02 사적 03 국민 04 지유 05 지민 06 지기 07 문자 08	서울특별시 01 부산광역시 02 대구광역시 03 인천광역시 04 광주광역시 05 대전광역시 06 울산광역시 07 경기도 08 강원도 0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도 16	목재 01 석재 02 토기(전·벽돌,기와) 03 철재 04 기타 05	관아 01 사찰 02 향교 03 민가 04 교회(성당) 05 근대건축물 06 성곽 07 탑 08 다리 09 비 10 기타 11

[별지 제2호 서식]

부재관리대장

관리대장 번호			고유번호	
문화 재	명 칭		지 정	
	소 재 지		종 류	
부 재	명 칭		제작연대	
	재 료		반입일시	
	규 격		도면(매)	
	보존처리		특기사항	
<p>현 황 사 진</p>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부재이관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문 화 재 명			지 정 별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
발주(기관)자				
수리업체명				
수리업체주소	(☎)			
현장대리인				
공 사 기 간			공사금액	
기술지도담당	(☎)		공사 감독관	(☎)
이 관 부 재	부 재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위 부재를 전통건조물보관소에 이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각 부재현황표, 각 부재별 도면(A4용지 크기로 작성), 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제15절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15절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 문화재청 고시 제2018-150호, 2019. 2. 4. 시행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4865)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 3 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을 할 때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제1호에 따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 5 조(하도급심사대상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 조(세부심사기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하수급인의 수행능력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심사항목 중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판단항목은 2022년 2월 3일까지는 세부 판단 항목 별로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I.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50)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50점)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30점)	$30 - 2 \left(\frac{82}{100} - \frac{\text{하도급금액}}{\text{원도급금액}} \right) \times 100$	$30 - 2 \left(\frac{70}{100} - \frac{\text{하도급금액}}{\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원도급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20점)	$20 - 1/2 \left(\frac{88}{100} - \frac{\text{원도급금액}}{\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II.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50)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50점)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액 (25점)	① 당해 문화재수리 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 공시액				
		2배이상 20점	1.5배이상~2배미만 19점	1배이상~1.5배미만 18점	0.5배이상~1배미만 17점	0.5배미만 16점
	하수급인의 수리 경험 (20점)	② 하수급인의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액				
		2배이상 20점	1.5배이상~2배미만 19점	1배이상~1.5배미만 18점	0.5배이상~1배미만 17점	0.5배미만 16점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점)	③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3년이상 5점	2년이상~3년미만 4점	1년이상~2년미만 3점	1년미만 2점	
기타	하수급 문화재수리의 시공여건 (+2점)	⑤ 하수급인이 당해 문화재수리 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법률 위반여부 (-1점)	⑥ 최근1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영업정지 또는 벌칙에 한함)				

※ 가·감점을 포함한 항목별 합산 점수는 배점한도인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문화재수리 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문화재수리 명		하도급 문화재수리 명	
수급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도급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부분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사요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50		
가.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30)		
나. 원도급 문화재수리의 낙찰비율	(20)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		
가. 하수급인의 수리능력평가액	(25)		
나. 하수급인의 수리 경험	(20)		
다.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라. 하수급 문화재수리의 시공여건	(가점 2)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감점 1)		



제16절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6절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4호, 2021. 11. 26. 시행
- 소관부서 : 수리기술과(042-481-317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재료”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건축 또는 보수·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2. “수급관리재료”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확보가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축이 필요한 전통재료(전통재료를 구성하는 원료 및 중간재를 포함한다)로서 제13조 각 호에 따른 제1급수급관리재료 및 제2급수급관리재료를 말한다.
3. “생산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채취하는 채취자와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자를 말한다.
4. “공급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제 4 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
2. 실태조사 실시방법 및 조사내용
3. 실태조사 시행기간
4.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가 사전에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일체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실태조사 대상)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
2. 토사 및 석회류
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
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제 6 조(실태조사 방법)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실태조사 내용) 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공급량 현황
 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 ② 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2.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자제작방법 등 현황
 3.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제 8 조(조사내용별 기준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은 별표2와 같다.

제 9 조(실태조사 결과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일체
 2.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추정방법
 3. 제13조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이 필요한 전통재료와 해당재료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필요한 전통재료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자들에게 전통재료 생산자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11조(수급계획의 수립 대상)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통재료는 제5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관리재료) ① 수급관리재료는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
2. 제2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나 시장 상황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어려운 것

②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통재료의 유형 및 종류 (제2조제1호 관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① 목 재	일반재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특수재	돌배나무, 가래나무, 산뽕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특대재	돌배나무, 가래나무, 산뽕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② 석 재	소형석재	자갈, 호박돌, 잡석 등
	일반석재	거친돌, 가공석(장대석, 사고석 등)
	특수석재	구들장, 석재절병통, 청석, 박석, 모전석, 돌기와 등
③ 기와 및 전돌	점토기와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등
	전돌	전벽돌, 포방전 등
④ 토사 및 석회류	토사류	진흙, 백토, 모래, 황토, 태토(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등
	석회류	생석회(강회), 소석회 등
⑤ 초 본 류	풀(草)	벚집, 갈대, 겨릅대, 억새, 수수깡, 띠 등
	죽재 및 관목류	산자외 율기용 나뭇가지, 대나무, 싸리나무 등
	수피류	너와, 굴피 등
	만경류	침녕쿨, 등나무녕쿨 등
	줄끈	새끼줄, 동아줄, 삼줄 등
⑥ 금 속 류	철물	구조용, 지붕용, 장식용, 창호용 등
	기타금속	철물을 제외한 금제, 은제, 청동 등 금속소재
⑦ 종 이 류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배접지(裱接紙), 백지(白紙), 태지(胎紙) 등
⑧ 직 물 류	식물성	면(무명, 광목 등), 마(모시, 삼베 등) 등
	동물성	견(명주, 비단 등), 모 등
⑨ 안료 및 염료	안료	무기안료, 유기안료 등
	염료	무기염료, 유기염료 등
⑩ 도료	식물성	법유(생들기름), 콩기름, 동유, 명유, 옷, 콩땀 등
	동물성	어유, 경유 등
	광물성	유백유, 색유, 결정유, 무염유, 근열유, 회유 등
⑪ 첨가제	여물	짚여물, 삼여물, 종이어물, 털여물, 조개껍질 등
⑫ 접착제	동물성	우교, 어교 등
	식물성	전분풀(참쌀풀, 밀풀 등), 해초풀(우뭇가사리풀 등), 느릅나무 즙(껍질) 등
⑬ 기타재료		오지관(토관), 방초막이, 유리, 산호, 골회 등

[별표 2]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 (제8조 관련)

조사내용	조사기준일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실태조사 시행일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공급자별 생산량·공급량 현황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직전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현황
4.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5.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	
5.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상 수요량

[별지 제1호서식]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 기본정보

조사일	
조사자	

상 호		법 인 번 호 1)	
주 요 품 목		설 립 연 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 체 유 형	생산자(□ 채취자 □ 가공자) □ 공급자		
영 업 소 소 재 지			

□ 세부정보

1. 고 용 인 력 (명)							
총 인원	무형문화재				자격보유자		기타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	명예 보유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2. 사 업 장 (m2, 동)							
토 지 면 적							
건 물 정 보	건물명/건물용도			연면적		비 고	
3.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용 도				수 량	

[별지 제2호서식]

생산자·공급자별 전통재료 생산량·공급량 현황

조사일	
조사자	

기본정보

상 호		법 인 번 호	
주 요 품 목		설 립 연 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 체 유 형	생산자(<input type="checkbox"/> 채취자 <input type="checkbox"/> 가공자) <input type="checkbox"/> 공급자		
영 업 소 소재 지			

총괄현황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연 도	총 매 출 액	주 요 판 매 품 목	주 요 판 매 처

(년) 생산량 세부현황

품목명	원료명	원료산지	생산량	판매량	비고

□ (년) 주요 공급처 현황

품목명	판매량	공급처	비고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 규격별 현황**

□ 총괄 사항

구분	사업 건수	예산(백만원) 총예산 공사비	목재(㎡) 일반재 특수재	석재(㎡) 특대재	기와 및 전돌(매)	토사 및 석회류(kg)	초분류(kg)	철물 (kg)	종이류 (단위)		인로 (g)	첨가제(kg)	점착제(g)
									종류1	종류2			
총계													
국가													
시도													

□ 세부 사항

○ 목재 / 석재 / 기와 및 전돌

구분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기와 및 전돌3)		
		지정 구분	사업내용	목재1) 일반재	석재2) 특수재	사용량(㎡) 특수재	분류	종류	수량 (매)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종류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		
	일반재	특수재	분류	산지	제작방법	종류	
소나무(연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파나무, 잣나무, 들깨나무, 가래나무, 산들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d < 30cm 또는 L (3.6m)	30cm ≤ d < 45cm 또는 3.6m ≤ L < 7.2m	소형석재, 거친돌, 기공석, 특수석재 종류 화강암, 안산암, 심복암, 횡무암, 시암, 응회암, 석회암, 간결암, 역암, 대리석, 편암, 장반암, 기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수원산	경희석, 안주석, 기평석, 포천석, 도곡석, 은양석, 천안석, 백운석, 재천석, 보은석, 풍천석, 음성석, 양주석, 왜관석, 경주석, 장주석, 문경석, 거창석, 마천석, 남해석, 황등석, 남원석/여수석, 고흥석, 순천석, 제주석/기타 국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	평기와 (엄기와, 수기와), 기타기와 (마세기와, 정석기와, 이항기와), 받침, 전벌돌	규격 특대, 대, 중, 소, 특소, 기타 해당 없음
	d: 원형부재의 경우 지름/ 편재 및 각재는 대각선길이 * L: 부재의 총방향 길이	d ≥ 45cm 또는 L ≥ 7.2m				수제전통기대, 수제현대기대, 기계현대기대	

○ 토사 및 석회류 / 초본류 / 금속류 중 철물 / 종이류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사도	사군구	지정 구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토사 및 석회류(4)		초본류(5)		철물(6)		종이류(7)		
						총예산	공사비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kg)	분류	종류	분류	종류	수량 (개)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분류	4) 토사 및 석회류		5) 초본류		6) 철물		7) 종이류	
	산지	종류	분류	종류	분류	종류	제작방법	종류
토사류	국산 (시도별 작성), 수입산	진흙, 배토, 모래, 황토 등	풀	벼, 갈대, 가뭇대, 예, 수수, 강, 따세 등	구조용	각석, 피석, 특대정, 대정, 중정, 소정, 극소정, 은정 등	도배지, 장판지, 청호지 등	
석회류	국산 (시도별 작성), 수입산	테토(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등	초목	신자와약기용 나무가지, 데나무, 싸리나무 등	지방용	미림석, 방연석이 외경, 철채, 철심 등	진통, 현대	배점지, 백지, 복사지, 화선지, 태지 등
		생석회(간회), 소석회 등	수피류	나무껍질, 송진, 창문류, 동나무영통 등	창호용	감편이석, 경현, 고리뭇, 돌재귀, 들쇠, 문고리, 장부석 등	현대	
			줄 끈	세끼줄, 동아줄, 삼줄 등	장식용	지배칠, 현아 등		

○ 인료 / 첨가제 / 접착제

시험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문화재명	시험내용	예신(백만원)		인료8)		첨가제9)		접착제10)				
						총예산	공사비	제작 방법	종류	사용량 (g)	제작 방법	종류	분류	중류	산지	사용량 (g)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종류	8) 인료		9) 첨가제		10) 접착제			
	제작방법	진통	제작방법	종류	제작방법	분류	원산지	원산지
항	지황, 옹황, 등황, 황토 등	현대	현대	재료명 작성	진통	동물성	우교, 어교 등	원산지
적	장단, 주사, 석간주 등	재료명 작성	재료명 작성	재료명 작성	전통	식물성	전분풀, 해초풀, 느릅나무 즙 등	국산
녹	뇌록, 석록 등	재료명 작성	재료명 작성	재료명 작성	현대	현대	재료명 작성	수입산
청	석청, 청화 등	재료명 작성	재료명 작성	재료명 작성				
무채색	페인트(홍분), 연백, 백토, 송연묵, 유연묵 등	재료명 작성	재료명 작성	재료명 작성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

□ 목재류

○ 수종별 분류

(단위 m³)

수종		크기	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총계						
침엽수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					
활엽수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					
기타	수입산 수종					
	⋮					

○ 산지별 분류

(단위 m³)

원산지		크기	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총계						
국산						
수입산						

□ 석재류

○ 성분별 분류

(단위 m³)

석재종류	형태	계	소형석재	일반석재		특수석재
				거친돌	가공석	
총계						
화성암	화강암					
	안산암					
	섬록암					
	현무암					
수성암	사암					
	응회암					
	석회암					
	각력암					
	역암					
변성암	대리석					
	편마암					
	점판암					
기타						

○ 산지별 분류

(단위 m³)

산지	크기	계	소형석재	일반석재		특수석재
				거친돌	가공석	
총계						
경기	강화석					
	양주석					
	가평석					
	포천석					
충남	도고석					
	온양석					
	천안석					
∴	∴					
∴	∴					
∴	∴					
∴	∴					
∴	∴					
∴	∴					

□ 기와 및 전돌

○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매)

제작방법	종류	기와				전돌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포방전	전벽돌	기타
총계								
〈수제기와[전통가마]〉								
〈수제기와[현대가마]〉								
〈기계[현대가마]〉 (KS기와)								

○ 규격별 분류

(단위 매)

규격	종류	기와				전돌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포방전	전벽돌	기타
총계								
표준형								
특수(이형)								

* 기와 및 전돌 규격

구분	기와		전돌	
	평기와	기타기와	포방전	전벽돌
표준형	소와, 중와, 대와	-	240×240×45mm 270×270×45mm 300×300×45mm	190×90×57mm
특수(이형)	특소와, 특대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표준형 이외	표준형 이외

□ 토사 및 석회류

○ 산지별 분류 (단위 kg)

크 기 산 지		계	토사류			석회류		
			진흙	백토	...	생석회	소석회	...
총 계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	...							

□ 초본류

○ 산지별 분류(1) (단위 kg)

종 류 산 지		계	풀(草)				죽재 및 관목류		
			벗집	갈대	겨름대	억새	...	대나무	싸리 나무
총 계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	...								

○ 산지별 분류(2) (단위 kg)

종 류 산 지		계	수피류			만경류		줄곧		
			너와	굴피	...	취녕쿨	등나무 녕쿨	...	새끼줄	삼줄
총 계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사·도	사·군 단위 작성									
...	...									

□ 철물

○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kg)

크기	계	구조용	지붕용	창호용	장식용
제작방법					
총 계					
전통대장간 제작					
현대제철소 제작					

□ 종이류

○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m²)

종류	계	건조물 문화재				동산문화재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	배접지	백지	태지	...
제작방법									
총 계									
수목한지									
기계한지									

□ 안료

○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g)

종류	계	황	적	녹	청	무채색
제작방법						
총 계						
전통안료						
화학안료						

□ 첨가제

○ 산지별 분류 (단위 kg)

크기	계	짚여물	삼여물	종이여물	털여물	조개껍질	...
산지							
총 계							
국산							
수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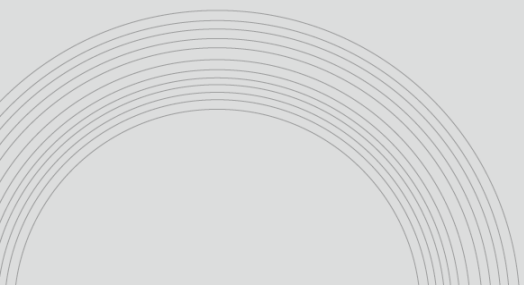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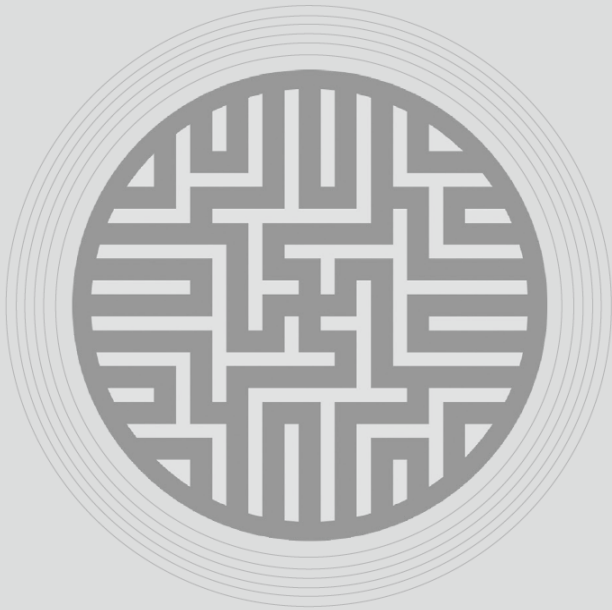
□ 접착제

○ 산지별 분류 (단위 g)

종류	계	동물성			식물성			기타	
		우교	어교	...	전분풀	해초풀	...	재료명1	...
제작방법									
총 계									
국산									
수입산									

제 2 장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제1절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1절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 문화재청 고시 제2009-74호, 2009. 9. 3. 제정
- 소관부서 : 보존정책과(042-481-4840)

【서 문】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 등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집약된 결정체로서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원형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산이 가진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 국제기구는 기념물, 고고학적 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헌장과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수리복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해왔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은 ‘베니스 헌장’과 ‘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문서’ 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헌장과 원칙에서 정한 기준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마련된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바람직한 보존·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1 장 총칙에 관한 사항

제 1 조(목적) 이 일반원칙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의 수리와 복원 등에 관한 제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유적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바람직한 보존·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건축물(歷史的 建築物) : 과거에 형성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가 있는 건축유산
2. 유적(遺蹟) : 과거에 형성된 삶의 흔적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 또는 장소
3.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
4. 수리(修理)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고치는 행위
5. 보강(補強)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
6. 수복(修復) :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
7. 복원(復原)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8. 이건(移建)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제 3 조(유적의 보존) ① 유적은 보존을 통하여 본래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유적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유적의 체계적,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와 재정적 실천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 4 조(보존의 단계) ①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 수복이, 수복보다 수리가 권장된다.

- ② 수리·수복 및 복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5 조(진정성과 완전성) ①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가치를 변형·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유적의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일체로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변 및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 6 조(학술 연구와 기록) ① 유적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조경학, 민속학 등 관련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유적의 학술연구 결과 및 수리와 복원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수리에 관한 사항

제 7 조(역사적 흔적의 존중)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시대의 흔적은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제 8 조(수리의 원칙) ① 유적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결손부분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전체와 조화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교체 및 보충재는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가역성)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향후, 새로운 문헌 및 유적의 발견, 연구 결과의 축적,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에 의하여 수정 또는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가능하도록 가역성(可逆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10 조(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 ①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적의 안전과 내구성을 위하여 전통적 기술이 부적절하거나 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 또는 경험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현대기술과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조보강은 유적의 모습 및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 3 장 복원에 관한 사항

제 11 조(복원의 원칙) ① 복원은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② 유적의 복원은 지상 또는 지하에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12 조(복원의 제한) 유적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 13 조(이건의 제한) 유적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이건은 유적의 안전과 보호 또는 원래의 위치로의 이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제 4 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 등에 따라 수리와 복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자 및 관리자의 역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유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모니터링) 유적의 관리 시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수리·복원 정보의 관리) 유적의 수리 또는 복원된 부분과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고 관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 시 재해대응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유적의 재해를 경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시설물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 및 유적의 관리를 위한 관련시설물 설치에 유적의 특성, 건물의 구성상의 균형,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관람환경의 조성) 유적의 관리자는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유적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고려 사항) 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할 수 있다.

② 근대이후의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특성과 활용방안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제2절

국보 · 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 · 관리 규정



제2절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 문화재청 훈령 제585호 2019.1.1. 제정, 2022.1.1. 일부개정
- 소관부서 : 유형문화재과(042-481-4915)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이하 ‘건조물 문화재’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물 문화재”란 법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분묘,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기초자치단체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단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4. “소유자”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문화재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
6. “정밀실측”이란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훼손 시 정확한 고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화재의 세부적인 현황 등을 실측·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란 건조물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8. “모니터링”이란 건조물 문화재의 변위·변형 여부 및 재료의 열화 상태 등을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측정·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란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중 국민적 관심도와 상징성이 크고 인위적·자연적 요인 등으로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 2 장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 원칙

제 4 조(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다음 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건조물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4.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5.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건조물 문화재의 종합적인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위해 건조물 문화재 주변의 관련유적과 인근 문화재와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7. 건조물 문화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건조물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건조물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지정구역 포함), 보호구역, 보호물과 그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한다.
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3. 정밀실측, 정기조사,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수정비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제 6 조(관리단체, 소유자·관리자 등에 의한 관리) ① 건조물 문화재가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단체, 소유자·관리자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
2. 훼손된 창문의 창호지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면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3.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문화재청장(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4. 석조물의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조치한다.
5. 건조물 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는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한다.
6.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등을 통하여 조치한다.
 - 가.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잡초 등은 제거한다.
 - 나.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토사배수로를 정비한다.
 - 다.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
 - 라.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 치기 등을 실시한다.
 - 마.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조치(비닐덮기 등)한다.
 - 바. 건조물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안내해설사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사. 화재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및 소방설비, 경비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밀실측,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정비 계획 수립 등 조사연구와 상시보존관리, 문화재 수리 등 각종 보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정기점검) ① 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재는 별지 제1호 서식, 석조문화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점검 범위는 건조물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건조물 문화재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특별점검) ① 관리자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건조물 문화재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의 제거 등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건조물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 정비 등

②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결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기술지도, 긴급보수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기록)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밀실측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조물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정밀실측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여 정밀실측을 시행한다. 다만, 정밀실측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 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마다 수정·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완료 후 결과보고서(책자 및 파일)를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기조사

제13조(정기조사 시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A(양호) :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2. 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3. 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재
4. 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5. 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6. 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제14조(정기조사 후속조치) ① 정기조사 시행 기관은 정기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후 추진
 2. 정밀진단, 모니터링,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통지
- ③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밀안전진단

제15조(정밀안전진단 시행) ①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 및 구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존 될 수 있도록 상태조사,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보수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 소유자·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다
- ③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하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D등급(정밀진단)으로 분류된 경우

2.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조물 문화재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문화재청장이 재해·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용역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 수행 중에 건조물 문화재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변형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별표 1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업무순서별 수행주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의 대가산정 기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문화재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 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건조물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A(우수) :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고 안정성이 확보된 최상의 상태
2. B(양호) :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있으나 기능 발휘 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3. C(보통)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상태
4. D(모니터링)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 있으나 진행성 여부 확인을 통한 구조안전성 판단이 필요한 상태
5. E(미흡) : 부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보수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
6. F(불량) :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응급조치 검토 및 시급한 보수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

제18조(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되면 조속히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관리

제19조(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및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건조물 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1. 노후·훼손 및 변형이 심하여 문화재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계측·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
 2. 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F등급을 받은 문화재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문화재 청장에게 선정을 요청한 경우
 3. 재난·재해 등에 의한 피해로 긴급한 문화재 안전성 진단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문화재
 4. 소관 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화재
 5. 문화재청장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
- ② 문화재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중 선정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재에서 해제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재를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당해 문화재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시행)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의 보존환경 및 구조적 안정성,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국립문화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후속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조속히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중에 문화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요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외의 모니터링 시행) ①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계측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측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7 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23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원칙)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원형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최대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2. 종합정비계획은 각종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환경이 변형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립한다.
3. 당해 문화재 주변 건물의 복원은 고증(문헌, 발굴유구, 그림·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추진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장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업의 성격별로 지원가능 여부와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종합정비계획 내 각종 사업의 시행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소유자·관리자 직접

사업,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문화재구역(지정 및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다.
2. 문화재구역 외부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고 유기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3. 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및 안내실, 관리·휴게시설, 안내판, 소방도로 등은 구역과 관계없이 적정위치에 계획할 수 있다.

제25조(종합정비계획의 활용)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

1.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예산검토 참고자료
2.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행단계에서 설계검토 및 승인 기초자료
3.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청 현상 변경 허가 참고자료

제26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발주자는 용역이 착수되면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토록 한다.
2. 소유자 및 관계자, 이용객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3. 수립된 계획은 수정·보완이 가능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보고서를 인쇄·배포하여야 한다.
4. 문화재청은 종합정비계획 승인요청이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자문결과가 반영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토록 한다.
5. 문화재청은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정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수립 시 유의사항, 자료의 제출 등은 별표3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에 따라 시행한다.
2.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은 별표4의 보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478호, 2019.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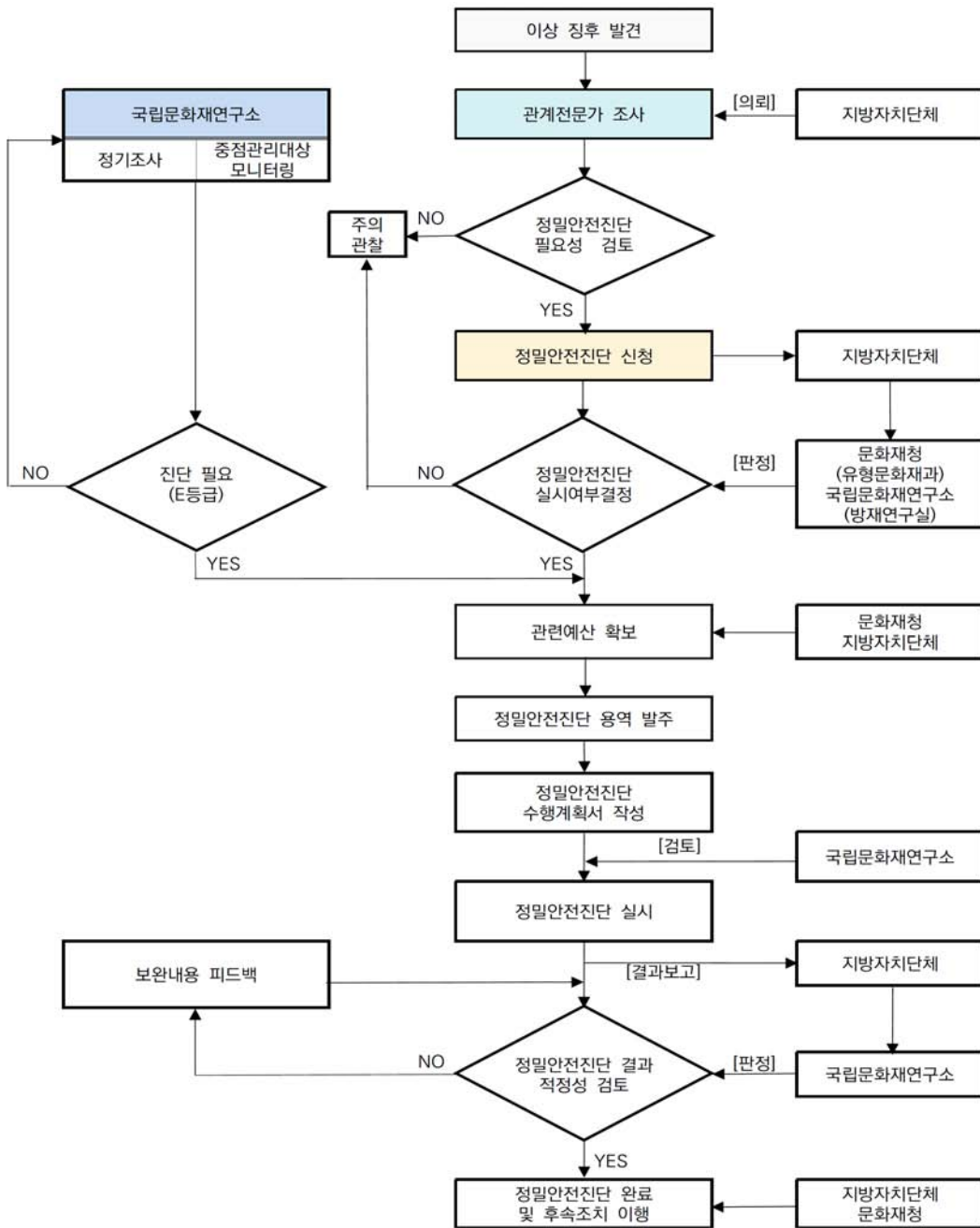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585호, 2022. 1. 1〉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밀안전진단 진행절차



[별표 2]

정밀안전진단 업무체계

업무순서	수행주체	업무내용	비고
건조물 문화재에 이상 징후 또는 중대 결함 발견	소유자, 관리자, 관계전문가, 관련기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전화, 메일, 민원 등
현지조사 의뢰	지방자치단체→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보고서 자율양식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자문회의 개최	신청 필요 또는 불필요 결정
정밀안전진단 신청	지방자치단체→문화재청(유형 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문서 신청(조사보고서 및 자문의견서 첨부)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현지조사 또는 서류 검토, 자문위원회 개최 등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여부 판정
판정 결과 통지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정밀안전진단 또는 모니터링, 주의관찰, 보수 필요 등	
관련예산 확보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다음년도 예산 요구 및 배정	긴급한 경우 당해 연도 긴급보수비 신청 및 자체예산 확보
안전진단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 작성, 발주, 계약	문화재청의 정밀안전진단 기준미련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현장 확인, 과업지시서 내용 검토 등	
과업수행계획서 검토요청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재연구소	문서 및 관련자료 제출	
수행계획서 수정·보완 및 승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	보고회 또는 자문회의 개최	자문회의 2~3회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요청	지방자치단체→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진단 보고서 및 설명자료 제출	
적정성 검토	국립문화재연구소	진단결과 심의(보수 필요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안전등급에 따른 대책방안 결정	용역업체 브리핑
적정성 검토결과 통지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 등	보완내용 피드백
정밀안전진단 완료보고	자치단체→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최종 파일 및 책자 제출	
후속조치이행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및 시행	필요 시 응급조치

[별표 3]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구분	내용
1. 계획 검토시 유의사항	<p>가. 보호구역 내부의 사업은 문화재와의 관계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p> <p>나. 보호구역 외부의 사업은 관람객의 관람편의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치·규모·형태 등을 검토한다.</p> <p>다. 향후 계획 내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 그 단위 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 추진절차 또는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이행되는 점을 감안 거시적 관점과 기본계획 수준에서 검토한다.</p>
2. 계획 수립자 유의사항	<p>가. 계획수립 관련 법,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p> <p>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p> <p>다. 문화재 세부 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다.</p> <p>라. 사업비는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자체사업(소유자, 관리자 등), 지방자치단체사업, 정부지원사업(관계부처 등) 등 개별사업별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토록 한다.</p> <p>마.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판단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p>
3. 계획 수립 기준	<p>가. 문화재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p> <p>나. 역사적 사실과 연구 및 고증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한다.</p> <p>다.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p> <p>라.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 및 활용, 사업 추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p> <p>마.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환경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p> <p>바. 문화재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고,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p> <p>사.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5년 단위의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수립하고 사업의 성격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한다.</p>

구분	내용
4. 계획에 포함할 내용	<p>가. 문화재 일반현황 조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문화재 관련 그 간의 학술 조사 및 연구, 발표 등의 현황 및 내용 ○ 문화재 구역 보존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문화재 유지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및 주변지역 토지 소유현황 ○ 문화재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 등 <p>나.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조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 이력 정리 ○ 당해문화재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검토·분석 ○ 당해문화재 보수·정비계획 ○ 문화재 주변 주요건축물 보수정비 이력 및 내용 ○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노후·훼손 현황 ○ 문화재 관련 유물·유적 및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에 관한사항 ○ 조경 및 수목 정비에 관한사항 ○ 주변 지형 및 배수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p>다. 관람·편의시설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이용현황 및 패턴 분석 ○ 관람객 진입도로 현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관람안내 및 관람객 이용 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p>라. 의견수렴 및 반영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현황 ○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 현황 등 <p>마. 문화재 소방·방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시설 설치·운영현황 ○ CCTV, 화재 감지기·경보기 등 방재시설 설치·운영현황 ○ 재해·재난 대응 소방도로 및 접근로 개설현황 ○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운영현황 <p>사. 문화재 활용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p>
5. 보고서 작성 유의	<p>가.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p> <p>나. 조사보고서는 지정된 집필방법 및 편집기준에 따라 수집된 각종 문헌자료, 실측 및 현황 조사자료, 수리실적,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서식, 도면,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기존 서술체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p> <p>다. 보고서의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생산연도, 저자, 출판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인물사진 등 관련사진을 게재할 경우 그 출처 또는 제공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고증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수록하여야 한다.</p>

구분	내용
	<p>라.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p> <p>마. 보고서에 수록하는 사진은 모두 200dpi이상으로 하며, 크기는 수록 크기에 맞춘다.</p> <p>바. 보고서 인쇄 시 흑백사진으로 인쇄되는 경우는 반드시 RAW파일에서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여 수록한다. 편집은 칼라사진으로 하고 인쇄 시 흑백으로 인쇄하는 일은 피한다.</p> <p>사. 보고서에는 별도의 간행물발간등록번호, 한국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명기하여야 한다.</p> <p>아. 보고서에 수록되는 도면은 지면에 맞게 편집하고 지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수록도면은 추후 이용자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산이 가능한 최대 스케일(지면의 크기에 맞추어)로 수록하여야 한다. 축적과 함께 바(BAR) 스케일도 함께 표기한다.</p> <p>자. 보고서 내용(도면포함)을 PDF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PDF작성 품질을 인쇄품질 수준으로 설정한다.</p> <p>차. 모든 도면은 캐드(CA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p> <p>카. 사진촬영은 건축물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경, 근경, 입면, 상세, 내부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촬영·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 한다.</p>
<p>6. 보고서 등 제출</p>	<p>가. 문화재청 검토·승인 요청 시 제출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안) 파일 및 출력물 7부 ○ 종합정비계획 브리핑 파일 및 출력물 7부 <p>나. 최종 완료된 후 제출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비계획 완료보고서 9부 제출(기관별 우편발송/문화재청 자료실 3부, 유형문화재과 3부, 국립문화재연구소 3부)

[별표 4]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예시

I. 계획의 개요

-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II. 현황 조사

-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III. 계획의 기본구상

-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검토·반영한다.
- ④ 관계전문가 및 관람객 등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IV. 종합정비 방안

-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⑤ 문화재 및 관련 시설물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VI. 미래상 및 기대효과

-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 ②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VII. 부 록

-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문화재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정기점검표(목조문화재)

문화재명	000 (종별 제 00호)		점검일시
작성 자			연 락 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건조물현황	부식 점검	접합부의 부식된 곳	
		마루 밑, 천장 속 환기 상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	
		장식물이 부식된 곳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	
	총해 점검	건물 주위에 흰개미가 있는 곳	
		터널과 같은 개미 이동로가 있는 곳	
		나무 부스러기(개미똥)가 있는 곳 나무 부스러기나 흙 등 쌓여있는 곳	
	지붕	골곡진 곳	
		잡풀이 있는 곳	
		비가 새는 곳	
		홍두깨 흙 등이 흘러내리는 곳	
		손상된 기와가 있는 곳	
		깨짐, 탈락, 동파 등이 발생한 곳 처마곡의 출렁임이 발생한 곳	
	삐대 · 창호 · 수장	이완된 부재가 있는 곳	
		부식된 부재가 있는 곳	
		손상된 부재가 있는 곳	
		갈렘, 벌어진, 벗겨짐 등이 있는 곳 창과 문의 개폐가 어려운 곳	
	기초	손상된 부재가 있는 곳	
		배부르거나 꺼진 곳	
		들뜨거나 벗겨진 곳	
		부등침하가 있는 곳	
	지붕틀 · 천장	비가 새는 곳	
		이완된 부위가 있는 곳	
		흰개미 등 벌레가 있는 곳	
		새의 집이 있는 곳 손상되거나 부식된 부재가 있는 곳	
	벽체 · 벽화	금이 간 곳	
		들뜬 곳	
		벌어지거나 벗겨진 곳	
		비가 샌 흔적이 있는 곳 결로수 흔적이 있는 곳	
	바닥 · 구들	틈이 있거나 들뜬 곳	
		이완된 부위가 있는 곳	
		손상된 부재 및 부위가 있는 곳	
		동식물의 서식 흔적이 있는 곳	
		청결 상태가 불량한 곳	
	주변 환경	배수로에 잡물이 쌓여있는 곳	
변색된 배관이나 배선이 있는 곳			
집 근처 거목의 뿌리가 있는 곳			
시설물현황	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특이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정기점검표(석조문화재)

문화재명	000 (종별 제 00호)		점검일시	
작성자			연락처	
점검내용			점검결과	
건조물현황	지반부	침하가 발생한 곳		
		부분적으로 패인 곳		
		배수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곳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곳		
	기단부	이격 혹은 손상된 곳		
		균열 및 박리, 박락된 곳		
		내부 채움재의 유실이 있는 곳		
		배부른 부위가 있는 곳		
		침하된 부위가 있는 곳		
	기단부 · 탑신부	균열(절리) 및 손상된 부위가 있는 곳		
		이격 및 방향성 균열이 발생한 곳		
		박리, 박락된 부분이 있는 곳		
		이끼류 및 지의류가 발생한 곳		
		곰팡이가 발생한 곳		
		석재 표면에 균류, 조류, 지의류, 선태류가 고착되어 변색된 곳		
		초본 식물이 자생하는 곳		
		보존 처리된 부분이 있는 곳		
	시설물현황	신재로 교체된 부재가 있는 곳		
백화현상이 발생한 곳				
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특이사항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별지 제3호 서식]

특 별 점 검 표

□ 점검 대상(문화재명·시설물명) :		
점검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①고건물	부재의 이격과 기둥의 기울기는 안전한가?	
	기단부의 균열, 침하, 이완은 없는가?	
	벽체의 배부름과 누수, 마감 박리는 없는가?	
	서까래 처짐, 파손은 없는가?	
	기와의 파손(동파 등) 이나 지붕의 훼손은 없는가?	
	창호가 없거나 파손된 것은 없는가?	
	목조 문화재 부분 침하와 기타 훼손은 없는가?	
	석재가 기울거나 석재면이 떨어진 곳, 콘크리트를 덧칠할 곳은 없는가?	
	재실, 수복방 등 바닥, 온돌은 이상 없는가?	
	고건물의 단청 상태는 좋은가?	
②석조물	지의류, 이끼류 등 균류가 자라고 있는가?	
	지반 침하에 따라 무너질 우려는 없는가?	
	훼손된 부재는 없는가?	
③기타	주변 배수시설은 문제가 없는가?	
	주변 석축 및 옹벽 등은 문제가 없는가?	
	주변 담장은 문제가 없는가?	
	기타 주변 고건물 등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는가?	
④방재시설물	소화기와 소화전 상태는 이상 없는가?	
	종합경비시스템 작동 상태는 이상 없는가?	
(점검 의견)		
점검일시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인)
자 문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 작 자			규격/크기	
수 량 / 면 적			연대/시대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단 체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7쪽 중 제3쪽)

문화재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7쪽 중 제4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7쪽 중 제5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부 속 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7쪽 중 제6쪽)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7쪽 중 제7쪽)

세목별 세부사항 부록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제3절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제3절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 문화재청 고시 제2019-164호, 2011. 11. 3. 제정, 2019. 12. 6. 일부개정
- 소관부서 : 근대문화재과(042-481-4883)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관계전문가에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재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기둥·보 등의 특수한 기법·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마당·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다.

나. 공간의 변경

-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건축 구조

- 주요 구조부는 전통 구조수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훼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 재료

-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창호 안쪽에 사용한다.
-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건축 설비

-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 방 및 공간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훼손(방·대청 통합, 개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

나. 부 역

-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생활을 위해 부덕이 부역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다.
-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다. 화장실 및 욕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냉·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가스통 등은 나무·대나무·발 등 전통 재료를 이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도록 한다.

마. 창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다.
-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목재와 같이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사. 빗물받이 및 물흡통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흡통을 설치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 가.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89호, 2013. 9.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64호, 2019. 12.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절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4절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 문화재청 훈령 제407호, 2009. 5. 22. 제정, 2016. 8. 8. 일부개정
- 소관부서 : 보존정책과(042-481-4839)

제 1 장 총 론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재를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5조에 의거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保存):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2. 보수(補修):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강(補強):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복원(復原): 문화재의 가치 또는 원형이 멸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
5. 진정성(真正性):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말한다.
6. 관리단체: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7. 시행청: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발주 기관을 말하며, 발주청 이라고도 한다.
8. 감독관: 성곽의 보존·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표본성곽: 현재 잘 남아 있는 성곽 중에서 원형이 될 만한 성벽구간을 말한다.
10. 시축성곽: 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을 말한다.

제 4 조(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성곽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1.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성곽구조물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3. 성곽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문화·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되어야 한다.
4. 성곽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5. 성곽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성곽의 보존·관리가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곽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성곽 주변 잡목 제거
2. 성곽 주변 탐방로 설치
3. 안내판 설치
4. 배수시설, 낙석방지 포함 등 안전관리

④ 관리단체는 법인, 학술기관,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 6 조(보존·관리의 기본절차) 성곽보존·관리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4.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수리 등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한다.

5.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제 2 장 기초조사

제 7 조(기초조사의 실시)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성곽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 8 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성곽에 대한 구간별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
2. 기존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
3. 성곽의 기초현황도면 작성 및 현황사진촬영을 한다. 성곽의 유실부재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이의 범위와 수량을 확인하여 표기한다.
4. 기초조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 9 조(기초조사 시행자) 기초조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초조사 기록보존 등)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상시관리 및 활용

제11조(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곽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
2. 성벽의 배부름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
3. 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
4. 낙석 및 유실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5.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상태를 점검한다.

6. 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7.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
8.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9.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
10. 성곽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점검한다.
11. 탐방로, 등산로, 전기시설, 방재시설, 조명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12. 기타 성곽의 보존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 ② 정기점검범위는 성곽 내·외부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성곽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④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성곽의 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⑤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문화재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곽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성곽 내·외부 청결유지 등
- ②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한을 통한 성곽 보존) 관리단체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성곽 안전 관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성곽의 출입 제한은 성곽의 원형보존과 관람객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관계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성곽의 공사관계자 등은 사전허가를 받아 제한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기타 성곽의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곽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성곽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성곽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곽의 활용) 성곽의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체는 성곽의 종합적인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위해 성곽 주변의 관련유적과 인근 문화재와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관리단체는 성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전시·체험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4. 관리단체는 성곽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17조(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보존·관리·활용 계획은 성곽의 진정성 확보와 주민과의 상생, 역사문화환경 및 지역의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2.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3.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 ①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발굴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 성곽의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 축성재료의 재질분석을 하여야 한다.
 3. 성곽 전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수치지형도 등) 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 가.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현황입면도
 - 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다.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분포도
 - 라.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도면, 사진자료 등
 - 마. 항공사진 등 사진자료와 조감도
 4. 기존 보수구간 및 잔존구간을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5. 성곽 구간별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성곽의 일정 구간 또는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현상보존
2. 안전대책 수립 후 개방
3. 수습부재 활용 방안
4. 수리·복원

③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수 리

제21조(수리 기본원칙) 성곽의 수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곽 축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성곽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존 부재는 최대한 원래의 위치에 재활용하고, 주변에서 수습된 기존 부재 역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3. 성곽 축조에 사용된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한다.
4. 성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하되, 하나의 성곽에서도 시대적, 지형적 조건에 따라 축조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축성을 지양하고 원형 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리한다.
5. 새로운 부재 사용은 성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재의 교체, 대체 또는 보강을 할 수 있다.
 - 가. 기존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재사용할 경우 구조물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기존의 부재가 원래부재가 아니어서 양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보강하지 아니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 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또는 심의를 받았거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에 의하는 경우
6.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성곽과 전체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리는 고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성곽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 가. 수리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 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8. 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수리 절차) 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설계도서의 작성
2. 설계승인
3. 공사발주 및 시공
4.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

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수치지형도 등 실측결과 등을 반영한다.
2.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3. 수리구간 내에 유실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의 수습 범위·수량·방법·보관장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지방서는 문화재수리 표준지방서와 별표3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5. 성곽 전체구간 중에서 원형 고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입면, 단면도를 작성하고 지방서에 명기토록 한다.
 6. 조사된 원형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7. 연혁 및 축성기법 등을 조사한다.
 8. 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9. 재질조사를 실시하여 축성되는 재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10.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방서에 명기한다.
 11.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설계도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감독관) ① 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도서의 승인) ① 시행청은 작성된 설계도서를 성실히 검토한 후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 ②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은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검토·승인한다.
- ④ 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승인할 수 있다.

제26조(공사발주) 시행청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한다.

제27조(공사감독) ① 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성곽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
 2. 기술자문 등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
 3. 착공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착공보고를 한다.
 4. 성곽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5.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착공과 동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7. 전체 시공에 앞서 표본성곽과 시축성곽을 사전확인하고, 기술지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축성곽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8.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9.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0. 준공 후 15일 이내에 수리보고서(CD포함)와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28조(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 성곽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축성곽을 축조한다.
4. 작업일지 및 자재관리대장,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재관리대장, 수습자재 관리대장, 축성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는 각각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6. 축성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성곽단면 등을 조사·사진촬영·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마다 축조 후 면석, 적심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2.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반드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13.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장기계속공사) 시행청은 성곽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할 수 있다.

1.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문화재(구체적인 연차계획 포함)
2. 5개년 이상의 중장기 추진사업
3. 총사업비 규모 30억 이상인 사업
4. 고증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

제30조(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준공도면 및 공사 전·중·후 사진
 - 나.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
 - 다.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 라. 수리보고서
 -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3.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수리보고서) ① 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4와 같다
 - ②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성곽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47호, 2009. 5. 22>

제 1 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지침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며,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지침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한다.

부 칙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49호, 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176호, 2009. 8. 28〉

제 1 조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2009. 5.22.자 부칙 제2조는 무효로 하고 재검토기한에 관해서는 본 훈령 제33조를 적용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316호, 2014. 3. 1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407호, 201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초조사항목

조사 항목	내용
현황조사	① 성곽현황 1. 성곽의 잔존·수리·유실 구간의 확인 2. 구간별 성벽의 보존 상태 확인 3. 성벽의 파손 유형 파악 - 면석 이탈 및 붕괴 - 배부름 현상 - 지반침하 - 수목의 자생 ② 성곽 부속 시설물 현황 1. 문지 2. 옹성 및 치 3. 수구 및 연지 4. 건물지 5. 여장 ③ 성곽 주변 시설물 현황 1. 성상로, 회곽로 및 탐방로 2. 전기, 방재, 편의 및 휴게시설 3. 안내판, 경고판 및 안전시설
기보수실적	① 문화재 수리공사 보고서 ② 기초 현황도면 ③ 유지 관리 기록 ④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보고서

※ 육안조사를 통하여 현황파악 후 성곽의 현황 사진, 개략적인 기술 등을 첨부한다.

[별표2]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항목	내용
계획 개요	① 계획의 배경과 목적 ② 계획의 구체적인 범위 ③ 계획의 진행과정 및 연구조직
현황조사	① 일반현황 1. 자연환경 2. 역사 문화 환경 3. 인문 지리 환경 ② 고증 및 학술조사 1. 연혁 2. 지표조사 3. 문헌조사 ③ 성곽 세부조사 1. 축조기법 2. 재료 조사 3. 성곽 지형 측량에 의한 배치도 4. 주요 구간 실측 도면 5. 내·외부 주요 시설물 및 유적조사 6. 기보수 실적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① 기본구상 1.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② 보존·관리 세부 계획 1. 보존·보수·복원 구간의 설정 및 그 근거 2. 연차별 수리 계획 3. 활용 계획 4. 관리·운영 계획
사업 추진 방안	① 법규검토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2. 현상변경 허용 기준 3. 사업과 관계되는 타 법령 4. 협력, 협조기관 및 단체 ②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1. 자원 조달 방안 2. 민간자본 유치 방안 3. 투자계획

[별표 3] 성곽공사 시방서 작성 항목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2.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항목은 대상 성곽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p>사업대상 성곽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성곽의 특징 및 특성과 구간 내 일반사항 및 특이사항이 시공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p>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대상 성곽의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내용, 예산, 기 사업내용, 사업지침 2. 문화재수리공사의 일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3. 기초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조사, 지반보강 4.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량, 기준틀 설치, 가설물 설치, 자재보관소 설치, 비계 및 수리용 덧집설치, 가설장비, 철거, 뒷정리 5. 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해채, 치석, 시공 6. 성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성, 토성, 전축성, 성문 7. 유구정비공사 8. 기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공사, 문화재보호책 설치, 문화재 안내판, 설명판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조사 및 시공방법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우수, 수구)방법 및 붕괴/훼손의 원인 규명 자료의 조사 - 지반지질조사 및 지반개량방법 제시 - 성곽 공사 동선(자재운반, 공사여건, 탐방객 안전확보)제시 ② 성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벽의 기울기 - 성벽의 단면유형 - 성벽에 자생하는 수목 - 면석의 크기, 모양, 가공정도 등 상세 - 기타 성벽의 특이사항 (각자, 상징물, 묵서 등) ③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석 및 뒤채움의 결구방식 조사 - 뒤채움의 유형 및 상세 - 성벽 파괴원인 조사 ④ 여장 (여장이 존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장의 입면구성방법, 사용재료, 기울기 - 여장단면조사, 지대석의 유무, 재료의 크기 및 규격조사, 축조법 조사 - 종안의 기울기, 크기, 유형 조사 - 기타 여장의 특이사항 조사 - 여장에 자생하는 수목 조사
기타		<p>※ ①~④의 내용은 구간별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p>

[별표 4]

수리보고서 작성항목

1. 지정별		
2. 소재지		
3. 사업개요		
4. 예산		
5. 공사추진내용	1) 계획공정표	
	2) 실시공정표	
6. 결산내역		
7. 세부공사내역	1) 재료 산지 및 수급방법	ㄱ. 산지 ㄴ. 수급 방법
	2) 공사전 현황(사진 첨부)	ㄱ. 지형 ㄴ. 성벽 ㄷ. 여장
	3) 해체공사	ㄱ. 해체 방법 ㄴ. 수리전 축조방식 ㄷ. 수리전 뒷채움 방식 ㄹ. 자문의견
	4) 설계 변경 내역(변경 전/후 도면 수록)	
	5) 시공 방법	ㄱ. 인력/기계 ㄴ. 축조방식 ㄷ. 뒷채움 방식 ㄹ. 석재가공방식
	6) 자문의견서	
	7) 준공검사서	
※ 부록 : 공정별 세부사진, 계획도면, 해체도면, 준공도면 ※ 상기 항목은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공사 시 조사된 고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호 서식]

OO 성곽공사 자재 관리대장								
일자	수불자	품명	규격	단가	산지	수량	단위	비고

제 4 절

[별지 제2호 서식]

(예 시)

OO 성 광 수 습 자 재 관 리 대 장														
(성 광 부 재 의 종 류 :)														
발생내역					처리내역				보관내역			결재		
일시	규격 (mm) [가로×세로×높이]	발생 원인	발생량		일시	처리량		처리구분 (자가, 위탁)	처리 방법	보관량		보관 방법	담당자	확인
			수량	무게		수량	무게			수량	무게			
08.09.15	300×150×450	면석 수습	30	8톤	08.10.11	20	5톤	자가	적심재 보충	10	3톤	임시 야적	감독관 김OO	
09.01.22	150×60×200	여장 해체	45	2톤										

[별지 제3호 서식]

축성 재료 분석표

분석대상																
분석목적																
분석수량				규격												
발 주 처				검사자		(소속) (연락처)				(직책)						
분석기관				분석기간												
분석내용 요약																
분석결과																
일반사항																
재료종류				생산지						채굴방법						
색상				무늬												
구성광물																
주요산지																
화학적 성분 구성비																
SiO ₂	Al ₂ O ₃	Fe ₂ O ₃	FeO	MgO	CaO	Na ₂ O	K ₂ O	H ₂ O	TiO ₂	P ₂ O ₅	MnO	계				
물리적 특성																
압축강도 (단축)	흡수율		비중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경도 (쇼아경도)		탄성파속도					
비고																

상기와 같이 재료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준공검사서

사업명 :		지정별 :	
소재지 :			
예산 :		국비 :	
		지방비 :	
사업지침			
공사내용			
공사추진내용			
		공사 전 현황	공사 후 현황
전체현황	전경사진		
	입단면도		
해체현황	사진		
	입단면상세도		
현황구세	사진		
	입단면상세도		
마감구세	사진		
	마감상세도		

상기 사업에 대한 준공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준공검사관

(인)

[별지 제5호 서식]

성곽공사 자문의견서

사 업 명			
제 목			
일 시		장소	
1. 원형확인		2. 사용재료	
3. 시공방법 및 복원방향			
4. 수정 및 기타 조치사항			

상기 사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인)

[별지 제6호 서식]

OO성곽수시점검표

조사번호(CODE) :

성곽명	OOO 성곽 (종별 제 OO호)	점검일시	
작성자		연락처	
점검구간			
	관찰내용	이상유무	위치 및 현황
성곽현황	성벽의 파손·붕괴가 일어나는 곳.	ex) 유	ex) 031~032구간 5m 지점. 성벽파손
	성벽이 기형(돌출, 배부름)으로 변한 곳		
	성벽의 면석이 갈라진 곳		
	성벽의 면석에 균열이 발생한 곳		
	성벽의 면석이 흘러내린 곳		
	성벽의 면석이 떨어져 나간 곳		
	성벽하부 지반침하가 발생한 곳		
	성벽의 상부에 수목이 자라는 곳		
	여장이 훼손된 곳		
시설물현황	부속시설물의 훼손 등 문제가 있는 곳		
	성상로 및 회곽로의 유실된 곳		
	탐방로 및 산책로의 유실된 곳		
	조명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전기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휴게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불량한 곳		
안내판, 경고판이 필요한 곳			
관리 및 활용	평가항목	등급	비고
	안내원의 활용도	상, 중, 하	
	관람객의 교육	상, 중, 하	
	관람객 수	OO 인/일	
	관람형태	상, 중, 하	
	시설물 청결상태	상, 중, 하	
	안전시설 관리	상, 중, 하	
	방재시설 관리	상, 중, 하	
	편의시설 관리	상, 중, 하	
	휴게시설 관리	상, 중, 하	
홍보물(안내책자, 안내판 등)의 활용도	상, 중, 하		
특이사항			

※ 위치 및 현황 : 첨부된 배치도의 구간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별지 제7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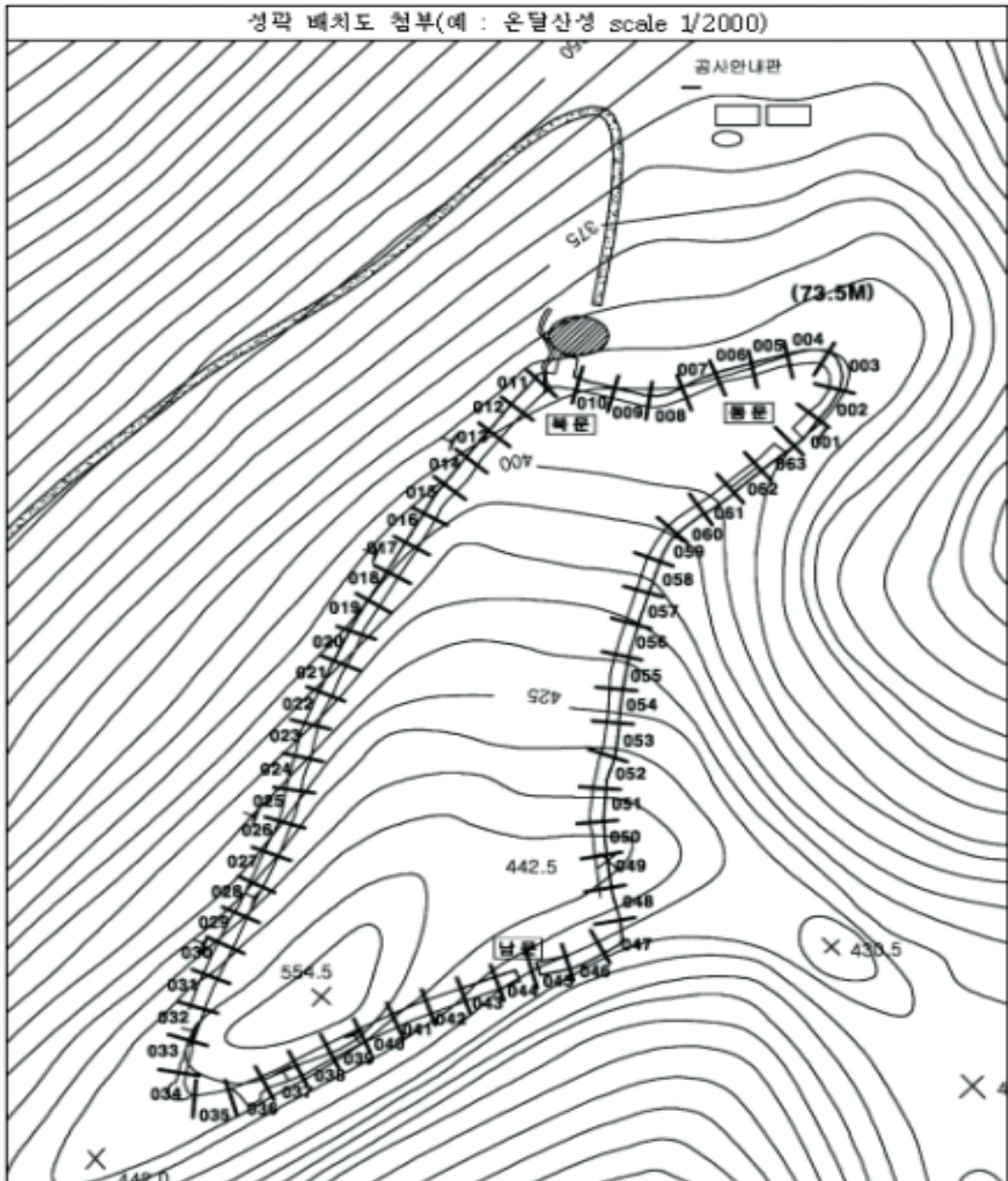
00성곽정기점검표

조사번호(CODE) :

성곽명	000 성곽 (종별 제 00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소재지						
관리주체			면적	(m2)		
조사기간			조사기관 (담당자)			
구분	점검구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성곽 현황	보존 상태	ex) 031~049				
	파괴 유형					
	부속 시설물					
시설 물현 황	편의 시설					
	휴게 시설					
	방재 시설					
관리 현황	안전 관리					
	시설 관리					
	행정 관리					
전문가의견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성명		(인)	
자문 :	소속		성명		(인)	
1. 사진첨부						
2. 기타자료 (사진, 스케치, 파손 부분 등) 기입						

※ 작성요령 첨부된 배치도의 구간에 따라 위치를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배치도 첨부



- ※ 1. 배치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이상유무가 발생한 구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 2. 구역의 설정은 성곽의 특성과 지세에 따라 20m~50m(목측을 통한 확인 가능거리)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성곽의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별지 제8호 서식]

OO성곽 보존·관리대장

작성자 : 인) 작성날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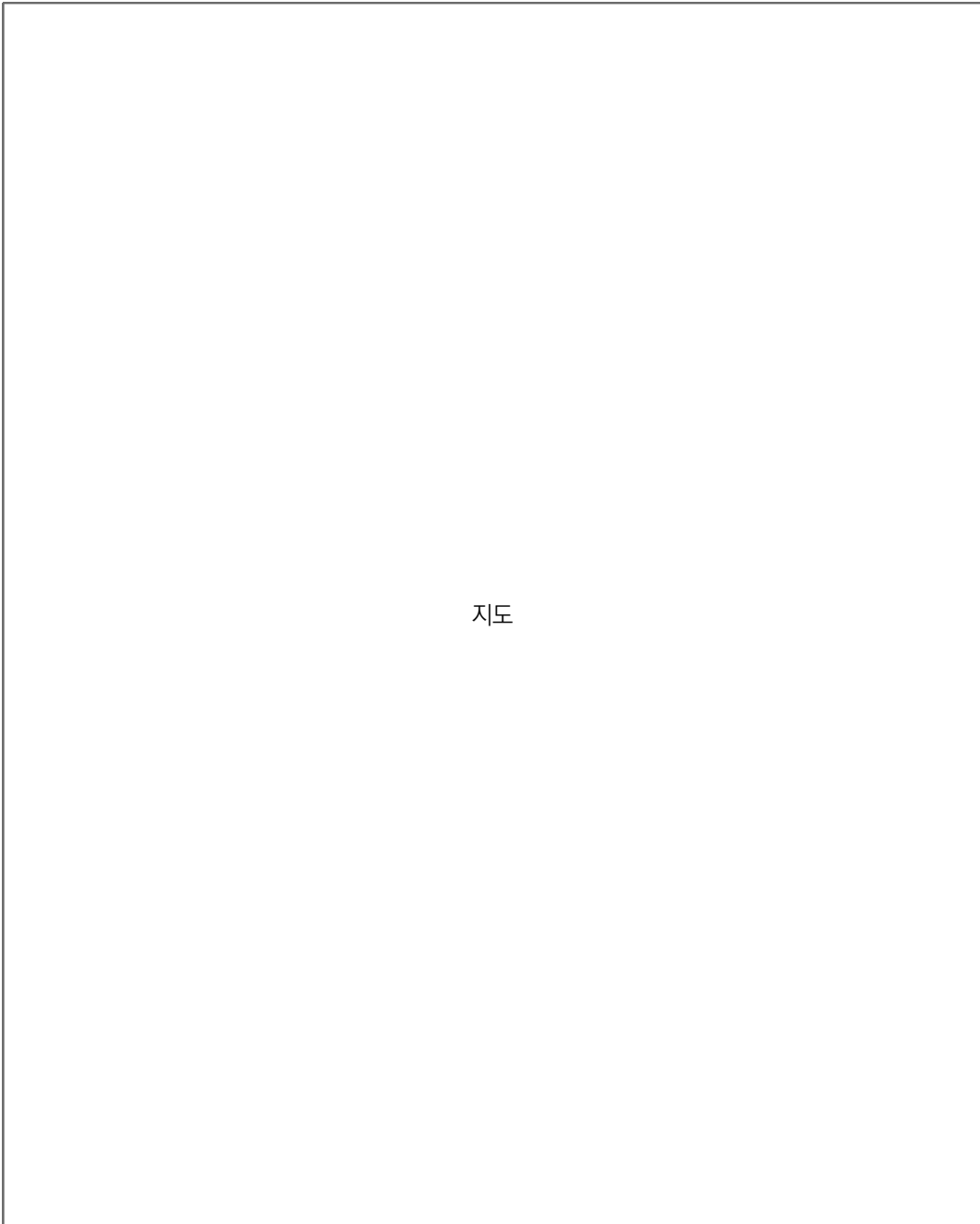
제 4 절

문화재 종별		등 급		지정번호		정식 명칭		지정년 월일	
사용재료		형식 또는 형태			축 조 법		둘 레 길 이	면 적	
소재지						관리자			
부속 시설물						건축 및 제작 년대 및 시대			
지정사유									
관 리 상 황									
일시	내용					일시	내용		

[별지 제8호 서식] (위치도)

(명칭 :)

위 치 도



지도

[별지 제8호 서식] (사진)

(명칭 :) 전 경





제5절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5절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문화재청 예규 제185호, 2009. 9. 24. 제정, 2017. 12. 13. 일부개정
- 소관부서 : 보존정책과(042-481-4840)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 3 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복원은 지양한다.

③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및 방법 등

제 4 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수립할 수 있다.

제 5 조(추진계획의 작성 등)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먼저 이에 관한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침
2.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연구용역 또는 자체검토 등)
3.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4. 추진일정
5. 향후 시행방안
6. 기타 추진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①관리단체는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에 관하여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역발주기관(관리단체)은 정비계획에 답아야 할 과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시행하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에 대한 계획을 개최 1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정비계획의 수립

제 7 조(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기) ①관리단체는 사적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②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시행 종료 이전까지 새로운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 8 조(정비계획의 체계 및 내용 등) ①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왕릉, 고분군 등이 동일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정비계획의 수립은 사전에 해당 유적과 관련되는 인물, 문학, 회화, 건축, 구비전승, 음악 등 인문학적 고증자료를 지역 향토사학자 및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문헌적 형태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 9 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적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3.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6.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8. 사적과 그 세부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한다.

제10조(사적 정비의 기본방침) 관리단체는 사적의 정비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을 적용

하여야 한다.

- 가. 기존 사적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존·정비한다.
- 나. 사적이 붕괴 위험 등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강 조치한다.
- 다. 사적의 일부가 손·멸실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과 동일한 재료와 수법, 양식 등을 사용하여 원형에 충실하게 보수 정비한다.
- 라. 사적의 특성과 그 보존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정비, 복토 정비, 보호구조물 설치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비한다.
- 마. 사적의 복원은 그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되,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제11조(사적 정비 시 고려사항) 관리단체는 정비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유적 및 유구의 정비

가. 지상부 유구 정비

- 1) 건물지의 초석, 기단석 기타 유구가 균열·파손·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건물지의 기단 및 계단의 경우에는 전체를 해체하지 아니 하고 변형·훼손된 부분만을 정비한다.
- 3) 노출 유구 중 붕괴 및 이탈 우려가 있는 유구는 제자리에 정비한다.
- 4) 유구에 나무나 잡초, 기타 지장물(콘크리트 구조물 및 인위적인 시설물) 등이 있어 유구의 보전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있거나 유구의 교란이 우려될 경우에는 뿌리 제거는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5) 배수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지반의 높이가 변형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 정비한다.
- 6) 배수로는 되도록이면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측구(토사측구)로 계획하고 지형상 불가피하게 배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석축 배수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지하부 유구 정비

- 1) 유구의 보양 및 토사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잔디·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다.
- 2) 도굴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 지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기존의 유구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3) 사적 안의 지형이 복토 또는 절토로 인하여 원래의 지반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다.
- 4)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구역은 현 지반을 절토하거나 고르기 하면 아니 되며, 복토하여 표면 고르기 등의 정비를 할 수 있다.

2. 보호구조물(보호각, 보호책)의 설치

가. 사적 안의 유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호구조물의 구조, 형태 및 기능은 유구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입방지시설이 갖추어진 보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호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호책의 높이와 형태는 보호대상 유구의 훼손정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유구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유구지역을 주변 환경과 격리되도록 설치한다.
- 2) 설치위치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고 관람 및 사진촬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 3) 보호책의 높이는 해당 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하고 관람시야가 차폐되지 아니 하도록 낮게 설치한다.
- 4) 같은 지역 안에 여러 점의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넓게 설치할 수 있다.
- 5) 보호구조물과 보호책을 설치할 때에는 유구로부터 일정간격 이격하여 유구를 훼손시키지 아니 하여야 하며, 재질·색깔 및 형태 등이 유구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변 환경정비

가. 수목의 제거

- 1) 유적 및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한다.
- 2) 전통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 조치한다.

나. 표지 설치

유구의 중요한 지점에는 유구의 위치와 유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조경 정비

- 1) 해당 유적 및 유구 안은 수목 식재 및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아니 하고 기존 상태로 보존한다.
- 2) 외래수종은 가급적 제거하고 전통수종으로 정비한다.
- 3) 조경식재는 사적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나 식생 조사를 실시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라. 관람통로의 정비

- 1) 유구를 훼손하지 아니 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관람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2) 사적 안의 통로 및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아니 한다.

마. 경계울타리 설치

사적의 경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담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4.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적 안의 문화재의 품위 및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 설치

가. 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시설에 문화재의 경관이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해당 문화재(지정구역)나 문화재가 근접한 곳을 피하여 정한다.

6. 전시시설(전시관, 야외전시물)의 설치

가. 전시관은 유물조사를 선행하여 전시계획이나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의 특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및 형태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전시할 대상물 및 유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전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라. 사적안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7. 문화재 소방방재시설의 설치

가. 사적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화전, 소화기, 방화사 및 방화수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8. 문화재안내판 등의 설치

가. 문화재안내판은 해당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 하도록 적정 규모로 하며, 문화재의 경관 및 관람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사적의 구역이 광범위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람편의 및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을 여러 장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 다. 기타 문화재안내판의 디자인 및 안내문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지침에 따른다.

제12조(정비계획의 협의) ①관리단체는 자체검토 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단체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때에는 정비계획 보고서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약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일반현황
 - 가. 사적과 그 주변의 주요 현황
 - 나. 그 동안의 보수정비, 관리 및 활용 현황
 - 다. 현안사항
2.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결과(실적이 있는 경우)
3. 정비계획 개요
 - 가. 정비계획의 목적, 수립체계 및 진행경과
 - 나.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 및 방향
 - 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대상별, 사업별)
4. 관리 및 활용계획
5.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③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가 정비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관리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보완·확정하여야 한다.

⑤영 제20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리단체가 사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4 장 정비계획의 시행

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사업의 추진) ①관리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근거로 연차별로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7호, 2009. 9.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5호,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2호, 2014. 3. 11〉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3호, 2017. 3. 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

I. 계획의 개요

-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II. 현황 조사

- 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III. 계획의 기본구상

-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작성한다.

IV. 종합정비 방안

- 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I. 미래상 및 기대효과

-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의 생애주기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③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VII. 부 록

-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사적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제6절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6절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 문화재청 훈령 제452호, 2018. 3. 15. 제정
- 소관부서 : 보존정책과(042-481-4840)

제 1 장 총 론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재를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5조에 의거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2. 보수(補修)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강(補強)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복원(復原) : 문화재의 가치 또는 원형이 멸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
5. 진정성(眞正性) :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말한다.
6.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7. 시행청 :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발주청이라고도 한다.

8. 감독관 : 서원의 보존·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다음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

1. 서원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서원의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의례와 강학 전통 등의 무형자료 및 전적·고문서·목판·금석문·건축물 등의 유형자료)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3. 서원의 전통적 양식, 배치구조 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서원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문화·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 되어야 한다.
5. 서원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6. 서원의 수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문화자료, 건축문화재, 경관 등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서원의 보존·관리가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원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보존·관리의 기본절차) 서원 보존·관리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서원 관련 자료를 일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 서원별 특성과 이에 따른 활용계획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4.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수리 등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한다.
5.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제 2 장 기초조사

제 7 조(기초조사의 실시)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서원에 관련된 유·무형의 모든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 8 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원 역사와 제향인물 자료, 역사문화 자료, 건축문화 자료, 경관, 그리고 무형의 의례와 구비전승 자료를 망라하도록 한다.

(역사문화자료)

- 1) 사회문화적 기능별로는 ① 교육, 강학 ② 제향의례 ③ 사족활동(학맥, 정치) ④ 사회교육 ⑤ 출판과 도서관 ⑥ 문화예술(경관)의 자료가 조사·정리 되어야 한다.
- 2) 조사 대상 유형별로는 ① 유적·관찬기록 ② 서원고문서 ③ 제향인물 문집 및 전적 ④ 현판, 금석기문 ⑤ 교육·제향의례 ⑥ 지명, 전설, 일화가 조사·정리 되어야 한다.
- 3) 서원자료 내용별로는 ① 제향 인물 자료 ② 연혁 변천 자료 ③ 조직과 운영 자료 ④ 교육 제향의례 자료 ⑤ 서원경제 자료 ⑥ 향촌사회사 자료가 조사·정리 되어야 한다.

(건축문화재 자료)

- 1) 건축물 배치조사에서는 ① 서원의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 ② 시설물(석조 철조, 목조, 다리, 축대 등) ③ 서원 영역 및 일정 주변의 모든 식재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 2) 개별건축물 양식과 구조에서는 서원내 모든 개별 건축물에 대해 ① 평면 ② 입면 ③ 단면 ④ 주요구조부분 상세 ⑤ 공포양식 ⑥ 창호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 되어야 한다.

(경관 자료)

- 1) 입지 관련 자료는 ①연원과 이동과정, ②입지 지형유형과 형국, 2) 전망 관련 자료는 ① 문루 강당 기문 및 관련 인물의 시문에 나타난 경관의미 해석, 3) 경관요소 관련 자료는 ①위요경관의 구성, ②진입로 구성의 특성, ③축선과 대칭구조의 특성, ④건축물의 명칭과 의미, ⑤연지와 내외 수로(구거) 특성, ⑥안마당의 경관구성, ⑦수목식재 특성, ⑧ 서원 주변 장소 경관과 관련 시문
2. 서원 일곽에 대한 기초현황도면 작성과 현황사진 촬영을 하며, 주요 건물에 대하여는 정밀 실측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원내의 주요 특징이나 기타 조사되지 않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한다.
3. 서원내의 시설물과 주변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4. 과거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

제 9 조(기초조사 수행자) 기초조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초조사 기록보존 및 정리분류의 범위)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별, 유형별, 내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 사회 문화적 기능별 분류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강학, 제향의례, 사족활동(학맥, 정치), 사회교육, 출판과 장서, 문화예술(경관)

2. 유형별 분류는 별표 1의 항목과 같다.

3. 내용별 분류는 별표 2의 항목과 같다.

4. 기초조사는 서원의 주요연혁, 제향인물, 유적 소장자료현황, 정비·보수·복원일지, 지원 사업 활동개요, 운영조직 및 재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서원 자료집 발간

제11조(서원 조사자료의 활용) 관리단체는 기초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서원 자료집(서원지)을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서원지 편찬 수행자) ① 서원, 연구자, 활용자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야별 서원 연구자(경관, 건축, 문서, 기타)가 집필한다. ③ 해당 지역 교육, 활용자가 자문 등 학제적 공동 참여한다.

제13조(서원지 편찬의 범위) 기초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원지를 편찬한다.

제14조(서원지의 활용) ① 편찬된 서원지는 서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기본적 사료가 된다. ② 스토리텔링, 교육과 체험의 소재 등 효율적 활용의 최우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상시관리 및 활용

제15조(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서원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기점검) ① 관리단체는 서원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원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
 2. 서원내 주요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시설과 배면의 배수상태를 점검한다.
 3. 시설물(탐방로, 조명, 전기시설, 방재시설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4. 서원내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
 5.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6.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
 7. 낙석 및 유실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8. 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
 9. 서원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점검한다.
 10. 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
- ② 정기점검범위는 서원 내 외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③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④ 태풍, 지진 등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 서원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⑤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문화재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서원 내·외부 청결유지 등
- ②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한을 통한 보존) 관리단체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건물의 훼손이나 기타 출입 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원형보존과 관람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기타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원 내 주요 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33조에 따라,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서원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서원 활용의 기본원칙) 서원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리단체는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전시·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서원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1.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
 2.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효과적인 교육자료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
 4. 서원의 기문, 시문자료의 조사와 해석을 통한 다중매체를 이용한 활용방안 강구
- ②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1. 서원과 연관된 건축물 외 유·무형의 모든 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
 2.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③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1. 실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
 2.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3. 조선사회를 이끈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
 - ④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의 활용
 1. 과거식 교육방식
 2.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
 - ⑤ 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서원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① 관리단체는 서원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1. 서원 내 별도로 지정된 단위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4.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 한다.
 5.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이미 원형을 훼손한 건물은 원형으로 복원한다.
 7.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인위적으로 변형 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원형을 회복한다.
- ② 서원 건축물을 사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사당,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인물에 대한 향사
 2. 강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예절교육 등
 3. 동재, 서재, 수직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제23조(사후평가) ① 서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매2년마다 사후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은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비교·분석
2. 참여자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3. 해당서원 문화의 특화 여부, 서원자료의 조사와 활용여부
4. 참여인원, 관리인원, 소요금액, 활용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5.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5 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24조(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단체는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2.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3.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 ①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학술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서원의 역사 및 관련 자료 정리
3. 서원의 건축 및 경관 수목 등 각종 현황 조사자료
4. 서원의 역사성, 정체성, 고유한 가치, 경관의 가치를 고려한 정비계획의 개념 설정
5.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분포도
6. 서원의 보존 및 정비계획
7. 활용 및 지속발전 방안

- ② 서원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 등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1.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2.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3.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및 현황 배치도, 조감도 등
- ③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 ④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① 관리단체는 서원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 할 것을 권장한다.

-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 장 수리와 보존

제28조(서원 경관의 보존) 서원 경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연지형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전저후고의 경사지형과 개방적 조망 경관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연지형을 변형하거나 높은 담장, 서원 전면 경관을 변형시키는 과도한 인위적 시설조성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3. 진입경관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계단 설치 등으로 획일적인 진입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4. 균제미 중심의 대칭적 경관 구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서원의 중정(마당)에는 가급적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후면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제29조(수리 기본원칙) 서원의 수리 시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서원 내 건축물
 1. 서원 건축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활용 한다.
 3.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 한다.
 4.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 가.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 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5. 문화재 주변의 환경까지 보호 유지 하여야 한다.
6.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7.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원의 건축양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
8.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깔기하며,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여야 한다.
9. 공중화장실은 가능한 한 서원외부에 건립하되 불가피하게 서원내에 건립할 경우에는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② 서원 주변 건축물

1. 주변경관은 현재의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한다.
2. 서원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조사를 실시한다.
3. 건축물 외부에 현대식 재료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통재료나 문양으로 서원 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4. 난방기의 실외기 등 난방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켜야 한다.
5. 계랑기, 점검구 등은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실내에 설치한다.
6. 외부 조명등은 전통건축과 어울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경관 조경

1.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2.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3.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전통조경으로 한다.
4. 경관 상 어울리지 못하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여야 한다.
5. 과거에 조성된 견치석쌓기 등 외래조경 시설물 등은 점진적으로 전통방식으로 정비한다.
6. 배수로는 노출형, 매립형 등 지형여건에 맞게 설치하며, 우수로와 오수로는 분리 설치한다.
7. 우수로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형으로 하며, 정화시설로 연결한다.
8. 배수로 석축은 전통양식으로 정비한다.
9.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그대로 정비한다.

④ 편의시설 및 조형물

1.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장내 매립, 지중화 등 고려)
2. 소화전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제작한다.
3. 음료대, 간이의자, 휴지통,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제작, 설치한다.
4. 가로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5. 가로등은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하여 노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6. 전기 통신 간선시설은 가능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한다.

제30조(수리 절차) 수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 한다.

1. 설계도서의 작성
2. 설계승인
3. 공사발주 및 시공
4.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제31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2.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3. 시방서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성한다.
4. 건물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5.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기한다.
6.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설계감독관) ① 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설계도서의 승인) ① 시행청은 작성된 설계도서를 성실히 검토한 후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 ②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은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검토·승인한다.
- ④ 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승인할 수 있다.

제34조(공사발주) 시행청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한다.

제35조(공사감독) ① 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
 2. 기술자문 등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
 3. 착공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착공보고를 한다.
 4. 적정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5.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착공과 동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7.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9. 준공 후 15일 이내에 준공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
3. 작업일지 및 자재 수불부,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재수불부, 수습자재 관리대장, 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를 작성한다.
5.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6.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사진촬영·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0.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11.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계속공사) 시행청은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할 수 있다.

1.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문화재(구체적인 연차계획 포함)
2. 5개년 이상의 중장기 추진사업
3. 총사업비 규모 30억 이상인 사업

4. 고증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

제38조(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준공도면 및 공사 전·중·후 사진
 - 나.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
 - 다.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 라. 수리보고서
 -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3.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수리보고서) ① 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 ②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되지 아니한 서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3. 15.)

제 1 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형별 조사자료 항목

항목	주요 내용	
유적	- 서원창건 유서, 제향인물 관련 유적	
관찬 기록	- 실록, 법전류, 읍지류 - 열읍원우사적, 서원가고, 동국원우록, 문헌비고, 전고대방, 서원등록 - 사마방목, 문과방목	
서원고문서	조직운영	- 유생안, 유안, 청아록, 원생안, 청금안 - 원장안, 선생안, 재임안 - 봉안시 참제록, 서당계 록명록, 모현록, 설단계권문, 동지록
	경제	- 노비안, 액외원생안, 원보안, 원직안, 관·사족의 현물증여, 왕의 사물(賜物) 문서 - 서재안 및 원납안, 보노안이나 양연보안, 원촌제역문서 - 전답안 田畷·祭器·전답도지기, 전민안, 전곡문서, 도록, 전답질 - 위토수도기 - 신공안 수호군안 - 전여기, 전장책 - 영건일기, 용하기, 의연록
	교육의례	- 서원규약, 서원절목, 입의, 완문, 강안, 학규
	제향의례	- 홀기류 - 축문·제문·고유문
현판 및 금석문	- 중수기 상량문 어제문 원규(학규) 분방기 제영문 - 묘정비 계생비 사적비 중수비 공적비 기적비	
문집 및 전적	- 문집(시·부와 같은 문학작품, 서·소·차·계와 같은 경세론과 정책건의, 서·기·발문류, 잡저, 부록 등)	
지명, 전설, 일화	- 해당 인물의 사상, 행적, 저술, 전설, 일화, 특히 해당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사실 - 제향인물의 문증자료	

[별표 2]

내용별 조사자료 항목

항목	주요내용
제향 인물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향인물 관련 금석문(행장, 신도비, 묘비, 유허비) - 추송(신원, 증직, 명정 등) 과정 고문서 자료 - 실기나 유고 등의 문집 간행 - 열읍원우사적, 서원등록
연혁 변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읍원우사적, 서원가고, 동국원우록, 문헌비고, 전고대방, 서원등록 - 서원·사우지 - 창건소, 창건통문 - 상량문, 중수기, 중수비 - 축문·제문·고유문 - 영건일기(중수도록, 회계록), 용하기, 의연록(부조기 예부기) - 건립소, 청액소 기문류
조직과 운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생안, 유안, 청아록, 원생안, 청금안 - 원장안, 선생안, 재임안(유사안) - 봉안시 참제록, 서당계록명록, 모현록
교육과 제향의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규약, 서원절목, 입의, 완문, 강안(강규), 학규 - 홀기류
서원경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비안, 액외원생안, 원보안, 원직안, 서원촌문서, 관·사족의 현물증여, 왕의 사물 관련문서 - 서재안 및 원납안, 보노안이나 양연보안, 원촌(계방촌) 제역문서 - 전답안 전답·제기·전답도지기, 전민안, 전곡문서, 도록, 전답질 - 위토수도기 - 신공안 수호군안 - 전여기, 전장책 - 영건일기, 중수도록, 회계록, 용하기, 각종 부조기
사회사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원록, 시도기, 의연록, 부조기, 통문류

[별표 3]

서원자료집(서원지) 편찬 항목

범위	주요수록내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전경(경관) / 서원건물 / 제향인물(영정, 유목, 문집, 묘역, 유적 등) / 주요 고문서, 현판, 제영문, 기타 * 일러두기 / 목차 * 서원의 건립연혁(연표)
서원경관	<p>1. 서원 입지와 전망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원의 입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의 연원과 이동 : 입지의 자연성 : 전저후고 배치 경관 : 개방성 2) 서원의 전망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 형국 : 전면 전망 특성 <p>2. 서원 경관과 주위 자연적 장소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圍繞 경관 2) 禮 경관 3) 水 경관 4) 안마당(中庭) 경관 5) 수목식재 경관 6) 주변 장소경관
서원역사	<p>3. ○○서원의 창건과 역사변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원의 창건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유서 : 건립 주체세력과 관련인물 : 지역 사족의 동향, 서원운영 주체세력의 변화 : ○○서원의 훼손과 복설, 이건, 중건과 사액 : 사액과정

제 6 절

범위	주요수록내용
	<p>2) ○○서원의 주요활동 : ○○서원의 강학활동과 인물배출 : ○○서원의 정치적 활동과 학맥 : ○○서원의 사회경제 활동</p> <p>4. ○○서원의 조직과 운영 1) 서원 조직 2) 제향 의례 3) 교육, 강학의례 4) 경제와 운용</p> <p>5. ○○서원 제향인물의 행적 * 위치 및 추배인물 1) 제향인물의 생애와 저술 2) 주요행적과 서원관련 유서 3) 후학과 추송, 현창활동 4) 관련 유적 기타</p>
서원건축	<p>6. 서원의 입지환경과 배치계획 1) 서원의 입지환경 2) 서원의 배치계획</p> <p>7. 서원건축의 양식과 구조 1) 사당의 건축양식과 구조 2) 강당의 건축양식과 구조 3) 동서재의 건축양식과 구조 4) 수직사의 건축양식과 구조 5) 기타 서원 내 부속건축물의 양식과 구조</p>
소장자료	<p>8. ○○서원의 소장자료 1) 서원건립 관련 고문서 2) 제향인물 관련 문서 3) 문중관련 고문서 4) 관련인물 자료와 금석문 5) 제향인물의 문집류와 옛 서원지</p>
관련유적 과 일화	<p>9. ○○서원 관련 문화유적 1) □□서원(관련있는 타서원) 2) 묘소와 유허지 3) 서원의 옛터 4) 정려와 비석</p>

범위	주요수록내용
	<p>9. ○○서원 일화와 전설</p> <p>1) 제향인물 관련 일화와 전설</p> <p>2)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p>
부록	<p>편집후기</p> <p>기존 서원지 원문 / 연표</p> <p>제향인물 관련 타지역 집성촌 소개</p> <p>제향인물의 타서원 제향처</p>

[별표 4]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항목	내용
계획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획의 배경과 목적 ② 계획의 구체적인 범위 ③ 계획의 진행과정 및 연구조직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 2. 역사 문화 환경 3. 인문 지리 환경 ② 고증 및 학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혁 2. 지표조사 3. 문헌조사 ③ 서원 세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료 조사 2. 배치도 3. 주요 구간 실측 도면 4. 내·외부 주요 시설물 및 유적조사 5. 기보수 실적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② 보존·관리 세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수·복원 및 복원의 설정 및 그 근거 2. 연차별 수리 계획 3. 활용 계획 4. 관리·운영 계획
사업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규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2. 현상변경 허용 기준 3. 사업과 관계되는 타 법령 4. 협력, 협조기관 및 단체 ②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 조달 방안 2. 민간자본 유치 방안 3. 투자계획

[별표 5]

수리보고서 작성 항목

1. 지정별		
2. 소재지		
3. 사업개요		
4. 예산		
5. 공사추진내용	1) 계획공정표	
	2) 실시공정표	
6. 결산내역		
7. 세부공사내역	1) 재료 수급방법	
	2) 공사전 현황(사진 첨부)	ㄱ. 전경 ㄴ. 건축물 ㄷ. 담장 등
	3) 해체공사	ㄱ. 해체 방법 ㄴ. 수리전 방식 ㄷ. 자문의견
	4) 설계 변경 내역(변경 전/후 도면 수록)	
	5) 시공 방법	ㄱ. 인력 ㄴ. 목재가공방식 ㄷ. 담장 축조방식 ㄹ. 조경 정비
	6) 자문의견서	
	7) 준공검사서	
※ 부록 : 공정별 세부사진, 계획도면, 해체도면, 준공도면 ※ 상기 항목은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공사 시 조사된 고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표 6]

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항목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예시
교육의례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단순제례→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의미 해설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전통교육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교육 및 학문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 : 교육과정, 교과서, 운영 실제, 재정, 규약(고문서, 현판 자료)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등 서원생활문화 체험 - 유림과의 토론(대화)
문화유적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포함 - 관련 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포함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 포함
인물사상 (교육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교육 - 인물유적 탐방, 인물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 주요 인물관련 (동족)마을 탐방 및 종가체험 - 서원의 記文, 詩文 자료의 조사와 번역
공간활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자료관 (전시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학습장화)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별지 제1호 서식]

서원·사우 기초조사표

명 칭	(별칭)				창건위치	
지정사항					현재위치	
주요연혁	연대	내용 (창건, 이건, 사액, 훼손, 복설, 추송, 문집 발간 등)				관련인물
제향인물	성명	생몰연대	제향년	위차	주요이력 및 제향사유, 특기사항	
건립유서	사적() 태생지 동족기반 (기타 :)					
건립주체	문인 당파 후손 향유(사림) 지방관 (기타 :)					
건물	명칭	창건	중수	규모	변 천 개 략(기록)	

제 6 절

고문서자료	종 류	수 량	시 기		내 용 개 략
현판, 비석	명 칭		연대	찬자	내 용 개 략
문 집 출판물 참고문헌	명 칭		연도	권책	내 용 개 략
특 기 사 항	정비 복원				
	지원 사업				
	기타 활동				
운영조직 및 재산					
기 타 (추가)					
임 원					
관리자	주소				전화
조사일			조사자		

[별지 제2호 서식-1]

서원 보존·관리대장

작성자 : (인) 작성날짜 :

문화재 종별	등급	지정번호	정식 명칭	지정년월일
소재지	관리자			
부속 시설물	건축 및 제작년대 및 시대			
지정사유				
관 리 상 황				
일시	내용		일시	내용

제 6 절

[별지 제2호 서식-4] (사진)

(명칭 :) 상세사진(시설물별)

사진

[별지 제3호 서식-1] 안전점검

안 전 점 검 대 장

문화재명		지정별		지정년월일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보수실적					
전 경 사 진					

B4(257×364mm)

[별지 제3호 서식-2] 안전점검

안 전 점 검 일 지

문화재명			
점검자	소속·직·성명 : 소속·직·성명 :	점검일시	
주위 환경	해안/ 평야/ 산간/ 시가지/ 공업지대/ 사찰/ 사지/ 기타()		
	대기오염		진동·소음
	통풍상태		배수·습기
	주변수목상태		기 타
주변 건물			
전체 현황			
기단부·초석			
마루·구들	마 루		
	구 들		
기둥·벽체	기 둥		
	벽 체		
공포·지붕틀	공 포		
	지붕틀		
지 붕			
부대시설	담장 및 안내판등		
	기 타		
총 합 점 검 결 과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제3호 서식-3] 안전점검

세부 중점점검내용

□ 기단부 · 초석

1. 기단 및 계단이 이완되거나 침하된 곳이 있는가
2. 기단바닥이 파여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가
3. 초석이 침하되거나 훼손된 곳이 있는가
4. 초석과 기둥이 잘 밀착되어 있는가
5. 강회다짐 또는 전돌 · 박석등이 이완되거나 훼손된 곳이 있는가
6.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 마루 · 구들

1. 건물내부 바닥의 강회다짐 · 전돌 · 박석 등이 훼손된 곳이 있는가
2. 마루부재가 부식되거나 이완 · 탈락된 곳이 있는가
3. 마루밑의 환기가 잘 되고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가
4. 구들이 함몰되거나 장판이 부식, 훼손된 곳이 있는가
5. 아궁이 및 굴뚝이 훼손된 곳이 있는가
6.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 기둥 · 벽체

1. 기둥이 부식 · 파손되거나 흰개미 · 벌 등의 벌레로 인한 피해가 있는가
2. 기둥의 기울어짐의 현상이 있는가
3. 기둥의 갈래 · 벌어짐 · 파손된 곳이 있는가
4. 기둥이 주선 · 인방 · 창방 등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에서 벌어진 곳이 있는가
5. 각 부재 및 벽체 등의 연결부에서 이완된 곳이 있는가
6. 벽체 및 벽화에 균열 · 들뜬 부분이 있거나 탈락된 곳이 있는가
7. 창호가 부식되거나 훼손된 곳이 있는가
8. 사용된 철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9. 단청의 탈락 · 퇴색된 곳이 있는가
10.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 상부가구·지붕틀

1. 상부가구의 부식·이완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2. 벽화가 균열·탈락되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가
3. 도리·장여·보가 부식·균열·이완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4. 각 부재의 연결부가 이완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5. 천장 및 반자의 부식·이완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6. 단청의 탈락·퇴색된 곳이 있는가
7. 연목·부연·추녀·사래부재의 부식·처짐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8.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 지붕

1. 지붕기와의 파손·이완 및 탈락된 곳이 있는가
2. 잡초가 자라거나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가
3. 홍두깨흙이 흘러내리거나 와구토가 이완되거나 탈락된 곳이 있는가
4. 회첨부의 상태는 양호한가
5. 박공 및 풍판의 상태는 양호한가
6.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 주변(부대)시설

1. 외부지역으로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2. 석축의 이완·침하·균열 및 붕괴된 곳이 없는가
3. 담장이 붕괴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4. 전원 및 배선·안전기 등 전기시설은 양호한가
5. 건물내·외에 화재 우려의 시설이 있는가
6. 정기적인 소방 및 방법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가
7. 홍수로 인한 사태 우려가 있는가
8. 안내판 등은 주변경관에 지장을 주고 있는가
9. 화장실 및 관람 편의시설은 청결한가
10. 마당에 잡초가 자라고 있거나 주변환경은 청결한가
11.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은 없는가
12. 경사지 법면의 붕괴우려는 없는가
13. 기타 훼손되거나 불량한 곳이 있는가



제7절

천연동굴 보존 관리 지침



제7절

천연동굴 보존 관리 지침

- 문화재청 훈령 제494호, 2009. 8. 28. 제정, 2019. 5. 28. 전부개정
- 소관부서 : 천연기념물과(042-481-4984)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과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동굴 : 지하 암체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
2. 종합학술조사 :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를 포함하는 천연동굴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종합조사를 말한다.
3. 종합관리계획 : 천연동굴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
4. 모니터링 : 개방 천연동굴과 비개방 천연동굴의 자연환경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변화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연동굴 관리자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 4 조(종합학술조사) ① 천연동굴(이하 “동굴”이라 한다.) 관리자는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작성을 위한 종합학술조사를 10년마다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동굴에 큰 변화가 있거나, 문화재적 가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학술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동굴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축척 1:5,000 지형도상), 동굴측량도(축척 1:500 또는 축척 1:1,100 평면, 종단, 횡단도 등), 3D측량도
 2. 화석, 퇴적구조, 지질구조 등 주요 지질현상이나 동굴생성물, 사물 등이 표시된 동굴측량도(축척 1:500 또는 축척 1:1,000)
 3. 동굴 내 미지형,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퇴적물 등에 대한 자료. 이들 중 학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대상에 대한 사진자료와 위치자료
 4. 동굴 내 환경자료(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농도 등)
 5. 동굴 내 동굴수의 분포 및 유량과 수질(수온, 산도, 전기전도도와 수질오염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측정 자료 등), 동굴수와 동굴 주변 지표수의 이동경로
 6. 동굴 주변 환경자료(주요 지질 및 지형과 동굴과의 관계, 동굴을 포함한 지질도, 동굴 주변의 연중 기상변화 자료, 지표수의 수질 자료)
 7. 동굴의 구조와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계절별 동굴 입구 주변의 경관사진
 8. 상세한 화보 또는 사진(사진첩과 디지털 파일)자료(주요 동굴 생성물과 미지형 및 동굴 생물 등)
 9. 문화재적 가치, 보존,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종합의견
 10. 기타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6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동굴의 보존·관리

제 1 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 동굴의 보존·관리

제 5 조(천연기념물 공개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동굴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동굴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동굴 관리자는 동굴 공개로 인하여 동굴 및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내원 인솔 관람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원과 관람기간을 정하여 자율관람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조명 및 편의시설은 동굴 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 ③ 공개동굴 관리자는 동굴 개방에 따른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공개동굴 보존 관리 및 수리, 활용, 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공개에 따른 경비로 운용할 수 있다.
- ④ 동굴 관리자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환경정화 작업 등을 위해 일정기간 휴무일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동굴 관리자는 전년도 운영 실태(관람 시간, 입장인원, 입장료 및 입장수입료)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동굴 관리자는 동굴 내 안전대피 계획을 수립하여 관람객 안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안전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종합관리계획) ① 동굴 관리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을 공개하기 전에 종합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종합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작성하며, 5년마다 관리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관리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방 이후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동굴은 즉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동굴환경분석
 2. 지형·지질·동굴생성물·동굴생물의 분포와 보존 활용에 대한 실행·관리·정비계획
 3. 동굴 활용·홍보계획
 4. 동굴 안전관리대책
 5. 기타 동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수시점검)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 보존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의 공개동굴 수시점검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동굴 관리자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동굴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자료를 관리·보존(전산매체를 통한 관리·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8 조(실태조사) ① 동굴 관리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5년마다 동굴의 보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굴 내부환경: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
 2. 동굴 외부환경: 지형·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분석
 3. 미지형과 동굴생성물의 보존상태(생장 또는 오염 및 훼손여부), 동굴 생물의 변화
 4. 녹색오염, 흑색현상, 박리현상의 실태 확인 및 발생 원인 파악, 원상 복원 및 방지대책 제안
- ②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동굴 관리자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실태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9 조(안전진단) ① 동굴 관리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5년마다 동굴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 및 지형과 관련된 낙반 또는 동굴 붕괴에 따른 관람시설의 안전성
 2. 동굴 대기 및 수질환경이 관람객에게 미치는 안전도
 3. 통로시설, 전기, 조명 등 동굴 내 설치된 모든 인위적인 시설물의 안전성
 4. 동굴의 수위가 관람객 및 시설물에 미치는 안전도
- ②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제기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안전진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비공개 보존지역의 설정)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자연환경 보존과 공개구간과의 비교 등을 위하여 비공개 보존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동굴 관리자는 제8조에 따른 동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지역과 비공개 보존지역 간 비교 조사를 통해 구역 설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보존·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1. 동굴 내의 생성물 또는 동굴생물, 동굴 수, 동굴 내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잔존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동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비공개 보존지역을 입굴하는 행위
 - 나. 일정기간 공개 제한된 동굴을 입굴하는 행위
 - 다. 동굴 내·외부의 각종 시설물을 보수·개수·신설하는 행위
 - 라. 공개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 마. 동굴 공개시간을 1일 9시간(09:00~18:00)을 초과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 바.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아. 소음·진동·약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 차. 기타 동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동굴관람 사전교육) 동굴 관리자는 공개 동굴이 천연기념물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입굴 전 안내자 또는 매체를 통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 필요성 교육
2. 관람 시 안전 주의 사항

제13조(공개 제한) 문화재청장은 동굴 공개로 동굴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동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분압, 라돈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설치 시 관계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적절한 장소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동굴 내 공개구간 관람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1일 최대 수용가능 및 1회 동시 입장가능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최대 수용가능 인원과 1회 동시 입장 가능 인원은 관계 전문가의

검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시설물의 재료는 동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설물 설치는 각 시설물 간 조화, 장애인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설물을 신설, 개·보수 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며, 멸실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조명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동굴 관리자는 동굴 내 조명시설을 신설·개수·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굴 내 벽면에 녹색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벽면의 물의 존재 유무, 토양 및 유기물을 포함한 퇴적물의 분포 고려)에 설치하며 조명의 조도를 최대한 낮추고 열의 발생이 적은 조명을 사용하여 녹색오염 발생 억제
2. 조명에 색을 넣는 것을 지양
3. 조명 설치 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객의 통행 동선과 관람객의 시야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선정
4. 조명에 갓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추는 방향에만 빛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열의 발생이 적은 조명 사용
5. 동굴 녹색오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가변성 조명 설치
6. 관람객이 없을 경우 소등되도록 하며, 비수기에는 자동센서 장치가 부착된 조명을 사용하여 항상 소등상태 유지
7. 조명 설치 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배선체계 수립

제16조(공개동굴 자체평가) ① 동굴 관리자는 공개 동굴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해 별지 제2호의 공개동굴 평가지표에 따라 3년 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년도 7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평가(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굴관리(예산, 관람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 2 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의 보존·관리

제17조(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허가사항)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굴 내부 환경변화 조사 등 동굴 보존을 위한 행위
2. 종합학술조사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3. 학술적 연구를 위해 동굴 내의 생성물 또는 동굴생물, 동굴수, 동굴내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잔존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4. 동굴입굴(촬영, 학술조사 등)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8조(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점검) 동굴 관리자는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의 보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동굴 상태(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동굴 내 대기환경 등)
2. 동굴 보호시설물 상태(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
3. 동굴 주변 환경 상태(인근지역 공사나 시설물 설치로 인한 위해 요소 등)
4. 동굴내부의 보존상태

제19조(보호시설 설치)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제20조(관계규정 준용) ①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허가사항, 관람료의 징수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준용규정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③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제21조(보고사항)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동굴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이 훼손된 때

3. 동굴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제 4 장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제22조(발견신고)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나 건조물의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발견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23조(가치평가) ① 시·도지사는 발견신고 되어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치평가를 위한 최초의 입굴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가’ 등급 : 천연기념물적 가치가 있는 동굴
2. ‘나’ 등급 :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동굴
3. ‘다’ 등급 : 천연기념물이나 시·도지정문화재적 가치는 없으나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과 미지형이 발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
4. ‘라’ 등급 : 천연동굴 자체만으로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미약하나 그 주변의 지질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술적으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동굴
5. ‘마’ 등급 :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동굴

② 등급 평가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며 관계전문가는 매장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하며, 평가 결과는 법 제11조에 의한 문화재 지정 조사 결과 등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제24조(공사 시 사전조사) 매장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 시에는 동굴의 분포와 자료를 조사하고, 동굴의 분포가 확인될 경우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방안 및 활용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25조(허가권자) 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된 동굴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의 허가
2. ‘나’ 내지 ‘마’ 등급 : 시·도지사의 허가

제26조(매장문화재 천연동굴 허가사항) ①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굴 내부 환경변화 조사 등 동굴 보존을 위한 행위

2. 종합학술조사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3. 동굴 내의 생성물 또는 동굴생물, 동굴수, 동굴내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잔존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4. 동굴의 활용
5. 동굴 입굴(학술조사, 촬영 등)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입·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입·촬영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 촬영사진 등을 첨부한 별지 제5호의 결과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시설 설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굴의 관리자는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을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공개 제한 등) ①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의 사항에 대한 미이행 및 불성실한 이행과 제16조제2항에 의한 확인평가(조사) 결과가 관람객의 안전과 동굴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따라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개 동굴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자가 부담한다.

제5장 기 타

제29조(존속기한)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훈령 제167호,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89호, 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21호, 2010. 12. 17.〉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28호,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315호, 2014. 3. 11.〉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훈령의 폐지) 기존의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훈령 제362호, 2014. 10. 31.〉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382호, 2015. 12. 23.〉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474호 2017. 3. 27.〉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82호)는 폐지한다.

부 칙 <훈령 제494호, 2019. 5. 28.>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공개동굴 수시점검표

1. 일일 점검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요개선	
1. 내부환경	① 온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 지점		자동측정장치 자료 수집(DB) * 엑셀파일로 월별 자료 정리 및 그래프 (성수기는 일변화 그래프)			자동측정장치 설치시까지는 시간대 별로 휴대용 측정기기로 측정 * 측정 자료를 연속적으로 자료화 · 09시, 11시, 14시, 17시 · 온도, 습도, CO2 : 4개 지점 이상
	② 습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 지점					
	③ CO ₂ 농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 지점					
	④ 라돈 농도 · 동굴 외부, 내부지점					
	⑤ 수위(24시간 자동측정) · 수로 혹은 호소지점(1개 이상)					
2. 관람객 현황 및 교육	관 람 객	① 1일 관람객 현황 · 시간대별, 연령별 · 개별/단체, 국가별	* 엑셀파일로 월별 자료 정리 및 그래프			매표 전산화 방식(전산화 이전까지는 수기로 작성) · 분류별 인원 파악 · 매일 기록
3. 동굴보존 및 관리 상태	악 취	악취 유무 및 정도				

- 주 : 1) 각 동굴 특성에 맞는 세부점검사항을 가감하여 작성
 2) 측정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3) 수시점검표 내용을 정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4) 모니터링 보고서에 동굴별 운영현황(관리인력, 월별 관람객 등) 기재

2. 주간 점검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요개선		
1. 시설물 상태	조명	① 배선상태				· 조명 번호 작성 · 전기 배선도 배치	
		② 비상전등 및 전원					
		③ 눈부심(휘도) 발생 유무					
		④ 전등의 청소상태					
		⑤ 전등의 정상작동 유무					
	통행	① 통로바닥				* ①~③ : 설치 시 점검	
		② 통로넓이					
		③ 통로높이					
		④ 통로상태					
		⑤ 난간상태					
	보호	① 동굴출입구 시설					
		② 안내방송 시설					
		③ 감시카메라 시설					
		④ 모니터링기기 작동 여부					
	홍보	① 안내판 개수 및 상태				· 안내판, 경고판 위치 및 번호 작성	
② 경고판 개수 및 상태							
2. 동굴보존 및 관리상태	소음 진동	① 관람시 소음				측정기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몸으로 직접 느끼는 정도임	
		② 관람시 진동					
	낙반 붕괴 오염	① 낙반 위험도				· 자연적인 흑색오염 부분은 제외	
		② 박리(박리가 심한 3곳) · 1지점 · 2지점 · 3지점					
		③ 흑색오염(흑변이 심한 3곳) · 1지점 · 2지점 · 3지점					
		④ 녹색오염(녹변이 심한 3곳) · 1지점() · 2지점() · 3지점()					
	※ 기타 점검 특기사항,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주 : 1) 각 동굴 특성에 맞는 세부점검사항을 가감하여 작성
 2) 측정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3) 수시점검표 내용을 정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4) 모니터링 보고서에 동굴별 운영현황(관리인력, 월별 관람객 등) 기재

3. 월간 점검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요개선	
1. 관람객 교육	교육	① 안내·안전요원 교육 여부				
		② 입굴 전 관람객 교육 여부				
2. 동굴보존 및 관리상태	사진 모니터링	① 지점번호, 촬영일, 지점상태				
		일반 사항				
		① 동굴주변 자연환경				
		② 동굴주변 시설물				
	③ 동굴내부 오물처리 상태					
※ 기타 점검 특기사항,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주 : 1) 각 동굴 특성에 맞는 세부점검사항을 가감하여 작성
 2) 측정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3) 수시점검표 내용을 정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4) 모니터링 보고서에 동굴별 운영현황(관리인력, 월별 관람객 등)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제16조 관련]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평가지표

대분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비 고	배점
			양호	보통	미흡		
			10	5	0		
동굴 보존	종합 학술조사	종합학술조사 실시 여부 (10년/1회)				기간 내 실시한 경우 양호 미실시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여부 (5년/1회)		×		기간 내 실시한 경우 양호 미실시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실태조사	조사 결과 지적 사항 개선 정도				○ 양호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90% 이상 개선 ※ 연도별 증가율 종료 후 1년 : 10% 종료 후 5년 : 50% 종료 후 10년 : 100% ○ 보통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60% 이상 개선 ○ 미흡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60% 미만	10
	안전진단	안전진단 실시 여부 (5년/1회)		×		기간 내 실시한 경우 양호 미실시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안전진단	조사 결과 지적 사항 개선 정도				○ 양호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90% 이상 개선 ※ 연도별 증가율 종료 후 1년 : 10% 종료 후 5년 : 50% 종료 후 10년 : 100% ○ 보통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60% 이상 개선 ○ 미흡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60% 미만	10
	수시점검	수시점검표 작성 (점검 항목별 주기적 작성여부)		×		주기적으로 작성한 경우 양호 미작성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종합관리 계획	관리계획 수립		×		기간 내 실시한 경우 양호 미실시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제 7 절

대분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비 고	배점
			양호	보통	미흡		
			10	5	0		
70점							
동굴 운영	동굴전문가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이상 : 양호(10점) ○ 1명 : 보통(5점) ○ 미채용 : 미흡 	10
	관리기구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담당계 : 양호(10점) ○ 문화재 담당계의 1개 기구 : 보통(5점) ○ 문화재 담당계의 2개 기구 이상 : 미흡(0점) 	10
	관람 수익의 재투자	관람환경 개선 투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기간 총 관람수입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20% 이상을 관람환경 개선에 투자 - 5점 : 10%~25% 미만 - 0점 : 10% 미만 * 관람환경 개선 : 동굴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제외 - 적용 대상 : 관람로 정비, 전기시설 보강, 전시실 리모델링 등 	10
	관람객 모니터링	유형별 관람객 파악 개수 - 시간별/연령별/ 단체유형별/국내외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이상 : 양호 ○ 3개 이상 : 보통 ○ 2개 이하 : 미흡 	10
	응급상황 대처	응급상황 훈련 (4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상황 대처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연 4회 이상 - 5점 : 연 2~3회 - 0점 : 연 1회 이하 	10
50점							
활용	관람 편의 시설	관람객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표지판, 경고판, 안내판, 등의 설치 개수, 위치 등 적정성 ○ 표지판, 경고판, 홍보물(리플렛 등) 등 자료의 설명문안 적정성등 	10
		안전모 등 안전 용품 비치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안전용품 비치가 필요 없는 동굴은 제외 	10
		홍보물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관람자별 특성에 맞는 자료 비치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3종 이상 	10

대분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비 고	배점
			양호	보통	미흡		
			10	5	0		
						- 5점 : 2종 - 0점 : 1종	
	동굴 특성에 맞는 관람 제도 운영	동굴 특성에 맞는 관람 제도 운영				○ 별도의 안내관광 프로그램 수행 여부 - 상시 운영 : 양호 - 일시 운영 : 보통 - 미 운영 : 미흡	10
	관람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모니터링 결과 제도 개선 실적				○ 모니터링 실시 후 6개월 이내 제도 개선 성과 - 10점 : 70%이상 반영 - 5점 : 30 ~ 70% 미만 - 0점 : 30% 미만 * 단, 제도개선 실적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제도개선 비율 대비 상위 등급으로 평가 가능	10
	안내 해설사 경진 대회 실시	안내 해설사 경진대회 실시				○ 자체 경진대회 또는 지자체 경진대회 실시 및 청 주관 대회 참여 등 - 연 1회 : 10점 - 미실시 : 0점	10
	안내 해설사 교육 실시	안내 해설사 교육 실시				○ 자체 교육 또는 지자체 청 주관 교육 참여 등 - 연 2회 : 양호 - 연 1회 : 보통 - 미실시 : 미흡	10
	인솔안내원 운영 여부			X		○ 운영 : 양호 ○ 미운영 : 미흡	10
	80점						
총 점							
○ 평가 항목별 증빙 자료 별첨							

제 7 절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 제2항 관련]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출입(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문화재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출입허가신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입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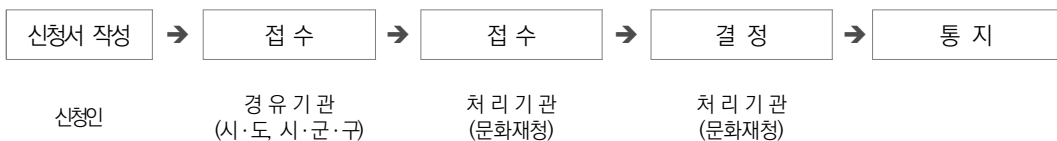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제26조 제3항 관련]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출입(촬영) 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p>「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출입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문 화 재 청 장 직인</p>		

제 7 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 서식, 제26조 제4항 관련]

동굴 출입(촬영) 결과 보고서

동굴명					
소재지					
소유자		주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소		연락처	
입굴목적					
입굴자					
동굴현황	동굴환경				
	형태 및 특성				
	생성물 및 퇴적물				
	동굴생물				
입굴결과	보호시설	잠금장치			
		보호시설			
		주변환경			
	보존상태	동굴생성물			
		미지형			
		동굴생물			
	훼손·변형	출입흔적			
		동굴 내 무단시설물 오염(낙서, 쓰레기 등)			
	주변환경				
	기타				
건의사항					
조사일시 : _____ 조사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조사자 의견 2.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3. 입굴자 전체 명단 및 입굴자 단체사진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제8절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 관리 지침



제8절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 관리 지침

- 문화재청 훈령 제532호, 2009. 8. 28. 제정, 2020. 3. 2. 폐지제정
- 소관부서 : 천연기념물과(042-481-4984)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정의한 기념물,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문화재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장 및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문화재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석 :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遺骸) 및 흔적 또는 인상 등
2. 화석산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
3.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제 4 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 가. 국가지정문화재 :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또는 화석산지
 - 나. 시·도지정문화재 : 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다. 문화재자료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2. 비지정문화재

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지정되지 아니한 화석 및 화석산지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사자료)

나.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제 2 장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 5 조(문화재 지정시 조치사항) 관리단체는 화석 또는 화석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등 통지
2.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등의 작성·보존
3. 문화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
4. 기타 화석 또는 화석산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 6 조(점검) ① 관리단체는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주변이 훼손 또는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화석산지의 균열상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출상태, 식생에 의한 노두의 훼손상태, 보호 각 내의 습도 등
2. 화석산지의 시설물(보호각, 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시설 내부 습도 등) 상태
3. 화석산지의 풍화 및 침식, 화석산지 주변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붕괴, 화석산지 내 또는 주변의 쓰레기에 의한 훼손 등
4. 화석의 훼손상태, 화석 보호시설의 관리상태 등
5.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② 관리단체는 수시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은 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화석산지의 공개제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화석산지의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내용

③ 공개가 제한된 화석산지를 출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석산지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석산지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화석산지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출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복제품 제작 및 활용) ①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복제품 제작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화석 또는 화석산지의 종합적인 복제품 제작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복제품의 제작을 위한 허가절차는 법 제35조에 규정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따른다.

③ 복제품 제작을 위한 모형(속틀)은 관리단체가 보관하며 동일 건에 대한 복제품 제작은 보관된 모형(속틀)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 3 장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 9 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법 제7조, 법 제10조, 법 제27조,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34조,

법 제35조 제1항, 법 제40조, 법 제42조, 법 제45조, 법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보고사항)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 4 장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문화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발견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의한 보존 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2조(발굴조사) ① 매장문화재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매장문화재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④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고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석 발굴과 관련한 제4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한 화석 또는 화석을 포함한 암석이 산출 및 확인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⑥ 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주상도, 화석분포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근경, 화석산출층 표면·단면사진, 층준별 화석 산출 당시 사진 및 산출된 화석 개별 사진)
3. 산출 화석 표본 및 노두 현황, 주변 지질특성 등 조사내용

⑦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질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화석산지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제6조의 지표조사 또는 매장문화재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 ②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 ③ 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는 별표 2호의 항목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화석의 보관·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화석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전문적인 연구·전시기관에서 학술자료로 보관·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화석이 산출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수습발굴을 통하여 산출된 화석표본 중 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화석표본은 화석의 보관·전시가 가능한 별표 3의 기관에 이전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석표본의 이전보존 장소 선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화석이 산출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화석표본의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선별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화석표본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④ 선별회의는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⑤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이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화석표본 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 ⑥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화석표본은 기록 유지 후 문화재청 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보 칙

제16조(다른규정과의 관계)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고시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 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532호, 2020. 3. 2.〉

제 1 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훈령의 폐지)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28호)는 폐지한다.

[별표 1]

화석산지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12조 관련)

구 분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 부 사 항	
지질시대	선캄브리아누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중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정밀발굴 제외		홀로세는 정밀발굴에서 제외한다.		
공사유형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문화재 유형 기준 적용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문화재 유형 기준 적용	
	영구·준영구 시설물 공사	정밀발굴 실시	암반 제거 공사 수반시 시대 및 화석산지 유형 기준 적용	
	성토 및 성토 후 시설물 설치(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밀발굴 유예	단순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단, 지하 암반 등 지하의 화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 발굴 실시	
	관로 매설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중 퇴적암반이 분포하는 구간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화석 문화재 유형	실체 화석	척추동물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무척추동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되는 거화석이 발견되는 경우,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식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와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의 식물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생흔 화석	척추동물 생흔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무척추동물 생흔 화석	선별발굴 실시	특이 생흔화석과 고환경, 고생대, 총서학적 가치가 있는 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생물기원 퇴적구조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미화석	선별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미화석(유공충, 방산충, 코노돈트, 화분·포자화석 등) 중 표준화석 및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특이 미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 비 고 >

1. '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화석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화석이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화석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입회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절토, 굴착, 발파 등)에 관계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화석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산출 화석의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순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13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가. 화석산지 성격	(1) 역사성 : 화석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진화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생물진화 해석 또는 지구진화사의 규명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2) 시대성 : 특정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표준 화석으로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3) 희소성 : 학술적, 물질적, 진화사적, 고생태학적,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화석문화재가 질적·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 얼마나 희소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4) 지역성 : 화석문화재가 한 지역의 현재와 과거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5) 풍부함 : 특정 화석 문화재가 동일 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화석산지와 비교하였을 때, 자료의 수가 얼마나 풍부한가를 판단한다. (6) 다양성 : 화석산지에서 얼마나 다양한 화석 문화재가 산출되는가를 판단한다. (7) 복합성 : 화석문화재 이외의 노두 상태, 암석, 광물, 지질구조 등의 특이 지질 기록을 포함한 지질 다양성의 정도를 판단한다.
나. 화석산지 상태	(1) 화석산지 내부 : 화석산지의 규모, 산출 층준 및 산출량, 산출 상태, 화석문화재를 포함하는 암석의 종류, 상태, 노두의 발달 상황, 식생, 온도와 습도, 경사도, 절리의 발달 정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풍화와 침식의 상황과 요인, 변성 정도, 화석암 관입 여부, 해파·염수·유수·지하수 등의 상황, 안전 위험 요인 등을 판단한다. (2) 화석산지 외부 : 화석산지 보호를 위한 경계 표시, 화석 관련 암석과 퇴적구조, 지질구조, 지형의 분포, 화석산지의 형상 등이 연관되어 화석산지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판단한다. (3) 화석산출 지점 주변 : 화석산출 지점의 수, 산출 층준의 층서적 연관성, 퇴적 환경의 변화 정도, 화석 문화재 이외의 지질 기록들 간의 연관성 등 화석산지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다. 활용가치	(1) 접근성 : 화석산지가 통행 가능 지역으로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화석산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2) 이용성 : 화석문화재를 지질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문화와 지질·지형 정보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 화석문화재의 위치가 주변 지역의 자연유산, 자연적 환경 또는 시설, 경관 등과 조화롭게 어울리는지를 판단한다. (4)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화석문화재가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라.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1) 보존조치 유적의 학술적가치 및 활용도가 해당 지역의 공적이익의 침해 및 사적 재산권 침해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평가 우위를 점하는가를 판단한다.
마. 사후관리 여건	(1) 보존조치 이후 체계적 관리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한다.

[별표 3]

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 보관·전시 가능 기관(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기 관
보관·전시 대상기관	(1)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화석표본이 발굴된 당해 시·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보관·전시의 위임 또는 위탁가능 기관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2) 당해 화석이 발견·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별지 제1호서식]

발굴된 매장문화재 평가표(제14조 제3항 관련)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				
		매우높음 (90이상)	높음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매우미흡 (60미만)
매장문화재 가치	역사성 및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풍부성, 다양성, 복합성					
매장문화재 보존상태	산지 내·외부					
	지점 주변					
매장문화재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성					
	주변경관 조화성 및 연계성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공·사익 침해정도)		매우미흡 (90이상)	미흡 (80이상)	보통 (70이상)	높음 (60이상)	매우높음 (60미만)
사후관리여건 (관리주체지정 및 관리방법 확정여부)		매우높음 (90이상)	높음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매우미흡 (60미만)
계		평균				
의견						
평가위원 (서명)						

※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의견 기재 시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의견제시 필요

- 각 항목별 평가 점수는 정수로 표시 [소수점 표기 안 됨 : 85.5]

※ 평가위원 3인 중 과반 수 이상이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의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9절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9절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문화재청 훈령 제457호, 2018. 5. 14. 제정
- 소관부서 : 천연기념물과(042-481-4993)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문화재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복원과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문위원”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4. “조망점”이란 문화재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5. “조망대상”이란 문화재구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경관자원을 말한다.
6. “자연경관자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말한다.
7. “역사경관자원”이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설 및 유래가 깃들여져 있는 자연적, 인공적 대상물을 말한다.

제 3 조(구역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관리단체가 영 제20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적용한다.

- ② 정비계획의 기준연도는 문화재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연도를 말하며,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에 고시된 명승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하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한다)을 범위로 하며,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문화재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다.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및 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 2 장 정비계획의 추진체계

제 5 조(정비계획 수립의 주체) 정비계획은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해당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수립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법인·단체·개인 등이 지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다.

제 6 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과 정비는 지양한다.
2.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명승 보존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3. 법 제6조의 문화재기본계획과 법 제7조의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법령, 주변 상황, 발굴조사 및 재정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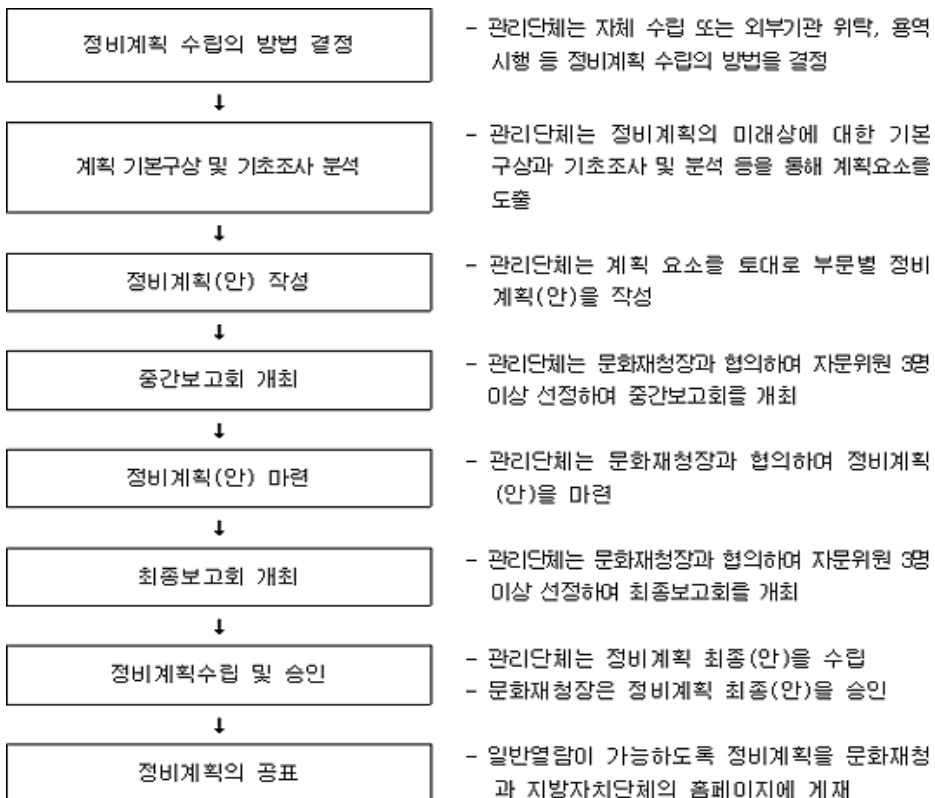
4. 문화재구역 내 신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고증자료와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 설치를 지양한다.

제 7 조(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① 관리단체는 자체인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충실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 중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의견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구성을 관계전문가(고고학, 서지학, 한문학, 전적, 역사지리, 생태, 동·식물, 지형지질, 조경,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명승 유형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와 정비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 영 제20조에 따른 수립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9 조(정비계획의 작성내용 등) 정비계획의 수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수립
2. 기초조사 및 분석
3. 부문별 계획 수립
4. 시행 및 점검
5.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승 유형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항목과 계획수립에 있어 누락이 없도록 작성한다.
 2. 명승 유형별, 시대별, 지역별 특성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 가치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표출되도록 작성한다.
 3.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토대로 작성한다.
 4. 고증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우선하여 인용하고 고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고문헌 및 원문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번역본, 해석본을 함께 작성한다.
 5. 현황자료의 조사 및 분석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며,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
 6. 명승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과 제반 여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한다.
 7.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8.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별도의 법령 및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법적·행정적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량의 자료와 증빙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부록으로 별도 작성할 수 있다.
- ② 정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와 판단을 하여야 한다.
- ③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 생성된 창작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의 저작물이 「저작

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협의 및 승인)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정비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정비계획의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제12조(정비계획의 추진개요)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정비계획의 성격과 범위,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바탕으로 추진개요를 작성한다.

제13조(정비계획의 기본구상)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1. 명승의 지정 가치 보존과 명승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것
2. 문화재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
3. 정비계획 목표연도의 미래상이 명승 보존 및 활용에 타당할 것
4. 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제 4 장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및 분석

제14조(기초조사의 목적) 기초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기초조사의 방법) ① 기초조사는 문화재에 대한 그 간 변화 양상과 기준연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기초조사는 해당 문화재구역 및 주변 환경의 역사문화·자연환경·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실측·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 도면화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기초조사는 표준 규격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16조(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 ① 기초조사의 항목은 문화재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종합분석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초조사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다만, 해당 명승 유형 특성과 현재 문화재 보존 상태에 따라 관리단체와 협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각 조사항목의 분석을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문별 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목적) 부문별 계획의 수립은 단계별,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방법) ① 부문별 계획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 ② 계획수립 대상을 보존·복원·보수·교체·신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계획수립 대상에 대한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19조(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 ① 부문별 계획의 항목은 문화재 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별표 3의 부문별 계획의 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제 6 장 정비계획의 시행 및 점검

제20조(정비계획의 공표) 관리단체는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정비계획의 시행) ① 관리단체는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연차

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착수와 시행에 필요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법 제51조(보조금)에 따라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 까지 전년도 사업을 자체 점검·평가하여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비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57호, 2018. 5. 14.>

제 1 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승 유형 구분(제2조제3호 관련)

- 자연명승 : 문화재구역 내 핵심경관자원이 자연물일 경우에 해당
- 역사문화명승 : 문화재구역 내 핵심경관자원이 인간 행동양식의 전승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유형 분류		핵심경관요소	인간의 행동양식
자연 명승	산악형	산, 봉우리, 산등성이, 고산평원, 기암괴석 및 바위 등	
	도서해안형	섬, 해안, 바닷길, 연안습지, 만, 바닷길, 해안 폭포, 해안형 대, 해안형 기암괴석 및 바위 등	
	하천·계곡형	일정한 물길을 가지는 강, 감입곡류, 시내, 호수, 연못, 유역, 습지, 하천, 계곡, 폭포, 구곡 등	
역사 문화 명승	마을숲·정원형	마을숲, 정원, 원림 정자, 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비보를 위해 숲을 형성하는 양식 ○ 경치 좋은 곳을 주택, 별서, 누, 정 등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자연과 풍류를 향유하고 경영하는 양식
	사찰형	사찰, 암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치 좋은 곳에 사찰 및 암자를 조영하는 양식
	산업기반형	옛길, 죽방렴, 다랑이논, 저수지와 독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산업, 어업, 농업, 임업 등과 관련된 행동 양식

[별표 2]

명승 기초조사의 항목 및 작성내용(제16조제2항 본문 관련)

항 목		작성 내용
문화재 환경조사	명승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명승의 지정번호, 명칭(국문,한문,영문), 지정일, 소재지, 문화재 지정구역면적, 보호구역면적, 지정가치(관보 고시문 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작성된 내용), 관리단체 등을 작성 ○ 다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주요 연혁을 연도별로 사유와 함께 작성하며 필요시 도표와 도면을 병기
	명승의 역사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승의 조성자 또는 작성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한 소개, 조성에 대한 의도, 조성시기 등을 작성 ○ 명승과 관련한 인물, 사건, 장소 등에 관한 고문헌, 고서화, 고시문, 고지도 등을 토대로 작성, 다만 경관 관련 사항은 구분하여 별도 작성 ○ 명승과 관련한 전설 및 유래, 구전설화, 세시풍속, 민속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 ○ 고건물의 현판 및 주련과 산과 하천의 암각자 등의 원문, 번역본, 해석본을 작성
	명승 내 문화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여 문화재 유형, 규모와 양식, 보존 및 훼손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
	현상변경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도의 전년도 말일(12.31.)로부터 최근 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발생한 현상변경 허가 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현상변경의 주된 요소와 원인, 문제점을 분석 ○ 작성 내용은 신청소재지, 허용기준 구역, 신청내용, 허가결과,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으로 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도에 고시된 허용기준과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현황, 최근 5년간 현상변경 허가사항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허용기준과 구역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조사·분석
인문 환경 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기본계획,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과 국토계획, 도시관리계획, 시도관리계획 등에 관한 상위계획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한사항과 도시계획조례 등을 토대로 문화재와 관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관련법령에는 해당된 주관부처를 병기 ○ 문화재 인근에 개발계획이나 택지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하여 작성 ○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나 잠재력 등의 개연성을 분석

항 목		작 성 내 용
	교통 및 동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행정구역도에 위치를 표시 ○ 문화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광역도로, 지방도로 등 접근 교통동선을 파악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방법을 조사하여 작성 ○ 문화재구역 내 차량 및 보행을 구분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현황, 주동선과 보조동선 등을 파악하여 문화재 구역 내부의 “동선흐름 현황도”를 작성
	토지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결정 조서에 고시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의 규제 및 제한 사항을 조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과 비교 분석 ○ 문화재구역과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 내 토지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을 작성
	공개구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내 비공개구역과 공개구역의 현황을 작성 ○ 비공개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작성 ○ 비공개구역의 고시문이 있을 경우 부록으로 첨부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고란의 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조사 대상 구분에 따라 작성 ○ 주요 작성 내용은 명칭, 규모, 구조, 양식, 재질, 소유자 및 관리자, 훼손 정도, 수리보수 이력, 주요 연혁 등을 작성 ○ 규모와 구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되 기존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자가 간이실측을 시행하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작성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경, 정면, 측면, 내부 등의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작성 ○ 주요 연혁은 창건, 중건, 수리, 복원에 관한 문헌기록과 수리 보수 공사에 관련된 과거의 사진, 도면 등을 수집하여 기준연도와와의 차이를 분석 ○ 훼손정도는 조사자가 전체파손, 일부파손, 유실 및 탈락, 균열과 마모, 이완, 풍화상태 등에 대해 육안으로 개략 조사하여 정비범위(보존, 복원, 보수, 교체, 신설 등)를 작성 ○ 건축물에 편액과 주련이 있을 경우에는 수량과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상세 촬영 사진
	이용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승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거나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작성 내용은 관람객의 이용시간(동·하절기), 관람의 목적, 관람의 빈도, 관람의 유형, 관람의 만족도, 관람의 요구사항, 계절별 이용 성수기와 최대 이용 피크시간 등을 조사하여 작성 ○ 조사된 자료를 통해 방문 이용 행태와 이용자 특성과 추이를 파악하여 작성

항 목		작 성 내 용
	수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단체가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관람료 및 이 외에 발생하는 수입 징수 현황을 작성 ○ 수입료에 대한 수익자의 부담률 등 사용현황을 작성
	관리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단체가 문화재구역의 관리를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관리조직, 인원수 등을 조사 작성 ○ 문화재구역 내 부대시설(주차장, 전시관, 매점 등)의 운영방식이 다를 경우 별도로 조사하여 작성
	방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가장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응급기관 등의 위치와 도달 시간, 비상연락망 등을 조사하여 작성 ○ 해당 문화재의 재난 및 화재, 응급구조상황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관별 업무분담 및 행동 요령 등을 작성 ○ 소화 및 안전방재시설물 현황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미설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 작성
	문화재 주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재의 주변에 분포된 중요 도시기반시설 및 상가 등 주변 중점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작성 ○ 지역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관할 행정구역 내 문나화재, 관광자원 등을 조사하여 지형도면에 작성
	관련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재구역 내 민속행사 등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관할 행정구역 내 지역축제, 지역 특산품 등을 조사하여 작성
	문화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관광사업소 등 문화재정부가 홍보되어 있는 현황과 수록 내용을 작성
	현안 및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지역 내외 지역 거주민 및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방문객의 이용 불만 등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및 문제점을 조사 작성
자연 환경 조사	기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주변에 미치는 연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 풍속, 계절별 풍향, 강수량, 평균습도, 강설량, 풍향, 천기일수 등을 표 또는 그래프로 작성 ○ 다만 필요시 열섬현상, 특징적 기상현상, 안개발생지, 바람길 등 미기후가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작성
	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도를 바탕으로 지질분포, 암석노출부 등을 표시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암괴석 등 특이한 지질을 도면에 표시하여 작성
	지형·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도를 통해 문화재구역 내 지형·지세를 파악하고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보전해야할 중요한 지형을 분석하여 작성 ○ 지형분석도는 산악지·구릉지·평탄지·저습지·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

항 목		작 성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지형도의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통하여 표고분석, 경사도 분석을 작성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토양도를 활용하여 토양도를 작성 ○ 수목 훼손 등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에는 토양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음
	수계 및 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수계 상에 있는 하천의 명칭과 하천 등급, 하천의 연장과 유역 면적, 퇴적지, 침식지 등 하천의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 ○ 문화재구역 내 하천·계곡·호수·연지 등이 있을 경우 특성, 수량, 홍수위, 저수위, 길이, 폭(평균, 최대, 최소), 평균수심을 조사하여 작성 ○ 문화재 주변에 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댐, 저수지 등은 도면에 표기하여 작성 ○ 하천, 호소, 호수의 수량과 수질에 대한 정보, 호안의 상태, 선착장의 시설 등을 조사하여 작성 ○ 연못의 입·출수구의 보존상태, 개수로와 암거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작성
	식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제작된 수치임상도, 현존 식생도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 식생현황을 파악하여 작성 ○ 정밀식생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천연기념물(식물), 경관목, 우수임상군락, 희귀식물, 보호수, 보호식물, 침입성 외래수종 등을 표시한 식생분포도를 작성
	동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자료의 활용 또는 현장조사에 의하여 주요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집단 서식지, 산란처, 도래지,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여 야생동물분포도를 작성 ○ 명승 구역 내 포유류, 조류, 어류 등 서식하는 동물의 종류와 분포지 및 서식 환경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상에 대한 현황을 작성 ○ 현황을 토대로 종다양성, 우점종, 향토 희귀종, 토착 동물 등에 대해 분석하여 보호할 대상의 동물 등을 제시 ○ 보호할 동물의 서식 및 생육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작성
경관 조사	경관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경관자원과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주요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조사하여 작성 ○ 작성내용은 경관적 가치, 분포 위치(좌표), 표고, 조망거리, 조망범위 등을 조사하여 도표화 및 도면화하여 작성
	경관 저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경관자원의 조망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지물의 위치와 규모, 침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작성 ○ 경관 저해물로 제거 대상, 경관 저해물에 대한 차폐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표화 및 도면화하여 작성

항 목		작성 내용
	가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구역 내에서 가시 빈도 및 가시 강도가 높은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등급을 반영한 “문화재구역 내 가시권도”를 작성 ○ 가시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색상이 짙을수록 가시효과가 높도록 작성
	외부 조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외에서 명승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을 선정하여 명승과의 거리, 명승 조망범위 등을 조사하여 주변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요소를 도출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명승을 포함하여 국내·외에 현존하는 문화재를 사례지로 선정하여 직접조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에 필요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작성 ○ 다만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종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결과(문화재환경, 인문환경, 자연환경, 경관조사, 사례조사 등)를 토대로 명승의 잠재적 가치를 비롯하여 계획수립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기회와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주요 점검항목을 도출하여 작성 ○ 종합분석을 통해 보존·정비(복원·보수·교체·신설)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작성

[별표 3]

명승 부문별 계획의 수립 항목 및 작성 내용(제19조제2항 관련)

항 목		작 성 내 용
문화재 보존 계획	문화재 구역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안)을 반영한 “문화재구역도”를 작성 ○ 특별한 여건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구역을 축소 조정하지 않으며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문화재구역 내 훼손 및 보존 상태를 감안하여 비공개구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비공개구역의 위치, 면적과 비공개의 명확한 사유를 작성 ○ 문화재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척이나 편입될 구역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문화재 복원/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문헌 및 고증자료를 토대로 해당 문화재의 복원, 보수, 발굴, 보존처리 등에 관한 “문화재보수정비계획” 또는 “문화재복원계획”을 작성
인문 환경 조성 계획	건축물 및 시설물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및 시설물 정비계획”은 현황조사 대상별로 수립하되 보수, 증축, 개축, 신축, 이전 설치, 철거 등을 작성
	관람환경 개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에 적합한 연간 적정 방문객 수용량, 문화재 관람유형, 설문조사 시 개선사항, 이용자 만족도 증진을 위한 사항, 명승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토대로 작성
	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길, 진입로, 탐방로의 현황조사 및 경관분석(역사경관자원, 자연경관자원)을 토대로 보행동선, 차량동선, 관리 동선을 분리하여 보수와 신설구간을 구분하여 작성 ○ 동선의 흐름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작성 ○ 동선의 포장 상태 및 훼손 등을 고려하여 작성
	활용 및 홍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문화재와 연계방안, 지역 축제 및 민속행사 활용방안, 특산품 개발 및 홍보 등 작성 ○ 외부 조망점과 연계한 관광 활용 등 연계방안 작성
자연 환경 조성 계획	지형정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질·지형·지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성·절토 사항을 반영한 “지형 정지계획도”를 작성 ○ 기존 지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작성
	수계정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문(입수·퇴수구 등), 수계 분석을 통해 문화재구역 내에 적정 유량 보존 등을 위한 “수계정비계획도”를 작성

항 목		작 성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문·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작성 ○ 문화재 구역 내 하천, 연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작성
	토양개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 등을 작성
	식생정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분석을 통한 “식생정비 및 식재 계획도”를 작성 ○ 수목 숙아베기, 수림 갱신, 경관 저해목 및 고사목의 제거, 가지치기 등 수목 정비에 관한 사항 작성 ○ 후계림 조성, 산림 복원, 수목이식 및 보식 등 수목 식재에 관한 사항 작성 ○ 장기적으로 수목 천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적 수목 교체계획”을 작성
	동물보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상 분석을 통해 동물 생육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보존 관리계획”을 작성
경관 계획	경관정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경관자원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여 명승에 대한 경관 향유 방법, 조망 기회 확대 방안, 경관 저해 시설 제거 또는 차폐 방법(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복원, 보수, 철거, 신설 등)에 대한 “경관정비계획도” 작성 ○ 명승 경관의 우수성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조망점을 발굴하여 기존 조망점과 연계하여 작성
	경관탐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내에서 우수경관 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 등을 반영한 “경관탐방계획도”를 작성
관리 운영 계획	운영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소유주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한 운영효과, 조직의 규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재구역 내 보존관리 방식을 직영 또는 위탁방식 등으로 작성
	방재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상시적 관리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의 점검주기와 점검내용에 따라 “연간점검계획표”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운영 - 소화 방재시설 등 안전점검 ○ 안전점검 주기는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기상변화 및 여건을 분석하여 해빙기, 장마기간 종료 후 등은 필히 점검하도록 함 ○ 도발적 훼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점검사항과 보고 내용 등에 대한 행동요령과 보고양식을 작성 ○ 사고 조치 후 결과에 대한 점검 주기와 점검 내용을 작성
	수목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충해 예방 관리계획은 문화재 구역 내 분포하는 수목과 임상 보존에 필요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시기와 방제량,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작성

항 목		작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사목, 고사지 제거, 잡초 및 잡풀 제거 등 수목 생육에 필요한 연간 유지 관리사항을 작성
종합 추진 계획	사업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승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사업을 단계별로 연도별 중장기적으로 작성 정비계획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조직을 작성
	재원 조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계획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재원조달계획은 「문화재보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도비 지원, 지자체 자체 재원 마련 등을 구분하여 작성

비고 : '인문환경조사' 중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조사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조사 대상〉

구 분	내 용	현황조사 대상
역사적 건축물 및 시설물	역사적 인물, 사건 및 유래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	고건물, 전통석축, 전통담장, 성벽, 연지, 영지, 탑, 조형물, 괴석, 석교, 목교 등
일반건축물 및 시설물	명승 내 보존관리, 방문객의 편의 및 관람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건축물과 시설물	관리소, 매표소, 매표점, 전시관, 홍보관, 화장실, 판매점, 일반음식점, 석축, 담장, 연못, 조형물, 음수대, 조명기구, 방송시설, 전기시설, 안내판, 이정표 등
소방 및 안전 방재시설물	명승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물	CCTV, 소화전, 소화기 등 방범설비와 소방설비, 보호웬스, 낙석방지망 등 보호책 등
포장 및 지하구조물	건축물 및 시설물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물	탐방로 및 진입로 포장, 정화조, 우수처리시설, 하수관, 수도관, 전기 및 가스관 등의 지하시설물의 현황과 공중화장실과 취사장 등



— 제10절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10절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 문화재청 예규 제224호, 2012. 9. 10. 제정, 2020. 11. 2. 일부개정
- 소관부서 : 활용정책과(042-481-4744)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고품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주체 및 민간주체가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2호에 따른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경관적·미적·기능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재주변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 중 '별표 1'에 정의된 시설물과 '별표 1'에 정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기타 시설물을 말한다.
3. '면단위문화재'라 함은 궁궐·사찰·왕릉·민속마을 등과 같이 일정 공간 안에 다수 문화재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4. '점단위문화재'라 함은 당간지주·비석 등과 같이 단일 또는 일부 시설물이 소규모로 설치되는 문화재를 말한다.
5. '자연유산'이라 함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같은 자연 상태 그대로 형성된 문화재를 말한다.
6. '인문유산'이라 함은 유적 및 건조물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공된 문화재를 말한다.
7. '공공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8. ‘민간주체’라 함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를 포함한다)와 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시·도지정문화재(그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와 그 외 미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준용할 수 있다.

③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원칙

제 4 조(기본방향)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품격을 지키고 한국적 공간철학을 담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2.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는 절제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3. 문화재를 모든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범용 디자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응하는 디자인: 문화재의 형태·재료·색채·양식을 반영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며 돌출되지 않는 순응하는 디자인을 한다.
2. 간결한 디자인: 복잡한 디자인 요소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문화재가 강조되는 간결한 디자인을 한다.
3. 비우는 디자인: 문화재의 품격을 저해하는 위해(危害)시설물은 가리거나 숨겨 비우는 디자인을 한다.
4. 절제 있는 디자인: 문화재를 압도하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절제된 디자인을 한다.
5. 범용 디자인: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다.
6. 질서 있는 디자인: 무분별한 배치나 혼잡스러운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되고 정리된 배치로 질서를 구현하는 디자인을 한다.

제 3 장 영역별 공공디자인 기본기준

제 6 조(공간특성별 기준) ① 면단위문화재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고 문화재에 순응하는 규모·형태의 디자인을 연출한다.
2. 공공시설물은 해당 문화재의 정체성을 반영한 형태·재료·색채의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통일성을 유지한다.
3. 유사기능 또는 동일기능의 시설물은 통일감 있게 디자인한다.
4. 통합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시설물의 배치면적 및 설치수량을 간소화한다.

② 점단위문화재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왜소한 점단위문화재를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이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2. 낮은 인지성을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제 7 조(문화재별 기준) ① 인문유산의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품격을 거스르지 않도록 복잡하거나 과도한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고 문화재가 돋보이게 간결한 요소로 디자인한다.
2. 고풍택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장처리 또는 마감처리를 하여 이질감을 완화한다.
3. 문화재와 인접한 시설물의 색채는 문화재 색채를 추출하여 저채도의 배색으로 이미지가 연계되도록 한다.

② 자연유산을 공공디자인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적인 형태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나 이질감을 주는 정형화된 형태를 지양한다.
2. 자연유산의 고유재료와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재질적인 통일감을 연출하고, 최소한만 가공하여 원재료의 특성을 살린다.
3. 자연경관의 색보다 저채도색·저명도색을 사용하여 주변에 순응하는 색채 계획을 한다.

제 8 조(관리주체별 기준) ① 공공주체가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행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공공주체 간에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담아 문화재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한다.
2.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물 간에 이질감을 없애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체의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르도록 계몽·유도한다.
1.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보다는 이 지침과 일관성 있는 시설물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2.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배치, 과도한 규모, 다양한 형태 등으로 문화재가 왜소화되거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 9 조(시설물별 공공디자인 기준) 제2조 제2호 따른 시설물의 개념 및 배치·규모·형태·재료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준은 ‘별표 2’의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문화재 유형별 공공디자인 상세 기준

- 제10조(유형별 상세 기준 개발·보급) ① 공공디자인 관리주체가 문화재 성격상 문화재 유형별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상세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리주체(문화재청은 제외한다)가 문화재 유형별 상세 기준을 설정하거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의 의견이나 행정 지도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공공디자인의 관리

- 제11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 문화재청장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계획 또는 설계 등을 자문하기 위해 ‘문화재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관·건축·조경·디자인 등의 관계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제12조(공공디자인 관리) ① 공공주체가 문화재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계획단계에서 ‘별표 3’의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공주체는 민간주체가 문화재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시설물을 계획·설계·시공·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공공주체에게 ‘별표 3’의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12호, 2012. 8.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51호, 2015. 9. 1.>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62호, 2016. 3. 28.>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77호, 2017. 4. 20.>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224호, 2020. 11. 2.>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종류(제2조 제2호 관련)

구분	분류	비고
공공건축물	관광안내소, 화장실, 기념품판매소, 매표소, 관리사무소, 주차요금소, 경비초소, 수표시설 등	
공공시설물	안내판, 휴게의자, 그늘시렁(퍼걸러),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휠체어·유모차보관대, 경사로, 휴지통, 공중전화함, 자동판매기함, 광고시설물, 차량통제대, 보호울타리, 안전울타리, 경계울타리, 화분대, 소화시설, 분전함, 점검용 덮개, 우수용 집수정덮개, 수목보호대, 수목지주대, 부속시설 가림막, 지주시설물, 보안등, 경관조명등, 보행등, 벽부등, 공사용 가설건물, 공사용 가설울타리, 이동식 통제울타리 등	
행사시설물	임시건축물, 천막시설물, 현수막시설 등	

[별표 2]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안내판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를 안내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문화재의 유형과 특징을 반영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보행 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산된 안내시설 또는 관련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안내판의 기본 종류는 해설안내판과 기능성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등으로 분류하되, 이 중 1개 이상의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안내판은 문화재의 규모가 크고 다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되, 규모가 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설판 및 해당 문화재의 주요 연표, 조감도나 안내지도, 주요 문화재, 관람정보 등이 담긴 지도판의 2종으로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이 있으면서, 문화재 안의 여러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권역의 규모에 따라 해설판과 지도판 2종으로 하거나, 해설과 지도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 1종으로 구성한다. 단, 통합 1종의 안내판을 제작할 때에는 해당 권역의 지도를 함께 삽입한다.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안내에 필요한 최소의 문화재안내판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규모와 관람자의 편의, 필요성을 정밀 분석하여 적절한 안내판 수량을 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문화재에 하나의 안내판이 아닌 관람자의 시선을 고려한 권역 중심의 안내판을 도입, 권역별로 통합할 수 있는 구역은 통합하여 안내판 수량을 줄인다.

구분	디자인 기준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판은 인간체격기준척도를 지향하고 관람객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단위문화재 안에 안내판이 다수 설치될 경우 종류와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 적용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하여, 문화재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재 유형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하되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재의 안내판은 각각의 안내판 종류와 위계에 따라 형태를 달리 적용하되 디자인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이 비슷한 안내판은 가급적 형태를 일치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 스펙트럼을 분석해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명도·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 위주의 자극적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며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붉은색, 노란색)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가지 색상 이내로 색을 최소한만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판의 기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안내판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가장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 재질을 지양하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재 안의 안내판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안내판은 재질을 달리할 수 있다.

구분	디자인 기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안내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자체의 로고나 후원기업과 관련된 상징그림 또는 문구는 삽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삽입해야 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정면 오른쪽 아래 또는 옆면의 적정 위치에 작게 표기하여 안내정보의 습득이나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정리 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되, 수록되는 정보는 해당 문화재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해당 문화재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안내판 오른쪽 윗부분 적정한 곳에 부착한다. - 크기: 가능한 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작한다. - 재질 및 색상: 안내판과 조화되어 도드라지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크기가 적절한 서체로 계획하며 문자표기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해설안내판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1-1. 안내문안 기본원칙

구분	디자인 기준																										
안내문안 작성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안은 핵심정보 위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주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관람객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첨가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사실은 공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화재대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문화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안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 및 내용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되, 이 경우 안내판의 전체적 디자인 및 구성·배열에 부합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을 첫 문장에 작성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의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문장은 해당 문화재를 관람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화재의 기능, 유래, 특징,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등 문화재가 지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재의 형태나 크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설화, 전설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근래의 사실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관람객에게 재미나 감동 또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첨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안 안에서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풀이하여 설명한 후에 기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설명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생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작성된 국어 안내문안은 국립국어원 또는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거친다. 																										
안내문안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어문안 직역에서 탈피하여 적절히 의역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할 경우 외국어번역을 위한 문안을 별도로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작성자와 외국어 번역자가 충분히 교감하여 의역상 오류를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자 표기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배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되, 각각의 안내판 유형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는 아래와 같다. (단위: 포인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종합안내판</th> <th colspan="2">권역안내판</th> <th colspan="2">개별안내판</th> <th colspan="2">길찾기안내판</th> </tr> <tr> <th>제목</th> <th>본문</th> <th>제목</th> <th>본문</th> <th>제목</th> <th>본문</th> <th>제목</th> <th>본문</th> </tr> </thead> <tbody> <tr> <td>서체 급수 (최소한)</td> <td>100</td> <td>50</td> <td>80</td> <td>40</td> <td>70</td> <td>35</td> <td>150</td> <td>110</td> </tr> </tbody> </table>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 급수 (최소한)	100	50	80	40	70	35	150	110
	구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안내판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서체 급수 (최소한)	100	50	80	40	70	35	150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 서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한다. ※ 추천 서체: 제목(윤고딕 패밀리) / 본문(윤명조 패밀리) 																											

1-2. 안내문안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세부내용
종합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권역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권역명칭이 지정 문화재명인 경우 또는 그 외 필요시)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의 특징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개별안내판	제목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 지정유형 및 지정번호의 영문 번역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나 전설, 설화, 민담 등의 이야기 안내판의 경우는 생략)
	국문 본문 (기술 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길이, 두께 등) 및 건립연도 • 연혁, 유래(관련 이야기) •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 관련 설화, 전설, 민담 • 주요 관람 포인트 • 기타 문안 작성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영문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본문의 발췌 번역

1-3. 안내 문안 구성 요소별 세부 기준

구분	디자인 기준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명칭에 지명이 먼저 나오거나 지정 범위 등을 덧붙인 때에는 지명이나 지정 범위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문화재안내판의 제목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며, 이 경우 한자는 국문 명칭과 같은 줄이나 국문 명칭 다음 줄에 표기한다. 다만, 글자 크기는 한자가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 안내판 제목의 한자는 대상 단어를 음운의 변동 없이 변환 가능한 경우에만 한자로 변환해서 표기하며, 음운이 변동하는 우리말은 변환하지 않고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 • 안내판 제목에 두 개 개체가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로 이어진 경우, 한자 표기에서는 접속조사나 접속부사를 쉼표(,)로 바꾼다. 이때 가운데점(·)은 허용하지 않는다. • 안내판의 제목 중 영문은 국문과 한자에 이어 같은 줄에 나열하거나 줄 바꿈 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글자 크기는 영문이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 • 권역(영역)안내판의 제목은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권역의 이름으로 한다. • 개별안내판의 제목은 문화재 지정 명칭으로 하되, 상위 위계의 종합안내판을 따로 세운 경우에 지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 유적지 안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와 설화, 전설 등에 대한 개별안내판 명칭도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설정된 명칭을 따르며, 유적지명 등은 생략한다. • 안내판 제목에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문안의 첫머리에서 풀이하여 설명한다.
지정 종별 및 지정 번호,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에는 문화재의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표시하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않는다. 특히, 종합안내판이 있는 유적지 안 권역안내판과 개별안내판의 문화재 소재지는 반드시 생략한다. 이 때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제목보다 작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정 종별과 지정 번호는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영문 번역 표기만 한다. 이때 해당 영문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규모와 건립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물, 전각 등의 개별안내판(필요시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도 포함)에는 각각 문화재의 규모(크기, 높이 등), 건립연도(시대 포함)를 표기할 수 있다. • 지정 종별, 번호와 줄을 같이하거나 다음 줄에 달리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모와 건립 연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 한자 표기 없이 영문 번역 표기만 하며, 이때 해당 영문 번역의 표기 방법은 제목 표기 방법과 같다.
언어(국어, 영어)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문안 본문은 두 개 언어(국문/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부 내용과 용어에 한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안내 문안의 언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킨다. • 문화재 명칭과 용어의 세부적인 영문 표기는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 • 안내 문안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경우, 즉 군신, 사제, 부자지간 등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안내 문안의 국문은 지정 서체로 통일해서 표기하며, 일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굵게 표기할 수 없다.

구분	디자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에 직접 풀어 쓴 설명이 아닌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은 안내문 아래에 각주로 표기하거나 해당 글자 오른쪽 윗부분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한다. • 본문에 외래어가 나올 경우 외래어의 어원을 따로 밝히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영문 문안에만 원어를 표기한다. • 영문표기의 경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한자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는 안내판의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와 인물, 지명, 문화재 명칭 등 특별한 경우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를 전달하고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의 표기 여부는 안내 문안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 • 국문 문안 본문에서 한자를 표기할 때는 해당 글자의 오른쪽 소괄호(()) 안에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 모든 한자는 같은 안내판에서 처음 나온 단어에 한 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목과 동일한 단어는 본문에 한자 표기를 할 수 없다. • 유적과 직접 관련된 인물명에만 한자를 병기하며 사망 연도와 출생 연도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 인물의 호는 되도록 표기하지 않으며, 호가 성명과 함께 쓰여 인물을 부연 설명하거나 성명을 호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표기할 수 있다. 이때 한자는 해당 단어 뒤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와 성명을 모두 표기할 때는 성명 뒤에 한꺼번에 적는다. • 영문 본문에는 오직 영문만을 표기하며 한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숫자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 연대, 물량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문화재 명칭과 고유명사에 포함된 숫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 수목안내판에 수령을 표기하는 경우는 해마다 수령이 늘어나므로 대략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목을 심은 연도를 정확히 알 때는 절대 연도를 직접 표기할 수 있다. • 날짜는 ○○○○년 ○○월 ○○일로 표기하되, 10이하의 숫자에는 0을 표기하지 않는다.
연대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는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절대 연도로 표기하며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기로, 정확한 세기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대로 표기한다. • 대략적인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절대 연도 뒤에 ‘무렵’, ‘즈음’, ‘경’ 등을 붙여서 표기할 수 있다. • 왕조 연대와 왕명 다음에 서기를 표시하며 같은 왕조 연대, 재위 기간에는 국호와 연호를 거듭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조 연대나 왕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또한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 왕의 재위 연호를 쓰는 경우에도 정확한 연도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로 없이 작게 표시할 수도 있으며, 연도 뒤에 ‘재위’라고 쓴다. • 문화재안내판에는 역사 인물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만 표기하되, 이 경우에도 주변 인물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는 표기하지 않는다. 생물연도를 표기할 때는 소괄호(()) 안에 본문보다 작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없이 작게 표기할 수도 있다. 한자와 함께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자 다음에 표기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도량형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표기하며, 단위는 기호로 표기한다. • 규모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하여 가로, 세로, 높이, 두께 순으로 표기하되, 그 표현은 달리할 수 있다. • 한 문장(복문, 중문 포함)에서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로 통일하되,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가능한 다른 단위로 적는다. • 서화는 가로, 세로 순으로 표기한다.
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문안에서 고어가 고유명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현대어로 바꾼다.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문안에서 방향 표시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문화재를 직접 가리는 위치에 안내판이 놓이지 않도록 관람 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안내판을 둘 경우에는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 방위(동서남북)는 날씨에 따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안내 문안에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형이나 이론 등 일반적인 학설을 설명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문화재가 다수 밀집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권역안내판 지도에 각각의 명칭을 구분해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2. 관광안내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에 대한 관광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주요 거점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며, 해당 문화재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안내소는 가급적 외부 공간에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품판매소,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 비슷한 기능의 건축물과 통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설물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가려지도록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를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의 장식 요소 설치를 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및 높이를 최소화하여 개방성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가 부각되도록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안내소와 주변 시설물이 일관성 있는 형태가 되도록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도록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시설물 및 부가적인 시설물로 본래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같거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시설물과 비슷하거나 통일감 있는 마감 재료를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계열의 색 사용을 지양하여 단일건물의 통일감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안에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여 간결하게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명도 대비를 최소화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과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안내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안내창구의 높이를 설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간판 및 부착물은 지역별 '광고시설물 지침'을 따른다.

3. 화장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위생 및 편의를 위해 관람 동선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되는 건축물로 주변에 순응하는 형태와 내부노출을 완화하는 디자인을 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독립적 위치에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 동선과 연계하여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에서 정면진입을 지양하고 우회진입을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외장과 조화되는 낮은 가림 벽 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이 시각적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가 지나쳐 문화유산을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입면 등에 규모가 과도한 장식적 요소 도입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길이가 긴 경우 분절로 변화감을 주어 시각적 지루함을 해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려한 면적으로 설치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또는 가설 형식의 건축물 설치를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이질적인 외관 디자인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형태적 충돌이 없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림 벽 등은 본체와 조화되도록 하고 투박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화장실 진입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동선이 분리되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재, 목재 등 자연적인 재료를 도입해 문화재와 조화롭게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림 벽에 넝쿨 식물 등을 심어 녹화할 수 있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에 사용된 단청 등과 같은 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주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건물 안에서 비슷한 계열의 색채 사용을 권장하여 균형감 있는 색채를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틀과 같은 국소 부위에 원색 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세부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화장실 출입구 벽면에는 화장실 내부 배치 등을 알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를 권장한다.

*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4. 기념품판매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기념품 판매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문화재 내 편의 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 동선에서 접근하기 쉽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시설물의 산발적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휴게 공간을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판매소는 가급적 외부 공간에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를 압도하는 대규모 건축물은 지양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를 추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복잡한 형태를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및 안내시설은 최소의 수량과 규모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입면 형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체감 있게 설치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비슷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한 입면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소 안에 비치된 판매 물품이 보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심한 이질적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물이 강조된 색채 계획을 규제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이 부각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여 간결한 이미지로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도 차가 크지 않게 하고, 원색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간판 및 부착물은 지역별 '광고시설물 지침'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 판매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따른다.

*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5. 매표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의 입장권을 판매하기 위해 진입부에 설치되는 건축물로, 단순한 외관 디자인과 개방감을 확보하여 문화재의 배경으로 인지되도록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진입로에서 건축물의 정면성이 확보되도록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시설물과 중첩하여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 위치에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시설은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도록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표소는 외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여 점유 면적을 줄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 가림시설, 차양시설 등 부속시설물은 기능에 적합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최소의 규모로 설치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관 디자인을 간결하게 하여 주변 문화재를 강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부에 설치되는 매표소는 가급적 내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및 외관 등의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적 이미지의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이질감 있는 마감 재료(반사율이 높은 스틸프레임 등)의 혼용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의 재료와 대비가 심한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의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선정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한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비슷한 계열의 조화로운 색채로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인, 부착물 등에 원색 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약자를 위하여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편안한 높이를 설정하되 매표창구 전면에는 반드시 수평면을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표창구의 높이를 설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표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따른다.

*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6. 관리사무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화재 및 부속 토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로, 문화재의 품격에 순응하고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을 살려서 배치하고 경사지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수평성을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건축물 또는 문화재와 중첩하여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를 압도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양하고, 2층 미만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이에 있는 기능이 비슷한 건축물과 통합하여 건축물의 수량을 줄인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에 순응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연출해 문화재의 품격을 살리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외관 형태로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외관 등의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인접할 경우 문화재와 비슷한 마감 재료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이미지의 마감 재료를 도입해 문화재와 조화롭게 연출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건물에 사용하는 색상 차와 명도 차를 규제하여 경관을 조화롭게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색조로 계획하여 시설 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된 공간 이미지를 연출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는 '경사로 기본지침'을 따른다.

7. 주차요금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요금을 징수·관리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문화재와 비슷한 이미지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감을 주는 배치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배치를 지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이 들어올 때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의 조망을 고려하여 세로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진입성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주차요금소를 도입하여 규모를 최소화한다. • 기능을 벗어나는 과도한 시설물을 지양한다. • 규모가 과도한 장식 요소 도입을 지양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외관 형태를 디자인한다. • 외관을 간결하게 디자인해 주변 문화재가 강조되도록 한다.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차양 등의 부가기능 시설물은 일체감 있게 디자인한다. • 문화재에서 도출된 형태 또는 양식을 사용하여 연계성을 확보한다. • 주변에 식재 공간 또는 화분대를 두어 인공 경관을 완화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공간 안에 설치되는 다른 공공시설물과 비슷한 재질을 도입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재료를 도입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고풍택의 금속재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 처리를 한다.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심한 현대적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채도의 색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이미지로 연출한다. • 연접한 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균형감 있는 색채를 연출한다. • 시설물 안의 다른 재료의 색채도 같거나 비슷한 계열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된 광고물이나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에 부착물 설치를 금지한다. • 사전 무인 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사용자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8. 경비초소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지역의 경비 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로, 순찰 및 감시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문화재에 순응하는 형태와 색채로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순찰과 기동순찰 등의 중점 업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관람 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나무 등을 심어 시각적 돌출을 완화할 수 있다. • 문화재 또는 다른 시설물과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한다.
	• 문화재 조망을 확보하도록 과도하지 않은 규모를 설정한다.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절제된 규모로 계획한다.
형태	• 문화재에 순응하는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한다.
	• 폐쇄감을 주는 입면 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을 주도록 한다.
	• 연접한 공공시설과 형태적으로 연계해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재료	• 안과 밖에서 서로 잘 보이도록 투명도가 높은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자연적 이미지의 재질을 사용한다.
	• 고풍택 금속재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 처리를 한다.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심한 현대적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예를 들어 지붕은 초가를 사용하고 벽체는 패널을 사용하는 등)
색채	• 원색 사용을 지양하여 이질적 이미지의 색채 연출을 방지한다.
	• 다양한 계열의 여러 가지 색을 쓰지 않도록 하여 주변과 조화를 도모한다.
	• 인접 공공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저채도색 사용을 권장하여 색채를 조화롭게 연출한다.

9. 수표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입장권을 확인하기 위해 진입부에 설치하는 소규모 건축물로, 규모 및 배치를 최소화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해 문화재 조망을 확보한다.
배치	• 이용자의 진출입 및 조망을 고려하여 가로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개방된 공간 연출을 도모한다.
	• 문화재 조망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 가급적 외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안내시설을 부가할 경우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게 배치한다.
규모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한다.
	• 과도한 장식 및 부속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추구한다.
	• 연접한 시설물과 형태적으로 연계하여 일체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플리카보네이트, 스틸프레임, 덮지붕(캐노피) 천막 등)의 혼용을 지양한다.
	• 연접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 마감 재료를 연계하여 경관을 일체감 있게 연출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선정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까이에 있는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색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틀 색은 구조 색과 같은 색상이나 비슷한 계열의 색채로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착물이 있을 경우 건물과 같은 색상으로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시설에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수표시설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로는 '경사로 기본치침'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표 창구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높이로 설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 수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통과유효폭 최소 0.9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0. 휴게의자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휴게시설로,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며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배치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선 중앙에 배치하거나 수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보행로와 평행하게 배치하여 관람객의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등)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의자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특성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재 공간 아랫부분에 설치하여 그늘이 제공되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을 위하여 바닥의 높낮이 차이, 재질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사용자의 휴게를 고려하여 휴게의자 주변에는 빈 공간을 설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하게 큰 규모 또는 연속된 규모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유 면적 및 높이를 최소화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위주의 최소 규모로 계획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가 과도한 장식 요소 설치를 지양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형태	• 문화재와 조화되는 형태가 되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한 공간 안의 시설물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게 디자인한다.
	• 정체성 없는 기성제품 사용을 지양하며, 개방감 있는 형태를 연출한다.
	• 산책로처럼 조망과 휴계를 동시에 하는 공간은 양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부분적으로 등받이와 팔걸이를 적용한다.
재료	• 문화재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한다.
	• 유지성·관리성을 고려하여 오염 및 부식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 문화재 품격에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 한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을 규제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 기타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색조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색채 계획을 한다.
	• 주변 환경의 색채를 최대한 사용하여 조화로운 공간 이미지를 연출한다.

11. 그늘시렁(띠걸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의를 위해 휴계 공간 안에 설치하는 편의시설로,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규모와 형태를 설정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재료와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 문화재 지역 안에 있는 다른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용자의 조망을 고려하여 문화재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전통 건축물이 가까이 있는 경우 인공적 형태를 지양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규모	• 불필요하게 규모가 커서 문화재를 압도하거나 위압적인 경관 연출은 지양한다.
	• 문화재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 장식 요소를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여 문화재가 돋보이도록 디자인한다.
	• 문화재와 가까이 배치할 때는 문화재의 디자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
	• 단순한 구조와 개방감 있는 형태로 연출한다.
	• 그늘시렁(띠걸러) 안의 휴계의자와 형태적으로 연계하여 경관을 일관성 있게 연출한다.
재료	• 휴계의자와 함께 설치할 때는 두 시설물을 통일감 있는 재료로 연출한다.
	• 가급적 자연적인 느낌이 드는 재료를 도입하여 문화유산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 연접한 편의시설과 재질을 연계해 경관을 일관성 있게 연출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색채	• 주변 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로 계획하여 순응되도록 연출한다.
	• 주변과 비슷한 소재와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색채 계획을 한다.
	• 고채도의 사인과 부착물의 사용을 지양한다.

12. 음수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관람 동선과 휴게 공간 안에 설치하는 편의시설로,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규모를 설정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배치	•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
	• 배수를 재사용하는 방안(예를 들어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등) 등을 추구한다.
	• 이용자가 많은 광장에 설치할 경우, 다양한 방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규모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인다.
	• 설치 위치(산책로, 광장 등)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형태	• 문화재 특성을 살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주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 문화재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거나 지나친 장식적 요소의 도입을 금한다.
재료	• 청결 및 유지, 보수를 고려하여 녹슬지 않거나 잘 썩지 않는(내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바닥면은 평탄하며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료로 가공할 것을 권장한다.
	• 철재 사용 시 무광 처리를 하여 주변 경관과 이질감을 완화한다.
	• 연접한 공공시설물과 재료를 연계해 통일감을 연출한다.
색채	• 음수대가 설치되는 위치를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 석재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도장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고유 색채를 연출한다.
	• 음수대에 설치하는 바가지, 덮개 등의 색채는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사용한다.
기타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음수구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형태로 연출하고 지면과 높낮이 차이를 없앤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의 세부 기준을 따른다.

13. 자전거보관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의 거치 및 보관을 위한 편의시설로, 위압감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고 장식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동선 및 결절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공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이용객을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와 수량으로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양, 비 가림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야를 가리는 차양시설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형태를 지양하고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해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형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대는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자전거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과 연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접한 공공시설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보관 및 회수 시 시설물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사용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무채색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가급적 도장을 하지 않고,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눈부시지 않게 마감 처리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여러 시설물과 일체감 있는 색채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대가 놓이는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과 색채를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에 부착되는 요소들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한 색채를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배경과 비슷한 색 또는 저채도색으로 연출한다.

14. 휠체어·유모차보관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나 유모차를 보관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접근이 쉬운 진입부에 설치하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간결한 함 형태를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진입부, 주요 건축물, 휴게시설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조명시설 또는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바닥과 높낮이 차이를 없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안내문구 설치를 지양하며, 주변 시설물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과성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 무색의 투명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를 사용할 경우 투명도가 높으며, 파손의 우려가 적고 강도가 높은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연접하여 설치할 때 문화재와 보관대의 재질을 연계하여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보관대는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경 색을 적용한다. 부득이할 경우 저채도색을 적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들과 일체감을 주도록 비슷한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을 배경으로 할 경우 건축물 재료와 같은 색채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대에 부착 또는 설치되는 사인물에 고채도색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대 전면부 잘 보이는 곳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한다.

*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15. 경사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높낮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물로, 건축물의 진입부 계단,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 공간에 설치하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친 수직 이동의 동선 계획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로 위치를 유도·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로의 유효 폭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다닐 수 있도록 1.2m 이상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잡이의 높이는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하며,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울타리 등 보행 공간과 주행 공간을 분리하는 공작물을 설치한다. 공작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면의 재질을 달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로 설치 시 시작지점과 끝 지점에는 1.2m 이상의 수평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로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접점 부분에는 반드시 수평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안전을 위해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규칙하거나 면이 거칠어 돌출되는 것을 피하고, 평탄하게 마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채도색 사용을 금하고 배경과 조화로운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형태나 그래픽의 적용을 금한다.

16. 휴지통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위생시설로, 휴지통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연출하고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색채 및 형태의 마감재를 적용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과 연접하여 배치할 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통을 여러 개 배치할 때, 산발적인 개별 배치를 지양하고, 한 장소에 밀착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접한 공공시설물과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통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를 최소화하여 통합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가 나오는 예상 지역을 검토한 뒤 설치하여 수량을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로 인한 규모 확대를 지양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투입,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쉽도록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이 내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휴지통 안의 수분이 쉽게 배출되도록 디자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배출이 가능한 휴지통으로 계획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를 도입하여 분리배출이 쉽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빗물 등으로 오염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통 주변의 편의시설과 비슷하거나 같은 재료를 적용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는 광택을 줄여 인공적 느낌을 없애고 문화재와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통은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이나 무채색으로 계획하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여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과 같이 설치할 경우 색상은 단색으로 통일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를 도입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문구는 시설물과 일체화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17. 공중전화함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진입부와 주요 결절부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며 형태, 색채,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의 표시를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한다. 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휴게 공간 안에 공중전화함을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산발적으로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고 밀착 배치하여 복잡한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공중전화함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최소한의 기능만을 고려하여 단순화하고,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한다. 수요에 따라 적정 수량의 시설을 설치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정체성 없는 기성품 사용을 지양하며,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체감이 있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연계성 있는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 경관을 일관되게 연출한다. 방음형 함(문이 닫히는 구조)의 경우 내부가 보이는 재질을 권장한다. 고광택 금속재의 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택을 완화하는 도장 또는 표면 가공을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여 일체감을 유지하는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문화재를 배경으로 설치될 경우 명도·채도 차가 큰 색채는 지양한다.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설치할 경우 강조색의 사용 면적을 최소화한다. 시설물이 연속되어 설치될 경우 같은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유도하도록 권장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공중전화는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8호의 기준을 따른다.

*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18. 자동판매기함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수, 커피 등의 자동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휴게 및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판매기의 산발적인 분산 배치를 금하고 한 장소에 밀집하여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의자와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또는 담장을 배경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이 중복되는 자판기 설치를 지양하여 점유 면적을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자판기 조작부의 높이와 규모를 설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판매기의 규모를 과도하게 하여 문화재를 압도하거나 혼돈되지 않도록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조화되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자동판매기를 통합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이 과도한 차양이나 지붕 형태를 제한하고 수평적 이미지를 살린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판매기는 가급적 같은 형태로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료수 병, 강통 등을 분리배출하기 위해 분리배출함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나 반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선정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시설물의 색채와 같거나 비슷한 색채를 함과 자판기에 조화롭게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공간의 배경 색채를 반영하여 외장 색채를 적용하고 기성제품의 원색적인 색채 사용을 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판매기가 나열되어 있을 경우 같은 색채를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래픽 사용을 금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문자(픽토그램)*를 도입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판매기는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의 기준을 따른다.

* KS 또는 ISO 기준을 따름

19. 광고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하는 간판, 사인물 등과 같은 옥외광고물로서,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롭고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규모, 색채, 서체로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배치를 금하며, 동일선상에 광고물을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를 이용한 사인물의 배치를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규모를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를 지양하여 광고시설이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설치 수량을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 유형별로 같은 규격을 설정하여 정리된 경관을 구현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여 문화재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문화재와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재질을 적용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 비중을 줄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색과 배경 색의 차이를 줄여 자극적인 색채를 완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갈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문화재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한다.

20. 차량통제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리시설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문화재와 어우러지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자블록과 연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방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휠체어 등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 간격을 적절히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통제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에는 화분대를 설치하여 차량통제대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낮은 차량통제대 설치 지양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로 계획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특성 및 보행 공간의 확보 정도를 고려하여 차량통제대의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보행자가 많고 좁은 공간에서는 가는 형태로 설치하여 보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비상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일정 구간은 분리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문화재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한 조잡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차량통제대는 방향성이 있는 형태를 지양하고 원기둥 형태를 기본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광택 금속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도장이나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바닥 포장재와 재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연계성이 있도록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공간에 설치되는 차량통제대는 색채를 통일하여 적용한다. 같은 차량통제대에 일부 패턴이나 색채를 적용할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문화재의 특성은 살리되 무리한 색채 적용은 지양하고, 강조색은 5% 미만의 면적에 기능성을 살려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보도 포장과 연계성을 고려한 색채를 적용해 통일성을 부여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별표2(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 기준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21. 보호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를 보호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에 설치하는 보호시설물로, 문화재의 위상을 저해하지 않는 간소한 형태와 연속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울타리의 기초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지주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경사지에서는 보호울타리의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배치한다.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해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치게 굵은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되도록 가는 지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같은 높이와 규모의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문화재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높이를 설정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장식 요소나 판상 구조를 지양하여 문화재 조망을 확보한다. 지주 형태는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파손되거나 훼손될 경우 단위별 보수가 쉽게 디자인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 복잡한 체결 구조 및 접속부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일체감 있게 연출한다.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을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 연출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 형태가 다른 2개 이상의 다른 울타리가 이어지는 것을 지양하여 연속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을 한다.
	• 자연적 특성이 강한 문화유산에는 자연 소재(대나무, 짚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 보호울타리의 재료가 다를 경우 색채를 맞춰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보호울타리 설치되는 장소의 시설물과 동질감이 있는 이미지로 색채 계획을 한다.
	• 다른 시설물과 색채 조화를 고려하고, 원색 사용을 금지한다.
	• 마감재는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문화재와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한다.

22. 안전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시설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방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며 간결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배치	• 독립된 형태의 배치를 지양하고 체결 구조를 규격화하여 지주 간의 연계 배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문화재 바닥 환경(높낮이 차이, 경사, 포장 재료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울어짐 등의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 구조와 안전성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크기를 최소화하고 얇게 디자인한다.
	•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는 위험 지역에서는 높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형태	• 문화재를 상징하는 특정 이미지를 안전울타리의 형태 또는 문양에 적용하는 장식적 개념의 디자인을 지양하며,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조망을 막는 면적인 형태보다는 선적인 형태를 지향한다.
	•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용접 방식의 시공을 지양하고, 볼트를 이용한 체결 및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 차량이 빈번하게 주행하는 구간에 한하여 야간에 명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판이나 반사시트를 부분적으로 부착한다.
	•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마감 처리를 한다.
	• 보도울타리에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사용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표면 이미지는 주변 공간과 조화를 고려하여 반사도가 높은 광택 재료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서는 친환경 마감 재료의 도입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지 색을 울타리에 사용하여 연결성을 유지한다. • 외부 환경의 색채를 고려하여 문화재 공간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 문화재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재료보다 저채도색을 적용하여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한다. •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한 제품 색을 적용하고 적합한 색이 없을 경우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23. 경계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및 부속 공간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화재 경계부에 설치하는 보호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반영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를 연출하여 조화되도록 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공간을 침해하는 배치를 지양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 경계부의 수목이나 시설물에 감춰져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를 최소한만 설치하여 조망성을 높인다. • 한 공간에서는 높이가 같은 시설물을 사용한다. • 외부에서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높이를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울타리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지양한다. • 경계울타리가 설치되는 다양한 지형 특성(평지, 언덕, 모퉁이)에 영향이 적은 디자인을 연출한다. • 가급적 기성품 울타리(메시형 등)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재와 조화로운 저채도색을 적용한다. • 면적인 형태보다 선적인 형태를 연출해 위압감이나 단절감을 완화한다. •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설치한다. • 경계울타리가 높게 조성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여 시각적 높이를 완화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연접하게 설치되는 경우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재질이나 색채를 적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 고광택 재료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색채	• 외부 환경 색채를 고려하여 문화재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한다.
	• 문화재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같은 재료를 적용하여 경계울타리의 거부감을 줄인다.
	• 기성품을 사용할 때는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품 색을 적용하고 적합한 색이 없으면 제작하여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24. 화분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생육 기간이 짧은 초화류를 식재하는 조경시설물로, 문화재 지역 공공시설물과 일관성 있는 형태와 색채를 적용하여 경관을 통일감 있게 연출한다.
배치	• 휴게시설,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다른 공공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 관람객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통행을 막는 용도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여건상 차량통제대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화분대를 활용하여 대체할 수도 있다.
규모	• 화분대 지면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인다.
	• 필요 이상의 수량을 설치하여 혼잡한 경관을 연출하지 않도록 한다.
	• 규모가 과도해 배후 경관을 가리지 않게 연출한다.
형태	• 연접한 공공시설물의 형태와 연계하여 디자인한다.
	• 전통문화 이미지를 단순 모방한 과도한 디자인의 적용은 지양한다.
	• 물 공급과 배수가 잘되게 디자인한다.
재료	• 플라스틱 등 인공 재료는 지양하고, 문화재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재료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목재 등 자연 재료를 인위적으로 모방해 이질감을 형성하는 것을 지양한다.
	• 목재 사용 시 방수·방부·방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권장한다.
	•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은 지양한다.
색채	•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 주변의 시설물과 건축물의 색채 연계성을 고려하여 색채를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 한 공간이나 인접 시설의 화분대는 같거나 비슷한 색채를 사용한다.
기타	• 화분대의 입면을 활용한 광고물 또는 안내물 부착을 금한다.
	• 문화재의 특징과 계절을 고려하여 외래수종의 식재를 지양하고, 국내 자생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25. 소화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문화재 지역 안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물로, 함 디자인으로 소화기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재와 이질감이 없는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긴급 상황에 사용하기 쉽게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건축물 벽면에 밀착 배치하여 보행과 동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시설 여러 개를 한 공간에 설치할 경우 하나의 함 형태로 통합하여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덮개 기능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여 시설물 규모를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시설 주변에 규모가 과도한 보호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 디자인을 적용해 소화기의 외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고 문화재의 부속시설물로 인지되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장 또는 마감 처리로 광택을 줄여 인공적 느낌을 없애고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내부 확인이 가능한 투명 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건축물의 배경 색과 비슷한 계열의 저명도·저채도색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을 강조한 고채도색은 작은 면적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저채도색, 저명도색을 사용한다.

26. 분전함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안의 전기, 조명 등 전기장치를 제어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리시설물로, 배경과 조화되는 재질과 색채를 적용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배치를 권장하여 외부에서 조망되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 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시설물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돈된 경관을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무 등을 심어 가릴 것을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전함을 가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여건상 가리기 어려울 경우 '부속시설 가림막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가린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며, 비슷한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성을 고려하되 최대한 낮게 설치하여 돌출 이미지를 완화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형태	•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행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한 공간 안에서 시설물 간에 일관성 있도록 통일감 있게 디자인한다.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도장을 적용해 주변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 문화재와 연계된 조화로운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배경 색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한다.
	• 여러 개를 나열하여 설치할 때에는 같은 재질과 색채로 통일한다.
	• 색채는 단색으로 계획하며 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 분전함의 기초부가 노출될 경우 분전함과 같은 색상으로 계획한다.

27. 점검용 덮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바닥 점검구 등을 덮는 관리시설물로, 바닥 포장 패턴과 연계하고 지면과 일치하도록 하여 보행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규모	• 덮개 경계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포장 면과 이질감을 최소화한다.
	• 기능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도록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 포장 방식과 덮개의 표면은 같은 형태를 도입하여 이질감을 없애고, 연속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보행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한다.
재료	•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마감 처리를 한다.
	•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빗물 등으로 오염 및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자연환경과 연접하거나 녹지 안에 설치할 경우 목재 또는 석재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도입한다.
	• 마감재는 인공적 느낌을 없애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색채	• 주변 지면의 색채와 같은 패턴과 색채로 통일한다.
	• 녹지와 인접해 있을 때에는 녹지와 비슷한 명도의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되도록 한다.
	• 보도블록 위에 설치할 때에는 주변 보도블록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여 순응하도록 한다.
	• 한 공간 안에서는 같은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부여한다.

28. 우수용 집수정 덮개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비가 올 때 배수 기능을 목적으로 바닥에 설치하는 관리시설물로, 바닥 포장과 연계 또는 은폐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연출한다.
배치	• 보행 공간 내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동선(방향)과 수직으로 배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보조이동수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
형태	• 테두리를 두껍게 하지 않고 주변과 어울리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인접한 시설물과 조화롭게 디자인을 연출한다.
	• 시설물과 지면의 접촉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 기성제품의 이질적인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유산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한다.
	• 철재를 사용할 경우 부식 방지 처리를 한다.
색채	• 석재와 같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주변 경관과 연계한다.
	• 집수정 덮개가 설치된 지면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한다.
	• 지면과 색 대비가 강한 색상의 사용을 금지한다.
	• 단색으로 계획하여 색채 사용을 최소화한다.

29. 수목보호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수목의 물 공급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수목 아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지면과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설치하고 바닥 포장과 이질감을 줄이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여 연출한다.
	• 자연환경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하부 식재를 적용해 수목보호대의 기능을 대신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 낙엽 등이 쌓이지 않도록 구조를 단순화하고 유지·보수가 쉽게 한다.
	• 수목이 숨 쉴 수 있도록 폐쇄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한다.
	• 보호대 주변 포장의 색채와 패턴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디자인한다.
	• 문화재 이미지의 직접적인 도용과 문자 기입을 지양하며, 최대한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주변과 조화를 연출한다.
	• 보도 면과 높낮이 차이를 없애는 것을 권장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수목지주대 설치를 고려하여 형태를 디자인한다.
재료	•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부식 방지 처리를 하여 빗물 등으로 오염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마감 처리를 하도록 권장한다.
색채	• 설치되는 지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같은 계열 색채로 조화롭게 계획한다.
	• 색상은 단색으로 계획하고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같은 색상을 사용한다.
	• 다른 시설과 복합 설치될 때에는 같거나 비슷한 색상으로 계획한다.

30. 수목지주대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목이 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시설물로,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적 측면을 만족하면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한다. 가급적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가 과도한 지주 설치를 지양한다. 지주대의 기능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늘게 연출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목의 규모에 따라 지주 형태를 다르게 연출한다.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지주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게 기울기를 설정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수목과 조화로운 소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철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으로 광택을 줄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도록 연출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수목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 환경에 순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인공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저명도·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주변과 수목 색채를 고려하여 갈색 계열의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사용한다. 부득이하게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한다.

31. 부속시설 가림막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로 노출되는 에어컨 실외기 등 부속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하는 차폐시설물로, 건축물 뒤쪽에 배치하거나 나무 등을 심어 가리고 관람객의 조망이 적은 공간에 설치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인접한 배치를 금하며, 가급적 건축물의 옆이나 뒤쪽에 배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 공간만 확보하고,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한다. 높이가 과도한 가림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위압감을 줄인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형태를 디자인하며,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과도하게 일정한 형태와 그래픽 요소의 도입을 지양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경과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다. 자연환경이 우세한 공간에서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가린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채도 원색과 같은 화려한 색상의 사용을 지양한다. 설치 위치에 따라 배경과 비슷한 색채를 적용하여 돌출 이미지를 방지한다.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자연색과 비슷한 색을 사용한다.

32. 지주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깃줄을 포함하는 기둥 형태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물로, 관람객의 동선을 배려하여 배치하고 지주를 가늘게 하여 개방감을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 동선상의 설치를 지양하고 문화재 조망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문화재와 중첩 또는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장식 요소 또는 형태를 지양한다. 최대한 좁고 가는 형태로 디자인하여 조망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을 지주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신지주와 결합되는 시설물과 통합된 색채 계획을 실시한다.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문화재가 돋보이도록 한다. 위험 표시를 위한 안전, 경고 등 사인물을 부착할 때에는 저채도색을 사용한다. 부득이하게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한다.

33. 보안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내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시설물로,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인접한 방송, 안내, 보안시설과 통합하는 것을 권장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문화재와 인접하거나 조망을 훼손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전선 등의 위험 요소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조명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구에 과도한 장식을 지양하여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한다. 인접 시설물끼리 통합하여 규모를 줄인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디자인으로 문화재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 등의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보안등 지주에 통합하여 복잡한 경관을 완화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통합 시 매립 가능한 시설은 지주 내에 매입하여 외부로의 돌출을 최소화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과 비슷한 마감을 도입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풍택 마감재 사용을 지양하며, 사용할 경우 도장 또는 마감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연출하도록 권장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인접한 조명시설의 색채는 무채색이나 갈색 계열의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는 최대한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되는 보안등은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보행 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하게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한다.

34. 경관조명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보도 및 녹지 공간 안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물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 경계부에 평행하게 배치하며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시설물과 인접할 경우 통합하거나 선형을 맞추어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에 설치되는 조명은 보도 면과 일치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등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가리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적인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게 연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조명시설과 형태를 연계하여 일관된 디자인을 연출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풍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인공적 느낌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 처리를 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에 설치할 경우 갈색 계열의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공간에 설치할 경우 무채색 계열로 주변과 조화롭도록 한다.

35. 보행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1m 이하의 낮은 높이로 설치하는 조명시설 물로, 관람 동선 경계부에 설치하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규모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 끝단에 배치한다. 관람 동선 경계부에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보행등은 바닥에 밀착하여 조망과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디자인 연출을 권장한다. 주변 조명시설과 공통된 디자인과 형태적 연계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보행등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가리도록 한다. 울타리와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울타리 지주와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간결한 경관을 연출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 공간에 설치되는 보행등은 석재 등 자연적 재질을 도입하여 이질감을 완화하도록 연출한다. 무광택 재질을 사용하여 위화감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에 설치할 때 갈색 계열의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적용한다. 보행 공간에 설치할 때 무채색 계열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마감재는 최대한 광택을 줄여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연속적인 보행등은 같은 색채로 통일하여 보행 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6. 벽부등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에 건축물·시설물에 부가적으로 부착하여 일반 조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시설로, 배경이 되는 시설물과 비슷한 색을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의 형태를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시설물의 간격과 비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문화재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을 벗어나는 과도한 장식 요소로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조명 수량만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형태	• 편의시설 디자인과 연계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형태적 이질감과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색채	• 문화재와 조화되는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 부착 위치의 배경 색을 고려하여 배경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계획한다.
	• 색채 계획 시 단색으로 계획한다.

37. 공사용 가설건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공사 중 설치하는 가설 덧집 등의 시설물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조화롭게 배치 되도록 형태를 연출하여 문화재의 품격을 높인다.
배치	• 현장 관리사무소, 창고 시설 등 가설울타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태	• 과도한 그래픽 요소를 지양하고,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입면 디자인을 연출하되, 문화재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한다.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고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로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 금속성의 고풍택 소재 사용을 지양하고 도장하거나 무광 재질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색채	• 원색 사용을 금하며 여러 색상의 배색을 지양한다.
	• 문화재와 비슷한 색채를 계획해 통일감 있는 공간 이미지를 연출한다.
	• 단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는 경관을 형성한다.

38. 공사용 가설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공사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계부에 설치하는 공사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 및 형태 이미지를 입면에 부여하여 조화롭도록 연출한다.
배치	• 보행가도와 주변 지역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게 배치한다.
	• 점자블록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자 블록 동선을 벌려 놓는다.
	• 시설물 주변에 불필요한 시설물 배치를 금한다.
규모	• 높낮이가 다르거나 복잡한 형태의 시설물 연출을 지양하며, 간결한 이미지를 연출 하도록 권장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 보행로에서 공사 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설정한다.
	• 주변 인접 시설물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한다.
형태	• 형태가 서로 다른 가설울타리가 접속하지 않도록 하여 연속성을 연출한다.
	• 문화재 지역 내부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내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용자가 많이 조망하는 곳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면에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로운 그래픽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료	• 표면을 무광택으로 처리해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마감 연출을 권장한다.
	• 관람객의 외부 조망이 빈번하거나 장기간 설치되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다른 재질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색채	• 설치 위치에 따라 주변 색채를 고려하여 비슷한 색이나 저채도색을 사용한다.
	• 문화재를 고려하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갈색 계열 색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복합적인 재료를 사용할 때는 각 재료의 색채를 통일한다.

39. 이동식 통제울타리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공사 현장 또는 임시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는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배치	• 보행동선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배치를 권장한다.
규모	• 면적 시설물이 주변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하거나 결합하여 적정 규모를 연출한다.
형태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하거나 결합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을 권장한다.
재료	• 고풍택 재질의 사용을 지양하며, 도장 마감 처리 또는 무광 소재를 적용하여 주변 경관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과 설치가 쉽도록 가벼운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문화재와 조화로운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순응하는 경관을 연출한다.
색채	• 위험·안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주의 표시색(노랑, 빨강, 검정 등)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원색의 비중을 줄인다.
	• 서체는 시각적 인지성을 고려하되 시설물 규모와 조화되는 크기로 적용한다.(적용 면적 대비 70% 이내)
	• 원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채도를 낮추며, 명도 대비를 줄여 이질적 이미지를 최소화 한다.
기타	• 부가적인 안내시설 등의 부착을 지양하여 복잡한 경관을 완화한다.

40. 임시건축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안에 일정 기간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문화재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와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여 이질감을 해소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인접하게 설치하여 문화재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창고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 이미지의 직접적 연출을 지양하며 간결한 형태로 연출한다.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여 문화재와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불필요한 안내시설의 부착을 지양한다.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등 반사성이 높고 주변과 이질감을 형성하는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창틀이나 노출되는 부속시설물은 도장을 하여 시각적 돌출을 완화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이미지의 건축물과 조화되게 비슷하거나 같은 색으로 계획한다. 지붕은 원색 사용을 금하고 회색, 회갈색 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창틀, 출입문 등은 고명도 색채를 지양하고 건축물과 같은 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과 부속시설은 감추는 것을 권장한다.

41. 천막시설물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안에 일정 기간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와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문화재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한다. 천막시설은 통합하여 한 장소에 밀집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배치를 금하며,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기능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규모를 연출한다. 문화재를 압도하는 규모의 천막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결한 뼈대 구조의 천막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경관을 연출한다.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구분	디자인 기준
재료	• 반사율이 높은 비닐류의 천막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여 배경의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한다.
	• 철제 틀과 천막을 제외한 다양한 재료의 복합적 사용을 금한다.
	• 철제 틀은 도장 처리를 하여 인공적인 느낌을 완화한다.
색채	•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한다.
	•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 색채로 계획한다.
	• 형태나 그래픽, 글씨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연속된 시설물은 단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준다.
기타	• 전선 등의 부속시설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감춘다.

42. 현수막시설

구분	디자인 기준
개념 · 기본	• 행사와 홍보를 하기 위해 진입부에 설치하는 임시 안내시설물로, 현수막의 색채 및 서체를 문화재 이미지와 어우러지도록 연출한다.
배치	• 주 관람 동선에서 문화재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현수막 여러 개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두어 정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규모	• 가급적 가로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연출한다.
	• 다른 시설물에 부착할 경우 시설물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일체감을 준다.
형태	• 현수막 내용에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필요한 사항만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한다.
재료	• 문화재와 이질감이 있는 비닐 재질이 아니라 천 재질 현수막을 사용하여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연출한다.
색채	• 한 시설물에 다양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배경 색과 글자 색을 포함하여 2~3가지 이내의 색채로 계획한다.
	• 문화재와 조화로운 저채도색으로 계획하고 일관된 디자인 형식을 갖춰 통일감을 준다.
	•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색으로 계획한다.
	• 시설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크기가 적절한 서체로 계획한다.
기타	• 현수막의 서체는 한 가지로 통일하고 간결한 내용을 권장한다.

[별표 3]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제12조 관련)

1. 안내판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와 연계하여 배치할 때에는 안내시설이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되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안내시설을 통합 디자인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안내판은 빛반사, 눈부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 및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사인물 간의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형태가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간체격기준척도 및 이용자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광택 금속재의 노출을 지양하고 도장 또는 표면 처리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연 소재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재와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사인시설물은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의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이며 복잡하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글자색은 바탕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글자색과 바탕색의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문화재 안내에 관한 사인시설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의 기준을 준수하여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관광안내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관광안내소는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기념품판매소,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 비슷한 기능의 건축물과 통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규모의 장식 요소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개방성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문화재가 부각되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접한 시설물과 일관성 있는 형태가 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부속시설물에 기존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문화재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변 시설물과 비슷하거나 통일감 있는 마감 재료를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건축물 안에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여 간결하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명도 대비를 최소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관광안내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을 따랐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안내창구의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외부 간판 및 부착물은 '광고시설물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화장실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와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관람객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곳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가림 벽 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이 시각적으로 보호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문화유산을 압도하지 않는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의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면적으로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임시 또는 가설 형식의 건축물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남녀 화장실 진입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동선을 분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가림 벽 등은 본체와 조화되도록 하고 투박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석재 및 목재 등 자연적인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이질적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문화재와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에 순응하는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창틀 등 국소 부위에 원색 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세부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기념품판매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관람 동선에서 접근 및 인지가 쉽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념품판매소는 가급적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옥외광고물 및 안내시설물은 최소의 수량과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모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건축물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문화재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간결한 형태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불필요한 장식적 디자인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문화재와 비슷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투명한 입면 재료를 사용하여 판매소 안에 배치된 판매 물품이 보이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사인물이 강조된 색채 계획을 지양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판매 상품이 부각되도록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명도 차가 크지 않게 하고,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 외부 간판 및 광고물은 '광고시설물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념품판매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세부기준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매표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주 진입로에서 건축물의 정면성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 또는 주변 시설물과 중첩되는 배치를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모	• 불필요한 면적을 줄이고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부속시설물은 기능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소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문화재가 강조되도록 외관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지붕 및 외관의 형태는 과도하지 않게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간결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유산과 비슷한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조화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인접한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와 비슷한 계열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인, 부착물의 원색 사용을 규제하여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보행약자를 위하여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편안한 높이를 설정하되 매표창구 전면에 수평면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표창구의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매표소가 내부 공간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 출입문, 복도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세부기준을 따랐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관리사무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변 건축물 또는 문화재와 중첩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변의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접한 건축물과 통합하여 규모를 최소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문화재에 순응하고 품격을 살리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변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외관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개방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문화재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연적인 마감 재료를 도입하여 문화재와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한 건물에서 색상 계열과 명도 차를 규제하여 조화롭게 연출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른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과 색조를 사용하여 시설 간에 연계성을 유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변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여 경관을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사로는 '경사로 기본지침'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주차요금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여 개방감과 진입성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진입로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기능 및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절제된 규모와 최소한의 규모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규모가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과 연계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가 강조되도록 외관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차양 같은 부속시설물은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고채도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이미지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연접한 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와 조화되는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허가된 광고물이나 홍보물을 제외하고 다른 부착물의 설치를 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사전 무인 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사용자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경비초소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도보순찰과 기동순찰 등의 중점 업무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관람 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건축물 또는 문화유산과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규모를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여 문화재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절제된 규모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폐쇄감을 주는 입면 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연접한 공공시설과 형태적으로 연계해 일체감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안과 밖에서 서로 잘 보이도록 투명도가 높은 유리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 처리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전통 재료와 대비가 적은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원색 사용을 규제하고 문화재와 조화롭게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양한 계열의 색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접한 공공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수표시설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 조망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외부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부가시설물을 부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불필요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장식 요소 및 부속시설은 건축물의 규모를 압도하지 않도록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형태	•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변 건축물과 디자인을 연계하여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문화재와 조화되는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접한 건축물 및 시설물과 재료를 연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인접한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채도색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부착물이 있을 경우 건물과 같은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높낮이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수표시설 진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사로는 '경사로 기본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수표 창구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높이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동화 수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통과유효폭을 최소 0.9m 이상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휴게의자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관람객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로에 평행하게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휴게의자는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식재 공간 아랫부분에 배치하여 그늘을 제공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을 위하여 바닥의 높낮이 차이, 재질에 유의하여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 사용자의 휴게를 고려하여 휴게의자 주변에는 빈 공간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능과 편의를 고려한 최소의 규모를 설정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물 간에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성제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산책로처럼 조망과 휴게를 동시에 하는 공간은 양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부분적으로 등받이와 팔걸이를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로운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양한 재료의 적용을 지양하고 조화로운 마감재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문화재에 순응하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원색 또는 돌출되는 색채의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주변 공공시설물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그늘시렁(띠걸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 지역의 다른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불필요하게 규모가 커서 문화재를 압도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장식 요소를 최소화하여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그늘시렁(퍼걸러) 안에 설치되는 휴게의자와 형태적으로 연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연접한 편의시설과 통일감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연적인 느낌이 드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주변 시설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 계획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사인 및 부착물은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음수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이용객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배수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양한 방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바닥이 지면과 닿는 면적을 가능한 한 줄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설치 위치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장식적 요소의 과도한 도입을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청결 및 유지, 보수를 고려하여 녹슬지 않거나 잘 썩지 않는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 바닥면은 평탄하며 미끄럼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접한 시설물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석재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에 따른 색채 이미지를 통일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채도 색은 음수대 면적의 5% 이하가 되도록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편의를 고려하여 음수대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한 형태로 연출하고 지면과 높낮이 차이를 없앴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2호의 세부 기준을 따랐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 자전거보관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이용자의 이용 및 인지가 양호한 공간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외부 공간 또는 주차장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자전거 이용객을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와 수량을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시야를 가리는 차양시설 등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디자인을 간결하게 연출해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자전거 정비 가능한 시설물과 연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인접한 공공시설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 유리 및 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가급적 도장을 하지 않고 무광택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과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시설물에 부착되는 부속 요소가 돌출되지 않도록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배경 색채와 비슷한 저채도색으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4. 휠체어 · 유모차보관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접근이 쉬운 진입부, 주요 건물들과 연결점, 휴게시설 주변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를 관리하기 위해 조명시설 또는 감시카메라 주변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장애인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접한 시설물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와 연접하여 설치할 때 문화재와 재질을 연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유리를 사용할 때 투명도가 높으며, 파손의 우려가 적고 강도가 높은 유리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색채	• 휠체어보관대는 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른 시설물들과 일체감을 주도록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건축물을 배경으로 할 경우 건축물과 같은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관대 전면부 잘 보이는 곳에 담당자 연락처가 기입되어있거나 호출벨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5. 경사로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지나친 수직 이동의 동선 계획을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사로 위치를 유도·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경사로의 폭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다닐 수 있도록 1.2m 이상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손잡이는 높이 0.8~0.9m 이내, 지름 3.2~3.8cm 이내로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경사로의 길이가 50m가 넘을 경우 1.5m×1.5m 이상의 참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울타리 등 보행 공간과 주행 공간을 분리하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보행보조기기·유모차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사로 설치 시 시작지점과 끝 지점에 1.2m 이상의 수평참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사로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접점 부분에 반드시 수평참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재료	• 사용자 안전을 위해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불규칙하거나 면이 거칠어 돌출되는 것을 피하고 평탄하게 마감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도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주변과 조화되며 전통적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채도색 사용을 금하고 전통 색과 조화로운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일정한 형태나 그래픽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 휴지통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휴게시설과 연결하여 배치할 때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밀착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디자인을 통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로 인한 규모 확대를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비가 올 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재활용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휴지통의 투입구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재료	• 주변과 비슷하거나 같은 재질을 적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광택을 줄여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 주변 환경에 순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 또는 무채색으로 색채를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른 시설물과 같이 설치할 경우 색상은 단색으로 통일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안내 문구에는 원색의 사용을 금하고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공중전화함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휴게시설물과 연계하여 휴게 공간 안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분리된 배치를 지양하고 밀착 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공중전화함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능과 이용을 고려하여 단순화하고,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수요에 따라 적정 수량의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과도한 장식 요소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인접한 공공시설물과 공통된 디자인을 공유하여 통일감이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문화재와 연계성 있는 마감 재질을 사용하여 일관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고광택 금속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 도장 또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색채	• 주변 시설물과 일체감 있는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를 배경으로 설치될 경우 명도·채도 차가 적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시설물이 연속되어 설치되면 같은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유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공중전화는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8호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8. 자동판매기함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산발적인 분산 배치를 금하고 한 장소에 밀집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휴게의자와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품목이 중복되는 자판기 설치를 지양하여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간체격기준척도를 고려하여 자판기 조작부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문화재에 순응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가급적 자동판매기의 형태를 같은 것으로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이질적인 재료 또는 반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 이미지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주변 시설물 색채와 비슷한 색채를 함과 자판기에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동판매기가 나열되어 있을 경우 같은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그래픽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기타	•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자동판매기는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광고시설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동일선상에 광고물을 배치하여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지주를 이용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모	• 건축물 크기를 압도하지 않는 규모를 설정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과도한 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수량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광고물 유형별로 같은 규격을 설정하여 정리된 경관을 구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와 시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문화재와 인접한 안내시설은 문화재와 비슷하거나 조화로운 재질을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사용하는 색의 수를 제한하고 원색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글자 색과 배경 색의 차이를 줄여 조화되도록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회갈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문화재 이미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차량통제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 간격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물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모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낮은 차량 통제대 설치는 지양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공간 특성 및 보행 공간의 확보 정도를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과도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비상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 분리 기능을 갖추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고광택 금속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도장 또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바닥 포장재와 재질적 특성을 연계하여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한 공간 안에 설치되는 차량통제대는 색채를 통일하여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강조색은 5% 미만의 면적에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보도 포장과 연계성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해 통일성을 부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 기준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세부기준을 따랐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보호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울타리의 기초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사 지형에서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해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지나치게 굵은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되도록 가는 지주를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같은 높이와 규모의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정돈된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높이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장식 요소 또는 판상 구조를 지양하여 문화재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단위별 보수가 쉽도록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디자인을 간결하게 계획해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연적 특성이 강한 문화재에 자연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보호울타리의 재료가 다를 경우 색채를 통일하여 일체감 있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접한 시설물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른 시설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원색 사용을 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2. 안전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체결 구조를 표준화하여 지주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지형과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크기를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는 공간에서는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개방감을 주는 선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차량이 빈번하게 주행하는 구간에 한하여 야간에 명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판이나 반사시트를 부분적으로 부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미관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가공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연속된 시설물은 같은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저채도색을 적용해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3. 경계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계부에 수목을 도입하여 은폐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주를 최소한만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연접한 시설물은 같은 높이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외부에서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높이를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형태	•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양한 지형 특성(평지, 언덕, 모퉁이)에 영향이 적은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면적인 형태보다 선적인 형태를 연출해 폐쇄감을 완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문화재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재질을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외부 환경 색채를 고려하여 문화재 공간과 조화되는 색채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의 색채를 반영하여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품 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4. 화분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연접한 시설물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관람객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화분대 지면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규모를 줄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관이 혼잡하지 않도록 필요 수량만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규모가 과도해 배후 경관을 가리지 않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연접한 공공시설물의 형태를 연계하여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를 단순 모방하거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물 공급과 배수가 쉽도록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인공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비슷한 재료를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 자연 재료의 인위적 모방을 지양하고 이질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목재 사용 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접한 시설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한 공간에 설치되는 화분대는 같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화분대의 입면을 활용한 광고물 또는 안내물 부착을 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화분대 안에 한국 자생종을 식재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5. 소화시설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소화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긴급 상황에 사용하기 쉽게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 및 동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덮개 기능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여 규모를 최소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소화시설 주변의 보호시설은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함 디자인을 적용해 소화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고 문화유산의 부속시설물로 인지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도장 또는 마감 처리할 때 광택을 줄여 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주변 건축물 색과 비슷한 계열의 저명도색·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기능을 고려한 고채도색은 일부에만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저채도색, 저명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6. 분전함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가로 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외부에서 조망되는 면적을 최소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관람 동선에서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 식재로 은폐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모	• 가까이에 있는 비슷한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조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로 설치하고 돌출 이미지를 완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간결한 함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재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와 연계된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배경 색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여러 개를 나열하여 설치할 때 같은 색채로 통일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분전함의 기초부가 노출될 경우 분전함과 같은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점검용 덮개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덮개 경계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포장 면과 이질감을 최소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덮개의 규모는 기능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포장 방식과 덮개의 표면은 같은 형태를 도입하여 이질감을 없애고, 연속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로운 형태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마감 처리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빗물 등으로 오염 및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계부와 포장의 재질을 통일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보도의 색채와 같은 색채를 사용해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녹지 안에 설치할 때 녹지와 비슷한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같은 공간 안에서는 색채를 통일하여 일체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8. 우수용 집수정 덮개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 공간 내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 방향과 수직으로 배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보조이동 수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테두리를 두껍게 하지 않고 주변에 순응하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 이미지와 조화로운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시설물과 연결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철재를 사용할 경우 부식 방지 처리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석재와 같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지면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지면과 색 대비가 적은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단색으로 계획하여 색채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9. 수목보호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보도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수목 하단부에 식재를 도입하여 수목 보호대의 기능을 대신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유지·보수가 쉽도록 구조를 단순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수목이 숨 쉴 수 있도록 폐쇄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도 면과 높낮이 차이를 없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빗물 등으로 오염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마감 처리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지면의 색채를 고려하여 같은 계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단색으로 계획하고 연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접한 시설물과 비슷한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0. 수목지주대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주를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수목보호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규모가 과도한 지주 설치를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지주대의 기능과 안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늘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수목의 규모에 따라 지주 형태를 다르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지주대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철재 재료를 사용할 때 도장을 하여 광택을 줄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 수목과 조화로운 목재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자연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수목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인공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저명도색 ·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수목을 고려하여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 · 저명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1. 부속시설 가림막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건축물 옆이나 뒤쪽에 배치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기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위압감을 주는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를 연출해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과도한 형태와 그래픽 요소의 도입을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배경과 비슷하거나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연환경이 우세한 공간에서는 자연적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고채도 원색 또는 고채도의 화려한 색채 사용을 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배경과 비슷하거나 같은 색채를 적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설치할 때 자연색과 비슷한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2. 지주시설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를 조망하고 보행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와 인접하거나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불필요한 장식 요소 또는 형태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날씬하게 디자인하여 조망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을 지주에 통합하여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전신지주와 결합되는 시설물은 같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가 돋보이도록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위험, 안전, 경고 등의 사인물은 돌출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보안등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화재와 중첩되거나 조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조명시설의 기초부가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모	• 문화재를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를 지양하고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문화재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디자인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연접한 방송, 통신, 보안시설 등을 지주에 통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재료	• 배경과 비슷한 재료를 도입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풍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광택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무채색이나 갈색 계열의 저명도색·저채도색을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연속되는 보안등은 같은 색으로 통일하여 연속성을 부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로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4. 경관조명등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동선의 경계부에 평행 배치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경관조명등 주변에 식재 등을 이용하여 은폐되도록 유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바닥에 설치되는 조명은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주변 V경관에 순응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변 조명시설과 형태를 연계하여 일관된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외부로 노출되는 복잡한 조명시설은 덮개를 사용하여 가렸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고풍택 재료를 사용할 때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또는 도장 처리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자연환경에 설치할 경우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저명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 공간에 설치할 때 저명도의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여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5. 보행등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야간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을 고려하여 동선 경계부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롭게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조명시설에 공통된 디자인을 적용해 일관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등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은폐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녹지 공간 안에 설치되는 보행등은 자연 재료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무광택 재질을 사용하여 이질감을 완화하는 마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자연환경에 설치할 때 갈색 계열의 저채도색·저명도색을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 공간에 설치할 때 저명도의 무채색 계열로 주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연속적인 보행등은 같은 색채로 통일하여 연속성을 부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6. 벽부등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시설물의 간격과 비례를 고려하여 일체감이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에 직접 부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과도한 장식 요소의 규모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기능 및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형태	• 배경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형태적 이질감과 부조화를 완화하고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부착 위치의 배경 색을 고려하여 배경과 같거나 비슷한 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와 조화되는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7. 공사용 가설건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공사용 가설시설은 가설울타리 안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로 연출해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도하지 않은 입면 디자인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도장하거나 무광 재질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원색 사용을 금하고 색상 수를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와 비슷한 색채를 계획해 통일감 있는 공간 이미지를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단색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 10 절

38. 공사용 가설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점자블록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자블록의 동선을 벌려 놓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시설물 외부에 불필요한 시설물 배치를 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규모	• 시설물 간 높낮이를 통일하여 일체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보행로에서 노출되지 않는 적정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 태	• 형태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연속성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 내부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내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표면을 무광택으로 처리해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관람객의 외부 조망이 빈번하거나 장기간 설치되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다른 재질로 변화를 주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비슷한 색이나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를 고려하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갈색 계열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재료의 색채는 통일되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9. 이동식 통제울타리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보행동선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규모가 과도해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서체는 인지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와 조화되는 크기로 적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결합이 쉬운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규격화된 형태로 분리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이동과 설치가 쉽도록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 문화재와 조화로운 자연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강조 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원색 사용 비중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원색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채도를 낮추고 명도 대비를 줄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 부가적인 안내 사인과 광고물 등의 부착을 금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0. 임시건축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창고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모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문화재에 순응하는 간결한 형태로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장식 요소를 최소화하여 문화재에 순응하도록 디자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불필요한 안내시설의 부착을 지양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문화재와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창틀이나 노출되는 부속시설물은 도장을 하여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문화재와 조화되게 비슷하거나 같은 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지붕은 원색 사용을 피하고 회색, 회갈색 계열의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창틀, 출입문 등은 건축물과 같은 계열의 저채도색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 타	•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과 부속시설을 은폐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1. 천막시설물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문화재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천막시설은 통합하여 한 장소에 밀집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기능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문화재를 압도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형태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한 프레임 구조로 천막시설을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개방된 구조로 연출하여 주변의 조망을 확보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재료	• 반사율이 높은 비닐류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양한 재료의 복합적 사용을 최소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철제 구조 틀은 마감 처리를 하여 인공적 느낌을 완화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색채	• 문화재에 순응하는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연속된 시설물은 단색으로 계획하여 통일감을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 전선 등의 부속시설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2. 현수막시설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배치	• 주 관람 동선에서 문화재 조망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현수막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두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규모	• 가로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규격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연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다른 시설물에 부착할 경우 시설물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일체감이 들도록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점검 내용	해당 여부	적용 여부
	•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로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태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필요한 사항만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서체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료	• 문화재와 이질감 있는 비닐 재질 대신 천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색채	• 배경 색과 글자 색을 포함하여 2~3가지 이내의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색으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설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크기가 적절한 서체로 계획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11절

석조문화재 생물침해와 처리방안



제11절

석조문화재 생물침해와 처리방안

■ 소관부서 : 국립문화재연구소(042-860-9381)

석조문화재란

석재는 오랜 세월 동안 단순도구의 제작에서 건축물, 공예품, 창조적 예술품에 사용된 천연재료이다. 우리는 선조로부터 석재로 전해진 것에 대하여 석조유물이라 통칭하며 이중 그 가치가 소중한 유물에 대해서는 석조문화재로 구분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석조문화재는 일반적으로 석탑, 석성, 석비, 부도, 석불, 당간지주 등으로 대표되고 이는 길이 후손에게 전해야 할 물질적 산물이며 정신적 가치이다.

생물학적 손상이란

석재는 필연적으로 자연풍화 현상을 겪으면서 조금씩 훼손되어 간다. 최근의 환경오염은 석조문화재의 풍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오염물질 중 NOx, SOx 및 분진들은 유기물로 침착되어 미생물의 영양원이 된다. 미생물이 발생한 석재는 생물막(Biofilms)형성으로 인해 표면이 물리·화학적으로 손상될 뿐만 아니라 고등식물의 유입을 가속화하여 훼손이 가중된다. 이는 석재의 외관을 왜곡하는 부가적인 손상으로 이어진다.

석조문화재 생물학적 손상 요인



1) 물리적 요인

미생물의 균사나 식물체의 뿌리가 석재의 약화된 조직 또는 갈라진 틈에 성장하면서 뿌리가 재질에 압력을 가해 나타나는 손상

순림사오층전탑(보물 제189호)

옥개부에 자생하는 초본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부재를 이완시키고 특히 3층 옥개부의 목본식물(야카시나무)은 구조적 손상을 발생시킴



2) 화학적 요인

미생물과 식물들은 뿌리를 통해 산성물질인 유기산을 분비하여 무기영양분을 흡수하고, 이 과정에서 석재는 유기산에 의해 염(salt)과 킬레이트(chelate)화합물로 변화되며 이로 인해 석재의 표면이 바리바리해지는 손상

보각국사 정혜원릉탑비(보물 제658호)

고착지의류의 생장으로 인해 석재 표면의 박리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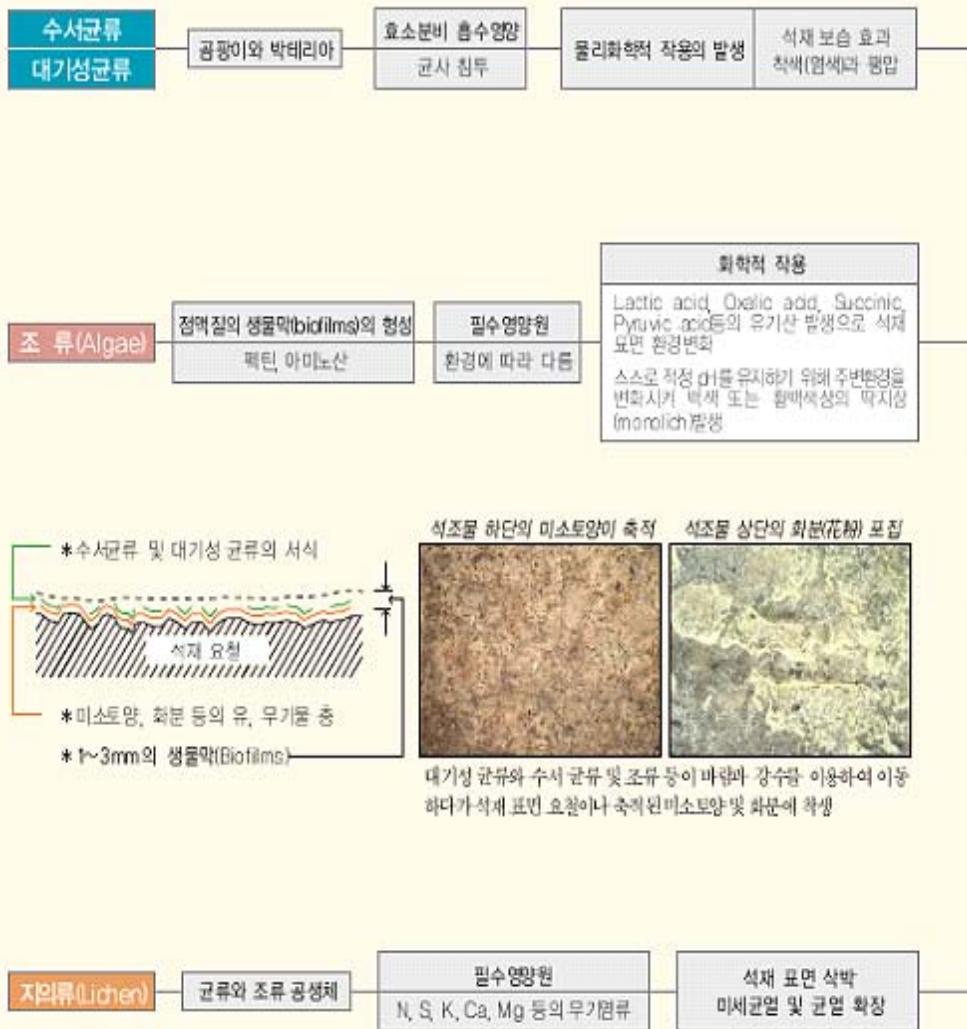
3) 표면오염 및 미관손상

생물군체의 성장은 물리·화학적 손상 외에도 석재의 문양, 기독 및 조각 등 석조문화재의 미적 가치를 왜곡시키는 손상으로 발견

현일동삼층석탑(보물 제610호)

답신에 발생한 생물막(지의류)에 의해 조각살이 오염되어 미적 가치 손상

석조문화재 생물침해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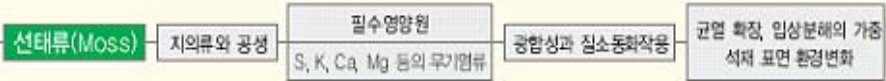


1 차 천 이

지의류는 균류(菌類)와 조류(藻類)가 공생하는 생물군이다.

균류가 조류를 둘러싸고 있으며 균류는 균사로 물을 흡수하여 보습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하여 균류와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공생(共生)관계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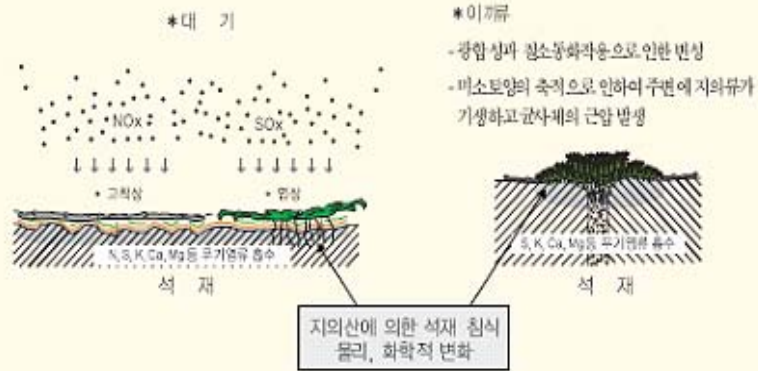
실험 결과에 의하면 조류는 혼자서 살 수 있어도 균류는 혼자서 살 수 없기에 균류가 조류에 의존하는 관계로 해석된다. 그리고 관다발조직이 없어 높이 자랄 수 없고 땅을 기면서 자라거나 관다발식물의 줄기나 가지에 매달려 자란다.



지의류와 선태류의 생장

문화재보존과학에서는 고착상지의체와 연상지의체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고착상지의는 토양이나 암석의 표면을 따라 단단히 고착하여 생장하고 연상지의는 이끼류와 구별되며 흔히 둥근 잎(leaf) 모양을 하고 있다. 자기 체적에 비해 33배까지 수분을 저장하기에 보습효과가 높으며 미세분진 및 토양을 축적한다. 축적되는 미세토양은 다소 산성을 띠며(pH 6.6정도).



수근식물 (현화식물) 수근식물은 영채식물을 포함하여 뿌리의 생장으로 근암이 발생하고 유기산의 화학적 작용이 본격적으로 석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석조문화재 침해생물 도감

진균류

부식은 석조 문화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투하여 미생물(진균류)을 번식하게 하며, 부식한다. 건조상태로 있을 때는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번식한다. 건조상태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로 번식하지 못한다.



Penicillium sp.
Chaetomium sp.
Monascus sp.

석조 문화재 부식은 석조 문화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투하여 미생물(진균류)을 번식하게 하며, 부식한다. 건조상태로 있을 때는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번식한다. 건조상태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로 번식하지 못한다.



Aspergillus sp.
Trichoderma sp.
Penicillium sp.

물과 표면에 박으로 나타나며 건조로 인한 표면에 뒹굴거나, 물과 수분이 많거나 젖은 표면에 주로 발생한다.



Aspergillus sp.
Trichoderma sp.
Penicillium sp.

이끼류

다양한 환경과 미소환경이 조성된 암석에 발생



Bryum octocetatum
Bryum argenteum
Diploicetia fuliginea

보통 이끼류는 물이나 습도 또는 강, 자, 물은 나무줄기 등 여러 곳에서 생장하여 군락을 형성한다. 산 환경에 번여 풀이 많은 습기 환경에서 자생한다.

다양한 환경이나 물이 흐르지 않는 습한 곳이나, 수생에 관계없이 발생



Gelidium sp.
Gelidium sp.
Gelidium sp.

다양한 환경이나 물이 흐르지 않는 습한 곳이나, 수생에 관계없이 발생



Gelidium sp.
Gelidium sp.
Gelidium sp.

다양한 환경과 미소환경이 조성된 암석에 발생



Gelidium sp.
Gelidium sp.
Gelidium sp.

초본류

석조 문화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투하여 미생물(진균류)을 번식하게 하며, 부식한다. 건조상태로 있을 때는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번식한다. 건조상태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로 번식하지 못한다.



Artemisia sp.
Artemisia sp.
Artemisia sp.

다양한 환경과 미소환경이 조성된 암석에 발생



Artemisia sp.
Artemisia sp.
Artemisia sp.

지衣類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衣類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표면에 불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빛은 녹색 또는 황색의 얼룩을 쉽게 만들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생한 지衣類 표면에 녹말이 남기도 한다.



Parmelia sp.
Parmelia sp.
Parmelia sp.

지衣類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衣類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표면에 불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빛은 녹색 또는 황색의 얼룩을 쉽게 만들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생한 지衣類 표면에 녹말이 남기도 한다.



Lecanora sp.
Lecanora sp.
Lecanora sp.

지衣類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衣類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표면에 불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빛은 녹색 또는 황색의 얼룩을 쉽게 만들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생한 지衣類 표면에 녹말이 남기도 한다.



Lecanora sp.
Lecanora sp.
Lecanora sp.

지衣類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衣類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표면에 불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빛은 녹색 또는 황색의 얼룩을 쉽게 만들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생한 지衣類 표면에 녹말이 남기도 한다.



Lecanora sp.
Lecanora sp.
Lecanora sp.

지衣類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衣類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표면에 불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빛은 녹색 또는 황색의 얼룩을 쉽게 만들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생한 지衣類 표면에 녹말이 남기도 한다.



Lecanora sp.
Lecanora sp.
Lecanora sp.

지衣類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衣類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표면에 불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빛은 녹색 또는 황색의 얼룩을 쉽게 만들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생한 지衣類 표면에 녹말이 남기도 한다.



Lecanora sp.
Lecanora sp.
Lecanora sp.

지衣類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衣類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표면에 불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빛은 녹색 또는 황색의 얼룩을 쉽게 만들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생한 지衣類 표면에 녹말이 남기도 한다.



Lecanora sp.
Lecanora sp.
Lecanora sp.

지衣類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衣類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표면에 불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빛은 녹색 또는 황색의 얼룩을 쉽게 만들어서 고대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생한 지衣類 표면에 녹말이 남기도 한다.



Lecanora sp.
Lecanora sp.
Lecanora sp.

석조문화재 생물침해 조사표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Biodeterioration Record Form,

명 칭 :	지정번호 :
소재지 및 장소명 :	조사일/시간 및 기후 :
조사목적 :	
석조문화재의 종류 석탑 석비 부도 마애불 당간지주 기타 _____ 공예품 (국내 / 국외) V	
제 작 시 대 석기시대 <input type="checkbox"/> 고조선 <input type="checkbox"/> 삼국 <input type="checkbox"/> 통일신라 <input type="checkbox"/> 고려시대 <input type="checkbox"/> 조선시대 <input type="checkbox"/> 근대 <input type="checkbox"/> V	
석 재 재 질 화강암 <input type="checkbox"/> 대리암 <input type="checkbox"/> 사암 <input type="checkbox"/> 응회암 <input type="checkbox"/> 퇴적암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_____ V 두가지 이상 : _____ 분양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V 분양 상태 : 양각 <input type="checkbox"/> / 음각 <input type="checkbox"/> V	
석조문화재현황	석재보존상태 90% > <input type="checkbox"/> 70% > <input type="checkbox"/> 50% > <input type="checkbox"/> 40% < <input type="checkbox"/> V (석조물 전체 크기에 비례한 보존)
	석재풍화상태 D-1 <input type="checkbox"/> D-2 <input type="checkbox"/> D-3 <input type="checkbox"/> D-4 <input type="checkbox"/> (석재풍화 등급 참조)
	생 물 피 도 80% > <input type="checkbox"/> 60% > <input type="checkbox"/> 40% > <input type="checkbox"/> 20% < <input type="checkbox"/> V
	생 물 종 조류 <input type="checkbox"/> 지의류 <input type="checkbox"/> 이끼류 <input type="checkbox"/> 수근식물 <input type="checkbox"/> V
	주 변 환 경 도심 <input type="checkbox"/> 도심 외곽 <input type="checkbox"/> 임야(들판) <input type="checkbox"/> 산 <input type="checkbox"/> / 저수지 <input type="checkbox"/> 강 <input type="checkbox"/> 늪지 <input type="checkbox"/> V
주변수목거리 m 인근수계거리 m	
석조물 사진	주변환경 사진
<small> * 용어설명 피도: 석조물에 생물체가 살고있는 표면적의 비 지류: 나뭇, 조류, 성체의 분해에 부채하에 생육하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 침식지점: 가운뎃거울에 침착하는 원형의 침식 모양을 띠며, 침식공의 크기에 따라 침식 정도를 고저지 지류: 상하부가 넓은 각형의 침식: 침식공에 침착하여 분리가 되지는 </small>	
<small>* 추가사진은 뒷장에 기록</small>	

석조문화재 생물피해 제거

생물처리제의 적용과 처리시 유의점

- ① 살생물제는 처리된 후 비가 오면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건조한 날에 실시해야 한다. 바람부는 날에는 분무시 약제가 넓게 퍼질 수 있으므로 작업자와 주변 환경에 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② 석재 표면이 지의류와 이끼류 그리고 식물체로 두껍게 층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살생물제 처리 전에 생물체의 부분적인(기계적 혹은 수작업)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 ③ 선택된 살생물제 용액은 작업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며 석조를 주변지역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 약품 처리전 주변 식물체 및 토양위에 보호 시트 설치,
물의수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기계적 세척만을 실시함.
- ④ 처리방법으로는 석재의 보존 상태, 제거하고자 하는 생물체, 생물피해의 밀도와 분포 그리고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분무(spraying), 도포(brushing), 습포제 방식(poultice) 또는 주입방식(injection)을 선택한다.
- ⑤ 석재 표면의 생물막을 제거할 때는 희석된 살생물제 용액을 분무(spraying) 및 도포(brushing)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 * 도포방법 : 석재표면이 매우 좋은 상태로 약품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권장
 - * 분무방법 : 손상된 석재표면을 처리할 때 권장.
- ⑥ 식물을 제거 처리할 때는 부분적인 분무와 도포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식물의 초본과 목본류의 밀동에 살생물제를 도포 또는 분무 처리 하면 그들의 퇴화를 촉진시키고 재생장을 방지할 수 있다.
- ⑦ 석재 표면에 특별히 딱딱한 침적물이 있는 경우 살생물제의 희석된 용액과 표면의 접촉시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셀룰로즈 습포제를 이용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습포제는 일반적으로 증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천으로 덮여 있는 형태이다.
 - * 선택된 살생물제는 일반적으로 석재 세척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AC322라 불리는 아교질의 연화제 연고에 첨부되어 사용되기도 함.
- ⑧ 생물의 성장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살생물제가 사용되어질 경우, 먼저 적용된 살생물제는 적어도 초기 살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처리된 후 1주일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1주일 후 죽은 생물 조직은 솔로 제거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성공적으로 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2차 살생물제를 제조사 및 보존처리 전문가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한다.
 - * 살생물제 처리는 일차적으로 생물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고사에 따른 생물체의 건조화로, 약제 처리 후 주변 환경과 종에 따라서 6~24개월 후에 바람이나 빛분의 작용을 통해 자연적으로 떨어져 제거될 수 있음.

분무법(spraying)에 의한 지의류 제거

처/리
대/상

- 생물침해가 심하지 않고 표면에 지의류가 피복된 석조물
- 암각 문양이 없거나 생물침해가 발생되지 않은 석조물
- 풍화가 심하게 발생된 석조물 : 석탑 전탑, 미애불 등

▶ 생물피해 정도에 따라 용액 제거제를 분무횟수 2~5회로 조절하여 지의류가 발생한 석조물 표면에 분무 처리한다.

- 조류 및 엽상지의류 등에 의해 피복된 석조물 : 2회 미만
- 고차 지의류 등의 생물침해가 딱딱하게 고착된 석조물 : 2-3회 반복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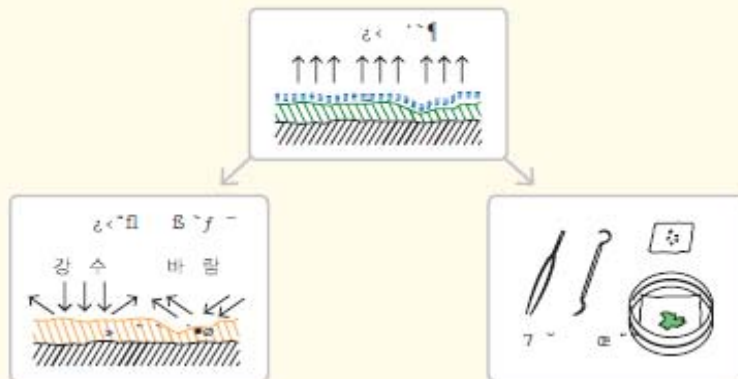


▶ 분무시 과도한 튀김이나 흘러내림이 없도록 노즐과 압력을 조절하여 석재표면에 분무하도록 한다. 분무처리는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석재 표면 위에서부터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밀어서 처리한다.

▶ 분무처리는 바람이 없고 건조한 날에 실시하며, 처리약제가 작업자와 주변 환경에 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보존처리시 흘러내린 약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처리 전에 보호시트를 식물체 및 토양 위로 덮어 놓아야 하며, 처리시 발생한 폐수는 집수시설을 이용하여 수거 분리하여야 한다.

- 물의 수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주의



▶ 분무처리 1주일 후에 석조물 표면에 남아있는 죽은 생물조직은 부드러운 솔로 건식세척을 실시하여 제거 하며, 필요에 따라 2차 분무처리를 실시한다(전문가 검토).

- 약제처리 후(6~24개월 후) 고사된 생물조직은 바람이나 빗물의 작용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부스러지거나 떨어져 제거된다.

도포법(brushing)에 의한 지의류 제거

처리
대상

- 생물침해가 암각 및 문양에 발생된 석조물
- 생물침해가 심하게 발생되어 지의류가 강하게 표면에 고착된 석조물
- 풍화가 심하게 발생되지 않은 석조물 : 석탑, 미애불, 불상, 비문 등

▶ 생물풍화 정도에 따라 AC322 약제의 농도(50%, 75%, 100%)를 조절하여 지의류가 발생한 석조물 표면에 약 0.5mm 두께로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 조류 및 엽상지의류 분포, 피도 50%미만 : 약제농도 50%~75%
- 엽상지의류 및 고착지의류 분포, 피도 50%이상 : 약제농도 7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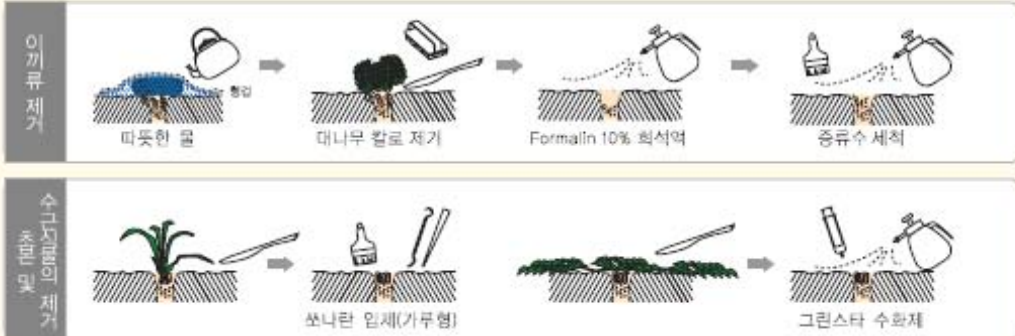
- ▶ 24시간 경과 후에 AC322 약제는 소형펌프를 이용하여 물로 석재표면을 세척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 주변석재와의 이질감을 고려하여 세척정도를 결정하며 석재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요한다.
- ▶ 약제가 강알칼리성이므로 약제에 의한 석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석조물의 표면을 붓과 물로써 깨끗이 세척한다.
- ▶ 보존처리시 흘러내린 약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처리 및 세척 전에 보호시트를 식물체 및 토양 위에 덮어 놓아야 하며, 처리시 발생한 폐수는 집수시설을 이용하여 수거 분리하여야 한다



▶ 제거처리 1주일 후에 석조물 표면에 남아있는 죽은 생물조직은 부드러운 솔로 건식세척을 실시하여 제거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의류의 재발생을 확인한다.

* AC322 주성분 : 5% Na₂CO₃, 3%(NH₄)₂CO₃, 2.5% EDTA, 6% OMC, 0.3% Benzalkonium Chloride

이끼류 및 수근식물의 제거



▶ 살생물제는 밀동의 측면과 윗부분에 젖을 정도로 충분히 처리하며 때때로 처리제가 용이하게 내부로 주입될 수 있도록 드릴을 이용하여 목재 밀동에 구멍을 뚫기도 함

석재 풍화상태에 따른 처리구분

D-1 신선한 암반 (Fresh)



모양과 색이 변하지 않고 결함이 광택을 보이며, Joint면이 부분적으로 얼룩져 타격을 가했을 때 맑은 소리가 남

D-2 약간풍화 (Slightly Weathered)



일반적으로 Fresh한 상태를 보이나 절리면의 수변부가 다소 변색되어 있고 모양의 강도는 Fresh한 경우와 별차이가 없으며, 장석이 다소 변색되어 있는 상태로 Open Joint의 경우는 침투물이 많지

D-3 중간풍화 (Moderately Weathered)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색되어 있으며, 절리는 Open Joint로서 절리면 안쪽까지 변질되어 있다. 강도는 이외에서도 Fresh한 상태와 쉽게 구분되며 대부분과 장석이 변질되어 있고 일부는 침투화

풍화도 1, 2, 3 등급

도모처리(O) : 생물침해가 심한 경우
분무처리(O)

풍화도 4, 5 등급

도모처리(X) : 골리짐인 처리 절대금지
분무처리(O)

D-4 심한풍화 (Highly Weathered)



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자들이 변색되어 있으며, 절리는 거의 Open Joint로서 절리면으로부터 상당히 깊은 곳까지 변질되어 있고 Core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

D-5 완전풍화 (Completely Weathered)



입자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완전히 변질은 받은 상태로 토질로 분류

제 3 장

문화재 안전·방재 분야



제1절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제1절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 소관부서 : 안전기준과(042-481-4822)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소방설비의 설계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소방설비에 적용한다.

제 3 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자동화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3.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화재안전기준 별표2, 3, 4에 따라 형식승인된 수치를 말한다.
4. “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충압펌프”라 함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6. “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외소화전,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 방수총 등의 수계소화설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2. “옥외소화전”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소화설비로 사람이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며, 평상시 방수구에 호스 및 관창이 결합되어 있으며 비상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3.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소화설비로 사람이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며, 평상시 방수구에 호스릴 및 관창이 결합되어 있으며 비상시 신속하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방수총”이라 함은 배관에 고정식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5. “자동화재탐지설비”란 열, 연기, 불꽃 등을 자동 감지하거나 발신기의 수동조작을 통하여 건물내의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화재발생을 벨, 싸이렌 등의 음향으로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16. “자동화재속보설비”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8.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9.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21.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22. “동력전원”이라 함은 전동기와 같은 기계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원을 말한다.
23. “분전반”이라 함은 외부에서 받은 전력을 작은 단위로 분배하는 것으로 과부하 및 누전에 대한 차단능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4. “소방대 도착시간”이라 함은 관할 소방서(소방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서 화재를 인지·

접수한 후 해당 문화재에 도착하는 예상시간 중에서 최장시간으로써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방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문화재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방관계법령 및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 5 조(방재시설 디자인) 소화기보호함, 옥외소화전 등은 “문화재 방재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설치한다. 다만, 서원, 향교의 경우에는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에 따른다.

제 6 조(소화기구) ① 목조건축물 문화재의 외부에는 그 주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20m마다 A급 3단위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그 소화기가 직사광선 및 빗물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소화기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목조건축물 문화재의 내부의 주출입구에는 분말소화기와 청정소화기를 각각 1개이상 설치하고, 당해 소화기로부터 보행거리가 20m가 넘는 경우에는 20m마다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따로 구획된 거실의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분말소화기는 A급 3단위 이상, 청정소화기는 A급 1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을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옥외소화전설비)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최소 수원은 당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2개 이상인 경우 2개)에 소방대 도착시간이 20분 이하이면 7㎥, 20분 초과이면 10.5㎥, 30분 초과이면 14㎥, 40분 초과이면 17.5㎥를 곱한 양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25MPa이상이고, 방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③ 호스접결구는 문화재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함 내에는 호스접결구와 호스 및 관창이 결합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그 길이는 문화재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옥외소화전이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방수구의 한쪽에 40mm 레듀샤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 ①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의 최소 수원은 당해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의 설치개수(5개 이상인 경우 5개)에 소방대 도착시간이 20분 이하이면 2.6m³, 20분 초과이면 3.9m³, 30분 초과이면 5.2m³, 40분 초과이면 6.5m³를 곱한 양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5개 이상인 경우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각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를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 ③ 호스접결구는 문화재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호스는 구경 25mm의 것으로 하고, 문화재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함 내에는 호스접결구와 호스 및 관창이 결합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방수총설비) ① 방수총은 산불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화재방호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방수구는 문화재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방수총의 유효수량은 당해 방수총의 설치개수(2개 이상인 경우 2개)에 소방대 도착시간이 20분 이하이면 14m³, 20분 초과이면 21m³, 30분 초과이면 28m³, 40분 초과이면 35m³를 곱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방수총(2개 이상인 경우 2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하나의 방수총은 방수압이 0.7MPa 이상이 되도록 하고, 방수량은 700lp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방수총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40mm호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호스접결구를 연결할 수 있다.

제10조(수원 확보) ① 당해 문화재 현장에 방수총, 옥외소화전 또는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 중 2 이상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총(2개 이상인 경우 2개), 옥외소화전(2개 이상인 경우 2개),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5개 이상인 경우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수량을 산정하여 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원은 소화수조의 용량 중 소화펌프가 흡입하여 토출가능한 유량으로 수조의 최고 수위와 펌프가 흡입 가능한 최저수위(수조의 바닥이 아님)까지의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가압송수장치) ① 가압송수방식은 상수도방식 또는 고가수조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소방펌프를 감시 제어반에서 자동 기동시키는 경우 감시제어반이 고장 등으로 소방펌프의 기동신호가 차단 될 때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펌프를 자동 기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
2. 380V의 3상 동력전원을 공급하기 어렵거나, 발전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소방전용으로 설치할 것.
3.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기동하기 위한 제어용 축전지는 수신기에서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소화설비 방수구 인근의 보호함에 기동스위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보호함에 기동스위치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할 것.

제12조(송수구) 소방차량이 문화재에 접근할 수 없어 화재진압이 어려울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 방수총설비, 문화재용 옥외호스릴설비의 배관에 송수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수구 설치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 연결송수관설비 제4조(송수구)에 따른다.

제13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1. 경비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근무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그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곳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발신기의 표면의 색상 및 형태는 문화재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표 1의 부착높이 및 구조에 따라 설치할 것.

〈표 1〉 감지기의 종류에 따른 부착높이 및 구조

구분	부착높이 · 구조	감지기의 종류
옥내	높이 8m 미만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센서식선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높이 8m 이상	불꽃감지기, 광센서식선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옥외	개방구조, 외벽면, 처마하부	불꽃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광센서식선형감지기
	마루 또는 루 하부	불꽃감지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비교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및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8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m 미만인 것으로 사용한다.		

2. 목조건축 문화재의 외부에는 적응성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마루 또는 루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0.15m 이상(마루 또는 루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0.3m 미만으로 방화방지용 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고 1.5m 이하인 경우로서 적응성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추가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온식감지기(보상식을 포함한다)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할 것
4. 연기 및 먼지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연기감지기 외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차동식·보상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표 2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표 2〉 부착높이에 따른 정온식 감지기의 종류별 감지면적

부착높이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4m 미만	50㎡	40㎡	50㎡	40㎡	40㎡	30㎡
4m 이상 8m 미만	30㎡	25㎡	30㎡	25㎡	25㎡	15㎡

6. 감지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목조건축 문화재의 내부 및 외부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 열 또는 연기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다.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라.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마. 천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길이(보 등과 같은 것)로 구획되어 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지기를 추가 설치할 것.
 - 바. 감지기는 그 표면의 색상 등 문화재의 외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화재감지 성능을 감소시키는 유형의 감지기는 제외한다.
7. 연기감지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스포트형연기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표 3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표 3〉 부착높이에 따른 스포트형 연기감지기의 개수

부착높이	바닥면적
4 m 미만	150㎡
4 m 이상 8 m 미만	75㎡

- 나.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다.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라.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8.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및 광센서식선형감지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할 것
 -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할 것
 -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하되,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 마.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9. 불꽃감지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문화재 현장에 반입된 불꽃감지기는 설치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한 성능검사(12개 이하는 전체, 12개 초과는 무작위 선정하여 12개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할 것.

- 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 다.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지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라.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하여 감지구역이 최대가 되도록 할 것
 - 마.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도록 할 것
 - 바. 옥외에 설치하거나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할 것
 - 사. 문화재의 처마 하부에 설치하여 옥외 화재 감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벽면이 감시되도록 할 것.
 - 아. 옥외의 불꽃감지기는 지지대에 설치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지지대는 낙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0.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 온도·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11.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할 것
 -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할 것
 -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있도록 할 것
 -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 바. 감지기는 감지성능에 지장이 없이 은폐시공하거나, 문화재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사.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2.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4조(자동화재속보설비)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자동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 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속보기는 당해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 국민안전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속보기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별표 17 제17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절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제2절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 소관부서 : 안전기준과(042-481-4822)

가이드라인 적용 기본원칙

-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 및 시공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과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 가이드에는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ICT 기술적용에 의한 전기설비(분전반, 배선, 전등·전열) 개선, 접지와 피뢰설비 설치기준 및 기타사항(감리, 안전점검)을 기술함
- 다만, 문화재 현장의 제반여건이 각각 달라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대로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실무적용 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준 제4조에 따른 문화재 전기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과 그 주변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전반”이란 특고압 또는 고압의 수전을 위한 배전반을 말한다.
2. “배전반”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폐기, 차단기, 계기(전압계, 전류계 등)를 설치한 장비를 말한다.
3. “분전반(分電盤)”은 ICT 기술을 적용하여 분기회로의 과전류, 과부하, 누전, 단락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계기와 차단기 및 전기적 사고위험의 징후검출과 검출된 정보전달 장비 등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옥외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5. “옥내배선”이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6. “전력간선설비”는 수전측의 배분전반으로부터 목조문화재에 설치하는 분전반으로 연결하는 전력간선설비를 말한다.
7. “조명설비”란 문화재와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기구를 말한다.
8. “접지설비”는 기능상 종별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로 구분하며, 기능상 종류별 접지는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 접지를 말한다.
9. “피뢰설비”는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손상보호, 피뢰설비 주위에서의 인축 상해보호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경관조명”은 문화재와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제 4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관계법령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분전반의 시설) 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분전반은 문화재의 경관을 고려하고 각 호의 장소에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 및 차단기 등의 조작이 용이한 장소
 2.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3.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제1호·제2호를 충족하는 장소
- ② 문화재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ICT 기술을 적용하여 메인과 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와 부하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 과부하, 누전, 단락, 정전 등의 전기적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감시데이터는 보관 관리하여 고장시 원인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분전반의 메인과 각 분기별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원인은 실시간 감시·운용되어야 하며, 감시에 의한 경보 발생시 메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분기회로는 소유자·관리자 및 전문 유지관리업체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전기화재 위기징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전기적 원인 외에 각 호에 의한 환경감시를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전반 내 과열, 스파크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소화기능

- 2. 지진 및 진동에 의한 전기적 위험 감시
- 3. 분전반 문 개방상태 및 내부 온도 감시
- ⑤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외부로부터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하고, 분전반에 접지와 서지보호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기기와 부하회로를 보호하며, 시건장치와 야간식별 표시, 내부 전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⑥ ICT 기술이 적용된 분전반의 설치는 별표1의 구축도와 같고, 유지관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문업체가 관리하여 전기위험 징후감시에 의한 전기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배선의 시설) ① 배선은 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상 충분한 강도 및 절연성능을 가진 것으로 다음 각 호 중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한 것
- 2.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에 적합한 것
- 3. 금속외장케이블(AC형)에 의한 무배관계이블
- ②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중간접속은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되어야 한다.
- ③ 전력간선과 노출 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전력간선은 지중매설 하고, 매설의 위치를 표시 할 것
 - 2. 건물의 내·외부에 노출되는 전선은 문화재의 미관을 고려할 것
 - 3. 전기설비 개선시 기존 전선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전선은 제거하고, 신설 및 기존 전선에 대한 재배열 할 것
 - 4. 노출된 전선 중 불가피한 접속부는 화재발화 및 감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할 것
- ④ 옥내에 노출되는 전선은 견고하게 고정하되 문화재와 경관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합한 지지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조(전등과 전열설비) ① 문화재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 설치하여야 한다.

- 1. 조명기구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조명의 밝기, 조명기구의 형태, 배열, 크기, 색상 등은 문화재와 조화가 되도록 할 것

2. 광원으로 인해 문화재의 변색, 탈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조명등은 설치장소에 따라 형태와 구조 등 건축기법, 양식, 습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설치할 것
 - ② 외부에 설치하는 보안등은 문화재 현장에 따라 선정하되,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고, 문화재청 디자인 제품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외함에 접지를 반드시 실시하여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옥내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합한 수량을 설치하되 가능한 설치개소를 최소화하고, 콘센트에는 반드시 접지하여 감전사고와 전기기구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건물 내에서 전기온돌, 냉·난방용 전기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로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 8 조(접지설비) ① 분전반, 조명기구(보안등 포함), 콘센트 등에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하고, 약전설비(방법, 소방)를 보호하기 위한 SPD마다 접지를 하되, 등전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접지는 기능상 목적에 따라 공동접지, 통합접지 등을 선택하되, 충분한 내식성과 내구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접지설비는 서로 기능의 간섭이나 감소가 없도록 하며, 서지전류의 빠른 방전을 위한 접지임피던스 저감 등의 접지설비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접지선과 접지극은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9 조(피뢰설비) ① 피뢰설비는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손상보호와 피뢰설비 주위에서의 상해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성능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에 적용하는 피뢰설비는 문화재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낙뢰에 의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레벨,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피뢰설비에 대한 점검이 용이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접지저항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④ 유도뢰와 간접뢰는 전원선과 통신선, 접지선 등을 통해 유입될 수 있으므로 통신장비, 제어장비, 전원선 등 모든 전자장비에는 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기타 문화재에 적용하는 피뢰설비와 SPD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및 KS C IEC 62305, 61643 등의 관계법령과 기준에 준하되,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사업 추진 시 감리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전기설비 개선 또는 ICT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전기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한 관리시에는 각 호에 준하는 점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위탁 또는 자체관리에 의한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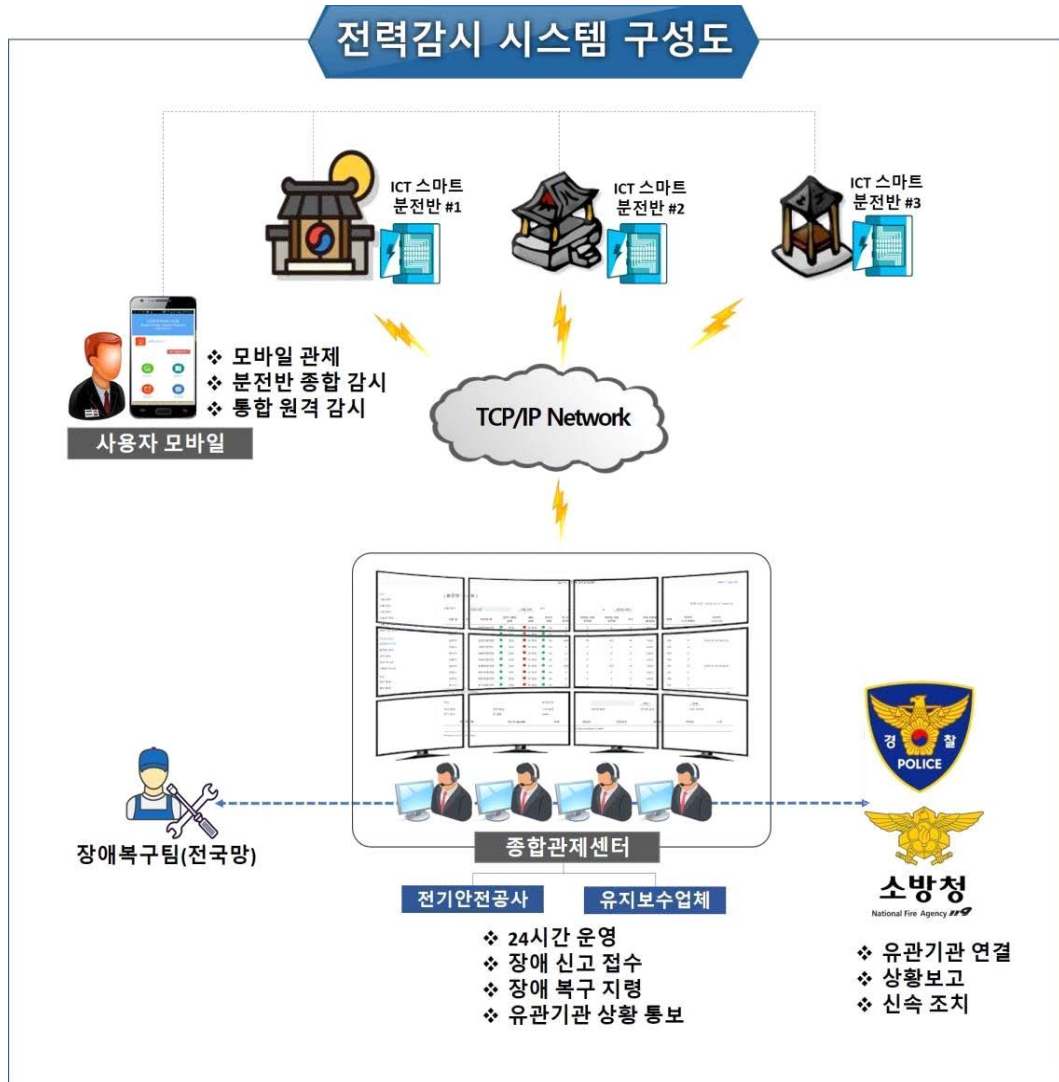
2. 위탁관리 시에는 정기점검 보고서를 작성 보관

3. 수시고장에 의한 출동시에는 고장전·후 상태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사업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외부 전문가(또는 문화재청의 업무담당자)의 자문과 점검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별표 1]

ICT 기술적용 문화재 분전반 구축도





제3절

문화재 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제3절

문화재 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 소관부서 : 안전기준과(042-481-4822)

가이드라인 적용 기본원칙

- 문화재 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 및 시공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과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문화재 통신설비 설치 가이드에는 방법, 영상모니터링, IoT시스템, 방송설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의 설치기준을 기술함
- 다만, 문화재 현장의 제반여건이 각각 다르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대로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실무적용 시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기술기준에 따른 문화재 방범설비와 방송설비(이하 “통신설비”라 한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과 그 주변에 설치하는 통신설비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설비”란 CCTV, IoT 기술 등이 반영된 방범설비와 스피커와 앰프 등의 장비를 통해 음성 등을 송출하는 방송설비를 말한다.
2.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은 나홀로 또는 고분군 등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설비이다.

3. “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이란 국보·보물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법설비이며, 문화재청에는 목조문화재 영상과 화재신호를 지역 관제센터에는 영상만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방식을 말한다.
4. “문화재 방법설비”는 문화재 현장에 설치하여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직접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5. “화소수”란 카메라의 해상도를 말하며, 최소 200만화소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계”는 문화재청, 지역 관제센터 등과의 연결을 말한다.
7. “연동”은 시스템 구축시 유관기관과의 동시 작동을 말한다.
8. “방법설비”라 함은 IoT,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나, 이 가이드에서는 문화재 현장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9. “방송설비”는 문화재 현장에 설치하는 설비로 평상시에는 구내방송을 비상시에는 비상방송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0. “구내방송”은 문화재 현장 내에서 관람객 또는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 등의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1. “녹화장치”란 카메라의 영상을 저장하는 장비로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 4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계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공통사항) ① 문화재 통신설비(방법, 방송)에서 말하는 IoT 시스템,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방법설비에 적용하는 공통적 기준이며, 이 기준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치기준 등은 관계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② IoT 및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방법설비 등에 반영되는 CCTV의 화소수는 각 호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CCTV 화소수는 200만화소 이상의 FULL HD급 제품
2. 열화상·실화상용 카메라의 경우 실화상은 200만화소 이상의 HD급, 열화상은 160×120 이상의 해상도급 IP카메라

③ IoT 및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영상정보 등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보안성능이 있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CCTV 등의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
2. 압축방식은 H.256, H.264, MPEG-4, MJPEG 등을 지원, 20FPS 이상으로 녹화 지원
3.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TCP/IP, UDP에, RTSP 등을 지원
4. 영상처리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하여 ONVIF 지원
5. 영상 저장 기준은 30일 기준
6. TTA 인증 제품
 - ④ 방법설비에서 사용하는 폴의 디자인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디자인을 우선 사용한다. 다만, 지역별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제품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반영할 수 있다.
 - 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설비(IoT, 영상모니터링, 방법, 방송)의 상시 운영과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각 호에 준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1.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적 원인으로 전원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도 상시 감시와 녹화 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감시용 카메라 전원공급은 중요 장소의 것만을 최소한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전기의 단선 또는 전기적 원인으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용 비상등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이상전압, 유도뢰 등으로부터 설비의 내부회로와 기기보호를 위한 서지보호기, 접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⑥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방법설비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메인장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는 카메라 장비에는 광케이블
 2. 카메라의 연결에는 UTP케이블 또는 무배관용 케이블
 3. 메인 장비단과 카메라 등의 전원공급은 POE+ 기능이 내장된 장비를 사용한다
- ⑦ CCTV는 문화재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외부 충격과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⑧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사업대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설치가 완료되면 영상연계 등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문화재청과의 연계 시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 ⑨ 통신설비의 신규 설치 문화재 현장을 제외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설비를 파악하여 통신설비의 이월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원화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장비는 재활용 하여야 한다.

제 6 조(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 ①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은 다음의 각 호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재 현장에 감지기, CCTV,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경계구역 부분에 침입한 사람을 감지하여 경광등과 동시에 경고방송이 나와야 한다.
2. 문화재 현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한 영상을 지역 관제센터에 연계하고, 침입자 발생 시에는 관제센터에서 직접 영상 확인에 의한 안내(또는 경고)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경찰관서에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 긴급출동에 의한 문화재 보호를 하여야 한다.
3. 다만, 2호에서 지역 관제센터에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의 출동경비업체와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출동경비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4. 야간에는 불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외선 조명에 의한 침입자 확인 및 감시 등이 가능하고, 카메라의 기능은 초저도, 조명점등, 열화상(또는 실화상)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설치하되 TTA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5. 문화재 현장에 다수(2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카메라와 보조카메라로 구분하여 보조카메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를 주 카메라가 판단하여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며, 주 카메라는 회전형으로 자동 줌과 오토트래킹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전기와 인터넷 공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태양광 설비를 적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되, 무충전시 최소 7일 이상의 시스템 성능을 유지한다. 또한,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LTE 라우터를 설치하여 영상을 전송하도록 구성한다.
7. IoT 시스템 구축시 감지기는 레이더방식을 적용하여 경계구역 설정과 침입하는 사람과 소동물 미탐지 기능을 내장하여 오동작을 최소화하고, 안내방송과 경고방송을 구분 송출하고 경광등이 동시작동이 되어야 한다.

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감지센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용된 기술을 적용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구역 설정과 조정 등 운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2. 경계구역에 침입하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계구역 설정은 시간대별로 지정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계구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선의 구역 설정임으로 침입자 발생시에는 경광등과, 경고방송이 자동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관제센터(또는 출동경비 등)에 연동되어 현장에 대한 확인 조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 방재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하는 IoT 시스템은 붙임1과 같이 구축도에 의하여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제 7 조(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①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국보·보물 목조문화재가 대상이고, 문화재 방재력 강화를 위하여 IoT 시스템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문화재청에 영상과 화재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각 호에 준한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문화재청에는 영상과 화재정보 제공
 2. 지역관제센터에는 영상정보를 제공
 3. 제1호와 제2호의 영상정보는 각 목에 준하여 제공한다.
 - 가. 문화재청 제공 영상은 목조문화재(국보·보물) 가 보이는 외부의 영상을 최소 2채널에서 최대 4채널
 - 나. 지역 관제센터에 제공하는 영상은 관제센터와 협의한 후 제공
- ③ 화재신호에 대한 정보제공은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소방설비와 연계하여 화재감지 신호를 문화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가 미 구축된 현장은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도는 별표2와 같으며, 기존의 방범설비와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 8 조(문화재 방범설비 구축) ① 국가지정문화재 현장의 침입 및 영상감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 침입 등의 이벤트 발생 시에는 현장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구축하는 방범설비에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을 적용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구축 시에는 실시간 영상정보에 의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운영 관리가 되어야 한다.

제 9 조(문화재 방송설비 구축) ① 문화재에 설치하는 방송설비는 전관방송의 개념으로 설치하여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에 설치하는 방송설비는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계 및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내·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규모와 면적 등을 감안하되 너무 크거나 작게 설계되지 않도록 한다.
2. 내·외부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경관·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설치시에는 지형지물 이용 또는 새로이 폴을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청 디자인 폴을 우선 적용한다.
3. 장비의 구성은 단순하고, 조작이나 사용이 쉬워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리모트에 의한 비상방송이 우선되어야 한다.
5. 방송장비는 앰프, 스피커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EQ 등의 장비는 가급적 제외한다.

제10조(일반사항) ① 문화재 통신설비(방법, 방송)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 통신설비(방법, 방송)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통신설비(방법, 방송)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카메라 등의 장비 고장으로 인한 영상감시의 공백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품에 의한 즉시 개선 조치하고, 고장품은 수리에 의한 보관 또는 대체품과 교체조치 한다.

③ 문화재에 설치하는 방법설비(IoT, 영상모니터링, 방법)에 대하여는 영상기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안내판, 지침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카메라에 의한 24시간 감시 안내판 설치
2. 영상기기 운영에 대한 자체 규정 마련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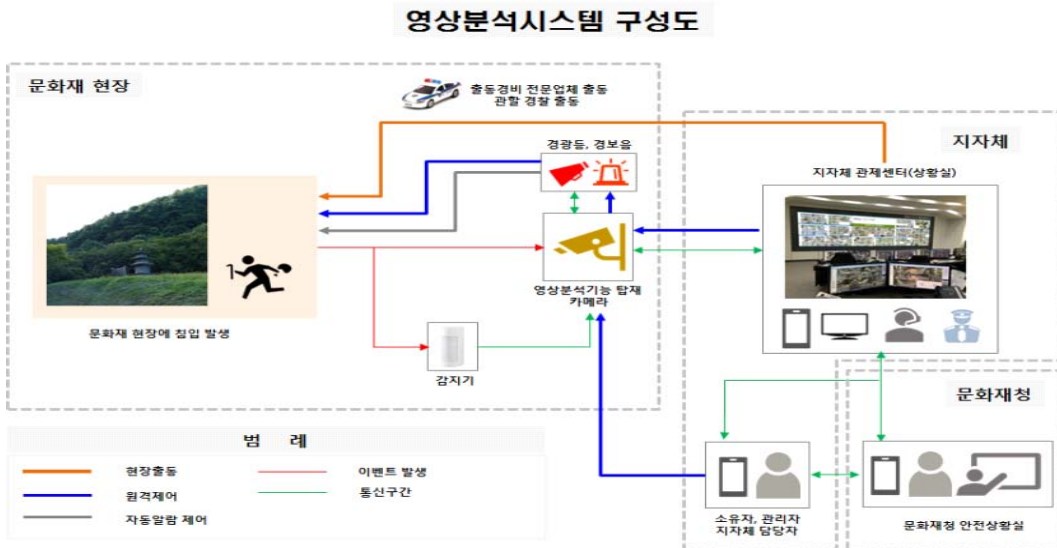
④ 통신설비에 공급하는 전원의 단선, 정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상감시와 장비보호를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감시체계와 장비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통신설비에 대한 도면과 사용자 매뉴얼 등을 비치하여 시스템 운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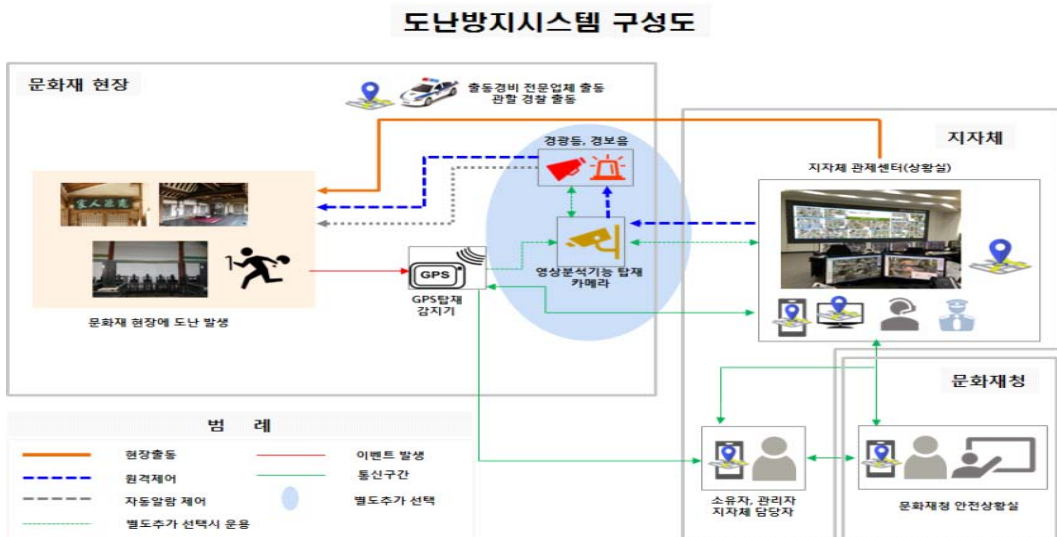
⑥ 문화재 통신설비 구축 또는 개선에 대한 설계와 시공 시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문화재청(업무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완료하여야 한다.

[별표 1]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도



1단계 제어 : 자동알람제어, 2단계 제어 : 원격제어, 3단계 제어: 전문인력 현장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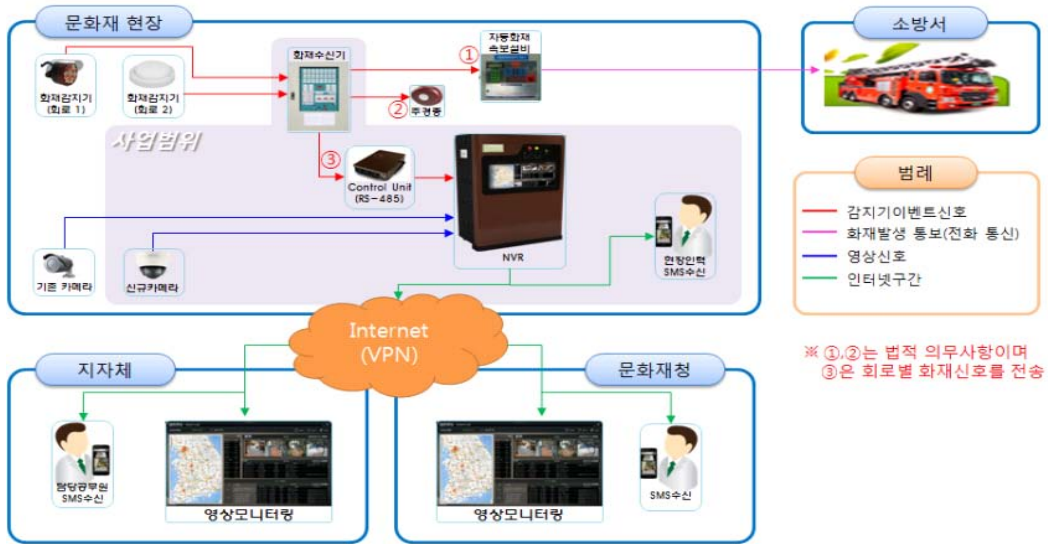


제어: 전문인력 현장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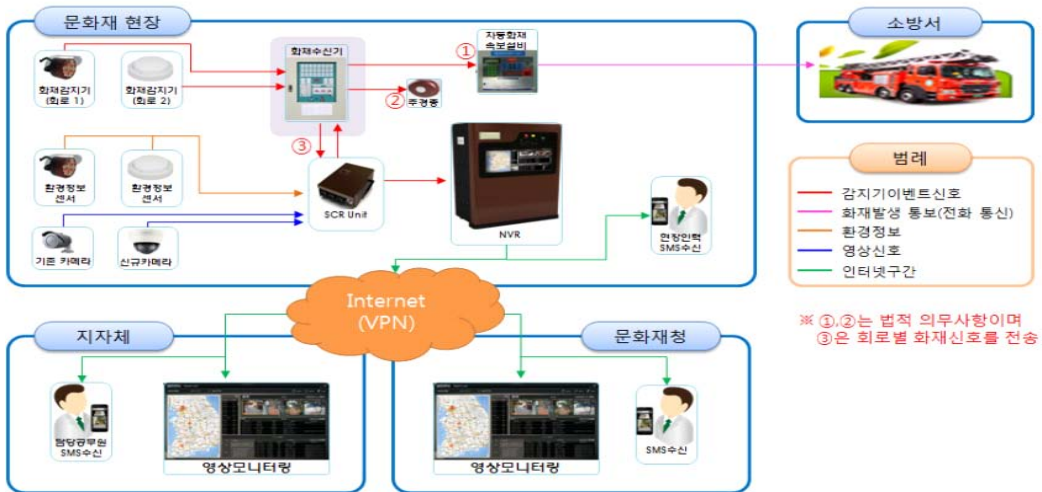
(선택사항 1단계 제어 : 자동알람제어, 2단계 제어 : 원격제어, 3단계 : 전문인력 현장 출동)

[별표 2]

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 방재시스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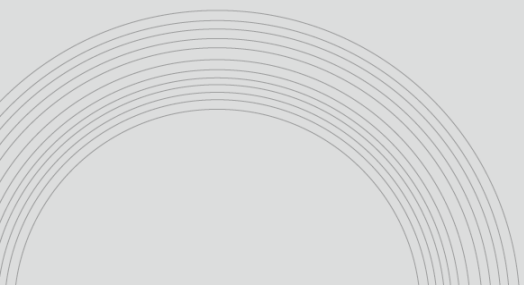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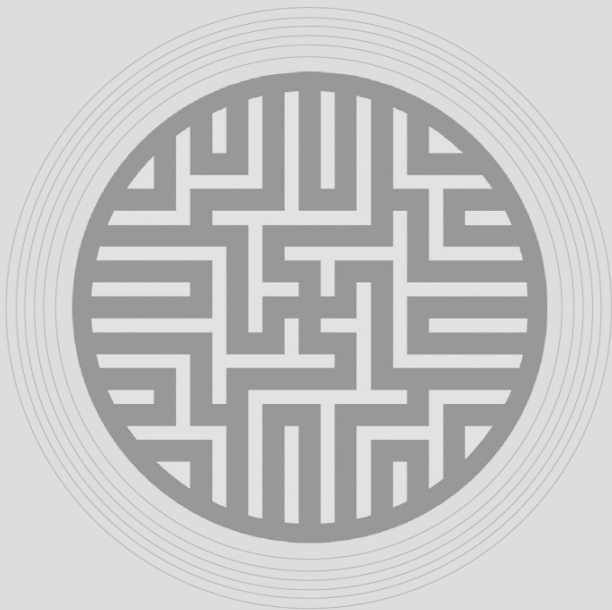


문화재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연계)



제4장

문화재수리관련 Q&A





제1절

문화재수리업



제1절 문화재수리업

Q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638호)」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자가 2012년 8월 31일 이전에 다른 문화재수리업종(조경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기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기존에 보수단청업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보수업과는 별도로 조경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가하는 업종(조경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자본금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63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2012년 8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보유한 업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새로이 추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2

사업자 등록만으로 문화재수리업 등(자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할 수 없고,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는 행위로서 보수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3

1.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2.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는 문화재수리업 등의 겸업을 제한하는 겸업금지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겸업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공사에서 문화재수리와 문화재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종별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문화재수리업종의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Q 4

- 문화재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종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술 인력 및 자본금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서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신청하는 업종별로 각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는 2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종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개별 업종의 등록요건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술인력 및 자본금의 요건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5

법인이 아닌 개인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가능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은 개인(자연인 1인) 각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6

당사는 대표자가 건축사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종합감리업(건설기술관리법) 등 타 분야의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건축사법에 의해 대표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별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재실측설계업이나 문화재감리업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서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와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 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문화재감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7

소속 기술자의 자격증 대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인 기술자수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서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시공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으로서 문화재수리업자가 상시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기술능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및 별표8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영업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8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으로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업진단서상의 실질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으로서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수리업 등록시 당해 등록권자가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 자본금의 적합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9

실질자본금이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등록관청에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 일반원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 ☞ 실질자본금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Q 10

연말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무결산서상의 자본금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상의 법정자본금에 미달되었다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이 동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Q 11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칸막이로 사무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사무실 요건의 인정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 따라서 다수의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각 문화재수리업자별로 사무실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공간)을 갖추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 등록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 등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12

2007. 8. 14.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 설립 후, 2008. 7. 2. 자본금을 6억원으로 증자(변경등기)한 업체가 2008. 7월에 보수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진단기준일은

- ☞ 기존법인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본금변경(증자)을 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에 그 진단기준일은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Q 13

제예금의 경우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30일 동안 출금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부

- ☞ 결산서상 예금액이 결산일 전후 30일간 계속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정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문화재수리공사의 수행과 관련한 입·출금 등 실제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지출은 인정되기 어려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실자산이 아님이 명확히 소명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14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자산총계의 2%를 넘으면 무조건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7조(부실자산)에서 자산총액의 2%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는 대상은 현금자산(시재금, 전도금 등)에 한하고, 기타의

예금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시재금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Q 15

석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당사(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음

- 자산 : 공사미수금 1.5억원(세금계산서, '08년 입금 증빙가능)
임차보증금 0.9억원
- 부채 : 부가가치세 5백만원, 기타 유동부채 2백만원

위와 같은 경우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지 여부

- ☞ 석공사업 법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비고 제2호에 따라 납입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이 각각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뺀 금액을 말하고(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1조 참조), 총자산에는 현금, 예금 외에도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자산계정이 포함됩니다.
-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미수금(1.5억원) 등이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실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귀사의 부채가 7백만원일 경우 석공사업종의 자본금기준(석공사업 법인 : 5천만원)에 미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16

자본금 2억원으로 2010. 7. 1. 설립된 법인의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 기업진단을 하여야 하는데, 2010. 7. 1. 이후 진단하는 날까지 사이에 당초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2억원의 자본금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여러 자산형태(토지, 건설, 출자금, 임차보증금 등)로 전환됨.

따라서 진단기준일(2010.7.1.) 현재의 예금을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할 경우 2010. 7. 1. 이후 회계처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자본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처리방안

-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9조(자산의 평가)에서 제예금에 대하여 진단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예금의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수시 입출금(해지 포함)할 수 있는 등 부실자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적절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따라서 기업진단시 제예금을 평정하는 경우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부실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 질의와 같이 진단기준일 이후에 다른 자산형태로 전환된 것이 명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환된 자산금액을 제예금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는 자산 형태의 변경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Q 17

단청공사업과 목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등록요건 적합여부 심사결과, 부실자산 차감에 따른 실질자본금이 8천만원인 경우에 단청공사업과 목공사업 중 어느 업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처분받는지 여부

- ☞ 귀 질의 업체의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자본금은 최소 1억원(단청 5천만원, 목공사 5천만원)인 바, 미달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단청공사업이나 목공사업 중 어느 하나의 등록기준은 온전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도 어느 하나의 업종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8

문화재수리업자의 대표자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변경된 날”은 법인등기상 기재된 법정임기만료일(퇴임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 ☞ 성명·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변경사유가 발

생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퇴임한 날을 변경이 발생하는 기준일로 보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19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과 보수업(중전 보수단청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수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음. 이 경우 변경신고와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질의한 내용은 보수업의 등록 명목이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당초의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20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과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법인에 보수단청업의 공사실적 및 영위기간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회사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사실적과 영위기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종의 전부를 양도하여야 하고 또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및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보수단청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법인이 상법상 회사

분할 절차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절차 및 공사실적 승계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보수단청에 관한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이 양수인, 즉 분할신설되는 회사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Q 21

문화재수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업체가 문화재수리업의 면허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보유한 문화재수리업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나, 양도에 따른 공사실적의 승계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이 보유한 문화재수리업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됩니다. 즉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종의 등록은 이전되거나 공사실적 및 영위기간은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 위에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행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시행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Q 22

2010.1월말 현재 보수단청업과 번외공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가 2월 1일자로 분할합병에 의하여 보수단청업과 번외공사업 중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1월 29일에 양도공고를 하였음.

- ☞ 분할합병의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업종의 공사실적과 영위기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여야 하고 또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양도인인 귀사가 보수단청업 등록만을 양도하면서 당해 업종의 실적과 영위기간을 양수인이 승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도하기 전에 미리 번외공사업 등록을 폐업신고(자진 반납)하여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양도신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번외공사업 등록의 폐업신고가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Q 23

당사(갑건설)가 보유하고 있던 보수업 등록을 2010년 9월 15일자로 다른 회사(을건설)에게 포괄 양도하였음.

양도계약(2010년 9월 5일자) 이후에 당사(갑건설)에 대한 제재처분이 부과된 경우, 제재원인행위가 양도계약 이전인 2010년 6월에 발생한 제재처분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 ☞ 귀 질의의 양도양수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괄적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영업기간 뿐 아니라 권리·의무 등이 전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갑건설에 대한 제재처분을 양수인인 을건설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갑건설에 대한 제재처분 및 공사실적이 을건설에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Q 24

문화재수리업자(법인)가 보수업, 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목공사업을 폐업신고하여 등록말소된 경우, 등록말소 전의 목공사업에 대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목공사업종이 폐업(등록말소)된 후에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Q 25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종 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이 대표자 및 원인 행위자를 교체하여 다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종을 등록하여 문화재수리업종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이는 해당 법인 및 법인 대표자, 원인 행위자를 포함하므로 해당 법인은 등록말소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문화재수리업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26

동일한 문화재수리업종의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에 의하면, 동일한 종류의 문화재수리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문화재수리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에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27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인데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중복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기준에 관한 완화가 있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여러 종류의 문화재수리업종을 등록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의 업종별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한 모든 문화재수리업종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그러나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러 종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규정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Q 28

현재 실측설계업자인데 문화재감리업의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여러 종류의 문화재수리업종을 등록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의 업종별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한 모든 문화재수리업종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29

타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체, 주택건설업체,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요건(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을 중복하여 인정하는지 여부

- ☞ 타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종에 등록하는 경우 기술인력, 자본금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별 등록요건에 따라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의 경우 중복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 따라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과는 별개로 등록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종의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Q 30

당 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1호에 해당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법인입니다. 당 협동조합법인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등록, 취득할 수 있는 자에 해당 되는지요?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Q 31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 사무실 인정범위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형태, 입지 및 주위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사가 임대 입주할 건물은 이에 해당되어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민신문고 '17.12.27 접수]

- ☞ 「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도(경기도)에 유선으로 확인 결과 귀사가 임대 입주할 건물은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부합하지 않아 용도 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시(군포시)에 용도변경 신고 등 절차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32

문화재보수업 면허를 자진 반납 시 기 낙찰되어 진행 중인 공사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준공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발주처에 통보 후 공사계약 해지가 되는 것인지 또한 보유기술자 역시 필요가 없으므로 퇴사가 되면 공사진행이 불가한 사항인 듯 한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4.08.27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처분기간동안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영업행위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수리업을

자진 반납한다는 것은 문화재수리업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문화재수리업을 포기한 행위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전 기계약분 및 수행중인 문화재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62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33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중 기능자(3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1. 대목수(1명)

2. 미장, 와공, 화공, 드잡이, 석공, 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 2명

으로 되어있는데 1항목의 대목수1명과 2항목 중 미장, 와공, 화공, 드잡이, 석공, 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 2명에서 목공으로 대목과 다른 분야의 기능공을 채용하면 조건에 성립되는건지 목공으로 표기된 부분이 소목대목을 구분 하는건지 (내용상 구분이 표기되어있지 않음)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 '15.07.14 접수]

- ☞ 질의 1.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에 1. 대목수(1명) 그리고 2. 미장, 와공, 화공, 드잡이, 석공, 목공 중 서로다른분야 2명으로 되어있는데, 1항목의 대목수1명과 2항목 중 미장, 와공, 화공, 드잡이, 석공, 목공 중 서로다른분야 2명에서 목공으로 대목과 다른 분야의 기능공을 채용하면 조건에 성립되는 건지?

답변 1. 네 성립됩니다.

- ☞ 질의 2. 목공으로 표기된 부분이 소목대목을 구분 하는 건지?(내용상 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중 「한식목공」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1996.6.29.)으로 대목수와 소목수로 구분되어 1997년부터 배출되고 있습니다.〈1996년까지 한식목공, 1997년부터 한식목공(대목수), 한식목공(소목수)〉 또한 1997년 이전

에 배출된「한식목공」에 대해서는 대목수와 소목수의 자격을 모두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Q 34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는 겸업사업자의 신규 신청시 자본의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국민신문고 '16.07.29 접수]

- ☞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는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9조에는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납입자본액 보유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바 문화재수리업 등록시에도 준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지침 개정시 귀하께서 제시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Q 35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발주청인 군청에 납품 후 문화재 실측설계업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발주청인 군청에서 검토 수정 후 도청에 실시설계 승인 요청한바(승인 신청 당시는 실측설계 반납 후임) 도청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업무편람(질의회신45번)에 따라 자진반납 후에는 설계를 할 수 없다고 함. 이는 건축사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된 일은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과 상이함. 이에 따라 당초설계사무소에서 상급부서인 도청에 ①설계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또한 도청에서 설계도서 보완 요구 시 ②보완설계도 할 수 있는지, 차후 공사 진행 시 ③설계변경 설계도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14.03.18 접수]

- ☞ 귀하가 질의 하신 대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처분기간동안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

한 영업행위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 한 문화재수리업을 자진 반납한다는 것은 문화재수리업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문화재수리업을 포기한 행위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전 기계약분 및 수행중인 문화재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36

문화재수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유하고 있는 법인이 문화재수리업을 폐업할 경우 (질의 1)진행 중인 문화재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 2)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3)토목건축공사업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국민신문고 '17.12.5 접수]

- ☞ 귀하께서 질의한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질의 1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 제22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착수한 문화재수리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수리업 폐업신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관계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3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7

사임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실측설계업)을 별도로 재개설할 예정인데 그 회사로 하여금 진행 중인 용역 건을 승계하여 완료할 수 있는지?

- ☞ 상기 답변과 같이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하므로, 해당 용역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행 중인 용역의 승계 가능 여부는 계약 변경,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 관련 법률에 따라 발주청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 38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보조사업 시 사업주가 55%부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45% 보조금지급인 한옥 건축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옥공사에 대한 보조금사업에 설계 사무소는 문화재전문설계사무실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축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및 내역서 산출을 하여도 무방한지에 관한 질의 입니다. 건축업자선정에서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직접 선정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업자선정에서 문화재 종합건축면허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종합건축에서 시공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민신문고 '14.01.22 접수]

- ☞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따라 지정·가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보호구역(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제외)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대한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 따라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제외)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질의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의 입찰 및 계약 방법 관련사항은 발주자가 공사 내용과 제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39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을 가진 업체 대표자가 사업체를 양도하면 그동안 했던 문화재수리 실적이 사라지는건가요?

대표만 바뀌고 수리를 하는 사람은 안바뀌는데 말이죠

혹시 실적이 없어진다면 공동대표로 하면 실적이 유지되는건가요?

[국민신문고 '19.07.01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의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①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②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제2절 —

문화재수리 범위



제2절 문화재수리 범위

Q 1

지붕공사를 발주할 때 일부 목공사가 포함된 경우 누구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주공사의 입찰참가대상 업종의 선별은 당해 공사의 범위(수리 내역, 수리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질의하신 지붕공사에 일부 목공사가 포함된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변와공사업)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대 문화재수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분야인 변와공사업(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2

전통고가옥(비지정문화재)을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입찰공고 가능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지정문화재의 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비지정 건조물문화재는 건립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으므로 원래의 양식과 구조 등이 변형되지 않고 전통재료 및 전통기법에 의해 수리되어야 당해 문화재가 지닌 특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지정문화 수리의 경우에도 문화재수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기술과 기능 및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입찰 및 계약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청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Q 3

문화재의 보존에 수고하시는 귀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화재수리기능자(대목수)로서 향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기술자의 응시자격에 기능자 취득 후, 1년간의 보수현장 경력을 요하고 있는 바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미한 문화재 보수에 관한 직도 경력인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 비록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관한 회사에 취업하여 종사한다면, 보수현장의 경력으로 인증되는지 여쭙니다. 수고하십시오

[국민신문고 '14.06.18 접수]

- ☞ 그 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는 별도 응시요건이 없었으나 2015년부터는 일정 학력 및 실무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화재 수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한「경미한 문화재 수리」도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Q 4

전문문화재수리업인 식물보호업으로 발주되어 준공된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 중 설계변경이 되어, 그 내역서상 타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업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타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실적으로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국민신문고 '14.03.17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8]에서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와 그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보호업으로 발주 된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질의 하신 대로 당연히 관련 부분의 실적을 인정 받을 수는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의 경우 식물보호업이 아닌 타 공정이기에 수행 할 수 없는 공정 이라 할 수 있어 전체 공사분의 실적으로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건립예정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입찰 시 업종의 대상을 일반 건축업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축업과 문화재수리업 모두 가능한지 여부

[국민신문고 '14.01.27 접수]

☞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지정·가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대한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있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사 입찰참자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내 시설물 건립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주변 경관과의 조화, 식물의 생장 저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유사 공사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6

문화재보호구역내 관광객 편의를 위한 토목시설물 설치 시 토목엔지니어링 면허를 가진 자가 토목시설물 설계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14.02.13 접수]

☞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따라 지정·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이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보호구역(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제외)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대한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 따라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제외)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토목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인지 알 수 없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시설물인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문화재수리’에 해당, 같은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건축설계와 토목설계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토목분야만을 설계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Q 7

【질의 1】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이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 형성하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대한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구역'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요?

동산 불상의 경우처럼 지정문화재(자료)이지만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동산 문화재인 경우 지정할 당시부터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지정과 함께 설정, 고시하여야 하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문화재인 불상의 경우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누각을 지을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분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만약 위의 주장처럼 불상이 동산문화재로서 별도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누각을 짓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

감리업자가 아닌 일반종합건축업자 등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2항을 보면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에 대해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의 기준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질의 4】

제주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 동산문화재인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을 건립 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맡겨 설계 및 시공을 한 사례와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된 법적 판결사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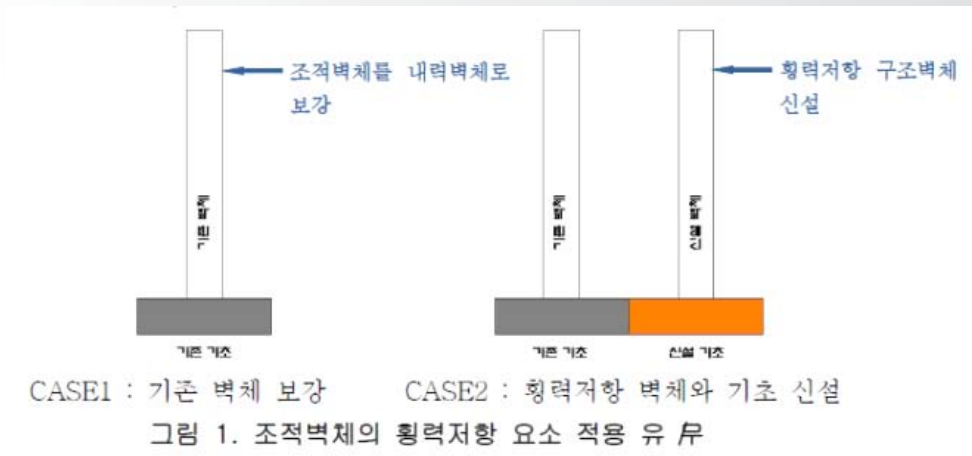
[국민신문고 '14.02.13 접수]

- ☞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서의 '보호구역'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조(정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한편 시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석조불상의 풍화훼손 방지 등을 위한 보호각 건립은 보호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문화재수리'에 해당, 같은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제2호의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란, 지정문화재가 소재한 지적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와 연속된 지적의 토지를 말합니다.
- ☞ <질의 4>에 대하여는,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의 보호각 개축을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보호각 건립 법적 분쟁 판결사례는 법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부처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8

문화재로 등재된 1. 건축물의 보수 /보강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이런 경우에 현행기준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강도 18MPa 및 21MPa(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의 콘크리트 최소강도) 이하의 강도(5.0MPa이하)를 가지는 기존부재(보/기둥/슬래브/기초)도 연직하중 및 횡력저항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② 또한, 현행기준에서는 대수선 시 내진보강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③ 마지막으로 문화재로 등재된 건축물이 조적벽과 무근콘크리트 기초로 되어있다면, 벽체를 내진보강하였을 시 “내진설계와 무근콘크리트보(KBC 2009 0518.8.)”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를 보강해야 하는지와(CASE1), 횡력(지진하중) 저항요소로 구조부재와 기초를 신설한다면, 중력 하중만 저항하는 기존의 벽체와 벽체하부의 기초는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CASE2)



[국민신문고 '14.03.05 접수]

- ☞ 우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대문화재의 경우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수, 보강 시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일반 건축시공 분야에서 정한 안전 허용기준을 차용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첫 번째로 문의하신 기존 보, 기둥, 슬래브, 기초 등의 콘크리트의 강도가 현행 기준에서

정하는 강도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경우 연직하중 및 횡력 저항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 문화재 구조분야 문화재 전문가의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 두 번째 문의하신 문화재에 대한 대수선 시 내진보강 여부는 원형이 변형, 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므로 법적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강이 필요시에는 문화재 구조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문의하신 조적벽과 무근콘크리트로 기초가 되어 있는 경우 벽체를 내진 보강 하였을 시 “내진설계와 무근콘크리트보(KCB 2009 0518.8)”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를 보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의 지내력 확보 여부 및 당해 문화재의 구조안정성 확보 또한 중요하므로 문화재 구조분야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횡력(지진하중) 저항요소로 신설벽체(횡력 저항 구조벽)와 기초를 신설한다면, 중력 하중만 저항하는 기존 벽체와 벽체하부의 기초는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노후된 벽체는 별도 보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벽체 신설에 따른 기존 벽체의 안정성 확보 및 문화재의 변형 등에 대한 문화재 구조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결정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 9

【질의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복원 등을 하는 조치를 문화재 수리로 보고 있는데, 사적의 보호구역 내에서 하는 행위도 문화재수리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법 제2조 각 항 및 시행령 제2조 각 항)

※ 보호구역 내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고 “문화재수리”라면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2조의 1에 보면 사적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혼돈이 옵니다. 또한 시행령 제2조의 2에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에 보호구역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사적에 대한 보호구역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보고 행위를 추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질의 2】

위의 전사유구를 전시관(유적지 내)에 내부 전시할 경우, 현상변경 허가 대상 사업인지?

【질의 3】

위의 전사유구를 전시관(유적지 내) 내부에 전시할 경우 문화재 수리로 보아야 하는지?

※ 전사유구 자체는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합니다. 올바른 문화재수리공사 발주를 위해 답변요청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4.08.01 접수]

- ☞ 질의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제1호에서 사적의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에 포함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정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되기에 금회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내용,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문화재수리 대상인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 ☞ 질의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서 현상변경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금회 질의 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사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위 조항에 따라 발주처에서 현상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 ☞ 질의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문화재수리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전사유구를 전시관 내부에 전시 할 경우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련 유구가 지정·가지정문화재 여부 등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되오니 발주처에서 해당 유구의 지정 상태, 공사내용 및 관련 제반규정 등을 면밀히 판단하시어 추진 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Q 10

관련 지역과 발주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업체는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원과 조형물 제작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4년제 조소과 출신들의 직원들로 다수의 인공암(g.r.c)을 제작 및 설치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GRC란[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 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의 약자로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무기질의 복합재료로 조형미를 바탕으로 인공암, 수족관, 테마파크 등의 내외부의 마감 재료로 사용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천연기념물 동굴 관련 외부 신규 쉼터 제작 설치 건입니다. 동굴외부에 관람객의 대기 공간, 화장실, 벤치 등이 놓여 있는 광장에 지붕을 조성하여 비와 햇빛, 낙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발주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진행 자격조건을 문의해본결과 문화재 보수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때문이라합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동굴 내부 보수사업도 아니며 단순 외부 쉼터 개념의 구조물 제작설치 사업인데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로 사업내용과 전혀 맞지 않고 관련전문성도 결여된 문화재 보수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이러한 인공암(g.r.c)제작 설치사업에 보수단청업 면허로 사업을 수주한 것도 보았습니다.

문화재 보수면허는 면허 종류별로 직접적인 중요문화재의 수리 및 복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 사업과 같이 전혀 문화재보수와 상관없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에 목적을 둔 사업은 보다 유연한 자격조건과 전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이 규제 아닌 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도 상기사업(인공암제작설치)에 문화재 보수업의 면허가 꼭 있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6.02.01 접수]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 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

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로는 사업의 대상·성격·위치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천연기념물 동굴 관련 외부 신규 쉼터 제작 설치 건”이 상기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천연기념물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수리에 해당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1

첫째, 방충·방염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에 부합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목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보존처리공,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의 업무 범위에 방충 방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방충·방염공사와 관련하여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능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방충·방염공사 시 약제 살포에 앞서 대상유물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약제의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 건식과 습식 세척을 선행합니다. 또한 약제 살포의 방법과 습식세척의 방법이 직접 방문방식으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척공이 방충·방염공사를 위한 기능자의 자격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18.8.29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충, 방염에 관해 명시적으로 수리기능자의 업무 영역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계 관행상 방충, 방염 공사시 세척공이 작업 초기에 표면 세척을 위해 투입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방충, 방염 공사는 훈증공 또는 보존처리 공에 의해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섵법에 해당하는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명기하고 있음

【질의 1】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일반개인(문화재소유자가 아님) 자기소유 사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업과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반드시 선정해야하는지?

【질의 2】

위 질의1과 같이 문화재수리업과 종합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재보호구역내의 공사는 모두 문화재공사로 간주하기 때문인지?

【질의 3】

질의1에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합건설업만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선정한 경우 누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어떤 조치가 있는지?

【질의 4】

문화재보호구역 밖에서 일반개인이 한옥을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어야 하는지?

[국민신문고 '14.06.03 접수]

- ☞ 질의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및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시설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제2항에 따라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이면「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질의 2.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의 설치는 문화재보호구역내의 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문화재를 이해하는 수리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통건조물 구조가 아닌 RC조, 철골조, 조적조의 시설물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통건조물구조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의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업체가 전통구조에 강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RC조, 철골조 등 일반 구조형식에는 취약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업종을 동시에 구비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토록 한 것입니다.
- ☞ 질의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 수리 현장을 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또는 사후에라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 법 제5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 질의 4. 질의의 경우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보호구역 밖이나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 시공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13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건축공사” 관련입니다.

해당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사지역은 익산미륵사지(사적 제150호)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자에게 부여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17.10.31 접수

- ☞ 귀하께서는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입찰건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의 내용이 문화재수리의 수행 자격을 묻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는 문화재수리의 대상을 지정문화재나 그 주변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물의 구조·재료·형태 등을 불문하고 질의의 사업 대상이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에 해당되므로 이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4

【질의 1】

문화재 보호구역내 500㎡ 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 시 건축행위는 누가해야 하나요?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보수기술자)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건축기술자)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주

【질의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이면 건설업면허와 문화재수리업을 동시에 취득하고 있는 자 만이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함. 이때는 현장대리인(책임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대리인(건축기술자)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있는 현장대리인(보수기술자)중 누구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에 의하면 661㎡미만의 주거용 건축은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축주가 시공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국민신문고 '14.12.26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서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문화재수리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기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경우 문화재수리 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 지는 주택 신축 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해야 함을 알려 드리며, 이때 현장대리인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에 등록 된 문화재수리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Q 15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 “문화재수리”라 함은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명승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승구역 내 기존시설물(전망데크, 안전난간, 나무계단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같은 색깔로 도색을 할 경우, 문화재수리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경미한 문화재수리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승구역 내 전봇대 신설, 전망데크 설치, 등산로 정비도 문화재수리업자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안에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의 항목에 대하여 고시자료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아직 고시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고시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있다면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더라도(ex) 조경공사업자) 문화재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애매한 답변 말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4.03.18 접수]

- ☞ 경미한 문화재 수리 범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승구역 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망데크, 안전난간,

나무계단 등은 별표 1에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별표 1>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에 근거하여 경미한 문화재 수리범위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색깔과 다른 색깔 및 주변 경관을 훼손할 만 한 색깔로 도색하는 경우는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기에 해당 관리처와 협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사항은 시도에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연기념물, 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수임사무 처리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 ☞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승구역 내 전봇대 신설, 전망데크 설치, 등산로 정비 등 새로운 시설물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 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귀하께서 질의 하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더.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8]에서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와 그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수리는 관련 공사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6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전기조명 시설정비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총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 전기조명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는데,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종합설계(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일반 설계업체가 설계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부분을 생각한다면, 문화재설계 업체가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전기조명을 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로 보아 전문적인 전력전문설계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6.04.06 접수]

- ☞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전기조명 시설정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타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경미한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문화재수리 역시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설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제5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전기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기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Q 1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 즉 문화재 수리 이외에 문화재 안에서 각종 시설물을 신축, 개축 등의 행위가 포함된 “현상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업체에게만 해당 공사를 도급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용의 문언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는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방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 '근대건축물'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건축보강과 더불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물을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종합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도급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종합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공동 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포함).

[국민신문고 '19.05.23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문화재수리를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에 대한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의하고 있어, 그 적용 대상을 공간적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대상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한 위의 조치라면, 이는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되고 문화재수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시설물인 경우라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과 같이 목적물 설치를 위하여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도록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해 놓은 대상이라면, 이는 해당 공사업종을 동시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나, 공동도급을 통하여 문화재수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8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내 전기통신시설(이동통신중계기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코자 하였을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국민신문고 '19.05.30 접수]

☞ 질의의 대상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 행위라면 이는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과 같이 목적물 설치를 위하여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도록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해 놓은 대상이라면, 이는 해당 공사업종을 동시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나, 공동도급을 통하여 문화재수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5항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문화재수리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통신 시설은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대상은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에 관한 행정규칙인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6-116호) 제18조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등은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도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만, 그 중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만은 제외하도록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 19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1의 내용에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하였습니다.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 이동통신중계기 및 전기통신(전기+광선로) 선로를 설치코자 하였을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국민신문고 '19.05.30 접수]

- ☞ 질의의 대상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 행위라면 이는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과 같이 목적물 설치를 위하여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도록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해 놓은 대상이라면, 이는 해당 공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나, 공동도급을 통하여 문화재수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도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만, 그 중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만은 제외하도록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에 관한 행정규칙인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6-116호) 제18조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등은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

첫째, 시멘트 사용 문제입니다

일반 문화재 시공이 아니고 경미수리시에 하나하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서가 없어서 수리 시에 혼란이 있는데 벽체나 황토 작업시 시멘트를 일반모래나 황토에 시멘트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둘째, 일반바닥에 돌로 쌓은 흐트러진 기단 수리시에 중간중간 시멘트를 채워 수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은 시멘트를 안채우고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셋째, 마루 윗부분이 시간이 지나 지저분하고 해서 굵은 사포로 윗부분을 다 벗겨(샌딩)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훼손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경미 수리시에 처마양토 부분에 산자가 엉망이되어 벗겨내고 합판이나 이런걸 덧대고 피스로 고정시켜 수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20.04.14 접수]

☞ 안녕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는 시멘트 사용 등 경미한 문화재수리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문화재수리'를 '일반 문화재수리' 및 '경미한 문화재수리'로 구분하시면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방법을 문의하셨으나,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수리의 설계 및 시공 자격 등에 대한 적용대상의 구분을 위한 개념으로 '경미한 문화재수리'도 '원형보존', '기존 양식과 기법으로 수리'라는 문화재수리 기본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경미한 문화재수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서)가 없을 경우,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제3절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자격



제3절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자격

Q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가진 주간 대학원생이 문화재수리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 ☞ 수리기술자 자격을 가진 주간 대학 및 대학원생(석,박사 포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및 별표7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 재학 등으로 인하여 상시근무가 불가능하므로 문화재수리업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2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계약직으로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는 중복 취업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Q 3

저는 현재 문화재 수리기술자[실측설계]자격을 보유하고, 서울지역에서 실측설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제가 추가로 문화재 수리기술자[보수] 자격을 취득한 후 단청기술자를 고용하여 동일한 서울지역에서 문화재 감리업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실측설계기술 자격을 가지고 실측설계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취득한 보수기술 자격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기술자 등은 소속된

수리업체 등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기술 종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술자 본인이 실측설계업체와 감리업체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은 상시근무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4

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를 취득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나무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1. 문화재수리업을 하지 아니하는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을 하고 있는 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문화재 수리업체가 문화재 수리업과 나무병원을 동시에 겸업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취업 제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국민신문고 '17.01.09 접수]

☞ 귀하께서는 △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 취업하려는 업체가 문화재수리업과 타 분야 업종을 중복 영위하고 있을 경우 중복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7(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의 비고1 가목은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상 기술능력에 포함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취업하였다면 상시 근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 문화재수리업과 타 분야 업종을 중복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만 활동할 경우라면 상시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동일한 법인체 내에서 문화재수리 분야가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타 업종의 기술인력으로도 이중 등록할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기술능력은 등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

【질의 1】

저희회사는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갑”이라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A”라는 문화재수리업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회사인 저희회사(문화재수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은 경우에 앞에서 살펴본 둘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 취업에 해당하여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만약 질의1)에서 중복취업으로 위법이라면 차후 법개정 시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등록된 업체 이외의 또 다른 문화재수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은 등록된 업체에서 대략 일백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습니다. 본인의 등록회사에 일이 없어 다른 문화재수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것이 위법이라면 일당을 받기 위하여 차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편법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이 또한 근로자를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 '14.06.18 접수]

- ☞ <답변 1> 위법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능력에 포함된 수리기능자가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는 것은 수리기능자 자격대여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답변 2> 답변1)에서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에서 정한 기술능력 중 해당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능력에 포함된 수리기능자에 대해서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에 참여하여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기능자가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려면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의견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청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Q

제가 현재 조경공사식재업(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전문문화재 조경공사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련 기술자와 기능자가 필요한데 보통은 조경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문화재조경기술자 또는 문화재조경기능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즉, 조경기능사 자격증과 문화재조경기능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인(특정인)이 조경식재공사에 기술자 등록된 자가 문화재조경공사에 조경기능자로 중복 등록이 가능을 문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5.01.08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에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경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경기술자 1명·조경공 1명 이상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비고 1. 기술능력 다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타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조경기사 등)이 등록되어 있다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경업의 기술인력 보유요건에 포함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Q 7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수리업 회사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업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 기술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국민신문고 '17.04.24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12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에 해당된다면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8

저의 회사는 문화재수리법 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면허요건에 필요한 기술인력 수 또한 중복되지 않게끔 보유하고 있습니다.(2人+2人=4人) 그리고, 기술인력 각 개인별로 문화재수리 기술자 모두는 건설법에 의한 조경기사 자격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건설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투입하여도 되는 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건설법에 의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더하여, 문화재수리공사가 수행되는 중이라면, 현장배치 의무가 있는 기술자 이 외의 인력인 문화재수리 기능자로서 일반조경식재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한 지도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14.03.26 접수]

- ☞ 일단 불가능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수리업자(조경업)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재직하는 회사의 문화재 공사수주가 없다하더라도 건설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의 현장대리인(조경기사 자격 사용)으로 선임되는 것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인이 2개의 자격을 동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Q 9

본인은 귀청에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등록 된 자로서, 차후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시험에 응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 02. 경에 변경되는 기술자시험 응시자격에 기능자로서 1년의 실무경력을 요구 하고 있는데, 경력인증에 대한 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4.05.15 접수]

-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수리기능자로서 수리기술자(보수)부분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인증의 방법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과 실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등을 서류심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10

보수기술자 시험을 준비하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015년 시험부터는 자격조건에 경력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1. 요구하는 경력증명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올라간 문화재수리공사도 경력인정이 되는 건가요?
2. 노동청에서 출력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가 있는데 경력인증서류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14.06.23 접수]

- ☞ 귀하께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보수기술자 시험의 응시요건과 관련하여“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가 경력인정 서류로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으며, 실무경력 으로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고용보험 일용가입자/일용근로내역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일수를 합산한 경력 인정)

Q 11

【질의 1】

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 이후 단 한 번도 보수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소속된 적이 없어 사실상 자격증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질의 2】

만약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3항에 따라 교육경비를 소속기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속기관에서 교육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질의 3】

또한,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법령 어디에도 문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요?

[국민신문고 '16.11.08 접수]

- ☞ <답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보수교육 대상자는 문화재 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 귀하의 경우 자격 취득 이후 수리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소속된 적이 없으므로 교육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 ☞ <답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경비의 부담 주체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교육 수강을 희망한다면 현재 소속된 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아니므로 교육 경비 의무 부담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답변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제46조제2항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1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다른 기술자격과 비교할 때 어떤 사회적(관념적) 수준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특정 기술분야에서 최고 수준 자격시험에 대해 기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기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타 분야의 기술사 보다는 낮은 단계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아마도 기술자라는 어감이 기술사에 비해 다소 고급스럽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것일 듯 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5조에서는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조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 감독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격증이 각 분야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도와 근거가 다를 경우 모든 자격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률에서 문화재수리 분야 최고 수준을 의미하고 있고, 기술사 역시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의미하는 자격증이라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여타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수준을 의미하는 자격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9.06.14 접수]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명시된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기술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가전문자격과는 다른 자격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술사 자격의 수준을 법적 기준으로 비교, 평가할 수 없으며, 이는 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성, 직업으로의 사회적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술사에 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3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을 보면,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이상이라는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네요.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국민신문고 '19.06.26 접수]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능사 자격의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4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분야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조경분야를 하다보니 식물보호 분야도 있으면 상호보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식물보호분야 자격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과목 중 법령과 한국사는 이미 조경분야에서 합격을 했는데 다시금 시험을 봐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여쭙습니다.

두 과목은 면제가 불가한가요 ?

[국민신문고 '19.09.17 접수]

-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공통과목이 종목별로 중복된다고 하여 조경 분야 자격 취득자가 식물보호 분야 자격 시험 응시에 해당과목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Q 15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과목중 한국사가 2020년 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된다는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2020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을 확인해 보니 46회 첫 시험결과 최종 발표일이 2월 21일 입니다.

한국사능력시험 46회 시험 발표 결과를 확인후 2020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9.11.05 접수]

-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합니다. 2020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정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립 중인데, 2.24~2.28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일정대로 시험이 시행 되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위 일정이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Q-net 등 홈페이지의 공고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한국사 능력시험을 사전 응시 합격 여부에 한하여 자격요건을 두는 현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그럼 1차 시험, 2차, 3차 시험으로 나뉘는 관행이 되어서니 1차 필기 시험을 기존 자격으로 하되, 한국사 능력시험을 당 해 또는 1차 시험 합격 유효기간 내에 한국사 능력시험을 합격한다면 2차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특히 한국사 능력시험이 회차가 정해져 날짜를 맞춰야 하니 몇 번 응시 제한이 있는 한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 또한 준비하는 응시생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기위해 단 번에 한국사 능력시험 합격에 단번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을 1차 합격하고 이어서 2차까지 합격하는 자만 최종합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과거까지 시행하던 1차 합격자에 대해 2년간 면접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이 있기때문이고 기회는 더 줄 수록 합격할 학생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국민신문고 '20.02.24 접수]

☞ 먼저,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귀하의 지적과 같이 총3차에 걸쳐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수험자 입장에서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차(필기) 시험 당일의 시험 시간을 단축하여 수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외부 전문검증기관을 통해 검증 결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결과가 인정되는 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모든 시험이며, 1차(필기) 시험 합격자의 경우 다음 회차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까지 1차(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반드시 동일년도에 한국사능력시험, 필기, 면접을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4절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등록 및 배치



제4절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등록 및 배치

Q 1

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도 상시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7은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능자와 수리기술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한 입법취지는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비상근 형태의 근로 형태로는 법령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으로서 수리기능자는 수리기술자와 마찬가지로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Q 2

민간경상보조사업(사찰 발주, 공사금액 2억8천만원)의 경우 수의계약에 포함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군데 이하의 현장에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3항에서,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규정한 수의계약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없습니다.

Q 3

저는 지난 2013년 12월에 단정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지난 2014년에 수리업체에 소속되었다가 지금은 퇴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번년도 봄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기술자가 되고 업체에 소속된 지 3년 이내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해당이 없겠지요...? 업체에 소속되어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5. 02.03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 정 민님은 문화재수리업체에 2014.2.13.에 입사하여 2015.1.6.에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수리업체 입사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안 받을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Q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3항에 보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보면 문화재수리공사는 8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인정되는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아시는 분이 질의해서 들은 해석이 2천만원 까지라고 들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5.03.13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중복배치와 관련 된 수의계약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5

1. 문화재수리 공백기에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상주 여부 등
2. 문화재수리(식물보호) 시 병충해 방제부분이 제외 된 나머지 공정이 모두 끝났을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리현장 중복배치 개수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수리 행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모니터링으로 구성 된 사업”의 경우 현장대리인의 수리 현장 중복 배치에 개수 산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15.07.03 접수]

- ☞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나무 제거 등 식생정비 시행 시 예정 공정 상 1차 제거 후 2차 제거 시 까지 문화재수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계약 체결 시 미리 정한 부분으로써 공백 기간 역시 “문화재수리 계약”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간에 포함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백기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 할 경우 “무단이탈”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을 경우 1명의 수리기술자를 3개(병충해 방제 현장 제외) 이하의 수리 현장에 배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문화재수리(식물보호)를 수행함에 있어 병충해 방제 공정을 제외한 타공정(병충해 방제, 수목 상처치료, 수목 지지대 설치 등)이 모두 끝났을 시점부터는 사업성격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발주자의 판단 하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제3항에 따라“병충해 방제 현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문화재수리 현장 산정 개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 문화재수리 수행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천연기념물(식물)의 예방적인 상시관리로 전환하고자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 관리 지침(제정 2011년/훈령)」을 제정하여 천연기념물 식물의 병충해 피해현황, 수목 활력도 등을 연간 총 6회 이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천연기념물 식물 상서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라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현장에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상서관리 모니터링 사업에 병충해 방제, 수목외과수술 등 여러 가지 공정을 함께 발주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이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Q 6

1.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문화재수리 업무에 참여 하였을 시 하도급업체에서는 별도로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여부

[국민신문고 '15.07.09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3호에서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등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등을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임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제16호에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제2항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 할 때에 도급금액, 수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히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제1항에서 계약서에 밝혀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 상기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 한 공정은 하수급인(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이 수행하여 완성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하수급인(전문문화재수리업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문화재수리 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 문화재수리 수행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상기에 따라 귀하께서 언급하신 “한양도성 풍화성돌 시범보존처리 및 보존방안 연구 용역” 사업이 “문화재수리”에 해당 될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이 상기에서 제시 한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Q 7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면 배치확인표를 발주자에게 확인 받게 되어있는데요. 발주자의 승낙 하에 3곳까지 가능하며 수의공사 포함하면 최대 5곳까지 가능한 걸로 알려 공사 중지 현장은 그 개수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미리 배치된 현장이 공사 중지 상태일 때 새로운 현장에 배치가 될 경우 공사중지 현장도 현장배치확인표에 기재하여 발주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신문고 '17.02.08 접수]

- ☞ 「문화재수리법」 제33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은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배치 내용을 확인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발주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3개(5개) 이하의 수리 현장에 배치가 가능하므로 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업무 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문화재수리가 중지중인 현장은 배치현장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기재 방법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에 배치할 수 있는 현장의 개수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3개(5개)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8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중지 기간에도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현장을 벗어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7.02.16 접수]

☞ 귀하께서는 △ 문화재수리가 중지중인 현장의 대리인이 현장에 없을 시 현장대리인 무단 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 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현장의 개소 계산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지중인 현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공사가 일시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해당 문화재수리의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9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1건의 사업장을 하나의 현장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17.05.31 접수]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문화재수리 계약 체결시 도급금액, 수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 현장은 도급 계약서를 기준으로 그 개수를 산정하여 이에 따라 해당 문화재 수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여러 개의 수리 현장을 1건의 계약으로 발주할지 여부는 발주자가 해당 문화재 수리의 성격과 문화재수리업자의 적절한 업무수행 가능 여부, 사업비 집행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등록을 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과 단순 보유로 구분되어 있는데, 등록자와 보유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문화재수리업체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추가로 기술자를 보유만 할 경우 이 보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를 하지 않으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귀청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17.06.29 접수]

- ☞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에 명시된 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수리기술자와 기능자를 적정 인원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등록 요건에 해당 기술 인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등록”이라 하고 포함시키는 날짜를 “등록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에 포함되는 기술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 기술자, 기능자를 “보유”라고 정의합니다.
- ☞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으나, 등록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보유 기술자, 기능자에 대해서는 상시 근무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해당 기술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를 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한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 49조 1항 11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 업무정지 한다고 나와 있고 별표 2에 보면 행정처분으로 5명이상 배치한 경우와 7명 이상 배치한 경우 처분이 1차 위반 시 1개월 수리업 행정정지인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0명 배치한 경우는 어떻게 행정처분 되나요?

[국민신문고 '14.03.24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대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내용은 제60조(벌칙)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2

보수기술자의 현장 배치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번째, 향토유적인 건물의 보수 공사일 경우 현장대리인으로 보수기술자를 배치 해야 하나요?

두번째, 기념물인 건물 권역의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건물을 짓는 위치가 기념물 권역이 아니라면 현장대리인을 배치 해야 하나요? 만약에 배치 한다면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사항에 포함되나요

[국민신문고 '19.06.03 접수]

- ☞ 현장대리인은 계약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시켜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관리 등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현장대리인을 보수기술자 등으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문서와 계약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대상인 향토유적 건물 보수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기념물 주변에 건물 신축 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대상이 모호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기념물 주변 건물신축이 「문화재보호

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라면, 이는 문화재수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현장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Q 1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문화재가 없는 전통사찰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문화재가 없는 전통사찰에서 수리 하는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3항에 의거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보아 문화재수리기술자 중복배치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국민신문고 '19.08.20 접수]

- ☞ 귀하께서는 도급받은 공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전통사찰인 경우에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법의 적용 범위를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는 것과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도급받은 공사는 전통사찰에 속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현장에는 문화재수리법 제3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것은 문화재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므로, 기타 법령 또는 해당 계약문서 등에서 현장대리인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14

문화재수리공사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공백없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사해제 전까지 배치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01.10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해당 문화재수리 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 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현장의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지중인 현장은 문화재수리 기술자의 배치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지된 문화재수리가 재개 될 때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다시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한 현장대리인은 계약과 관련한 것으로써 위 규정에서의 문화재수리 기술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공사가 일시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해당 문화재수리의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절

문화재수리 감리



제5절 문화재수리 감리

Q 1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경우 배치 가능한 최대 현장 개수는?
[국민신문고 '17.04.14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문화재수리로서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해당 문화재수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2

사적지 내 공사이지만 공사범위가 건축·토목이 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토목 감리업체(지분율 99%)와 문화재감리업체(지분율 1%)로 공동도급으로 선정하여,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감리가 상주하여 문화재감리원이 해야 할 감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문화재감리원은 비상주감리만 하고 있는 바, 현재 상황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국민신문고 '16.12.01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문화재수리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서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문화재청장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수리인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감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주문화재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금액 이상이라면 상주감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3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가 아닌 일반 목조건축물의 감리가 가능한지 여부 (문화재가 아닌 사찰 목조건축물의 신축·보수 또는 일반 한옥건물의 신축·보수 시 감리가 가능한지 여부)

[국민신문고 '16.12.27 접수]

- ☞ 문화재감리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감리대상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문화재수리'를 지정(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 또는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문화재수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 참고) 따라서 질의대상인 공사가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해당한다면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4

사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예정금액 10억)와 사적 지정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의 철거공사(예정금액 35억)가 1건으로 발주 및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문화재감리를 발주하고자 할 때 사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에 한정하여 비상주감리로 발주해야 하는지,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주감리로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17.06.15 접수]

- ☞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사적의 보호구역 내의 행위는 문화재수리가 아니나,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동일 소유자 또는 동일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는 문화재수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철거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철거공사가 문화재수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상주 감리 대상이 되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비상주감리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 ☞ 참고로 공사 발주 시 문화재수리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감리 발주 시 판단은 동일해야 합니다. 즉, 공사 발주 시 전체 공사를 문화재수리로 판단하여 대상업종을 문화재수리업으로 발주하였다면 문화재감리 또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 시 철거공사를 문화재수리로 판단하지 않고 발주하였다면 문화재감리 또한 철거공사를 제외하고 발주하면 됩니다.

Q 5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5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현장이 여러 사유로 인해 문화재수리 중지 중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 배치가 가능한가요?

[국민신문고 '14.11.14 접수]

- ☞ 문화재수리 중지와 함께 감리 또한 중지되었다면 추가로 현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지 중인 문화재수리가 재개되어 배치된 문화재수리 현장 개수가 5개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3항에 따라 감리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문화재수리 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하목”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Q 6

발주자가 동일인이며 같은 경내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1개의 사업으로 계약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배치 현장 개수를 1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17.04.14 접수]

-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감리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 기준은 문화재수리 계약서가 됩니다. 다만,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구분하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기준 또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1건의 계약으로 체결할 때 그 금액

이 동법 시행령 별표 10 또는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주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Q 7

문화재 수리 보존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문화재 실측설계업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문화재 감리업 등록을 검토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사는 현재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폐사는 실측설계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폐사가 금년에 감리업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A사를 인수(?)하여 ①중요사항(상호, 대표자, 기술자) 변경신고만 하면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 조항 중 ②양도 양수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지 법률에 문외한이라 이렇게 여쭙어 봅니다. 이 경우 폐사도 ③감리업 등록을 한 연후에 양수가 가능한지요.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리업 등록 후 양도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A사에 소속된 기술자를 그대로 승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국민신문고 '15.01.12 접수]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 회사의 중요사항(상호, 대표자, 기술자) 변경신고 만으로는 어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권리·의무 모두를 양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속되었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고용 승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와 관련 사항은 시·도 업무사항으로써 관할 지역의 시·도에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을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8

문화재 실측설계업체(홍길동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 설계한 사업의 건에 대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체(홍길동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국민신문고 '17.08.07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 동일 경우에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41조), 이 외에 문화재감리업자의 감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문화재수리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해당이 되고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동시에 등록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를 한 경우라면, 문화재감리업자로서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문화재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므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9

실측설계사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수리기술자[보수]를 추가로 채용하여 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때 현 사무실로 감리업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별개의 사무소가 필요한지?

[국민신문고 '15.12.03 접수]

- ☞ 실측설계사무소를 운영중인 동일 법인이나 사업자가 감리업을 추가 등록할 경우 추가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10

【질의 1】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전 과정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직접적인 작성으로 한정하는가 여부

【질의 2】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가 여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관련 전문가’ 와 ‘의뢰 (하는 업무)’ 의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리법’) 제 36 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의 작

성은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3과 문화재 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 연혁, 주변 환경, 수리 이력 및 내용, 자문회의 및 내용, 상량문, 목서명, 사진, 도면 등 수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인 보고서 작성 및 완성도의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자료의 작성, 생산 등을 그 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1

문화재감리는 일반건축감리와 다르게 문화재감리 업무지침에 따로 마련이 되어있는데 혹시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를 시행할때 감리 범위에 소방, 전기, 통신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분리발주처럼 감리도 분리발주를 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문화재감리업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9.06.10 접수]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 전기, 통신공사가 일부 포함된 문화재수리 공사에 대한 문화재 감리를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감리가 소방, 전기, 통신 공사까지 총괄하는지 아니면 해당 소방, 전기, 통신 감리를 문화재감리와는 별도로 분리발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문화재수리란 지정(가지정)문화재 및 그 주변(시행령 제2조 관련)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소방·전기·통신공사를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소방·전기·통신공사도 문화재수리에 해당되며 해당 문화재수리가 문화재감리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소방·전기·통신공사도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소방·전기·통신공사를 포함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공사법」 등 소방·전기·통신공사 관련 법률 또한 문화재수리를 제외한다

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법률에 따른 감리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의무 또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12

문화재 시. 발굴조사 용역후 발굴조사에서 유물(지석묘,석관묘) 출토되어 자문결과 이전 복원 시행의견에 따라 이전복원설계 중에 있습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및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보면 문화재 수리에 대해서만 감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어, 이전복원 공사시에도 감리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이전복원 공사 시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19.09.02 접수]

- ☞ ○ '문화재감리'란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를 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 ※ '문화재수리' :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 다만 모든 문화재수리에 문화재감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감리대상 등)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위 답변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건이 문화재감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13

○ 비상주감리원 배치확인표 확인 방식 관련

-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확인 방식이 2020.1.7.일부로(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개정됨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될 때 각각의 발주자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그럼 앞으로 배치확인표에 신규 착수하는 현장 1개소만 기재하여 발주처의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현장도 배치확인표에 모두 기재하되 신규 발주처의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행 초기라 발주처에서는 아직도 이전 현장의 도장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20.03.24 접수]

☞ : 비상주문문화재감리원 배치확인표 확인 방식 관련

- 2020.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리법'으로 함)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의2서식의현장 배치 확인표에 해당 발주자에게 배치 확인을 받도록 하면 되며, 다른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14

○ 감리원 배치확인을 받아하는 대상 관련

- 비상주감리원은 5개 현장에 중복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 현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가 관급이나 사급(사찰,재실의 개인자본)이나에 따른 것이지? 아니면 보수 내용이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내의 사업이면 관급이 아닌 사찰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일지라도 무조건 배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재가 없더라도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은 배치확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사찰에서 시행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배치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03.24 접수]

☞ 비상주문문화재감리원이 배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관련

- 1명의 비상주문문화재감리원은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 가능하며, 발주 주체 및 예산 출처 등에 관계없이 수리법 제2조(정의) 제1호의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상주문문화재감리원 배치 시 현장 배치 확인을받아야 합니다.

Q 15

○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작성관련

-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감리일지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주감리의 경우도 감리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방문 시에만 감리일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중간감리보고서의 경우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기별의 기준이 착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6,9,12월의 기본 분기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 착수일이 2월인 경우 감리보고서를 2.3.4월의 감리업무를 한 후 5월초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1분기인 3월까지 감리업무를 지행한 후 4월 초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초(1~3월에 시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에 중간감리보고서를 1차로 제출한 후 5월 준공일인 경우 4,5월분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를 준공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 중간감리보고서를 총 3차례 정도 제출한 경우 최종감리보고서 제출 시 중간감리보고서 1~3차분에 제출했던 감리일지, 검측서류, 자재승인서류, 기술검토의견서등의 원본 서류를 다시 다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있는 최종감리보고서 양식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지요? 일부 감리회사는 최종감리보고서의 양식에 있는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부 감리회사는 중간감리보고서에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도 모두 엮어서 제출하는데 기본 작성 방식은 어떤 것이 맞는지요?
- 일부 문화재보수정비공사 감리용역 진행시 공사내용에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보수기술자가 당해 부분까지 감리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기술자(건축, 토목)의 업무범위에 해당이 안 되므로 같이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은 감리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03.24 접수]

☞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작성 관련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경우 문화재수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 점검 및 확인 등 감리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주문화재수리의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상주문화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기간 동안 감리일

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일반감리의 중간감리보고서는 수리법 시행규칙 제18조(감리보고서)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3, 6, 9, 12월) 후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5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사 보고)에 따라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 관련 문화재감리 용역 시 문화재수리 공사 내용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의 규모 등이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따라 해당분야 감리를 실시해야 할 경우 그 분야의 감리는 문화재감리원이 할 수 없으며,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관련법에 따라 해당 분야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Q 16

○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금액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가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 라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1항 마 항목을 보면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보면 문화재 수리공사는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거 같은데, 지자체 감사시마다 관련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 '20.03.24 접수]

☞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질의의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나, 문화재수리가 질의하신 법령의 적용 범위에 반드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화재수리공사의 내용, 범위 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절

법령해석



제6절 법령해석

Q 1

하도급의 제한(50%)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화재수리금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은 당해 문화재수리의 계약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

문화재실측설계업 수리기술자의 사임시 진행중인 잔여 용역건에 대해 당초 수리기술자의 사용인감으로 납품 등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참고로 사용인감 계속사용은 당초 기술자가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 근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하고,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귀 사는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 사에서 주장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내용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계속할 수 있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사임하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Q 3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가운데 토목공종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일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그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귀하께서 질의한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질의의 대상이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해당한다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4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하고자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귀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0500 목공사 내용 중 3. 검사 방법 3.1 현장검사 5항 갈렘폭이 한곳이라도 60m/m 이상이거나 동일 횡단에서 갈렘폭의 합산길이가 원주의 1/10 이상인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00회사에서 시공한 종루 목재보에 할렬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미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조치를 요청(2014.9.24)하였으나, 00회사는 상기 시방 내용을 근거로 60m/m 이하의 할렬이 발생하여 하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 상기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 1) 상기 내용을 목공사 완료후 할렬이 발생할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2) 갈렘이 여러 군데 발생 하였으나 모두다 갈렘폭이 60m/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자 보수의 의무는 없는 것인지?
- 3) 하반절에 기록한 동일 횡단에서 갈렘폭의 합산길이가 원주의 1/10 이상인 경우란 어떤 의미인지? 원주재가 아닌 각재에도 적용이 가능 한 것인지?
- 4) 미관적으로 보기 싫더라도 갈렘폭이 60m/m이면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는지?
- 5) KS F3020에 보면 목재의 등급을 정함에 있어 갈라짐에는 할렬, 분할, 윤할등 3가지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는 단지 윤할(갈렘)만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윤할 (갈렘)이 KS F3020이 언급한 할렘,분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6) 윤할(갈렘)이 60m/m이하라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 '14.10.22 접수]

- ☞ <답변 1> 시방서 상의 '갈렘'의 범위에는 할렘과 윤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목재가 현장에 반입된 시점 또는 시공 설치 이후라도 시방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시방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답변 2, 4> 현 표준 시방서 기준 상, 갈렘 폭이 60m/m 이상이거나 갈렘 폭의 합산길이 가 원주의 1/10 이상인 경우 문화재수리용 목재로는 결점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 <답변 3> 목리에 대하여 직각인 방향으로 절단하였을 때 즉 횡단면에서의 각각의 갈렘폭을 합산한 것이 들레 길이의 1/10을 넘는 것은 미관적·구조적인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재에서도 준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답변 5>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상의 '갈렘'의 범위에는 할렘과 윤할이 포함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답변 6> 문화재 수리용 목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목재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발주청 주관으로 현장의 개별 목재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문화재수리 표준 시방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현장 여건이나 사업의 성격 또는 내용 상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는 특별 시방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관리를 유도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5

방형형태의 자연석을 다듬어 성곽을 쌓은 후 준공 하였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 6에 의거 '자연 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로 판단 발주처와 협의 후 하자기간을 3년으로 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1년이 지난 후 발주처에서 별표6에 의거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로 발주처의 판단은 화강석 외에 다른 돌을 포함하여 방형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는 5년으로 산정하여 하자기간 2년 추가 연장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계약내역서상 재료비의 품목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표 6〉 문화재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21조 관련)

종 류	세 부 공 종	책임기간
1. 성곽	① 석성 -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5년 3년
	② 토성, 혼축성	2년
	③ 전축성	3년
	④ 목책성	1년

[국민신문고 '14.06.26 접수]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에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성곽(석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석성의 쌓은 구조에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5년)와 자연 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3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당시 의 과업내용, 내역, 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라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6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가옥과 b가옥간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2012년 12월 이 가옥들만 제외하고 모두 기성완료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경 이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발주처에게도 여러 번 조속히 민원 해결을 요구 하다가 얼마 전이야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청구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발급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업체 때문이 아닌 발주처의 민원 해결이 늦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도 업체는 현장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미리 기성된 가옥들은 경과된 시간만큼 하자기간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4.12.24 접수]

- ☞ 문화재수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라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7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추가적인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라면 그 특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수리의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위 규정이 정한 기준을 토대로 해당 문화재수리의 내용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산정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만료 후라도 담보의 책임이 있을 것이나, 기간만료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의 해석과 내용 및 하자기간의 조정여부 등에 대해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제반사정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중 제18조 4항 3호에서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 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 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6.>의 내용이 있습니다.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라는 특수조항이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영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요. 이와 연관된 별표 2 제5호에 기재된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중에도 방충작업 및 해충방제구역과 같이 공사가 아닌 용역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업무범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식물보호 기술자의 병충해 방제의 업무와 같이 용역의 범주에 속하는 다른 분야의 업무는 동일한 선상에서 보지 않고 식물보호기술에만 특수조항을 두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 '20.07.05 접수]

☞ 귀하께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개수 계산에 있어서 식물보호기술자의 병충해 방제 현장은 예외로 한 것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개수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문화체육부령 제29호, 1996.7.10. 일부개정), 이때 1명의 수리기술자가 최대 3개까지의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제도 개선의 필요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배치 개수를 사업규모나 수리기술자의 업무범위에 따라 다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식물보호기술자의 병충해 방제 현장을 현장배치 개수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해당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규칙으로써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및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용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9

아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입찰은 실측설계업자가 받고 조경기술자가 하도를 받는 구조는 어느 법령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재수리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라고 정하고 있는데 1,2 둘 다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기술업자는 하도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은 일반 조경회사가 가진 자격조건이 아니라 문화재수리자격증이 있는 조경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

【질의 3】

도시계획시설공원이자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의 정비를 하는 경우라면 문화재수리업 및

기술인력에서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업종과 인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

【질의 4】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 설계 (『문화재수리법』 제5조 제3항)는 경미한 실측설계와 함께 예외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 설계 “사례”가 어떤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20.03.04 접수]

- ☞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 이를 조경기술자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화재수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즉, 조경기술자)에게 하도급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무적인 하도급거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전문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이란 무엇인지?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조경업은 7개의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조경공사의 시공을 하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 ☞ 도시계획시설공원이자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정비 시 수행자격은?
문화재수리는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해당하고 이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 중 ‘정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을 알 수는 없으나, 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 행위라면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문화재수리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의 사례는?
문화재수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와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를 직접 할 수 있으며, 건조물 등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절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제7절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Q 1

문화재표준수리시방서(95페이지)상에 국내산 소나무의 횡인장강도가 885kg/cm²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횡인장강도란 정확히 어떤 강도를 가르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기둥이 있다면 기둥의 상하부(말구, 원구)를 잡아 당겼을 때의 인장강도인가요? 아니면 기둥의 양볼을 붙잡고 좌우로 잡아당겼을 때의 인장강도인가요?

[국민신문고 '14.02.06 접수]

-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 작성 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문화재수리공사는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별도 작성 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목재의 갈렘(할렬 포함) 기준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목공사-검사방법) 외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균열 등으로 인하여 미관저해 등 우려가 될 경우 공사 시방서에 함수율 및 균열 등 적용기준을 별도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

보통 문화재나 한식목조건물에서 목재기둥의 갈렘정도에 대한 기준이 있나싶어 문의드립니다. 문화재표준시방서에선 건물 조영 후 목재 할렬에 대한 내용은 없고 목재 사용 기준에서 원주의 1/10이상 또는 60mm이상 갈렘이 있는 건 사용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변 관련 전문가분께 여쭙어봐도 모르시거나 시방서 상의 내용만 알고 계시길래.. 혹시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해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14.02.06 접수]

-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 작성 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문화재수리 공사는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별도 작성 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목재의 갈렘(할렘 포함) 기준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목공사-검사방법) 외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균열 등으로 인하여 미관저해 등 우려가 될 경우 공사 시방서에 함수율 및 균열 등 적용기준을 별도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

문화재 수리 업무에 종사자입니다. 업무 수행 중 지붕공사 보토다짐 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문화재청발행, 0600지붕공사 3.4보토)에 의하면 “1m3당 진흙(0.9m3), 생석회(7.8kg), 마사(풍화토,0.3m3)를 물과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합할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은 규정되어 있는가?
2. 물을 혼합하지 않고 보토 시공이 가능한가?

현장 업무 수행중 일부 시공사(또는 기능공)는 물을 혼합하지 않는 마른 보토의 시공이 적심재의 부식을 늦춘다는 이유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답변주시면 문화재 보호와 좀 더 나은 문화재 수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14.07.08 접수]

☞ 보토에 물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견식 시공 상 문제점은 보토가 입질 형태의 독립적인 분말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는 여러 요인이나 조건에 의하여 지붕 내 보토(흙성분)가 유실 될 가능성이 높고 기와 등 상부 구조물의 하부기반이 취약해 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세를 충분하게 시공하거나 강회다짐을 하는 경우에는 드물게 견식으로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강회다짐의 경우에는 근현대에 도입된 시공법으로 전통성이 결여됨에 따라 해체 건물의 원형 상 강회가 없는 경우에는 강회시공을 권장하지 않는 추세이고..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보토 시공 시에 보토 성분 간의 유착과 일체화를 위하여 물을 혼합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상의 보토 시방 기준은 '진흙, 생석회, 마사토를 지정한 배합 비율에 따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토 시공 시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량의 물을 혼합하여 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시공 기준을 설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4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준용하는 일반 한옥건축물 시공 관련입니다. 당 현장은 관공사 현장이며,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해 공사 시행중입니다. 현장내 한옥건축물에 시공되는 목자재 중 육송자재의 강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채취하여 시험한 강도결과(첨부1), 문화재표준수리시방서의 기준치(첨부2)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되었고, 발주처에서는 표준시방서에 충족하지 못하는 자재사용과 관련하여 강도에 부적절한 자재사용 등의 강도불충족의 사유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나무의 강도(종압축, 횡인장, 휨강도 등)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해본 바, 육송과 같은 자연재의 경우 시방서상의 수치는 일반적인 공산품자재(철근 등)와 달리, 동일한 자재에서도 부위에 따라 균일한 성질을 갖기 힘들며, 편차가 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방서 수치를 상회하지 않는다고 부실한 자재를 사용한 시공으로 결론짓기 어렵다는 복수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산 육송을 납품하는 산림조합에서 근자에 측정된 임업시험성적서(첨부3)를 확인한 결과, 당 현장에서 사용된 자재와 유사한 값의 결과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산림조합데이터 및 복수 현장의 시험데이터 값이 유사할 경우 일반적인 수치로 추론이 가능한 것인지? 일반적인 수치라고 한다면, 표준시방서값을 상회하지는 못하는 사유로 강도 불충족에 따른 시정이 가능한지? 나무라는 자연재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기준치에 따른 허용치는 어느 정도 인지 질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4.08.08 접수

- ☞ 문화재 보수정비에 사용되는 사례를 기준으로 답변 드리면, 목재는 기존의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여야 하며 손상 등이 심하여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부재와 동일한 수종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수종의 목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수종과 동등 이상의 품질(강도)을 가진 다른 수종을 신재로 보충할 수 있으며, 특대재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국내 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강도)을 가진 수입목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상의 '국내산 수종의 강도표'는 기존 부재 대신에 다른 수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수종이 기존 부재의 품질기준(시방기준)과 동등 이상의 품질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시방서 상에 제시된 국내산 수종은 별도의 강도시험은 생략하여도 무방함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나무의 식생환경 변하고 지역별·환경별로 나무가 자라는 조

건이 다르므로 동일 수종이라 하더라도 강도 등의 시험 결과가 획일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며 시방서 상에 제시된 수치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평균적인 수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5

한식목공사에서 일반재와 특수재를 분류하여 내역에 반영하는 경우에 원목 중 일반재의 경우 단면 대각선 30mm미만, 12자 미만으로 되어있고 특수재의 경우 대각선 30mm이상-45mm미만, 12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의내용 중 특수재의 경우 대각선의 30mm이상-45mm미만 크기와 12자 이상의 길이 2개의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내용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되는지요?

[국민신문고 '17.03.20 접수]

-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표 0500.3 목재규격]에 따르면 특수재는 밑마구리 30cm 이상 45cm 미만 또는 길이 12자 이상 24자 미만에 해당하는 목재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특수재의 조건은 위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Q 6

전자공청회 기간도 지나고 9월 중에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공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개정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시가 되었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링크 좀 알려주시고, 개시가 안 되었다면 언제 공개 예정인지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19.10.04 접수]

-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19년 9월 30일 개정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9-125호)하였습니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에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7

최근 개정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중 표 0500.3 목재규격에 대한 문의입니다.

표 내용 중 각재와 판재 규격 단위에 대해 '대각 Ø30cm' 등에서 Ø가 오타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9.11.11 접수]

- ☞ 문의하신 기호 'Ø'는 원의 지름을 뜻하는 기호로서 원목의 지름을 표기하는 기호로 사용함이 적절하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재 및 판재의 규격 표기 시에는 불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8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8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Q 1

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목과 관련한 비용도 '인력'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사장 여건상 목재를 운반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치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제재소'에서 부재전량을 인력과 기계를 겸하여 치목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이러할 경우 목재 치목과 관련한 내역을 전부 '기계'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로 '인력'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며,

【질의 2】

목재 치목을 시방서대로 전량 '인력'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역을 변경하여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3】

목재 치목 시 사용된 '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을 위해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14.01.22 접수]

- ☞ 우선 인력치목작업은 전통공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치목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계치목은 기계장비(전기대패, 전기톱, 전기드릴, 전기샌더 등)를 사용하여 치목 후 마무리는 전통연장을 사용할 때의 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질의하신 사안은 제재소에서 전통공구와 기계장비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계치목 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각 현장특성에 따라 치목의 세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품의 반영 및 변경 등의 판단은 해당 공사의 발주청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Q 2

현재 저는 00시 산하기관에서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수 공사 중 문화재 표준품셈 13-5 면담기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는 문화재는 00시 민속자료로 1930년대 가옥이며 퇴락부위를 교체하는 공사이며, 해당 공사에서 목재에 대해 면담기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부재의 경우 면담기-수리를, 신자재에 대해서는 면담기-신축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에서는 기존 부재의 경우 들기름칠 등을 벗겨야 하므로 면각기(표준품셈에 없음)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점에서 저의 궁금한 점은 면담기-수리, 면담기-신축의 시공상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면각기라는 것이 공식적인 시공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4.02.03 접수]

☞ 면담기 품 중에서 기존 건축물의 부재에 재단청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수리' 항목을 적용토록 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단청을 할 경우에는 '신축' 항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면담기(13-5) 항목은 면담기와 바탕면 만들기 공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먼지 제거 뿐만 아니라 단청할 부분의 바탕면에 대해 평활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의하신 면각기 시공방법이 문화재수리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문화재 수리는 당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면각기를 시행할 경우 기존 부재의 크기 변형 및 목재 표면의 자연스러운 요철 등이 사라지는 등 원형훼손이 야기되므로 일반적인 문화재수리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3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제4-41 첨차치목 항에서 초각있음과 초각없음의 분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기에 분류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나,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화반의 경우 목부재 테두리에 당초문이나 파련문이 초각되어 있고 화반부재의 가운데 면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초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초각 있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초각없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4.05.13 접수]

- ☞ 화반의 목부재의 테두리를 따라 당초문 등의 문양을 초각하는 경우「첨차(초각 있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절, 사절에 반하여 목부재 테두리에 대한 가공이 들어가는 형상은 “항목 상 [주]③ 운형 첨차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화반은 “항목 상 [주]④ 대공 등”에 포함 분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내용은「첨차(초각있음)」으로 분류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4

문화재청의 2012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중 '11-15 마름돌쌓기'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현재 휴양지 내 한옥스타일의 다목적 용도 시설들(숙박, 화장실, 샤워실, 세척장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단석 쌓기 공사의 진행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름돌 150mm X 200mm X 1,000mm(중/상단 쌓기)

마름돌 150mm X 250mm X 1,000mm(하단 쌓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사는 한옥의 형태이긴 하나 휴양지 내 서비스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단석쌓기의 품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건축표준품셈에 있던 기단석 쌓기 품셈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문화재가 아님에도 한옥양식이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기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사의 기단 쌓기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2.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11-15-1' 품셈의 적용이 맞는 것이지요?
3. [주] 3항에 가구식 기단은 별도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4. 만약 [주] 3항에 해당된다면, 별도 계상 기준은 얼마인지요?
5. 혹은 신축 한옥의 기단석 쌓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국민신문고 '14.06.10 접수]

- ☞ 1. 현재 공사의 기단 쌓기에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을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수리에 준하는 공사 내용이라면, 즉 문화재수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전통재료, 전통시공기법등 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되는 일반인 발주 공사라면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발주자가 판단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11-15-1 품셈의 적용이 맞는 것이지요

- 제공하여 주신 도면에 부분 상세도가 없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지만 두께 150mm의 판석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습식으로 붙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문화재수리 전문공인 한식석공 등의 품이 적용되어 있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3.4. [주]3호에 가구식 기단은 별도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해당된다면 별도 계상 기준은 얼마인지요?

- 가구식 기단이라 함은 전통 한식목구조 양식 중 기둥(우주, 탕주)과 벽체 모양을 기단에 상징화 및 반복 패턴화하여 구성하는 구조이며 석재 안쪽으로는 속채움석을 설치하는 기단이므로 질의 사항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상 공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5. 혹은 신축 한옥의 기단석 쌓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 위의 사업은 한옥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기단의 구조 및 형식은 현대공법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중 돌공사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지 추천 해 봅니다.

Q 5

【질의 1】

문화재품셈에 의하면 조립품에 소운반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추녀, 선자 등 큰 목부재를 지붕에 설치 및 인양할때 인력으로 운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설계자에 의하면 일위 대가에 소운반이 있으므로 별도 장비사용 반영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선자서까래(당현장 기계치목 적용)는 현장 치목이 많은데 일부 인력품을 적용해도 괜찮은지요?

【질의 3】

민흘림기둥은 기계치목 또는 인력치목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질의 4】

하양식건물은 품셈의 고려말~조선초기로 인력품 20% 적용이 가능한지요?

[국민신문고 '14.09.19 접수]

- ☞ 추녀, 선자연 등 선연부재 조립품에 소운반품 포함여부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기준 상 조립품에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자연은 현장치목(당 현장은 기계치목 적용)이 많은데 일부 인력품 적용이 가능한지? 민흘림 기둥은 기계치목 또는 인력치목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어느 방식으로의 치목을 할 것인지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며 그에 상당하는 품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하양식 건물은 품셈의 고려말~조선초기로 인력품 20% 적용이 가능한지?
 - 품셈기준 상 고려말~조선초기의 구조양식은 치목 시 인력품을 20% 가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문화재 원형복원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재 보수 또는 복원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6

당 현장의 석축쌓기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문화재수리품셈 11-14 거친돌쌓기(0.035~0.3M3미만)에서 거친돌을 기계장비로 들어 올려 쌓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비로 들어 올려 쌓기 할 때 한식석공이나 조공 보통 인부의 일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히 쌓기만을 위한 것 인지(자연석 그대로 고임돌등을 사용하여 그 모양대로) 아니면 자연석을 일부 다듬어서 쌓기하라는 것인지요. 또한 다듬어서 사용하라고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 (정다듬, 그랭이질, 흑두기 등)까지 인지요?
2. 당 현장의 석축은 문화재품셈상의 자연석 쌓기(거친돌쌓기)-기계의 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쌓기 할 당시 발주처의 요구로 다듬어서 시공하였습니다.(사진첨부) 그리하여 인력70%+기계30%로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러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수리품셈상의 거친돌쌓기는 기계 나 인력품으로 밖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인력+기계의 적용이 합당한지요? 아니면 기계품으로 적용하되 흑두기나 정다듬(거친다듬)의 품을 적용하여 주는 것이 적당한지요?
3. 당 현장의 뒷채움석 쌓기품은 기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정비공사) 하나 뒷채움석 쌓기 할 때 인력으로 쌓기 하였습니다. 하면 그 품의 적용을 인력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대로 기계품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기계장비는 자재운반) 또한 인력쌓기 할 때 인력쌓기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인력으로 뒷채움석을 모양에 맞추어 석축의 토사방지 및 유출을 막아주고 석축의 안정성을 유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쌓기 방법이 존재하는 건지요?
- 문화재수리품셈상의 인력 + 기계의 적용여부가 획일적이어서 공사의 변수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5.01.22 접수]

- ☞ 1. 거친돌 쌓기(기계장비) 시 인력이 하는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석축 쌓기 시 인력이 하는 작업의 범위를 들자면, 들어 올려진 석재를 놓여지는 예정 위치와 인접한 면석들과 뒤쪽의 채움석 (뒷채움석)이 맞물려 구조적으로 일체화 시키는 작업이 기본입니다.
 - 이와 함께, 소운반 및 인접면석과 귀를 맞추기 위한 가공작업까지 표준 품셈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면석의 정면 등에 대한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품 (흑두기, 정다듬, 도드락 등)을 계상 할 수 있습니다.

- ☞ 2. 설계에는 거친돌 쌓기(기계장비) 품이 적용되어 있으나 다듬어서 시공을 하는 경우 인력70%와 기계30% 혼용 기준으로 품산정이 가능한지?
 - 사진 상의 석재는 거친돌 보다는 마름돌에 가까운 형태로 쌓기 품 적용에 있어서는 거친돌쌓기가 아닌 마름돌쌓기 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3. 설계 상 뒷채움석 쌓기(기계) 품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채움석 인력쌓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을 적용하는 기준은?
 - 면석과 뒷채움석 긴결력을 높여 석축의 구조적 일체화를 유도하고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뒷채움석 쌓기는 인력으로 쌓기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표준품셈 11-16 채움석 쌓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7

저희 사무실에서 전통사찰에 묘사채를 건립하는 설계를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사찰 회계과에서 “드잡이공”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내역서 작업 시 축부재 조립 일위대가에 있는 대로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는데 사찰회계과에서 “드잡이공은 직종설명에 해체공사에 적용되는 인력이다. 그러므로 이번공사 축부재 조립 일위대가에서는 삭제를 해야 한다” 라고 저희에게 검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현 축부재조립 일위대가에 있는 드잡이공은 신축 공사 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15.04.14 접수

- ☞ 1.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적용범위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을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같은 대상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드잡이공은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하며 축부재 조립에 있어서는 중량 부재를 도구 등을 이용하여 들

어울려 제 위치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조립과정에서 틀어진 부재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부재의 분류체계 중 축부재는 기둥, 보, 창방, 평방, 도리 등 비교적 중량 부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중량부재(축부재)의 해체·조립 시에는 상대적으로 경량부재라 할 수 있는 평연부재, 선연부재, 포부재 등과는 달리 공사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맞춤에 대한 지원이나 틀어짐에 대한 보완작업에 대하여 드잡이공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드잡이공에 대한 소요내역이 축부재 해체·조립과, 석조물공사 해체·조립에 대한 품셈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8

제가 시공하는 현장의 수량산출서에서 원기둥, 굴도리의 수량산출방식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가령 원기둥 300mm가 기둥으로 명기되어 있을 때 목재수량은 300*300*길 이로 산출하고 치목은 산출된 목재수량과 동일하고 조립은 치목된 수량(150*0150*3.14* 길이)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그게 맞다면 그 목재수량의 적용은 각재로 하는게 맞는지 원목으로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개판의 경우 개판설치면적이 있다면 실제 설치를 위해서는 맞대는 면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각 개판의 치수를 약간 줄여서 시공하는데 이때 수량산출은 각각의 개판치수(시공상 약간 줄인치수)를 구해서 더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면적에 준하는 각각의 개판을 적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15.07.07 접수]

-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상 원기둥과 같은 원형부재의 수량산출은 마감치수(설계도면치수)를 기준으로 하되 반지름*반지름*3.14*길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예와 같은 경우에는 300*300*길이 기준으로 원기둥 치목 및 조립에 대한 수량 산출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형목재를 원형재(원형기둥)로 치목하기 위한 신재 반입 시에는 재료 물량에 25%를 추가 할증 반영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판 물량 산출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공 되는 물량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Q 9

【질의 1】

전통기와(문화재) 지붕공사에 있어서 기와 밑에 까는 보토(황토)에 생석회를 혼합하는 바, 그 이유 중 하나가 풀씨가 기와 틈새에 들어가 발생하는 잡초를 예방함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요?

【질의 2】

보토(황토)와 생석회의 혼합 적정 비율은 얼마인지요?

[국민신문고 '15.07.29 접수]

- ☞ (답변 1) 지붕보토에 생석회를 섞어 사용하는 이유는 보토의 결속력을 높이고 강도를 높여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석회에 함유되어 있는 강알칼리 성분은 초화류에 독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붕에 초화류가 서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답변 2) 보토다짐의 혼합 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5 보토다짐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당 생석회 78kg, 진흙 0.9㎡, 마사토 0.3㎡

Q 10

저희 현장에서 적용된 문화재 품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앞전에도 문의 드린 적이 있지만, 그와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첨부부터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당 현장에 수량산출

지름 300mm 길이 2400mm 원기둥 또는 원형부재

수량산출식 목재수량 조립 치목

원목(原木) $0.3 \times 0.3 \times 2.4 = 0.216$ 0.216 0.216

$0.15 \times 0.15 \times 3.14 \times 2.4 = 0.169$ 0.169

집계 0.216 0.169 0.216

할증 * 1.1

합계 0.237 0.169 0.216

위와 같이 수량산출이 되어있어서 앞전에 문의 드린 답변을 적용하여 수량산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수량산출식 목재수량 조립 치목

원목(原木) $0.15 \times 0.15 \times 3.14 \times 2.4 = 0.169$ 0.169 0.169 0.169

집계 0.169 0.169 0.169

할증 * 1.1

합계 0.185 0.169 0.216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 적용된 원기둥 치목 품셈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4-29-3(원형제 재목사용, 기계장비)로 적용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현장에서는 원목(原木)의 수량이 아니라 원형제재목 수량을 적용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적용되어야 한다면 유선 상으로 답변해주신 재료의 할증으로 풀어야 될지, 아니면 원형제 재목이라는 신규항목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적용사례는 어떤 원형 부재에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서까래는 품셈에서 원목(原木)으로 치목한다고 나와 있지만, 다른 원형부재 (당 현장은 추녀가 적용됨)는 어떻게 적용해야될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15.08.10 접수]

-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상 원기둥 기계치목은 원목이 아닌 원형제재목을 사용하여 치목 할 때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목 물량은 설계마감 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료량은 산정된 치목 물량에 원형제 제재목에 해당하는 할증률(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 참조)을 가산하여 산정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중 목공사 분야의 치목별 항목에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재의 형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1

장수군 농어촌공사에서 발주 시행중인 [동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토목 건축공사] 시행중 돌담쌓기 수량산출에 관하여 문의를 합니다.

높이 1.2m 폭 0.45m 돌담쌓기 수량산출시 현재 수량산출 :(벽면)1.2 * 1면으로 산출됨 (문화재 품셈으로 적용됨)

【질문내용】

돌담쌓기 수량산출시 앞면, 뒷면, 상부 면적을 합해서 산출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경 수량산출 : (벽면)1.2 * 2면 + (상부면)0.45 * 1면

[국민신문고 '15.10.12 접수]

- ☞ 1. 질의에 첨부된 도면과 같은 유형의 담장 형태는 돌담 (자연석 돌담, 사괴석담, 돌각담)의 형식 중 ‘돌각담’에 해당하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 구조물에 강회 또는 진흙을 가미한 점, 담장 폭에 비하여 돌의 규격이 너무 큰 점, 자연석이 아닌 면가공이 되어 수직면이 바르게 정리 된 점 등으로 보아서는 전통 형식으로 보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 ☞ 2. 일단은, 거친돌(자연석)돌담쌓기와 돌각담쌓기를 대별 할 수 있는 기준은 뒤(속)채움 시공의 유무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인 바, 위와 같은 난해한 점을 차지한다면 ‘돌각담쌓기’에 가까운 형태로 보여지므로 소요 체적(m³)을 기준으로 수량 산출함이 적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 돌각담쌓기 : 뒤(속)채움이 없이 일정 규격의 돌만을 가지고 서로 엇물리도록 하여 하나의 담장 구조체를 쌓아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제주도의 현무암 돌담 쌓기 형식처럼 자연 상태의 돌을 면가공 없이 들쭉날쭉 자연스럽게 쌓아올리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는 형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 자연석돌담쌓기 : 일정 규격의 거친 자연돌을 전면과 후면에 쌓고 동 전면과 후면 사이(중간)에는 보다 작은 석재 등으로 뒤(속)채움하여 쌓아 올라가면서 서로 구조적인 엇물림 효과를 주는 형식
- ☞ 3. 아울러,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적용범위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란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예시-문화재 지정 또는 보호구역 내 등)의 시설물을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같은 대상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2

문화재 공사로 발주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업체입니다. 원설계가 많이 미흡하여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감독청과 의견이 상이하여 문외드립니다.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품셈을 보면 문화재공사는 각 공정마다 공통적으로 건물높이에 대한 할증과 공사량에 따른 편수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공사, 지붕공사, 석공사, 미장공사, 단청공사 등 여러 공정 중 지붕공사를 예로 들면, 처마높이가 3.6m이하 일 때를 기본으로 하고 3.6m-6m 일때 인건비의 15%를 할증하고, 또 6m이상일 때는 또 10%를 할증하라. 편수는 지붕면적 30m² 마다 1인을 산정하라. 이런 식입니다. 건물의 처마높이가 4.5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원설계는 내역서 비교란에 높이 3m 라고 명시된 3.6m 이하의 품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편수품은 내역 항목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이 3.6m이하의 품이 적용된 내역항목대신 3.6m-6m품을 신규로 적용하고, 내역서에 빠져있는 편수품을 넣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제 요청이 타당한지 여쭙어 봅니다. 첨부파일 117페이지를 보시면 지붕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15.11.09 접수]

-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문화재 공사 중 보편적인 공종, 수리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화재 특성, 현장 여건 및 기타 조건에 따라 표준품셈 기준과 다르게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높이에 따른 품 가산, 편수 산정 기준은 보편적인 문화재 수리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도 현장이나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사항은 발주청, 감리, 시공사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Q 13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1장 석공사... 11-0적용기준... 5.치석에서 ①항 '특대물은 5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특대물이란 한 면 마무리 면적이 1㎡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항에 대해 예를 들어, 특대물을 치석할 경우 1개의 석재가 6면 중 2면은 1㎡를 초과하고 나머지 4면은 1㎡미만일 경우 석재 치석의 할증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든 석재 6면의 치석 면적이 4㎡일 경우

- ① 4㎡(6면)에 대하여 할증을 적용하는지
- ② 1㎡를 초과하는 해당면(2면 2㎡)에 대하여만 할증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현장은 본 조립 현장에 별도로 치석 가설 작업장에서 인력가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16.01.21 접수]

☞ 귀하께서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이하 '표준품셈') 제11장 석공사 11-0 적용기준 5.치석 ①항의 '특대물은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특대물이란 한 면 마무리 면적이 1㎡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6면체의 석재 치석 면적이 4㎡일 경우 4㎡ 전부에 대하여 할증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특대물의 요건인 1㎡를 초과하는 면만 할증을 적용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치석은 할석된 석재면을 가공(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등)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크기 이상의 석재에 대해서는 전체 작업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치석 시 특대물의 50% 품 가산은 해당 특대물의 가공면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문화재 공사 중 보편적인 공종, 수리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화재 특성, 현장 여건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등이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 14

00마을정비공사중 막돌담장쌓기를 시공해야 하는데 수량산출서와 단가 산출서에는 한면 쌓기로 수량이 적용 되었습니다. 담장쌓기 시공 시 양면을 쌓아야 되는데 한면 수량이 맞는지 양면수량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16.03.17 접수]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단위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과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기한 것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00마을정비공사와 같은 일반 건설공사는 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막돌담장쌓기' 항목은 '토석담쌓기'로 개정되었으며(11.4월 개정), 이에 따르면 토석담쌓기는 체적(㎥)이 아닌 면적(한면 ㎡당)으로 그 기준 단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수량 산출 시 양면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5

안녕하세요. 제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목공사가 문화재시방 및 품셈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름 300mm, 길이 2.1m의 마감치수 원목이 있다고 할 경우 수량산출서상에는 $0.15 \times 0.15 \times 3.14 \times 2.1 \times 300 = 21.195$ 재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역서에 적용된 원목의 단가는 경북 지역 내에 있는 제재소 3곳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표준단가를 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재소에서 적용하는 재수는 예와 동일한 지름300mm,길이2.1m로 주문할 경우 적용하는 재수는 $0.3 \times 0.3 \times 2.1 \times 300 = 56.7$ 로 산정되어 이에 따른 재수로 목재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원목단가 재당 3000원일 경우 $3000 \times 21.95 = 65850$ 원 $3000 \times 56.7 = 170100$ 원으로 두배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표준단가 때 적용된 재수를 구하는 방식과 품셈상의 재수를 구하는 방식이 상이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현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 '16.08.26 접수]

-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문화재수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4장 목공사 편 의 '4-0 적용기준' 항목에 따르면 수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원형부재는 ' $\pi \times$ 반지름(r) $^2 \times$ 길이'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1장 적용기준 편 의 '1-9 재료의 할증' 항목에서 원목(原木) 제재에 따른 손실율을 고려하여 25~40%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수량산출서에 이미 재료의 할증이 반영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할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공사의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 16

2015문화재수리 표준품셈책 305p 16-5 목재수지처리에 수지처리에 대한 품셈이 나와 있는데, [주]② 수지수량은 설계수량으로 하되, 목재충전 시 목재수량을 제외한다. ③ 목재로 성형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위 내용에 따라 수지처리 시 주재료비로 들어가야 하는 목재가 아닌 수지처리재료에 대해 별도계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품셈에 수지처리재료비가 포함된 내용인지 알 수 있는지 답변을 얻고자 질의의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 '16.08.11 접수]

☞ 목재수지처리의 방법은 크게 충전·보강하는 경우와 접합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충전·보강하는 경우는 부식된 부재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수지(樹脂 : 천연수지 또는 합성수지)를 메워 넣는 것이고, 접합은 절단된 부재나 이탈된 부재의 절단면에 수지를 발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충전·보강하는 방법에는 △수지로만 충전하는 경우, △목재(구부재, 폐목재 등)를 깎아 접합·충진하는 경우, △탈크, 톱밥과 같은 충전제를 수지와 혼합하여 충전하는 경우, △ 철심, 스테인레스, 유리섬유, 알루미늄과 같은 보강재를 설치한 후 수지로 마무리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품셈 항목인 '16-5 목재수지처리'의 각주에 보존처리를 위한 재료인 수지의 수량은 설계수량으로 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므로, 수지처리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여야 하며, 이때 목재 등을 충전하여 수지와 혼합 사용할 경우 수지 물량은 목재 물량과는 따로 산출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7

0620 기와지붕공사 중 9항 기와이기 중에 ㄱ.항 내용 중에 막새를 쓸경우 받침장은 기와 길이의 1/3(중와 기준 12cm) 이하로 내밧다 하였는데 . 막새가 없이 아구토로 마무리하는 기와 받침장도 1/3 인지 아니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길이가 같다고 다른 분은 더 내밧어야 한다하여 질문합니다.

[국민신문고 '16.12.16 접수]

☞ 받침장은 내림새 등이 깨어질 우려가 있어 보강하기 위해 밑에 받쳐서 쓰는 암키와로, 현행 시방서에서 처마 끝에 놓여지는 받침장은 연암에서 기와 길이의 1/3 이하로 내밧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밧 길이를 막새와 와구토 사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시방서의 '지붕공사-기와이기-암키와이기' 항목은 지붕 바닥기와이기 중 암키와이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화재수리공사는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18

문화재보수 현장의 야간작업과 관련하여 할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현장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관람객이 많은 곳이기도 하여, 관람시간이 모두 끝난 밤 10시 (22:00) 이후부터 익일 아침까지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 규정을 찾아보니 문화재수리표준품셈(2015)를 찾아보니 '1-17 품의 할증'의 4번 항목에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력품을 25%까지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장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표준품셈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산출방법(계상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설계도서에는 25% 할증이 적용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현장은 제주도에 있는데, 노무비에는 도서할증 15%가 잡혀있는데, 도서할증과 야간할증을 동시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17.02.17 접수]

-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6 노임의 할증에 따르면 야간작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1-17 품의 할증 제4호에 야간작업의 경우 인력품을 2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임의 할증과 야간작업에 의한 품의 할증은 중복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서할증(본토에서 인력 동원파견시)은 야간작업과는 동일성격의 품할증 요소가 아니므로 추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제약과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행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 19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3.6m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또한,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르면,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라 명시된 바,

【질 의】

처마높이가 6.0m를 초과하여 위의 2가지 상황이 동시 적용되는 현장일 경우

제 1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라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하여 산출 및 적용한다.

제 2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도 불구하고,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이 포함되어 산출 및 적용되어있다.

위의 두 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입니다.

[국민신문고 '17.02.16 접수]

-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항목의 적용기준의 할증은 인력 품의 할증이며,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항목의 소운반의 운반거리 초과분(20m 이상)에 대한 할증은 운반비에 대한 별도계상이므로, 처마높이 6.0m 초과 건물의 경우 인력 품의 할증과 함께 소운반거리 초과분에 대한 운반비 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20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르면 공사별로 편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 내역에 계상된 편수에 대해 실제 투입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정산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다른 일위대가의 직종별 수량과 마찬가지로 편수산정기준 그대로 인정받는지 질의합니다.

[국민신문고 '17.04.14 접수]

- ☞ 편수의 산정은 공사의 양(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편수의 정산은 실제편수의 투입량이 아니라 공사의 양(수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21

【질의 1】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2-3 목재치목장(벽체없음),p,49 와 관련하여, 품셈에는 '골함석, PVC골판'등을 사용할 경우 각재와 기타 잡자재에 대한 품 및 자재가 표시되어있지 않은데, 치목장 설치 시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각재와 잡자재에 대한 설치 품 및 자재의 반영 시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3 공구손료 및 잡재료P.33 와 관련하여 '공구손료'에 '각재' 또는 '잡자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민신문고 '17.04.11 접수]

-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2-3 목재치목장(벽체없음)은 강관 위 골함석을 설치한 치목장으로 본 품에는 각재 및 잡자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목재치목장 설계에 따른 예정 가격 작성 시 목재치목장 설치에 추가로 반영된 자재 등은 별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3 공구손료 및 잡재료 항목의 공구손료에는 각재 및 잡자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2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6. 착고기와, 특수기와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P,125)

5-1. 기와해체

[주] ④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 의】

5-15. 장식기와설치(용두) 0.06㎡ 초과, 이하(P.145,146)

5-16. 장식기와해체(용두) 0.06㎡ 이하, 초과(P.147,148)

라고만 구분되어있어 “잡상의 해체와 설치”에 대한 별도의 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해 문화재가 0.06㎡ 이하의 잡상만 있는 건물인 경우, 잡상의 해체, 설치 품의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 1설) 0.06㎡ 이하의 잡상 여러 개를 0.06㎡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 : 잡상 3개 = 용두 1개)

제 2설) 0.06㎡ 이하의 잡상 1개를 0.06㎡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적용해야한다. (예 : 잡상 1개 = 용두 1개)

[국민신문고 '17.04.11 접수]

-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서는 잡상의 해체 및 설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품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책임 하에 예정가격 산정기준(견적처리, 품셈 유사항목 적용 등)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3

【질 의】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7. 환경관리비“ 조항에 근거하여 도심지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슈트를 설치한 경우,

제 1설) 쓰레기슈트의 설치비용을 소운반으로 보아야 한다.

제 2설) 쓰레기슈트의 설치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에 관련한 것으로, 소운반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공사항목이다.

[국민신문고 '17.04.11 접수]

- ☞ 「화재수리표준시방서」 제1장 1-27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경관리비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는 ‘기와 해체 시 인력으로 운반하여 보관장소로 이동한다.’, ‘보토강회다짐 해체 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내리도록 한다.’ 등 문화재수리 시 해체 부재(폐기물 포함)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여 인력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고, 문화재수리표준품셈에는 이를 기준으로 반영(소운반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슈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폐기물)

슈트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한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별도 계상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체 공정 인력품 조정 필요)

Q 24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1. 기와해체

[주] ④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P,125)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5-17. 장식기와설치(절병통)

5-17-2 석재(화강석)

[주] ① 본 품은 절병통을 보양하여 인력으로 운반 후 암막새와 수막새로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일체형 석재 절병통을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석재 절병통은 높이 1,300mm, 지름 600m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생석회피우기(소화)는 100kg당 보통인부 0.09인을 가산한다.

⑥ 잡재료는 별도로 계상한다. (P,150)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 의】

일반적으로 절병통의 설치는 모임지붕의 최상부에 설치되는 부재로서 품셈에서와 같이 “절병통을 보양하여 인력으로 운반”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1,300mm, 지름 600mm의 석재(화강석) 절병통의 경우 그 무게가 1,000kg에 가까운데, 이를 인력 운반 하기 위해서는 1인당 50kg의 무게를 담당한다고 해도 20명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지붕 최상부에서 해체하여 지상으로 내린 후에 다시 지붕 최상부로 올려 설치하는 상황이라면 석재절병통의 인력 운반은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문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거운 부재를 다룰 때에는 현실적으로 드잡이 장치, 또는 기계를 활용하고, 가설발판 역시 낮은 경사도의 폭이 넓은 슬로프식 가설발판을 지상에서부터 해당 부재의 설치높이까지 설치하여 인력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상기의 품셈에서는 어떤 방법도 제시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한 석재절병통의 해체와 설치 품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요청합니다.

질의 2)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력운반을 하지 못하고 석재 절병통의 해체, 설치 시 그에 따른 품과 비용을 실질적(실용적)인 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민신문고 '17.04.11 접수]

- ☞ 질의 1.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17-2 석재(화강석)의 품은 [주]①과 같이 인력으로 절병통의 운반부터 설치까지의 과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운반은 소운반을 포함하여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할 수 있음
- ☞ 질의 2. 절병통을 인력으로 운반할 수 없을 경우(기계장비 사용)에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장비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맞게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5

【질 의】

문화재수리 자문회의 결과 지붕해체 여부의 결정과 지붕 속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시굴조사를 하는 경우,

제 1설) 시굴조사도 해체의 일부이므로 지붕해체 품으로 계상한다.

제 2설) 시굴조사는 지붕 전체를 해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실시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붕해체 시공과는 달리 골파기 등 작업능률의 저하로 인한 별도의 품과 인력이 투입되므로 해체의 품과는 달리 적용되므로 해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없으니 별도의 품(실비정산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 '17.04.11 접수]

-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5장 5-2 지붕해체(생석화다짐, 보토, 적심, 산자)에는 지붕 해체 시 시굴(트렌치)조사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표준품셈에는 지붕의 시굴(트렌치)조사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 지붕의 시굴(트렌치)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발주기관의 책임 하에 설계에 반영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6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

7.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질 의】

“일정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지시(공문)에 따라 당해년에 벌채하여 자연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 건조하여 반입한 경우, 건조비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제 1설) 표준시방서의 내용 역시 “계약조건“이며, 건조된 목재의 수급과 사용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목재건조비를 별도 계상할 수 없다.

제 2설) 품셈 규정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 7조.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P,78) 에 따라 목재의 건조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17.04.11 접수]

-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보관 중인 목재도 기준함수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당연히 기준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목재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함수율 조정 요구 등 추가 건조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에 의거 별도 계상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3 공구손료 및 잡재료 항목의 공구손료에는 각재 및 잡자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7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처리접수번호 2AA-1704-089750 (2017. 04. 19.) 답변에 따르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보관 중인 목재도 기준함수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당연히 기준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목재여야 합니다.”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당해 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목재(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당해 문화재의 현황에

- 맞는 목재의 곡과 규격 등의 조건과도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해체 후 교체수량 변경과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하는 시간적인 조건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 귀청의 답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 목재”의 수급처와 그에 따른 “건조목재의 단가조사가격”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5. 결론적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조된 목재의 수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설계당시 자재(목재)단가조사가 발주처의 요구사항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주처의 지시대로 목재의 함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귀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국민신문고 '17.05.08 접수]

☞ 문화재수리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른 함수율뿐만 아니라 재료의 품질 기준(강도, 규격, 수종 등)에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설계당시 자재 단가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 28

문화재 공사에 대한 평균적인 공사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경우 공공건축에 대해 대략적인 공사비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문화재 공사에도 이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20.02.18 접수]

☞ 우리 청에서 문화재수리 관련 평균 공사비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수리 공사 사업비 산출시 참고할 수 있는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의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문화재수리는 문화재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해야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합니다.

Q 29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전통안료로 단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신청시 일반 단청으로 신청하였으나 전통안료로 단청토록 통보됨).
- 사업분류는 국가검토로서,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 승인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 현재 전통안료에 대한 표준품셈이 없고, 전통안료는 거의 1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실상 확정된 단가가 없습니다. 이에 전통안료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 당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찰 측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승인 요청 시 상기 이유로 내역, 단가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 언론 기사를 보니 2023년까지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보았으나, 현재 관련 기준들이 미비한바, 전통안료를 이용한 단청 건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시 내역,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신문고 '20.03.09 접수

☞ 우리 청에서는 전통소재단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소재단청에 대한 시공기준 및 표준품셈 등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은 국무조정실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관련 규제의 면제 및 유예 대상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청에서는 전통소재단청의 내역(품셈 및 일위대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내역(인력 품 및 재료소요량)검토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물량 : 전통소재단청사업의 물량(단청면적) 산출기준은 기존 기준과 동일

** 단가 : 재료(안료)에 대한 단가는 우리 청에서 정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행청에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 이러한 이유로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은 설계승인시 설계자와 검토하여 내역서의 인력품을 기존 시범단청 인력품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재료(안료) 소요량은 단청시공 완료시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Q 30

문화재수리공사의 적정 가격 산정 위한 기준인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과 관련하여 2019년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서 문화재실측설계업체에 유의사항 알림의 공문(첨부)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석공사의 거친돌쌓기할 때 필요한 거친돌의 맞댄부분 가공품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거친돌의 별도 가공품 반영이 불필요한 것으로 알림하였는데, 맞댄면 가공을 포함한 전체 가공이 불필요한 것이지 불분명하고, ,, 실제로 설계 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사 중 이에 대한 적용문제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에서 정의하는 거친돌쌓기는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크기의 자연석을 반입하여 쌓는 것으로

모가 튀어나오거나 맞지 않는 부분을 쳐내어 맞추어 쌓는 것으로

이에 대한 품이 다 포함되어 산정된 것이고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석재 수급은 적정크기의 자연석을 골라 반입하기 어렵고

석산이나 골재상에서 적정 크기 이상의 석재를 반입하여 할석 후 가공하여 사용합니다.

이에 성곽석으로 할석 후에는 부득이 적정 형태로의 형태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사무소에서는 이를 위한 가공으로 외부입면을 제외한 5면에 대한 흑두기나 정다듬 등의 가공을 산정해 반영해온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은 현장 여건에 맞게 가공을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20.04.10 접수]

☞ 질의 1. 거친돌쌓기에서는 맞댄면 가공을 포함한 전체 가공이 불필요한 것인지?

답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제11장 석공사의 '거친돌쌓기' 항목은 채집한 거친돌(귀하께서 말씀하신 자연석)을 사용한 쌓기 품으로 쌓기에 필요한 가공품이 포함된 항목입니다. 만약 '거친돌쌓기'의 품이 적정하지 않다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거친돌쌓기' 항목의 개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거친돌쌓기'의 품을 다시 조사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2. 적정 크기의 자연석을 수급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크기 조정과 심석 형태가공을 위해서 별도의 가공을 반영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만약 문화재수리 설계시 거친돌쌓기용 석재를 채집한 거친돌(자연석)이 아닌 원석

등 다른 석재를 적용한다면 그 석재를 적정한 크기 및 형태로 만들기 위한 가공품(할석 및 흑두기 등)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질의 3. 설계단계에서 반영된 가공은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가공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관:기획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관:행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화재수리 업무편람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042)481-4873 FAX. 042)481-4879
총괄 조은경
제작 김영범, 조성규
인쇄처 (주)계문사(044-868-7451~2)
I S B N 978-89-299-2421-8 93600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891-14

